

최종보고서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2011. 10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0월

주관연구기관 :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해양연구소

연구책임자 이 동 현 교수

연구진 김 자 영 연구원

외부연구진 박 성 쾌 부경대학교 교수

차 철 표 부경대학교 겸임교수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 방법론	5
제3절 국내외 연구동향	8
1. 국내 연구동향	8
2. 해외 연구동향	9
3. 소결	9
제4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1
1. 기대효과	11
2. 활용방안	11
제2장 원양어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21
제1절 한국 원양어업의 실태	12
1. 한국 원양어업의 현황	12
2. 한국 원양어업의 해외진출 유형 분석	26
3. 한국 원양어업의 변화	32
제2절 대외적 환경변화	41
1. 연안국	41
2. 지역수산물관리기구	46
제3절 대내적 환경변화	50
1. 생산 측면	50
2. 소비 측면	54

3. 수산물 수급 현황 및 전망	57
제3장 원양어업의 허가제도 분석	6
제1절 원양어업 허가에 관한 이론적 기초 검토	61
1. 어업허가의 의의	61
2. 어업허가의 법적 성격	62
3. 어업허가의 효과	72
제2절 한국의 원양어업 허가제도	77
1. 역사 및 내용	77
2. 허가권 현황	85
3. 주요국의 원양어업 허가제도 검토 및 비교	90
제3절 원양어업 허가제도의 문제점	94
1. 진입장벽의 문제	94
2. 국제환경에 대한 대응 미흡	99
제4장 원양어업 쿼터 할당 및 배분방식 분석	0
제1절 어획쿼터 할당 및 배분의 이론적 검토	102
1. 쿼터 할당 및 배분의 구조	102
2. 쿼터 할당 및 배분의 기준	104
3. 쿼터 거래제도	106
4. 해외수역의 한국 쿼터 할당 현황	113
제2절 연안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쿼터할당 방식	115
1. 주요 연안국의 쿼터 할당방식	115
2.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쿼터 할당 방식	117
제3절 국내 원양어업 쿼터 배분방식의 분석	133
1. 러시아 정부 쿼터 배분방식	133
2. 지역수산관리기구 쿼터 배분방식	137
3. 주요 연안국의 할당 쿼터 국내 배분방식 비교	138

제4절	현행 쿼터 배분 방식의 문제점	141
1.	일관성 있고 명확한 기준의 부재	141
2.	국제환경 변화 반영 미흡	141
3.	기득권 인정과 형평성 도모 간의 부조화	142
4.	분쟁조정 기능의 약화	143
제5장	허가제도 및 쿼터 배분방식 개선방안	144
제1절	제도개선의 이론적 검토	144
1.	입어 및 쿼터 관련 후생손실과 시장실패	144
2.	허가 및 쿼터의 정부개입 문제	148
3.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 할당·배분의 구조	153
제2절	허가제도 개선방안	156
1.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	156
2.	사전승인제의 도입	166
3.	일제갱신제의 도입	172
4.	우선순위의 명확화	177
5.	쿼터연계형 허가정수제의 도입	184
6.	정부의 조정 및 제재 기능 강화	188
7.	허가제도 개선방안 요약	194
제3절	쿼터 배분방식 개선방안	195
1.	어장별 맞춤형 쿼터배분	195
2.	국제기준 연계형 쿼터배분	198
3.	절충형 쿼터배분제의 도입	200
4.	종합입찰제의 도입	204
5.	쿼터이용료의 도입	207
6.	쿼터 거래제도의 활성화	208
7.	쿼터 배분방식 개선방안 요약	211
제6장	실천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	212
제1절	세부 실천계획 수립	212

1. 허가제도 개선	212
2. 쿼터 배분방식 개선	216
제2절 효과분석	220
1.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220
2.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225
3. 제도개선 방안이 수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235
제7장 결 론	244
제1절 요약	244
1. 허가제도 개선방안	244
2. 쿼터배분 방식 개선방안	246
제2절 정책제언	250
1. 법·제도 개정 방향	250
2. 조직 및 인력 정비방안	253
3. 재원조달 방안	256
참 고 문 헌	259
부 록	267
1. 일본 원양어업 허가증	269
2. 일본의 참치어선 감척 관련 자료	277
3. 중국 원양어업관리규정 (농업부령 제27호) 주요내용	283
4. 미국 원양어업 허가신청서	296
5. 한국 원양어업 허가신청서 및 허가증	303

표 목 차

<표 2-1> 연도별 업종별 어선척수 (1958~1986)	14
<표 2-2> 연도별 업종별 어선척수 (1987~2010)	15
<표 2-3> 선령별 업종별 어선척수	18
<표 2-4> 원양어업의 어선 선령의 연도별 비교	19
<표 2-5> 연근해 어선의 선령	20
<표 2-6> 상선대의 선령	21
<표 2-7> 원양어선 해외어장 출어현황	23
<표 2-8> 원양어업 연도별 어선원 현황	26
<표 2-9> 원양어업 시기별 주요정책 및 해외진출 유형	40
<표 2-10> 주요 원양어업국의 연안국에 대한 협력사업 형태	44
<표 2-11> IUU어업에 대한 감시·통제·감독 (Monitoring·Control·Surveillance : MCS)	47
<표 2-12>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원양어업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	48
<표 2-13> 주요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현황 및 규제 상황	49
<표 2-14> 한국의 수산물 생산량	50
<표 2-15> 연도별 원양어업 생산량	53
<표 2-16> 원양어업의 해역별 생산량	53
<표 2-17> 수산물 류별 수급 현황 및 전망 (1)	58
<표 2-18> 수산물 류별 수급 현황 및 전망 (2)	59
<표 3-1>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의 비교	63
<표 3-2> 허가과 특허의 비교	64
<표 3-3>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비교	69
<표 3-4> 면허어업과 허가 어업의 비교	70
<표 3-5>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 비교표	72
<표 3-6> 연도별 전체 어선척수 (1990~2010)	86
<표 3-7> 연도별 참치어업 어선척수 (1990~2010)	87
<표 3-8> 연도별 오징어어업 어선척수 (1990~2010)	88
<표 3-9> 연도별 트롤어선척수 (1990~2010)	89
<표 3-10> 원양어업 허가 척수 추이	90
<표 3-11> 주요국의 원양어업 허가제도 비교	93
<표 3-12> 원양어업의 허가기준	95

<표 4-1>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할당 쿼터량	113
<표 4-2> 러시아 수역의 할당 쿼터량	114
<표 4-3> 정부쿼터 확보 현황	116
<표 4-4> 지역수산물관리기구별 어획쿼터 할당체제	117
<표 4-5> 지역수산물관리기구별 어획쿼터 할당기준	118
<표 4-6> WCPFC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눈다랑어 연승어업의 TAC 할당량	120
<표 4-7> CCSB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TAC 할당량	122
<표 4-8>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북방날개다랑어의 TAC 할당량	123
<표 4-9>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남방날개다랑어의 TAC 할당량	124
<표 4-10>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북방황새치의 TAC 할당량	125
<표 4-11>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남방황새치의 TAC 할당량	126
<표 4-12>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동방참다랑어의 TAC 할당량	128
<표 4-13>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서방참다랑어의 TAC 할당량	129
<표 4-14>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눈다랑어의 TAC 할당량	129
<표 4-15>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백새치의 TAC 할당량	130
<표 4-16>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녹새치의 TAC 할당량	131
<표 4-17> IATTC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눈다랑어의 TAC 할당량	132
<표 4-18> 명태 쿼터에 대한 업계 수요조사 결과	133
<표 4-19> 명태쿼터 배정 대안별 물량	136
<표 5-1> 원양어업에서의 시장실패 원인	146
<표 5-2>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의 비교	159
<표 5-3> 규제체계 유형별 특성 비교	159
<표 5-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네거티브 방식 개선안	160
<표 5-5> 「먹는물 관리법」 네거티브 방식 개선안	160
<표 5-6> 신고와 허가(포지티브, 네거티브) 비교표	161
<표 5-7> 원양어업 허가 현황	162
<표 5-8> 네거티브 방식의 허가조항 법률 개정(안)	164
<표 5-9> 어장성격에 따른 어업허가제도 운영방안	165
<표 5-10> 원양어선 사전승인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 분석	170
<표 5-11> 원양어업 허가우선순위 법제화 및 장단점 분석	182
<표 5-12> 쿼터연계형 허가정수제 도입방안	186
<표 5-13> 항만국 검색과 관련한 국제기구의 계획 및 결의	192
<표 5-14> 어업허가와 관련한 심층인터뷰 내용	192

<표 5-15> 원양어업 허가제도 개선(안) 정리표	194
<표 5-16> 쿼터 배분방식과 관련된 심층인터뷰 내용	196
<표 5-17>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쿼터 할당기준과 연계한 쿼터 배분기준 예시	199
<표 5-18> 정부쿼터 확보 현황	200
<표 5-19> 3가지 배분방안에 따른 업체별 쿼터량	201
<표 5-20> 각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의 어획쿼터 거래현황 및 특징	209
<표 5-21> ICCAT 어획쿼터 거래현황	209
<표 5-22> 원양어업의 쿼터 배분 방식 개선(안) 요약	211
<표 6-1> 허가제도 개선의 시기별 목표 및 시행 조치	213
<표 6-2> 원양어업 허가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일정 및 적용대상 검토	215
<표 6-3> 쿼터 배분방식 개선의 시기별 목표 및 시행조치	217
<표 6-4> 쿼터 배분방식 개선을 위한 추진일정 및 적용대상 검토	219
<표 6-5> 진입규제가 완화에 따른 생산량 증가 추정	227
<표 6-6> 국제적 이미지제고에 따른 생산량 증가 효과 예시	229
<표 6-7> 원양어업 제도개선 효과분석 요약	234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진행 체계도	6
<그림 2-1> 연도별 어선척수 그래프	16
<그림 2-2> 연도별 총톤수 그래프	16
<그림 2-3> 한국 원양어업의 조업국가 및 어장	24
<그림 2-4> 한국의 수산물 생산량	51
<그림 2-5> 연도별 원양어업 생산량	53
<그림 2-6> 수산물 수급 전망	58
<그림 3-1> 연도별 전체 어선척수 (1990~2010)	86
<그림 3-2> 연도별 참치어업 어선척수 (1990~2010)	87
<그림 3-3> 연도별 오징어어업 어선척수 (1990~2010)	88
<그림 3-4> 연도별 트롤어선척수 (1990~2010)	89
<그림 4-1> 원양어업 정부쿼터 할당 구조도	102
<그림 5-1> 독점시장의 사회적 후생손실	144
<그림 5-2> 원양어업 입어 및 쿼터 독점(X재)과 자원배분	147
<그림 5-3> 원양어업에서의 고정비용과 정부지원	152
<그림 5-4>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 할당·배분의 구조	155
<그림 6-1> 원양어업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현상 및 기대효과	225
<그림 6-2> 생산량 증가 효과	226
<그림 6-3> 신규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량 증대 효과	228
<그림 6-4> 생산비용 감소에 따른 생산자 및 소비자 잉여 증가	230
<그림 6-5> 생산비용 감소 효과	230
<그림 6-6> 상품가치 상승효과	231
<그림 6-7> 산업 활성화 효과	233
<그림 6-8> 경영 안정성 제고 효과	233
<그림 6-9> 자원관리 강화와 비용곡선의 관계	23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한국 원양어업은 2007년 「원양산업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창출 원양산업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현행 단순 생산 위주의 어업으로는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없음은 물론 생존도 쉽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연안자원국과의 합작사업을 포함한 유통, 가공, 해외양식 등과 연계한 다각적 노력과 국제수산기구의 자원보호 조치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원양어업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는 한국 원양어업에 대해 위기로 다가오고 있음
 - 연안국과 국제수산기구 등의 어업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한국 원양어업이 지금까지 조업하여 온 주요 어장이 축소되거나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음
- 연안국들은 신자원국가주의(new resource nationalism)를 내세우며 수산 자원을 자국 경제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외국 어선에 대한 입어료의 과다 인상
 - 조업국에 대해 투자 및 기술제공 요구
 - 입어방식의 변화, 최소입어규정(MTCs), 옵서버 승선 요구 등
- 국제수산기구는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한 공해어업의 관리를 표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조업국의 어업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음
 - VMS(선박감시체제 : vessel monitoring system) 장비의 장착 및 정보의 보고 의무
 -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의 시행
 - 항만국 검색제도의 시행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어획물 통계서류 작성
- 어선의 등록 및 IUU 어선명부 작성

- 이와 같이 원양어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원양어업 허가 및 쿼터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원양어업 허가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에 대한 개방을 놓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음
 -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에서 할당받은 쿼터를 국내 업체에게 배분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업체 간, 기존 조업업체와 신규 희망업체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

- 원양어업 허가 및 관련하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 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동법 제6조는 원양어업을 위해서는 ‘어선마다’ 유효기간 5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박’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기허가 선박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형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음
 - 선박에 대한 허가 방식은 선박의 거래로 허가권이 영구화될 수 있고, 특히 동조 제4항에 따른 허가정수 설정 시에는 기허가자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쿼터배분과 관련하여 기득권 보호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할당받은 명태 쿼터를 기존 업체에 대해서만 배분하는 것을 놓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쿼터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었음
 - 어획수요에 비해 한국 할당 쿼터가 부족한 ICCAT의 눈다랑어 및 CCSBT 남방참다랑어 등 일부 어종의 현행 쿼터 할당방식은 해당수역 입어 어선별로 균등하게 배분토록 하여, 기허가 선박의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새로운 국제어업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원양어업의 공정성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원양어업 허가제도와 쿼터 배분방식의 재검토 등 국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시급함
 - 이를 통해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의 일부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원양어업 제도의 공정성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미래 시대에 대비하는 원양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행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배분 방식의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원양어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맞서 탄력적이고 전략적인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배분 방식을 수립하고자 함
 - 허가제도는 진입규제의 과감한 완화와 산업경쟁력의 확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쿼터배분 방식은 국제수산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국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둘째, 대내외적 국제어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 방향 제시
 -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배분 방식의 개선안 도출 결과를 「원양산업발전법」에 반영하고자 함
- 셋째, 개선방안의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과 수산물 수급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통한 실효성 검토
 - 개선방안을 정부의 정책으로 실제 집행하기 위해 시기별, 적용대상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개선방안이 수산물 수급과 가격 등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함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제2장 원양어업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

- 한국 원양어업의 실태 : 한국 원양어업의 현황, 해외진출 유형, 한국 원양어업의 변화
- 대외적 환경변화 : 연안국, 지역수산물관리기구
- 대내적 환경변화 : 생산 측면, 소비 측면, 수산물 수급현황 및 전망

제3장 원양어업 허가제도 분석

- 원양어업 허가에 관한 이론적 기초 검토 : 어업허가의 의의, 법적 성격, 효과
- 한국의 원양어업 허가제도 : 역사 및 내용, 허가권 현황, 주요국의 원양어업 허가제도 검토 및 비교
- 원양어업 허가제도의 문제점 : 진입장벽의 문제, 국제환경에 대한 대응 미흡

제4장 원양어업 쿼터 할당 및 배분방식 분석

- 어획쿼터 할당 및 배분의 이론적 검토 : 쿼터할당 및 배분의 구조, 쿼터할당 및 배분의 기준, 쿼터 거래제도, 해외수역의 한국 쿼터할당 현황
- 연안국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쿼터 할당방식 : 주요 연안국의 쿼터 할당방식,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쿼터 할당방식
- 국내 원양어업 쿼터배분 방식의 분석 : 러시아 정부쿼터 배분 방식,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쿼터 배분 방식, 주요 연안국의 할당쿼터 국내 배분방식 비교
- 현행 쿼터배분 방식의 문제점 : 일관성 있고 명확한 기준의 부재, 국제환경변화 반영 미흡, 기득권 인정과 형평성 도모 간의 부조화, 분쟁조정 기능의 약화

제5장 허가제도 및 쿼터 배분방식 개선방안

- 제도개선의 이론적 검토 : 입어 및 쿼터 관련 후생손실과 시장실패, 허가 및 쿼터의 정부개입 문제,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 할당·배분의 구조
- 허가제도 개선방안 : 네거티브 방식 도입, 사전승인제 도입, 일제갱신제 도입, 우선순위의 명확화, 쿼터연계형 허가정수제의 도입, 정부의 조정 및 재기능의 강화
- 쿼터 배분방식 개선방안 : 어장별 맞춤형 쿼터배분, 국제기준 연계형 쿼터 배분, 절충형 쿼터배분제의 도입, 종합입찰제의 도입, 쿼터이용료의 도입, 쿼터 거래제도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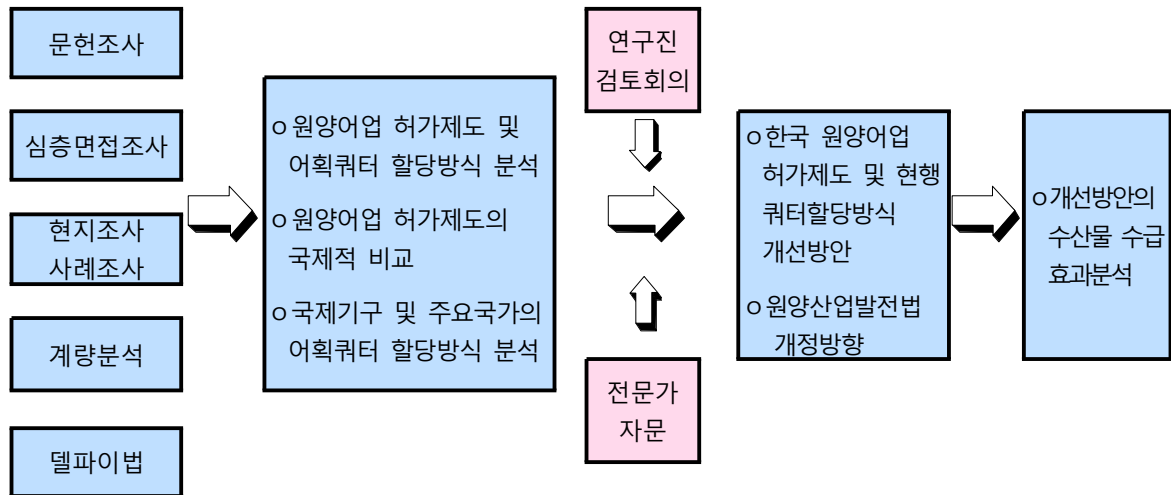
제6장 실천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

- 세부 실천계획 수립 : 허가제도 개선, 쿼터 배분방식 개선
- 효과 분석 :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제도개선 방안이 수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2. 연구 방법론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추진방법과 전략을 수립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 연구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연구의 기본목표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음
 - 연구 1단계에서는 자료 및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음
 - 연구 2단계에서는 기초 조사와 자료 수집을 토대로 원양어업계 및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 현지조사(일본), 각 지역수산관리기구에 대한 사례조사 등을 통해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배분 방식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 연구 3단계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허가제도 및 쿼터배분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 실행계획과 기대효과 분석 등을 시행하였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그림 1-1> 연구진행 체계도

-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문헌조사

- 관련 분야의 기존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의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 연구 검토

나. 심층면접조사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업계 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 (in-depth interview) 조사
- 일본 수산청 공무원, 협회 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다. 현지조사

- 일본 현지조사를 통해 원양어업국인 일본의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 할당방식 실태 조사

라. 사례조사

- 국제기구 및 주요 연안국, 원양어업국 등의 관련 법제 및 정책운용 실태조사 실시

마. 효과분석

- 개선방안이 수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바. 델파이법

- 연구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통한 신뢰도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원양어업분야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원양산업 발전의 방향과 수요 예측

제 3 절 국내외 연구동향

1. 국내 연구동향

- 「국제해양질서에 부응한 원양어업경쟁력 강화 방안」(2005)은 국제어업환경 변화로 침체된 원양어업 현황을 분석·평가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여타 원양어업국 대비 한국 원양어업의 SWOT 분석을 통해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키리바시의 밀크피쉬에 대한 상업적 이용방안」(2007)은 태평양 도서국과의 체계적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키리바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밀크피쉬의 상업적 이용·개발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수산분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2009)은 해외 식량기지 구축 및 국내 수산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수산펀드의 조성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수산기업의 해외투자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수산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 전략을 연구하였음
- 「원양어업 50년사」(2009)는 한국 원양어업 출범부터 현재까지의 어업협력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망라하였으나, 최근 동향 변화에 따른 향후 원양어업 전략이나 방향 등의 제시는 미약함
-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부응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방안」(2005)은 원양어업의 조업어장 및 어획쿼터 확보를 위한 연안국과의 협력 방안을 연구하였으나, 허가제도의 개선이나 어획쿼터 할당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

2. 해외 연구동향

- “ITSQs IN ICELANDIC FISHERIES: A Right Based Approach to Fisheries Management”(1999)는 재산권(property right)에 기초한 수산자원관리로 일환으로 양도성개별할당제(individual transferable quota)가 확산됨에 따라 아이슬란드가 최초로 도입한 양도성개별배당률 할당제의 현행 구조 및 실행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 “Case Studies on the allocation of transferable quota rights in fisheries”(2001)는 다양한 어업관리체제에서 수행된 유럽,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23개국의 초기 양도성개별할당제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있음
- “Future Options for UK Fish Quota Management”(2002)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FRA)로부터 FQAs(fixed quota allocation units) 제도 운영에 관한 검토요청에 따라 현행 FQAs 제도 검토를 통해 향후 영국의 쿼터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Deep sea fishing policy and its implications on the Fisheries Sector and Livelihood of the Fishing Communities in India”(2007)는 현재까지 인도의 원양어업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원양어업 시나리오를 검토함으로써 인도 어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음
- “Anthony Cox, Quota Allocation in International Fisheries,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working paper No. 22”(2009)는 국제수산기구의 쿼터할당 참여권(allocating participatory rights)을 검토함으로써 현행 쿼터할당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3. 소결

- 국내 연구는 대체로 원양어업의 발전방안과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가 관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리하는 수산자원의 이용방안에 관해 집중되었음
- 따라서 원양어업 허가제도에 대한 검토와 할당받은 쿼터의 국내업체에 대한 배분 문제는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해외 연구는 양도성개별할당제(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등 쿼터할당과 거래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그러나 연안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가 관리하는 어장에 대해 부여받은 쿼터를 국내 업체에게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결론적으로 원양어업 허가제도의 개선과 쿼터 할당 및 배분에 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하여 축적된 연구 자료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제 4 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가. 기술적 측면

- 원양어업국인 일본 현지 조사 및 관계자 심층 면접 등을 통한 정밀한 기초 자료 제공 및 공정성과 실효성을 갖춘 개선방향 제시를 통해 선도적 연구를 수행
- 개선방안이 국내 수산물 수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개선방안의 실효성 및 타당성을 검증

나. 정책적 측면

- 원양어업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방안 모색을 통해 원양산업 경쟁력 제고 유도

2. 활용방안

- 원양어업 신규 희망자에 대한 진입방안을 「원양산업발전법」에 반영하여 국내 원양어업의 발전적 질서 수립
- 국내 원양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쿼터배분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선진 원양어업 질서 확립

제 2 장 원양어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제1절 한국 원양어업의 실태

1. 한국 원양어업의 현황

- 한국 원양어업은 요소 측면과 생산 측면에서 모두 위축되고 있으며, 생산요소의 투입과 생산량의 산출은 양적 차원은 물론 질적 차원에서도 크게 낙후되고 있음
- 다음에서는 어선, 어장, 선원 등 어업의 3대 요소로 구분하여 한국 원양어업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가. 어선

(1) 원양어업의 어선 척수

- 1958년 시작된 한국 원양어업은 1960년대~1970년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원양업계 의욕적인 참여로 어선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1963년 10척에서 1966년 138척으로 급증하였고, 1971년 351척으로 늘어난 데 이어 1977년 850척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음
-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어선 척수가 감소하였음
 - 1977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어선 척수는 점진적으로 줄기 시작하여 1980년 750척, 1982년 683척으로 감소한 데 이어 1984년 614척으로 감소하였음
-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까지는 어선 척수가 잠정적으로 늘어난 시기임
 - 이 시기에는 어선 척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1987년 703척, 1989년

770척으로 늘어났고, 이어서 1990년에는 810척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던 1977년 수준까지 거의 육박하였음

- 199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1992년 759척으로 줄어들면서 1998년 545척에 이어 2005년 410척으로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353척을 기록하고 있음
 - 2010년의 어선 척수는 1971년(351척)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어선 척수 기준으로 따지자면 한국 원양어업은 40년 전으로 회귀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2) 원양어업의 어선 총톤수

- 원양어선의 총톤수 추이를 보면 1960년대~1970년대 선박 척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함께 총톤수도 꾸준히 늘어났음
 - 1961년 102 톤에서 1963년 1,326 톤, 1965년 1만852 톤, 1971년 10만8,550 톤으로 10년 동안 100배 정도 증가하였음
 - 1973년 20만8,410 톤으로 늘어난 데 이어 1976년 33만4,101 톤으로 1차 최고점을 기록
-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원양어선의 총톤수가 1차 감소한 시기임
 - 1976년 1차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원양어선의 총톤수는 1980년 29만8,141 톤으로 떨어졌고, 1984년 27만4,939 톤으로 1차 최저점을 기록
-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까지는 원양어선의 총톤수가 잠정적으로 늘어난 시기였음
 - 1984년 1차 저점을 기록한 원양어선의 총톤수는 1984년 33만7,801 톤으로 회복한 데 이어 1990년 42만2,144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199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1990년 사상 최고점을 기록한 총톤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3년 36만5,577 톤, 2001년 28만7,527 톤, 2006년 19만7,685 톤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0년에는 19만1,111 톤을 기록하고 있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2010년 원양어선 총톤수는 1972년~1973년 수준과 비슷한 것이어서 한국 원양어업은 어선 총톤수 기준으로 보아도 4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음

<표 2-1> 연도별 업종별 어선척수 (1958~1986)

(단위 : 척, G/T)

년도	총계	참치업종			트롤업종			오징어업종			꽂치붕수망업종	기타업종	총톤수
		소계	연승	선망	소계	북양	기지	소계	채낚기	유자망			
1958	1	1	1	-	-	-	-	-	-	-	-	-	230
1959	3	3	3	-	-	-	-	-	-	-	-	-	434
1960	3	3	3	-	-	-	-	-	-	-	-	-	434
1961	1	1	1	-	-	-	-	-	-	-	-	-	102
1962	5	5	5	-	-	-	-	-	-	-	-	-	555
1963	10	10	10	-	-	-	-	-	-	-	-	-	1,326
1964	20	20	20	-	-	-	-	-	-	-	-	-	2,955
1965	65	65	65	-	-	-	-	-	-	-	-	-	10,852
1966	138	130	130	-	8	·	·	-	-	-	-	-	31,662
1967	180	152	152	-	28	··	··	-	-	-	-	-	41,236
1968	210	179	179	-	31	··	··	-	-	-	-	-	61,117
1969	224	191	191	-	33	··	··	-	-	-	-	-	71,139
1970	278	246	246	-	32	··	··	-	-	-	-	-	75,793
1971	351	291	291	-	60	··	··	-	-	-	-	-	108,550
1972	455	360	360	-	95	··	··	-	-	-	-	-	159,814
1973	552	440	440	-	112	··	··	-	-	-	-	-	208,410
1974	757	583	583	-	174	··	··	-	-	-	-	-	288,494
1975	838	589	589	-	249	··	··	-	-	-	-	-	316,090
1976	849	530	530	-	319	··	··	-	-	-	-	-	334,101
1977	850	539	539	-	311	··	··	-	-	-	-	-	332,410
1978	816	521	521	-	295	··	··	-	-	-	-	-	308,033
1979	779	489	489	-	290	··	··	-	-	-	-	-	303,929
1980	750	474	472	2	241	39	202	27	13	14	-	8	298,141
1981	725	430	427	3	245	44	201	46	12	34	-	4	298,608
1982	683	350	340	10	237	45	192	87	27	60	-	9	292,932
1983	646	290	279	11	230	43	187	119	20	99	-	7	279,932
1984	614	238	226	12	233	43	190	136	25	111	-	7	274,939
1985	617	232	221	11	229	45	184	150	53	97	-	6	275,989
1986	653	242	228	14	232	44	188	168	51	117	5	6	337,801

※ 1957년 : 시험조업 척수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제 2 장 원양어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표 2-2> 연도별 업종별 어선척수 (1987~2010)

(단위 : 척, 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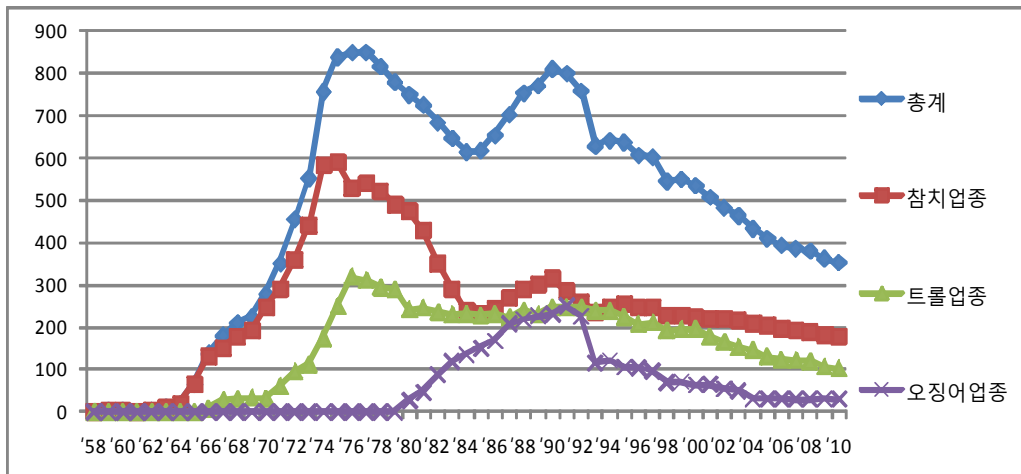
년도	총계	참치업종			트롤업종			오징어업종			꽂치붕수 망업종	기타 업종	총톤수
		소계	연승	선망	소계	북양	기지	소계	채낚기	유자망			
1987	703	269	249	20	223	43	180	207	67	140	-	4	359,741
1988	754	291	268	23	239	47	192	218	68	150	-	6	393,325
1989	770	302	272	30	230	49	181	227	70	157	-	11	413,292
1990	810	315	276	39	247	44	203	230	88	142	7	11	422,144
1991	800	284	248	36	248	43	205	250	111	139	7	11	421,384
1992	759	260	224	36	247	43	204	225	120	105	13	14	408,142
1993	628	236	202	34	239	43	196	116	116	-	15	22	365,577
1994	642	248	216	32	239	36	203	121	121	-	13	21	353,213
1995	637	256	226	30	225	36	189	106	106	-	30(18)	20	354,297
1996	607	246	218	28	207	37	170	105	105	-	31(19)	18	346,372
1997	602	245	218	27	211	38	173	95	95	-	31(19)	20	343,784
1998	545	229	203	26	192	38	154	69	69	-	33(30)	22	323,487
1999	550	228	202	26	195	34	161	71	71	-	30(26)	26	333,790
2000	535	223	197	26	196	33	163	63	63	-	29(25)	24	328,885
2001	507	220	193	27	179	30	149	64	64	-	23(21)	21	287,527
2002	482	219	193	26	165	23	143	56	56	-	20(19)	21	269,186
2003	464	217	190	27	153	11	143	51	51	-	20(19)	22	230,155
2004	433	210	182	28	146	8	139	31	31	-	20(19)	25	212,571
2005	410	205	177	28	130	7	124	31	31	-	20(19)	23	204,160
2006	393	197	169	28	125	7	119	31	31	-	20(19)	19	197,685
2007	387	193	165	28	122	6	116	30	30	-	20(19)	22	192,936
2008	380	187	158	29	120	6	114	30	30	-	20(19)	23	192,765
2009	362	182	153	29	106	5	101	31	31	-	17(16)	26	184,850
2010	353	179	149	30	102	5	97	30	30	-	17(16)	25	191,111

※ 참치연승 : 가다랭이 채낚기 포함 / () : 꽂치붕수망 총 척수 중 오징어채낚기 겸업선 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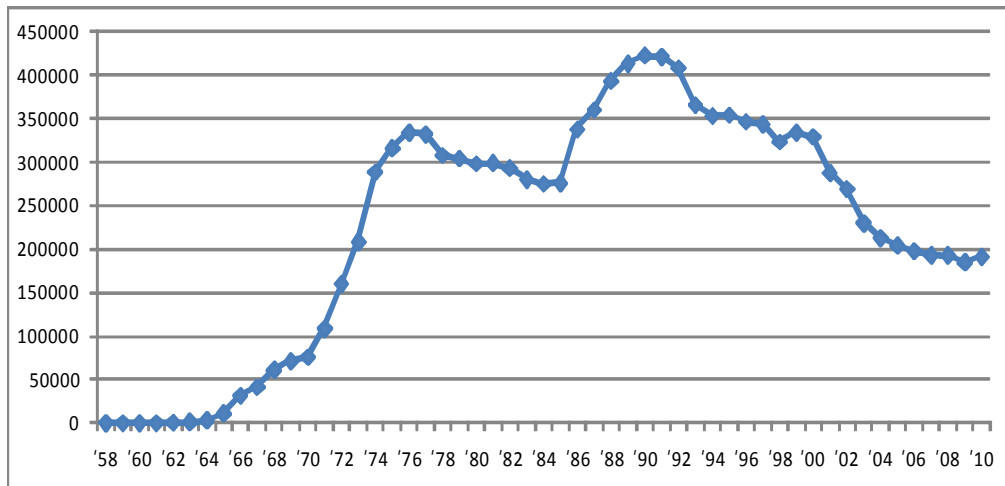
※ '10년 기타 : 저연승 및 원양통발 겸업 13척, 모선식 외줄낚시 11척, 원양통발 1척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그림 2-1> 연도별 어선척수 그래프



<그림 2-2> 연도별 총톤수 그래프

(3) 선령

- 원양어선의 척수 및 총톤수가 갈수록 감소하는 양적 축소를 기록하는 것과 함께 질적으로는 원양어선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원양어선의 노후화 문제는 1980년대 이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음
 - 1982년 원양어선 총 보유척수 683척 중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선이 8.2%(56척)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49.5%(315척)로 늘어났고, 2007년에는 387척 중 68.5%(265척)를 기록하였음

제 2 장 원양어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 2010년 말 기준 원양어선 총척수 353척 중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선은 93.2%인 329척에 달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선령 20년 이하의 원양어선은 6.8%인 24척에 불과하고, 선령 21~25년이 44.2%(156척), 26~30년이 12.2%(43척), 31년 이상이 36.8%(130척)을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원양어선 선령 노후화의 원인
 - 한국 원양어업은 초창기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중고선 도입 또는 용선 방식으로 어선을 확보하였음
 - 1970년대 수출 증대를 위한 어장확보 과정에서 어선세력 확장을 서두른 결과 자기자본 부담과 과중한 시간이 소요되는 신조선 건조는 회피하고, 주로 중고선 도입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오늘날 원양어선의 노후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

- 어선노후화의 부작용
 - 어선 가동률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수리비 및 이동소요 비용의 원가상승을 유발시킴
 - 어획물의 선도유지에 필요한 적정어가 확보 문제 등 원양어업의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어선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리비 증가와 조업이동 경비의 증가, 어획물 저장 및 선도 유지의 비효율성에 따른 시장가치 하락의 손실 증가는 결국 어로경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원양어선의 노후화는 갈수록 심각하게 진행되어 궁극적으로는 원양어업의 대내외적 경쟁력 상실은 물론 생산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원양어선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원양어업과 관련 산업의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원양업체 관계자)

- 정부는 최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선 노후화 해결책으로 매년 재정지원을 통하여 어선의 신조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업체의 지속적인 경영수지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악화와 용자조건이 불리하여 사업 자체가 담보 상태에 놓여 있음

- 신조 추진 시 금리 4%의 용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금융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실제로 참치연승어선이 건조된 것은 1989년 이후 단 한척도 없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노후어선 대체가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원양업체들이 신조선을 건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원양업체 관계자)

- 한국 어선세력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과 함께 주요 원양어업 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어업자원도 고갈되고 있어 원양어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음

<표 2-3> 선령별 업종별 어선척수

(2010년 말 기준)

선령별 업종별	계 (척)	1~5년 (2010~'06)	6~10년 ('05~'01)	11~15년 ('00~'96)	16~20년 (95~'91)	21~25년 ('90~'86)	26~30년 ('85~'81)	31년 ('80~)
합계	353	5	4	6	9	156	43	130
참치연승	149	-	2	2	4	121	10	10
참치선망	30	5	1	-	1	4	13	6
북양트롤	5	-	-	-	-	1	-	4
기지트롤	97	-	1	4	-	11	15	66
새우트롤	-	-	-	-	-	-	-	-
오징어채낚기	30	-	-	-	2	9	2	17
꽂치붕수망	17(16)	-	-	-	-	6(6)	-	11(10)
모선외줄낚시	11	-	-	-	1	-	-	10
통발밧저연승	11	-	-	-	1	2	3	5
저연승	3	-	-	-	-	2	-	1
비율	100	1.4	1.1	1.7	2.6	44.2	12.2	36.8

※ (): 꽂치붕수망 및 오징어채낚기 겸업.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표 2-4> 원양어업의 어선 선령의 연도별 비교

연도	5년 이하	6 ~ 10년	11 ~ 15년	16 ~ 20년	21년 이상	계
1980	103	150	182	203	16	654
1981	100	154	180	200	14	648
1982	29	231	144	214	28	646
1983	38	222	138	191	54	643
1984	24	218	112	186	108	648
1985	29	120	200	162	140	651
1986	29	79	264	148	156	676
1987	61	50	279	133	187	710
1988	94	55	267	103	242	761
1989	112	49	242	131	265	799
1990	124	40	128	228	263	783
1991	124	32	80	268	267	771
1992	109	37	65	256	267	734
1993	77	60	59	205	145	546
1994	66	96	78	205	171	616
1995	31	134	67	130	263	625
1996	7	158	53	113	292	623
1997	3	154	60	112	308	637
1998	3	122	82	106	315	628
1999	2	84	111	96	327	620
2000	9	46	140	69	333	597
2001	4	10	165	53	336	568
2002	2	4	158	62	317	543
2003	2	4	120	82	309	517
2004	3	2	85	102	299	491
2005	2	4	44	140	303	493
2006	3	3	6	164	307	483
2007	1	5	3	151	310	470
2008	4	4	4	113	323	448
2009	4	6	5	78	277	370

주 : 원양붕수망어업, 원양채낚기어업, 원양통발어업, 원양모선식어업, 원양안강망어업 등이 포함됨.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표 2-5> 연근해 어선의 선령

(단위 : 척(No.))

연도	5년 이하	6 ~ 10년	11 ~ 15년	16 ~ 20년	21년 이상	계
1980	2,514	1,493	2,000	1,062	560	7,629
1981	2,732	1,426	1,990	1,210	567	7,925
1982	1,994	1400	1,655	1,362	826	7,237
1983	1,709	1690	1,485	1,490	834	7,208
1984	1,701	1763	1,167	1,414	890	6,935
1985	1,790	2017	954	1,379	926	7,066
1986	2,046	1929	876	1,369	985	7,205
1987	2,279	1754	957	1,194	1,108	7,292
1988	2,427	1,403	1,129	1,002	1,240	7,201
1989	2,279	1,126	1,454	755	1,258	6,872
1990	2,084	1,296	1,610	595	1,372	6,957
1991	2,097	1,533	1,502	558	1,388	7,078
1992	2,001	1,694	1,289	544	1,237	6,765
1993	1,719	2,055	1,106	663	1,133	6,676
1994	1,755	1,930	899	920	1,037	6,541
1995	1,786	1,696	1,057	1,063	965	6,567
1996	1,677	1,533	1,212	960	911	6,293
1997	1,581	1,609	1,460	879	816	6,345
1998	1,374	1,403	1,726	770	892	6,165
1999	1,244	1,332	1,621	684	1,056	5,937
2000	1,061	1,271	1,246	737	972	5,287
2001	941	1,286	1,132	811	844	5,014
2002	922	1,136	944	816	723	4,541
2003	762	1,114	761	867	662	4,166
2004	710	1,015	678	702	668	3,773
2005	789	861	751	585	701	3,687
2006	792	729	870	527	711	3,629
2007	674	744	890	496	769	3,573
2008	578	726	918	425	738	3,385
2009	517	749	759	380	642	3,047

주 : 대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유자망)어업, 근해안망강어업, 근해
 봉수망어업, 잠수기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형망어업, 근해연승어업 등이 포함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표 2-6> 상선대의 선령

선령 (Age)	0~5 years		5~10 years		10~15 years		15~20 years		20~25 years		25 years +		합계(total)	
	No.	1,000 GT	No.	1,000 GT	No.	1,000 GT	No.	1,000 GT	No.	1,000 GT	No.	1,000 GT	No.	1,000 GT
1990	104	4,450	64	1,367	99	1,052	109	1,623	37	506	17	31	430	9,029
1991	104	3,940	62	1,666	85	970	108	1,724	42	573	16	32	417	8,905
1992	105	3,650	68	2,479	63	721	104	1,391	39	676	15	39	394	8,956
1993	93	3,158	81	3,133	57	851	83	1,147	43	527	8	46	365	8,862
1994	98	3,578	87	3,233	62	1,113	71	906	40	632	10	65	368	9,527
1995	98	3,449	100	4,452	75	1,322	59	616	36	673	3	25	371	10,537
1996	113	4,657	100	3,958	93	1,909	52	675	35	478	3	26	396	11,703
1997	117	4,745	100	3,512	77	2,174	55	596	42	491	2	13	393	11,531
1998	131	5,300	87	3,114	71	2,037	53	610	39	433	6	51	387	11,545
1999	109	4,382	93	3,456	67	1,788	78	1,060	40	382	9	60	396	11,128
2000	102	4,320	100	3,402	73	2,514	98	1,086	48	522	4	13	425	11,857
2001	65	2,957	126	4,861	70	2,008	106	1,636	52	585	10	137	429	12,184
2002	42	1,795	129	4,880	90	2,407	99	1,934	48	592	14	181	422	11,788
2003	45	1,632	137	4,823	84	2,178	91	1,641	52	737	11	162	420	11,174
2004	46	1,299	138	4,970	98	2,932	104	1,802	88	1,346	17	261	491	12,611
2005	54	1,252	126	4,345	127	3,566	105	2,553	111	1,693	23	308	546	13,717
2006	72	1,930	99	3,450	170	5,167	122	2,146	123	2,067	26	477	612	15,237
2007	110	2,798	69	2,543	201	5,828	170	4,084	123	2,051	45	733	718	18,038
2008	177	4,965	53	1,904	215	6,054	196	6,177	125	2,209	62	1,088	828	22,397
2009	234	6,945	53	1,487	192	5,783	186	6,025	118	2,068	78	1,429	861	23,737

주 : BBC/PO 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나. 어장

- 한국 원양어선이 출어하고 있는 어장은 2010년 기준 22개국, 21개 기지로 조사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이 행해지는 어장은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공해로 나눌 수 있음

- 연안국의 EEZ에 입어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입어허가를 받아야 하며,
 - 공해어업은 전통 국제법상의 공해어업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현재는 공해생물 자원을 보존·관리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국제수산기구에 의하여 관리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원양어업은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 해외수역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 이북, 동경 140° 이서의 태평양 해역을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원양어업의 종류는 원양연승어업, 원양기선저인망어업, 원양트롤어업, 원양선망어업, 원양유자망어업, 원양봉수망어업, 원양채낚기어업, 원양통발어업, 원양안강망어업, 원양모선식어업 등 10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태평양에서는 12개국 11개 기지에서 한국 원양어선 206척이 조업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암본(Ambon) 기지와 비퉁(Bitung) 기지에서 각각 9척씩 18척의 기지트롤이 조업하고 있음
 - 러시아 어장에서는 북양트롤 7척, 콩치봉수망 17척, 기타 2척 등 26척이 조업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크라이스처치(Christchurch)에서 기지트롤 5척, 티마루(Timaru)에서 기지트롤 7척, 기타 1척 등 13척이 조업하고 있음
 - 참치연승은 피지 어장에서 80척, 타히티 어장 40척이 조업하고 있음
 - 참치선망은 키리바시 어장 5척, PNG 어장 8척, 솔로몬 어장 7척, FSM 어장 8척 등이 조업하고 있음
- 대서양에서는 8개국 9개 기지에서 한국 원양어선 130척이 조업하고 있음
- 포클랜드 어장에서는 오징어채낚기 30척, 기지트롤 12척 등 42척이 조업하고 있음
 - 기지트롤은 앙골라 6척, 포클랜드 12척, 기니 14척, 기니비사우 12척, 라이베리아 3척, 시에라리온 10척, 수리남 1척, 공해 3척 등 61척이 조업하고 있음

제 2 장 원양어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 인도양에서는 2개국, 2개 기지에서 한국 원양어선 17척이 조업하고 있음
 - 참치연승 13척이 조업하고 있음
 - 기지트롤은 오만 1척, 소말리아 3척 등 4척이 조업하고 있음

- 한국 원양어선이 진출할 수 있는 어장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연안국의 자원상태는 불완전해지고 있는 반면 자원관리는 강화되고 있음
 - 또한 중국, 대만 등 신흥 조업국이 적극적으로 어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점도 어장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원양어업의 중추적 생산기반인 어장 확보문제는 연안국들의 자원관리 강화 정책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업경쟁국들의 국가 간 협력정책에 밀려 기존 어장의 안정적 유지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2-7> 원양어선 해외어장 출어현황

(2010년 말 기준)

해역	구 분	업 종								
	조업국	참치연승	참치선망	오징어채낚기	북양트롤	기지트롤	새우트롤	꽁치붕수망	기타	계
	합계 : 22 개국	149	30	30	5	97	-	17	25	353
태 평 양	소계 : 12개국	120	28	-	5	32	-	17	4	206
	INDONESIA	-	-	-	-	18	-	-	-	18
	KOREA(RUSSIA)	-	-	-	5	-	-	17	2	24
	NEW ZEALAND	-	-	-	-	12	-	-	1	13
	CAMBODIA	-	-	-	-	-	-	-	1	1
	FIJI	80	-	-	-	-	-	-	-	80
	KIRIBATI	-	5	-	-	-	-	-	-	5
	PNG	-	8	-	-	-	-	-	-	8
	TAHITI	40	-	-	-	-	-	-	-	40
	SOLOMON	-	7	-	-	-	-	-	-	7
	VIETNAM	-	-	-	-	1	-	-	-	1
	PERU	-	-	-	-	1	-	-	-	1
FSM	-	8	-	-	-	-	-	-	8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표 2-7> 원양어선 해외어장 출어현황 (계속)

(2010년 말 기준)

해역	구 조업국	업								
		참치 연승	참치 선망	오징어 채낚기	북양 트롤	기지 트롤	새우 트롤	꽁치 붕수망	기타	계
합계 : 22 개국		149	30	30	5	97	-	17	25	353
대 서 양	소계 : 8개국	16	2	30	-	61	-	-	21	130
	ANGOLA	-	-	-	-	6	-	-	-	6
	GABON	-	-	-	-	-	-	-	3	3
	FALKLAND	-	-	30	-	12	-	-	-	42
	GUINEA	-	-	-	-	14	-	-	3	17
	GUINEA BISSAU	-	-	-	-	12	-	-	2	14
	LIBERIA	-	-	-	-	3	-	-	-	3
	SIERRA LEONE	-	-	-	-	10	-	-	3	13
	SURINAME	-	-	-	-	1	-	-	-	1
	공해	-	-	-	-	3	-	-	10	13
인 도 양	소계 : 2개국	13	-	-	-	4	-	-	-	17
	OMAN	-	-	-	-	1	-	-	-	1
	SOMALIA	-	-	-	-	3	-	-	-	3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그림 2-3> 한국 원양어업의 조업국가 및 어장

다. 선원

- 원양어업 어선원은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
 - 1976년 2만2,894명을 기록하였던 원양어업 어선원은 1985년 1만3,789명으로 떨어졌다가 1990년 2만1,894명으로 잠깐 늘어났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1993년 외국인 선원을 포함하여 1만1,005명이었던 원양어선원은 2003년 7,930명으로 1만 명 이하로 내려갔음
 - 2008년 5,483명, 2009년 5,363명 등 5천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음

- 내국인 선원은 1976년 2만2,894명에서 1993년 1만826명으로 낮아졌고, 이후 1998년 6,475명으로 떨어진 이후 2008년 1,897명, 2009년 1,928명으로 2천명 선을 하회하고 있음

- 외국인 선원은 1993년 179명에서 꾸준히 늘어 1998년 4,117명으로 증가했고, 2001년 5,09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2006년 3,719명으로 줄어들었고 2009년 현재 3,453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 대체 가능한 외국선원의 승선도 관련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음

- 어선원 희망자와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원양어업의 과중한 노동과 경영악화에 따른 것임
 - 이에 따라 원양어업은 점차 채산성이 낮은 업종으로 전락하고 있음
 - 1995년 국외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비과세 소득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선장이나 기관장 등 고급 간부선원들의 소득세가 늘어나 일부 업종에서는 대만 등 조업경쟁국으로 간부선원의 이탈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 반면 하급 선원들의 소득세 부담은 완화되었음

- 만성적인 선원 구인난은 결국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원양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양적으로 선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질적으로는 대부분 선원의 생산성이 저조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표 2-8> 원양어업 연도별 어선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내 국 인	외 국 인	합 계
1976	22,894	0	22,894
1980	18,989	0	18,989
1985	13,789	0	13,789
1990	21,984	0	21,984
1993	10,826	179	11,005
1998	6,475	4,117	10,592
2001	5,099	5,095	10,194
2003	3,460	4,470	7,930
2006	2,296	3,719	6,015
2008	1,897	3,586	5,483
2009	1,928	3,435	5,363
2010	1,892	4,006	5,898

자료: 국토해양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 한국 원양어업의 해외진출 유형 분석¹⁾

- 원양어업은 전 세계의 연안국 인근 수역과 공해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종래에는 단순히 연안국의 해역이나 공해에 출어하여 조업하는 단순입어방식인 어장개발 진출방식이 주를 이루었음
 - 그러나 국제해양법이 발전하고 원양어업국이 점차 늘어나 한정된 어장에서의 조업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연안국의 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공동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민 방식에 의한 해외진출도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 원양어업은 오랜 기간 동안 성장 및 쇠퇴의 순환과정을 보여 왔는데, 어장개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해외진출이 있어왔음
 - 1957년 지남호에 의한 인도양 참치어장 개척

1) 해양수산부,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부응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방안」(2005) 부록내용 요약·정리

- 1960년대의 남태평양 참치어장 개발
- 1970년대의 북태평양 트롤어장 개발
- 1980년대의 대서양 트롤어장 개발

가. 어장개발 방식

- 어장개발 진출방식은 원양어업의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종래는 해양자유론이 해양선진국에 보편적이었으므로 어업자원은 무주물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음
 - 오늘날에도 공해어업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조업에 나서고 있으며,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해서도 일정한 입어료를 지불하고 어획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입어료를 지불하든, 그렇지 않든 어획성이 있으면 진출하게 되므로 모두 어장개발 진출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 원양어업의 시초는 1957년 인도양에서의 참치연승 시험조업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북양트롤, 가다랭이 채낚기, 은대구 저연승, 새우트롤, 참치선망, 오징어채낚기 등 다양한 어법을 통하여 전 세계 연안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초기의 원양어업은 대부분 이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
- 1957년 지남호에 의한 인도양의 참치연승어업은 원양어업의 효시
 - 1958년에는 사모아를 어업기지로 상업어업에 성공하여 조업어장이 대서양과 인도양에까지 확대되었음
 - 이후 참치연승어업은 원양어업의 주류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으로서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음
 - 1960년대 참치어업은 수출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국가경제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평가됨
- 트롤어업은 1965년 이태리·프랑스의 어업 차관으로 도입한 트롤어선을 대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양 라스팔마스 근해에 출어시킨 것이 시초가 되었음
- 이후 부산수산대학(현재 부경대학교)의 시험선인 백경호를 건조하여 북태평양에 시험 조업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시험조업 결과를 토대로 북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에서의 트롤조업을 증가시키게 되었음
- 특히 북태평양의 명태 트롤어업은 1970년대 국민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떠맡아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음
- 1980년대 이후는 북태평양의 오징어 유자망어업과 뉴질랜드와 포클랜드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이 개발되어 중요한 국민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음
- 1978년부터는 남빙양 어장에 대한 크릴어장 개척이 시작되었음
 - 당초에는 열악한 남빙양 어장에 대한 시험 조업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졌음
 - 1990년대 이후에는 어느 정도 상업화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었음
 - 세계적으로 어업자원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남빙양은 미래 상업조업지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어장개발 진출방식으로 발전하여온 한국 원양어업의 역사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어 왔음
 - 1977년 미국, 소련 등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북태평양 트롤어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음
 - 모로코, 모리타니아 등 연안국의 규제에 인하여 대서양 트롤어업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음
 - 1990년대 초에는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어업이 국제적 결의로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1980년대 중반 이후는 대만, 태국 등 후발국이 어장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원양어업 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하였음

나. 해외직접투자(FDI) 방식

-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국제적 장기 자본이동의 한 형태

로서 외국의 실물자산과 주식 등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킴

- 어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는 어장개발 진출방식의 원양어업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첫째, 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므로 국내 투자사업에 비해 추가적인 정치적, 경제적 위험과 비용을 수반하게 됨
 - 둘째, 해외직접투자 사업은 직접투자로서 기업경영의 참여를 통하여 이익을 획득하기 때문에 단순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수입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름
 - 셋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야 함
- 해외직접투자는 출자 비율에 따라 단독투자(wholly-owned investment)와 합작투자(joint venture)로 분류됨
 - 합작투자는 자본합작투자(equity joint venture)와 계약합작투자(contractual joint venture)로 나눌 수 있음
- 자본합작투자는 현지 연안국과 해외투자국 쌍방의 투자파트너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현지 연안국에 합작회사(현지법인)를 설립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임
 - 현지 파트너는 사기업이 가장 일반적이며 상업적 이익을 주목적으로 쌍방이 비교적 장기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됨
- 계약합작투자는 쌍방 투자파트너가 상업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현지 연안국의 어업발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자본합작투자와의 차이점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음
 - ① 현지 연안국의 어업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현지 연안국의 투자파트너는 사기업보다는 주로 공공기관이 되며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합작회사의 설립을 필요로 하지 않음
 - ② 실제 사업내용으로는 현지 연안국에 대한 어업자원조사 및 어업기술 지원이 주가 되고 어업활동은 그에 부대하여 이루어짐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③ 해외투자가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어선 제공과 그 운영을 담당하는 대신 어획자료를 포함하여 현지 연안국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④ 일반적으로 투자기간은 단기임
- 한국의 해외 어업투자는 1971년 한국수산물개발공사가 싱가포르에 수산물 냉동판매를 위한 해외투자를 한 것을 효시로 들 수 있음
 - 1971년 1건이던 해외직접투자는 1984년에 27건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투자금액은 1971년 8만4천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84년에는 932만 달러, 2004년 3,681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투자대상국이 시대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음
 - 1984년에는 모리타니, 모로코와 같은 아프리카 서안국과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대서양 연안국에 집중
 - 2004년에는 미국을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중국,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파푸아뉴기니(PNG) 등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났음
 - 이와 아울러 러시아, 모잠비크, 인도 등 투자지역도 다양화되고 있음

다. 기업이민 방식

- 이민은 근대사적인 의미에서 해외진출의 한 방편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시초는 농업형태로부터 이루어졌음
 - 현대적 의미에서의 한국 이민역사는 1960년대 남미에 농업이민으로부터 시작된 것임
- 최초의 어업이민은 1986년 아르헨티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 1986년 선원 9명과 선원가족 34명이 송출됨으로써 어업부문에 이민이 처음 이루어졌음
 - 1987년에는 선원 25명과 그 가족 65명이 추가로 송출되었는데, 이로써 두 해에 총 34명의 선원과 가족 65명이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였음

- 기업이민방식에 의한 어업진출은 1983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음
 - 기업이민방식은 당초 연차별로 400 세대를 이주시킬 계획으로 1983년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등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였음
 - 400 세대의 이민에는 정착촌을 비롯하여 냉동공장, 트롤선 등 8척의 어선 투입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음
 - 1987년의 2차 이민 이후 기업이민 방식에 의한 어장진출은 벽에 부딪혀 실패로 종결됨

라. 공동사업 방식

- 공동사업 방식에 의한 해외어업의 개발 사례로서는 1978년부터 실시한 미국과의 북양에서의 명태조업, 1989년부터 러시아와의 명태조업을 들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영해 내에서 미국 어민들이 어획한 수산물을 한국의 공모선들이 해상에서 수매하여 가공, 판매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취하려는 사업 방식임
 - 1978년에 처음 시작된 한미 공동 어로사업은 당초 1981년까지는 한국수산물기술개발공사와 미국 FPA 간의 계약에 의하여 1개 창구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1982년에 사업을 이원화하여 한 축으로는 한국원양어업협회를 중심으로 참여하여 희망 원양업체를 받아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다른 축으로는 고려원양, 동원산업 및 여타 11개 업체와 FPA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하였음
 - 1983년 마린기업과 NORPAC의 1개 창구를 추가하여 사업물량 더욱 확대
 - 한·미간의 단순 공동사업은 198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으며, 이후 FPA와의 합작사업은 3년여 더 지속되다가 1990년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결되었음
 - 한미 공동사업의 실적은 1978년 48톤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1984년에 10만 톤에 육박하게 되었음
 - 이어서 1986년에는 37만5,570 톤, 1987년에는 44만7,839 톤에 이르게 되었음
 - 이후 1989년에는 13만9,662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사업 마지막 해인 1990년에는 2만4,923 톤으로 감소하였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러시아와의 공동사업은 1989년 캄차카 인근 수역에서 추진되었음
 - 1989년 7만7,736 톤의 명태가 첫 반입된 이후 1990년대 초반에는 5만 톤 정도가 반입되다가, 1999년 1만7,346 톤이 반입되었으며 2000년 이후는 사업이 종결되었음

3. 한국 원양어업의 변화²⁾

- 한국의 원양어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따라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들어서 더욱 정부와 민간의 공조체제가 강조되고 있음
- 정부는 초기에는 주로 어선 도입과 해외진출 지원에 역점을 두었음
 - 구체적으로는 원양선사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 해외기지 건설 지원, 어획물의 현지 수출·통관 지원, 국산 선수품(船需品)의 무환반출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
 - 정부는 1960년 ‘수산물 수출진흥책’ 수립, 1966년 ‘수산진흥계획’ 및 ‘수산물수출 5개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원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였음

가. 진흥기(1957~1976)

- 한국의 원양어업은 1957년 제동산업(주) 소속 지남호(230톤급)의 인도양 진출(참치연승 시험조업)을 출발점으로 인도양, 대서양, 북태평양, 남태평양 등의 어장으로 활동무대를 확대함
 - 1960년대는 원양어업 개척기라고 할 수 있으며,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피라는 국가적 명제에 부응하여 증산 및 수출정책을 근간으로 성립
 - 당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60년에 ‘수산물 수출진흥책’을 수립하였으며,
 - 1966년에는 ‘수산진흥계획’ 및 ‘수산물 수출 5개년계획’을 수립
- 1966년 수산청 발족 이후 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수산진흥법」

2) 해양수산부, 앞의 보고서 부록내용 요약·정리

을 제정·공포하고 당시 급격히 고조된 외국과의 경제협력 분위기 속에서 원양어업의 기초적 단계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형태로 원양어업의 발전을 도모

- 1966년 7월 북태평양 명태어장 개척을 위한 시험조사 사업계획 수립
 - 부산수산대학 실습선 백경호와 민간 저인망어선 10척이 각각 북태평양과 북해도 근해에서 시험조업에 착수함
 - 1969년 남미의 수리남 근해에서 새우트롤어업의 시험조업 성공으로 1970년부터 본격적인 출어
 - 1971년 가다랭이 채낚기어업이 개발되어 참치연승어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음

- 한국 원양어업의 신장기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에는 식량자급과 동물성 단백질 공급 확대, 수출을 위한 증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1970년대에는 공세적인 해외진출을 통하여 신어장 개척은 물론이고, 국제어업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 남미 수리남 수역에의 새우트롤어업 진출, 북태평양 명태 트롤어업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활로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됨
 - 1973년과 1977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1977년부터 주요 연안국들의 200해리 EEZ 또는 EFZ(배타적 어업수역) 선포로 인하여 한국의 원양어업은 위기를 맞기도 함

- 원양어업과 관련된 기본 제도는 「수산업법」에서 규정함
 - 1971년 「수산업법」 제6차 개정을 통해 외국의 항구를 어업 근거지로 하는 어업을 원양어업으로 하여 수산청장의 허가어업으로 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원양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한국 수산업의 구조적인 영세성을 극복하고 1965년 “한일어업협정” 이후 불가피하게 된 일본과의 경쟁어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6년 「수산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원양어업과 직접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부는 수산물의 수출장려를 위한 재정 또는 법제상의 필요한 조치를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취하도록 하였음

- 둘째, 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 셋째, 수산업 진흥에 필요한 중요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시 주요 외화 획득원이었던 원양어업계에 지속적인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음
 - 넷째, 어업용 유류, 수산용 기자재의 도입 등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양어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외에도 수산청장 소속 하에 국립수산진흥원이 설치되어 해외 어장과 신어법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 당초 1964년 정부와 UN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으로 수행하여 온 한국어업기술훈련소의 사업협정 기간이 1978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이 훈련소를 재단법인 한국어업기술훈련소로 설립·운영하기 위해 1977년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을 제정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어선에 승선하는 해기사의 양성 및 훈련, 미개발된 수산분야의 개발 및 보급, 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증진사업 등
 - 초기에는 원양 해기사의 양성에 큰 기여를 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해외 연수생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교류 증진사업에 역점을 두게 되었음
 - 연안 수산자원의 공급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1950년대부터 원양어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음
 - 풍부한 공해 어업자원을 바탕으로 각국의 원양어업은 급성장하였음

나. 신어장개발시기(1977~1996)

-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개념이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1977년 미국, 소련, 캐나다 등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북양에서 상당한 어획고를 올리고 있던 한국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음
- 매년 입어료를 내고 쿼터량을 배정받아 조업은 가능하였지만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조업은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였음
 - 소련 해역인 캄차카 근해어장에서는 조업어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미국 어장에서는 종래 어획량의 10~20%에 불과한 쿼터량을 배정받아 조업하

게 되었음

- 결국 북양어업에 종사하였던 원양어선 수는 54척에서 5척으로 대폭 감소
-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와 원양어업계는 신어장 개척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중후반 이후 세계 곳곳을 대상으로 새로운 원양어장이 속속 개척되었음
- 1980년대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재편기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적 어업환경의 악화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업계의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해외어업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
 - 1981년에 정부는 ‘연근해어업진흥 및 원양어업육성대책’을 수립하여, 남빙양 시험조업과 포클랜드 어장 진출 등의 신어장 개척을 추진하고,
 - 국제수산기구 가입, 적극적인 해외협력, 공해어장 진출을 추진하였음
 - 따라서 생산 중심적 수산정책의 기조도 원양어업의 구조조정 및 적극적인 국제협력의 자세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음

(1) 인도양 트롤어업

- 인도양의 트롤어업은 이란 근해어장, 파키스탄 해역, 오만 등 아라비아반도 해역의 어장, 소말리아 근해어장, 인도 근해어장, 인도네시아 서부어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란 근해어장은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어업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1975년 첫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1976년에는 13척, 1977년에는 20척으로 증선할 것을 양국 간에 합의하여 16척이 출어함으로써 본격적인 어장개척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1979년 이란사태가 발발하여 정정불안이 계속되자 어업자들은 이란 해역의 조업을 포기하고 철수하였음
- 파키스탄 해역은 1979년 파키스탄과의 민간 합작의 시험조업으로 첫발을 내디뎠으며, 1983년 어업협력 계약에 따라 본격적인 조업이 이루어졌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1984년에는 4척이 조업을 하여 1986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이후 철수하였음
- 1991년에도 4척이 출어하여 1995년까지 조업이 이루어졌으나 어황부진으로 중단되었음
- 오만 등 아라비아 반도 근해어장은 1977년 오만 정부와 한국 민간기업이 어업계약을 체결하여 1978년부터 조업에 들어 간 것이 시초
- 1987년 7척이 조업하였으나 어획 부진을 겪다가 1994년 어장성이 양호한 수역에서 6개 업체 9척이 조업을 하기에 이르렀음
- 인도양 트롤어업은 1978년 인도 수역에 트롤어선 6척이 출어하였고, 1986년 소말리아 해역과 1990년대 후반 모잠비크 수역에 각각 출어하였음
- 인도, 소말리아 수역에서는 어획 부진으로 지속적인 조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모잠비크 수역은 새우, 한치 등이 어획되어 현재 일부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2) 북해도 트롤 어업

- 북양어업이 미국, 소련 등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일본 북해도에서의 조업임
- 북해도 어장은 북양어업에서 철수한 일부 트롤어선이 조업을 하게 된 것으로서 당시 일본 북해도 연안 어민들은 한국 트롤어선의 조업을 강하게 반대하였음
- 1980년 한일어업협상을 통해 제주도 근해에서의 일본 어선 조업문제를 한국 측이 수용하는 대신 북해도에서의 한국 트롤어선의 조업을 일본 측이 수용
- 1990년대 이후 조업 위반에 대한 조사권을 일본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등 일본 측의 연안국주의(Coastal State Doctrine)가 강하게 주장되고, 또한 일본 측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한일 간에 마찰이 끊이지 않았음
- 결국 일본에 의한 일방적인 어업협정 파기 선언으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북해도에서의 트롤조업은 완전히 종료

(3) 남태평양 트롤어업

- 남태평양 트롤어업은 남서태평양 트롤어업과 기타 남북 아메리카 연안 트롤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중 남서태평양 트롤어업은 호주 수역, 뉴질랜드 수역 및 인도네시아 수역에서의 트롤어업으로 다시 세분화됨
 - 호주와 뉴질랜드 수역에서의 조업은 당시 북양어업이 미국과 소련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인해 어장을 상실함에 따라 아직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지 않고 있던 수역을 찾는 데서 시작되었음
 - 남태평양 트롤어업의 신장 추이를 보면 1980년 조업어선 척수가 4척에 어획량 2,349 M/T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64척의 어선이 6만110 M/T를 어획하였음

- 호주 수역 트롤어업은 1977년 이후 민간 합작사업을 통해 시험 조업을 한 결과 어장성이 좋지 않아 본격적인 조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1983년 한·호 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3척의 트롤어선이 조업에 임하였으나 연간 3백~2천 M/T를 어획하는데 그쳐 지속적인 조업에 의문이 제기됨
 - 이 결과 조업 중이던 트롤어선이 포클랜드 어장으로 진출하여 조업 중단

- 뉴질랜드 수역에서는 이미 어장성에 대한 시험조사가 이루어져 있던 상태이고, 또한 어장성이 입증되어 있었으므로 23척이 출어하여 4만6천 M/T의 어획고를 기록
 - 그러나 뉴질랜드에서도 1978년 200해리 경제수역이 선포되자 한국은 뉴질랜드와 “한·뉴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어획쿼터를 배정받아 쿼터조업에 임하게 되었음
 - 이후 해마다 4~8척의 트롤어선이 뉴질랜드 근해에서 조업할 수 있었으나 뉴질랜드 역시 어업자원의 신자원국가주의에 따라 어업자원이 풍부한 곳은 어획쿼터를 배정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었음

- 인도네시아 수역의 경우는 일찍부터 시험조업의 사례가 있었음
 - 1967년에 저인망어선 10척, 냉동운반선 1척, 공모선 1척 등 12척으로 이루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어진 공모선단이 시험조업을 하여 갈치, 새우, 기타 저서어류를 어획하였으나 경제성이 결여되어 중단
- 1977년에도 시험조업의 사례가 있었으나 어장성이 좋지 않아 지속 조업을 포기하였음
- 이후 인도네시아 측의 제의에 따라 3척의 트롤어선이 투입되어 경제성을 입증한 이후 조업이 늘게 되었음
- 그 결과 트롤어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연간 2만~4만 M/T이 어획될 정도로 중요한 어장이 되었음
- 그러나 동 수역의 경우 한국 이외에도 대만, 태국 등 외국 어선의 조업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 다른 수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업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외에도 태평양에서의 트롤어업은 1990년 멕시코에 7척의 트롤어선을 출어시켜 조기류 등 저서어류를 어획한 이후 지속적으로 어장을 탐색하고 있으며, 1992년에는 베트남 수역에 5척을 트롤어선을 출어시켜 어획을 하는 등 어장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4) 남빙양 어장 개척

- 남빙양 어장 개척은 인류의 마지막 해양생물자원이라고 하는 크릴자원의 확보와 남빙양 남극대륙의 분할 및 영유권 주장에 대비하기 위한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신어장 개척이라 할 수 있음
- 남빙양 어장은 1978년 남북수산이 첫 출어한데 이어 1987년까지 7차에 걸쳐 시험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남빙양의 해황과 어장성을 파악하고 어구·어법 및 조업기술을 개발하여 한국 어선의 진출기반을 확고히 하였음
- 1988년부터는 정부 보조사업에서 출어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해주는 민간 상업어업으로 전환하여 1989년부터 1991년까지 2년 동안 5,014 톤의 크릴 새우를 어획하는 실적을 올렸음
- 1992년에는 개양홍산주식회사의 66인성호가 남빙양 사우스 조지아섬 근해 및 인근 공해에 진출하여 1994년까지 2차에 걸쳐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일명 메로)를 대상으로 시험조업을 실시한 결과 어장성이 확인되어 상업어업

으로 전환하여 조업

- 이후 크릴어업은 일시 중단되었다가 1997년 다시 재개되었으며 2002년에는 크릴 조업선의 주년조업이 이루어지도록 남극빙어(Ice Fish) 어획쿼터를 확보·조업함으로써 트롤 및 저연승어법에 의해 조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2003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 수역인 48해구에 트롤 어선이 진출하여 크릴 2만414 톤과 남극빙어 499 톤을 어획하였고, 저연승 1척이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296 톤을 어획하는 등 점차 어획성과를 높이고 있음
-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는 남극해의 심해에 서식하며 2~3m까지 성장하는 고급어종으로 처음에는 일본이 최대 소비국이었으나 지금은 미국, 캐나다,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소비되고 있음
- 높은 어가 때문에 남극해 및 인근 해역에서의 불법어업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다. 침체기(1997~현재)

- 1990년대 초반부터 원양어업이 침체로 전환되기 시작함
- 북양 공동사업물량이 없어지고 쿼터량도 축소되어 감에 따라 북양트롤어업은 점차 활기를 잃어감
- 또한 이 무렵 북양 유자망어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됨
- 1990년대의 한국 원양어업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대와 공해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 강화로 인한 해외어장의 상대적 축소,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수산물 무역의 자유화 등임
- 1995년에 채택되고 2001년 12월 11일 발효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경제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관리에 관한 조항 이행협정”과 1995년에 식량농업기구(FAO)가 채택한 ‘책임수산업 실행규범’ 등은 전통 국제법상 확립된 공해어업 자유원칙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였음
- 이와 같이 원양어업에 대한 국제법적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사전예방원칙이나 책임수산업 등의 이념은 계승·발전될 것으로 전망됨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1997년부터 수산물 수입의 전면 자유화가 시행되었음
 - 수산물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국내 어가는 점차 하락하였으며, 이는 원양어업 경영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
 - 국제유류 가격, 어선원의 임금 상승 등 어업 경영수지는 크게 악화되었음
 - 1990년대 후반 이후 원양업체들은 점차 원양어업에 흥미를 잃어 어업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 결국 어선 척수의 감소, 어획량의 감소 등의 결과로 나타남
- 반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멕시코 등 후발 어업국들의 어획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이에 따라 선망참치, 연승참치 등의 국제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음
- 이와 같은 급격한 어가하락과 더불어 유가상승, 어선원 임금상승 등의 경영악재가 겹쳐 한국의 원양어업은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었음

<표 2-9> 원양어업 시기별 주요정책 및 해외진출 유형

구분	시 기	주요 정책	해외진출유형
진흥기	1957 ~1976	- 1957 최초 원양어선(지남호) - 1966 수산청 발족 - 1966 북태평양 명태어장 시험조업 - 1966 수산진흥법 제정 - 1966 어업기술훈련소 설치 - 1969 새우트롤어업 시험조업 - 1971 최초 해외직접투자(한국수산개발공사)	어장개발방식
신어장 개척기	1977 ~1996	- 1970년대 후반 인도양어장 개척 - 1977 호주, 뉴질랜드 어장 개척 - 1978 남방양어장 개척(남북호) - 1980 북해도 어장 개척 - 1987 아르헨티나 어업이민 시행 - 1989 한리 공동어로사업 실시	어장개발방식 해외직접투자 기업이민방식 공동어로사업
침체기	1997 ~현재	- 1997 수산물 수입자유화 - 2000 원양어업 구조조정	어장개발방식 해외직접투자

자료 : 해양수산부,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부응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방안」, 2005

제 2 절 대외적 환경변화

- 한국의 원양어업이 행해지는 어장은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공해로 나눌 수 있음
 -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발효로 해양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국제적 제한이 크게 강화되기 시작하였음
 - 연안국의 EEZ에 입어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입어허가를 받아야 하며,
 - 공해어업은 전통 국제법상의 공해어업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현재는 공해생물 자원을 보존·관리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의하여 관리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원양어업에 대한 국제법적 환경은 당해 연안국의 EEZ 관련 법규와 공해 생물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국제법을 논의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음

1. 연안국

가. 신자원국가주의의 등장

- 전통적인 의미의 ‘자원국가주의(resource nationalism)’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저개발국가가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전략적 무기로 이용하는 기조를 가리킴
 - 당초 원유를 중심으로 중남미에서 대두된 자원국가주의는 1960년대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과 같은 카르텔로 확대되었음
 - 과거 1·2차 석유파동은 OPEC을 중심으로 한 자원국가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들어서는 자원보유국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축적하기 위해 자원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신자원국가주의(new resource nationalism)’라고 부르고 있음
 - 원유(남미, 러시아), 원자재(중국), 곡물(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자원의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종류에 따라 신자원국가주의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

- 원양어업도 1970년대 말을 기점으로 대외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음
 - 어업선진국을 포함한 전체 연안국(146개국)들이 200해리 어업수역 또는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있음
 - 연안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에 따라 공해어장이 대폭 축소되어 세계 수산자원의 95%와 해양의 35%가 연안국 관할로 들어가게 되었음
 - 1994년 11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자국의 잉여 자원을 타국에 개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조업국은 연안국의 공식적 입어허가를 통해 원양어장에 진출할 수 있음

나. 연안국의 신자원국가주의 강화

- 연안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원양조업국에 대해 어업협정을 포함하여 현지 개발투자, 시장개발 등의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 협정을 요구하고 있음
 - 연안국은 원양조업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협력기구를 설립하는 등 어업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최근의 WTO/DDA 협상과 세계정상회의(WSSD) 등에서 연안 개도국 지위에 대한 다각적으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연안국이 수산자원을 국가재원 확보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원양어업국에게 수산자원 이용에 따른 입어료 이외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을 요구
 - 자국민의 수산기술 이전과 자국민 승선 요건을 강화함
 - 예들 들어, 남태평양 도서국인 키리바시의 경우에는 자국민 승선 비율을 매년 2%씩 확대하도록 원양어업국에 강요하고 있고, 자국민을 어선의 항해사로 승선시켜 수산기술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음

어업자원의 전략적 활용 사례 : PNA

- PNA(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 나우루협정당사국)는 1982년 중서부 태평양 주요 자원보유국이 주축이 되어 이 수역의 자원 보존·관리에 대한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PNA의 회원국은 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셜, 나우루, 솔로몬, 투발루, 팔라우 등 8개국임
 - 이 기구는 선망어선의 해상전재금지(1990), VDS(선망어선 조업일수 할당제 : vessel-day scheme) 실시(2007) 등 각종 조업규제를 선도하고 있음
 - 타 연안국 및 중서부 태평양수역 관할 국제기구인 WCPFC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PNA는 2008년 공해조업금지, FAD(fish aggregation device : 어류집적장치), 3개월 조업금지 및 어획물 완전보유를 포함하는 자체 협정을 채택하였음
 - 다만 연안국과의 양자협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안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
 - 이 기구는 조업국으로부터 연안국 권익을 보호하고 입어료의 수입을 증대하고 각종 조업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수동적인 양자협력 관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대폭적인 연안국 지원 사업을 요구

- 1990년대 이후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연안국,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원양조업국을 상대로 쌍무어업협정을 본격적으로 체결하기 시작하였음
 - 이에 따라 원양조업국도 연안국에 대한 어업진출을 위해 다양한 내용의 쌍무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연안국들이 자국 수역의 수산자원 이용허가를 조건으로 조업국에 대해 경제 원조를 원함에 따라 일본과 중국, 대만 등의 주요 원양어업국들도 연안국들과의 다양한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일본은 국제협력단(JICA) 및 해외어업력재단(OFCF) 등을 통하여 주요 연안 개발도상국에 대해 대규모 경제협력 및 기술지원 사업 등을 실시
 - 지역수산관리기구와의 기술적 재정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자국 원양어업의 보호 및 입어 쿼터 확보에 주력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중국은 1985년부터 아프리카를 필두로 원양어업을 개시하여 스페인, 시에라레온, 모로코, 아르헨티나, 칠레, 뉴질랜드, 미국, 팔라우 등 현재 약 20여 개국에 진출
 - 연안 개발도상국에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원양어업의 보호와 입어쿼터 확보에 주력
- 특히 대만의 경우는 한국 원양업체가 신규투자를 꺼려하는 것과 정반대로 국가적 지원에 의한 신조 등의 방법으로 원양어선의 수를 급격하게 늘렸음

<표 2-10> 주요 원양어업국의 연안국에 대한 협력사업 형태

국가	양자협력사업
노르웨이	- 식량원조, 긴급구호 물자 및 인력지원, 민간부문개발·B2B 지원 등 일부 기술협력, 고등교육과 연구
호 주	- PNG 정부의 '국가교통·물류개발계획' 지원, 도로, 공항, 항만 건설 지원 - PNG 정부의 '국가교육계획' 지원, 초·중등학교 건립, 여성 진학률 증진 지원 - PNG 정부의 '국가보건전략' 지원, 각종 백신 확보 지원 및 말라리아, 결핵 감염률 감소정책 지원, 보건의료시설 및 전문인력 지원 - PNG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원, 지방자치체제 확립, 정부 예산 및 재정 관리체제 확립, 국가통계 시스템 로드맵 구축, 정부 차원의 인구통계 조사체제 확립
중 국	-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남미 및 남태평양 지역 등 160여개 국가에 대외 원조 사업 실시 - 공업, 농업, 교통, 통신, 문화, 교육, 위생 및 사회하부구조 등 건설사업
대 만	- 인프라 지원프로젝트(보건시설 및 의료인력 지원, 사회적 지원 및 정부 정책 지원, 공항, 항만, 고속도로 건설 지원, 학교 건설 및 교육인력 지원, 농업기술 및 양식장 건설 지원, 스포츠 시설 및 기상관측 지원, IT 기술 및 시설 지원, 공영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환경 보전 및 자연재해 방지) - 기술 지원 프로젝트(농업경제, 원예, 양식, 축산, 식품 제조, 정보기술, 직업교육 등 기초 산업 개발 지원, 수원국 병원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의료 지원) - 인도적 지원(마셜, 솔로몬, 벨리즈, 엘살바도르 등에 의료기구 지원, 1만9천 M/T 쌀 지원) - 교육·연수 지원(직업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 국가안보, 경제, 농림수산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 워크숍 개최, 고등교육 장학금 지원) - 아시아 개발은행, 아시아 생산성 기구, 아시아 농업기구 등에 원조, 유럽 은행과의 제휴를 통한 기술 협력 개발 펀드 조성, 아시아개발은행 및 중미경제통합 은행과 개발 협력 관련 공동 출자

일본의 연안국 협력사업

- 일본은 ODA(공적개발원조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국제기관의 시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국제기관에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일본은 수산물의 안정 공급을 위해 자국어업 뿐만 아니라 일본 EEZ 이외의 해외어장에 대해서도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전제
- 대상수역에 대해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국제 수산자원관리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대상어종과 어업협정수의 유지·증대를 위해 지역어업관리기구가 수립한 자원관리방안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1973년 농림수산대신 승인을 통해 정식재단으로 발족된 해외어업협력재단(OFCF : Overseas Fisheries Cooperation Foundation)은 해외어업 개발, 협력자금 융자, 기술협력, 어업교류 촉진, 전문가 확보 및 양성,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
- 지역어업 진흥 협력에서는 태평양 도서국가 9개국을 대상으로 해외주재원 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기술이전 조직을 강화함
-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고장이나 파손된 수산시설을 수리하거나 기술을 이전해주는 순회 보급지도정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연안국의 어업 개발, 유통·가공 개선, 자원관리, 증양식 등의 협력을 위한 전문가를 파견하는 동시에 필요 기자재를 공여하고 수산기술을 보급하는 수산기술 보급사업 등을 펼치고 있음

다. 시사점

- 연안국의 수산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입어료를 내고 단순 조업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연안국이 요구하는 경제원조와 양자 협력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조업경쟁국들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원양어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협력중심의 입어전략이 요구됨
- 한국 원양어업이 진출하고 있는 연안국의 대부분은 높은 입어료와 더불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연안국 협력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략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2.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가. 국제법의 변화

- 공해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법 차원의 조치가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단계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구체화되고 있음
 - 1958년 “공해에 관한 협약”과 “공해어업 및 생물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
 -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공해제도
 - 1993년 “공해조업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준수촉진협정”
 - 1995년 ‘책임수산업 실행규범’, 1995년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관리에 관한 조항 이행협정”(2001년 발효)
 - 2001년 ‘IUU 어업 방지·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

- 공해에서의 ‘IUU 어업 방지·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은 공해 조업선의 선적국과 그 어선들이 입항하는 항만국 및 관련 연안국 등에게 IUU(불법·비보고·비규제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의 근절을 위한 일정한 의무를 지우고 있음
 - 구체적인 조치로는 VMS(선박감시체제 : vessel monitoring system) 장비의 장착 의무,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의 시행, 항만국 검색제도의 시행, 어획물 통계서류 작성, 어선의 등록 및 IUU 어선명부 작성 등

- “1995년 유엔해양법협약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관리에 관한 조항 이행협정”은 공해에서의 제3국 당국에 의한 승선검색 제도를 규정하는 등 전통적인 공해어업 자유원칙에 대한 엄청난 변경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

- 이들 국제규범들은 비록 1차적 목적을 공해어업의 관리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업국의 어업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과 보존·관리 목적을 달성할 것을 의도하고 있음

<표 2-11> IUU어업에 대한 감시·통제·감독 (Monitoring·Control·Surveillance : MCS)

구분	MCS의 내용	
해상	어업허가제도	- 각 지역별 어업허가제도 표준화를 통해 적절한 어업허가인지를 확인
	승선·검색 제도	- 어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정선명령, 승선, 검색하여 조업일지, 어구, 어획물 검사
	옵서버	- 생물학적, 경제적 과학정보 수집, 조업규정 준수, 양륙활동 감시 등
	VMS	- 어선의 조업위치 추적 감시
	해상전재	- 어선 또는 자선이 다른 나라 어선 또는 운반선에 어획물 전재
	어획량보고	- 조업일지 상의 어획량 및 어종에 대한 정확한 보고 요구
육상	항만 검색	- 항만 접근 시 위반혐의사항에 대한 승선검색
	어선 및 어구 표시	- 정박 시 어선 및 어구의 표시 확인
	자료 처리 데이터시스템	- 어획량 보고, VMS 추적,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에 대한 자료를 총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항공	위성감시, 레이더	- VMS와 함께 이용되어 비허가 어선의 조업 색출

나.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등장과 공해어업 관리 강화

- 지역수산물관리기구는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본격적으로 설립되고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음
-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공해어업이 공해자유의 원칙에서 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한 조업규제로 전환된 데 따른 것임
- 공해어장에 대한 어업관리체제가 강화되면서 조업국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었음

<표 2-12>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원양어업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

규제사항	내 용
VMS	- VMS 정보의 보고의무 - 고도회유성어종 및 이빨고기 어업에 적용
국제옵서버 프로그램	- 각종 수산기구별로 요구
항만국 검색제도	- IUU 어선 및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항만국 검색
어획물 통계서류작성	-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작성
	- CCSBT의 무역정보제도 이행
	- 황다랑어의 수입 확인업무
	- ICCAT의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
어획물 해상전재규제	- 공해에서의 어획물 해상전재 규제
공해상 승선검색	- 공해에서의 제3국 어선에 대한 승선검색
IUU 어업 대응조치	- IUU 어선명부 작성 및 보고

WCPFC의 어업규제 조치내용

- WCPFC의 등장과 어업규제
 - 2004년 6월 중서부태평양에 WCPFC 수역이 들어서면서, 공해상의 어업의 자유는 옛말이 되었으며, 한국 다랑어 원양어선들이 가장 많이 조업하고 있는 중서부태평양 수역에 지역 수산물관리기구가 들어서면서 각종 어업규제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 규제조치의 주요 내용
 - 관할수역 내의 조업어선에 대한 승선검색절차와 옵서버 승선,
 - 해상전재의 제한 등을 통해 해상에서 원양어선들이 IUU어업에 연계되는 것 통제
 - 통계문서제도와 항만국 검색을 통해 IUU어획물이 육상에 양륙 또는 전재 방지
 - 불법어업에 관계된 어획물이 국가 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무역제재 도입

- 주요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 여부를 논의 중인 규제사항을 요약하면 <표 2-13>와 같음

<표 2-13> 주요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현황 및 규제 상황

기구 명칭	협약 발효일	한국 가입일	회원국	주요 규제조치 시행상황					
				VMS	옵서버 제도	항만국 검색	승선 검색	통계 작성	IUU어선 대응조치
WCPFC	2004.6.19	2004.11.25	22	△	△	△	△	△	△
IOTC	1996.3.27	1996.3.27	18	○	○	○	×	×	○
CBSPC	1995.12.8	1996.1.4	6	○	○	×	○	×	×
CCSBT	1994.5.20	2001.10.17	5	×	×	×	×	○	○
NPAFC	1993.2.16	2003.5.27	5	×	×	×	○	○	○
CCAMLR	1981.4.7	1985.4.28	23+EU	○	○	○	×	○	○
NAFO	1979.1.1	1993.12.21	17+EU	○	○	○	○	×	×
ICCAT	1969.3.21	1970.8.28	33+EU	○	×	○	×	○	○
IATTC	1950.3.3	2005.12.13	15	○	○	×	×	○	○

[범례] ○ : 채택, △ : 논의 중, × : 불채택

- WCPFC :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IOTC : 인도양 참치위원회(Indian Ocean Tuna Commission)
- CBSPC : 중부베링해 명태위원회(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ock resources in the Central bering Sea)
- CCSBT :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 NPAFC : 북태평양 소하성어류위원회(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Stocks Commission)
- CCAMLR :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 NAFO : 북서대서양수산물기구(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 ICCAT : 대서양 참치보존기구(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 IATTC : 전미열대 참치위원회(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다. 시사점

-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등장 이후 공해에 대한 자원과 환경 관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및 업계 차원의 면밀한 대응책 수립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규제 내용에 대한 수집·분석·대책수립 등 적극적 대응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또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규제를 준수하고 협조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법 개정을 포함하여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됨

제 3 절 대내적 환경변화

1. 생산 측면

가. 한국의 수산물 생산량

- 전체 수산물 생산량을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90년 319만8천 톤에서 1994년 347만6천 톤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음
- 1994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1998년 283만5천 톤으로 300만 톤 이하로 처음 떨어졌고, 2002년에는 247만6천 톤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음
- 2003년 이후에는 다시 생산량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 303만2천 톤으로 300만 톤 이상으로 다시 올라섰음
- 2008년에는 336만1천 톤으로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318만2천 톤, 2010년에는 311만 톤으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14> 한국의 수산물 생산량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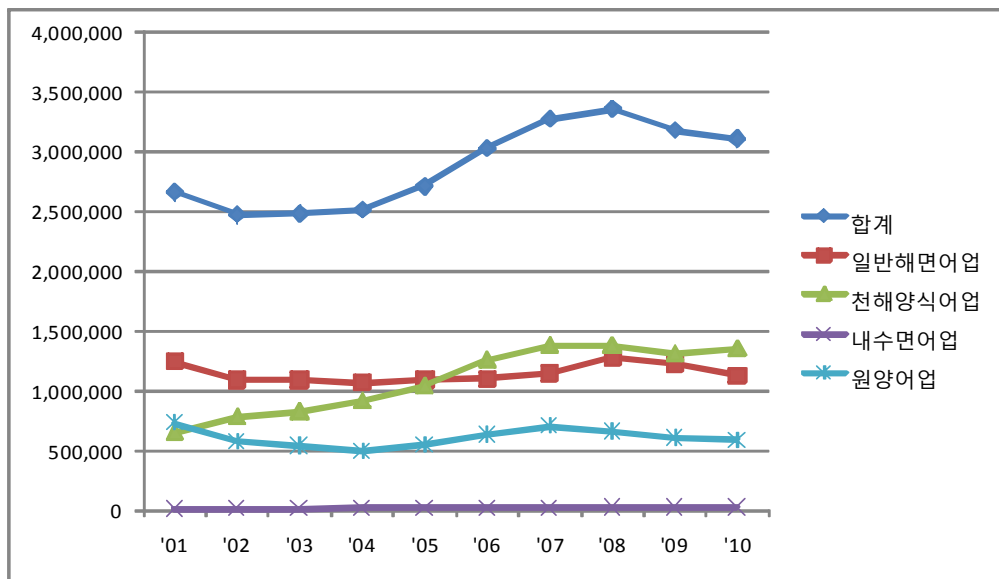
연도	합계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원양어업
1990년	3,198,234	1,471,810	772,731	34,381	919,312
1991년	2,906,131	1,226,779	775,419	30,400	873,533
1992년	3,200,852	1,206,542	935,478	34,176	1,024,656
1993년	3,335,916	1,526,139	1,038,119	30,187	741,471
1994년	3,476,605	1,486,357	1,072,126	30,857	887,265
1995년	3,348,216	1,425,213	996,451	29,228	897,324
1996년	3,247,564	1,623,822	874,810	30,248	718,684
1997년	3,243,739	1,367,406	1,015,134	31,796	829,403
1998년	2,835,015	1,308,336	777,230	26,852	722,597
1999년	2,910,569	1,336,062	765,252	17,846	791,409
2000년	2,514,225	1,189,000	653,373	20,585	651,267

<표 2-14> 한국의 수산물 생산량 (계속)

(단위 : 톤)

연도	합계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원양어업
2001년	2,665,124	1,252,099	655,827	18,141	739,057
2002년	2,476,188	1,095,812	781,519	18,511	580,346
2003년	2,487,042	1,096,526	826,245	19,680	544,591
2004년	2,519,101	1,076,687	917,715	25,299	499,400
2005년	2,714,050	1,097,041	1,041,074	23,839	552,096
2006년	3,032,116	1,108,815	1,259,274	24,843	639,184
2007년	3,274,823	1,152,299	1,385,804	26,760	709,960
2008년	3,361,255	1,284,890	1,381,003	29,180	666,182
2009년	3,182,342	1,226,966	1,313,355	30,071	611,950
2010년	3,110,634	1,132,536	1,355,000	30,982	592,116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년도



<그림 2-4> 한국의 수산물 생산량

나. 원양어업 생산량

- 1957년부터 시작된 한국 원양어업은 오대양을 누비며 식량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 1990년대 한국 원양어업은 수산업을 주도하면서 국내 전체 어류 수요량의 3분의 1을 충당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5분의 1 정도로 하락하였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원양어업의 생산량은 1960년대~1980년대를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1992년 102만4,656 톤을 기록하여 100만 톤을 돌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
 - 1970년 9만 톤의 생산량을 올렸고, 이후 1975년 56만6천 톤, 1985년 45만8천 톤, 1990년 91만9,312 톤에 이어 1992년 102만4,656 톤을 어획하여 사상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
 -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4년 49만9,400 톤으로 1980년대 이후 최저치의 생산량을 기록
 - 2000년대 중반에는 다소 상승세를 보여 2007년 70만9,960 톤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9년에는 61만1,950 톤, 2010년에는 59만2,166 톤을 기록하였음

- 2010년 현재 59만2,116 톤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감소 추세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2011년 10월 현재 누적톤수 42만3,656 톤을 기록하고 있어 2011년에는 50만 톤을 가까스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원양어업의 생산량 감소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 이는 연안 및 공해상 어업자원의 감소나 국제어업 규제강화, 연안국의 자원 국가주의 강화 등에서 비롯됨
 - 조업경쟁국의 세력 확대와 자원상태의 불안정, 일부 어종의 고갈 심화로 인한 국제적 자원보존 및 규제강화 등 어획량 감소 요인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음
 - 어선 노후화, 고임금 구조, 자원상태 불안 등으로 저생산성 비경제적 어업 활동이 증가하고, 저생산성과 고임금 구조에 따른 시장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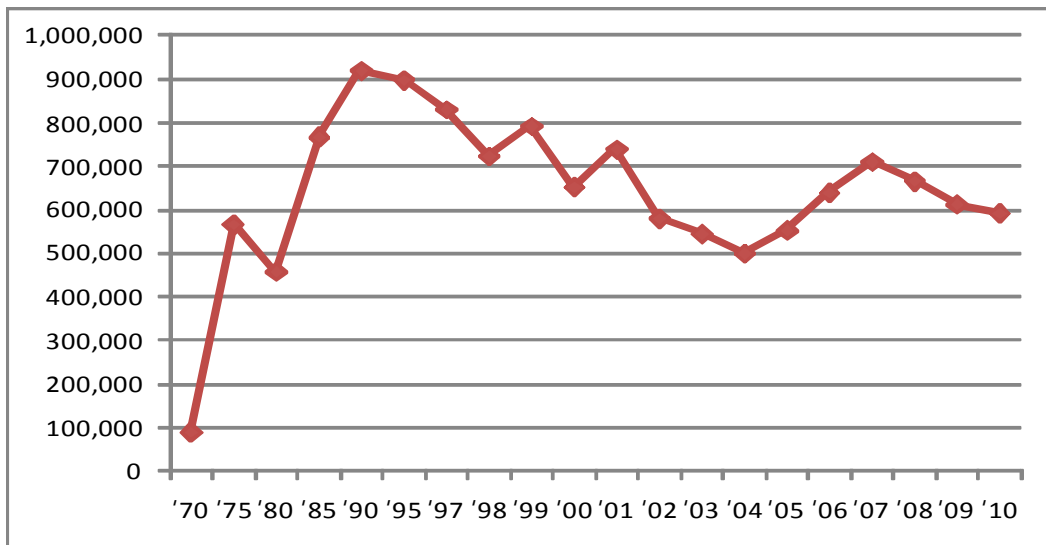
제 2 장 원양어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표 2-15> 연도별 원양어업 생산량

(단위 : 톤)

연도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생산량	90,000	566,000	458,000	767,000	919,312	897,324	829,403	722,597	791,409	651,267
연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산량	739,057	580,346	544,591	499,400	552,096	639,184	709,960	666,182	611,950	592,116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년도



<그림 2-5> 연도별 원양어업 생산량

<표 2-16> 원양어업의 해역별 생산량

(단위: MT)

해역	어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태평양	원양참치연승어업	58,446	60,372	44,552	44,243	41,180	36,336	36,292	30,824	37,175
	원양저연승어업	13,521	6,924	2,499	2,996	3,166	3,171	3,672	3,672	3,372
	북양트롤어업	33,029	1,898	22,650	21,985	23,581	14,201	5,558	-	-
	해외트롤어업	47,094	59,329	61,742	78,875	73,467	61,406	42,011	17,659	12,267
	원양트롤어업	-	-	-	-	6,405	23,949	57,927	83,859	95,062
	원양선망어업	178,072	206,150	190,452	184,285	209,790	249,340	253,161	248,802	283,278
	원양붕수망어업	20,869	20,088	31,219	22,943	40,509	12,009	16,976	30,212	22,001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6,788	22,746	6,180	12,568	3,517	1,147	-	2,193	1,877
	원양외줄낚시어업	401	421	378	78	-	-	-	-	-
	원양채낚기어업	-	-	-	-	-	1,417	-	4,582	6,080
	원양통발어업	23	-	-	-	66	10	436	235	173
	계		523,948	400,977	359,672	367,973	401,681	402,986	416,033	422,038

<표 2-16> 원양어업의 해역별 생산량 (계속)

(단위: MT)

해역	어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서양	원양참치연승어업	47	-	402	1,689	1,481	2,438	3,161	4,333	3,754
	원양저연승어업	1,825	1,475	1,765	1,755	1,675	1,808	2,110	1,628	1,500
	해외트롤어업	75,566	84,805	67,759	59,041	63,958	73,990	51,931	26,085	6,525
	원양트롤어업	-	-	-	-	1,440	16,278	66,632	57,561	53,674
	원양선망어업	-	-	-	700	987	-	276	335	102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120,623	72,014	74,691	12,442	24,469	75,745	86,074	63,906	7,380
	원양외줄낚시어업	-	30	74	-	-	-	-	-	-
	원양채낚기어업	-	-	-	-	158	9,359	31,808	38,505	28,005
	원양통발어업	-	-	-	-	41	423	182	109	97
	모선식의줄낚시어업	1,804	1,772	2,026	1,703	3,215	2,436	4,086	2,699	2,148
	계	199,889	160,147	146,717	77,330	97,424	182,477	246,260	195,161	103,185
인도양	원양참치연승어업	4,033	1,259	3,840	7,735	6,958	7,375	5,860	2,765	2,978
	원양저연승어업	1,235	1,381	1,100	-	-	-	-	-	108
	해외트롤어업	9,601	15,628	17,548	19,459	14,915	6,715	3,733	1,269	864
	원양트롤어업	-	-	-	-	1,390	4,742	8,230	9,447	12,850
	계	15,220	18,268	22,488	27,194	23,263	18,832	17,823	13,481	16,800
남빙양	원양저연승어업	-	93	292	540	229	251	651	721	1,018
	해외트롤어업	-	861	15,422	26,363	29,499	25,600	26,209	21,231	7,515
	원양트롤어	-	-	-	-	-	9,038	2,984	13,550	22,147
	계	-	954	15,714	26,903	29,728	34,889	29,844	35,502	30,680
합계		739,057	580,346	544,591	499,400	552,096	639,184	709,960	666,182	611,950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년도

2. 소비 측면

가. 식료품 소비

- 한국인의 식료품 소비는 양적·질적으로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음
 - 식품소비 변화는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경제개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국내의 경제성장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광공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과거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광공업·서비스업의 2차·3차 산업 중심으로 재편됨
 - 이에 따라 국민소득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소비자의 구매력 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소비자들은 소득증대에 힘입어 공급의 제약이라는 과거의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생산 및 유통 측면에서 선택 범위의 확대를 통해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능동적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음
 - 시장개방의 여파로 식사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특히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다양화(diversification)되고 있음
 - 특히 식품에 대한 간편화(convenience) 지향이 강화되고 있음
 - 이는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가족 구성원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외부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동시에 가족단위의 외식이 늘어난 것과 가정 내에서도 조리·가공이 부분적으로 완료된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됨

나. 수산물 소비

- 우리나라 수산물 총 공급량은 2000년 450만8천 톤에서 2009년 524만7천 톤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7% 증가함
 - 국내의 수산물 공급은 양적 측면에서 1990년 중반까지 증가세였으나, 이후 정체를 보이다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
 - 공급의 경우 생산과 수입 모두 2000년 이후 연평균 2%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9년 기준으로 318만4천 톤을 생산하였고, 170만9천 톤을 수입하였음
 - 수요의 경우 국내 소비는 2000년 270만5천 톤에서 2009년 383만4천 톤으로 연평균 4.0% 증가한 반면 수출은 129만2천 톤에서 108만3천 톤으로 연평균 1.9% 감소하였음
- 한편 소비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어류의 소비지출은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정체기미를 보이고 있고, 전체 어패류 소비지출에서 어류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0년 이후 정체되어 있음
 - 가공형태별로는 선어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염건어류, 어류가공품 순서이며, 염건어류를 제외한 선어류와 어류가공품의 지출액은 2000년 이후 약간 감소함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어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갈치, 조기, 고등어, 도미를 제외하고는 지출액이 감소함
- 또한 주요 어종이 전체 어류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이후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어족자원 고갈로 2015년에는 약 1천만 톤의 수산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실제 한국 원양어업 생산량은 1990년 91만9천 톤에서 2010년 59만2천 톤으로 감소하였음
- 반면 수산물 소비량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998년 35kg에서 2008년 55kg으로 증가하였음
- 식품에 대한 다양화와 간편화가 진행되면서 어류 소비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약간 줄어든 뒤, 200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웰빙 추세에 따른 것임
- 어류는 육류에 비해 손질이나 조리가 번잡할 뿐 아니라 조리 시 발생하는 냄새, 쉽게 부패된다는 점 때문에 도시형 생활에서는 다소 기피되어 왔음
- 그러던 것이 EPA·DHA와 같이 인체에 유익한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건강열풍과 맞아 떨어지면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함
- 최근 수산물의 공급은 중저가의 수입수산물이 주도하고 있음
- 공급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액은 정체되어 있으며, 국내의 어류 생산이 감소세인 데 반해 냉동어류와 어류필렛을 중심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
- 한편 어류의 소비에서도 다양화가 관찰됨
- 상위 품목의 공급 집중도(전체 어류 공급량 중 상위 어종이 차지하는 비중)와 소비 집중도(전체 어류 소비 지출액 중 상위 어종이 차지하는 비중)가 감소 또는 정체기미를 보이고 있음

- 오늘날의 소비자는 식품을 통해 자신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만족감을 얻기를 원하며, 또한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도 식품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실정
- 이러한 가운데 어류의 소비는 중저가의 대중어류를 중심으로 보다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수산물 수급 현황 및 전망

가. 한국의 수산물 수급 현황 및 전망

- 우리나라 수산물 총 공급량은 2000년 450만8천 톤에서 2009년 524만7천 톤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7% 증가함
- 공급의 경우 생산과 수입 모두 2000년 이후 연평균 2%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318만4천 톤을 생산, 170만9천 톤을 수입함
- 수요의 경우 국내소비는 2000년 270만5천 톤에서 2009년 383만4천 톤으로 연평균 4.0% 증가한 반면, 수출은 129만2천 톤에서 108만3천 톤으로 연평균 1.9%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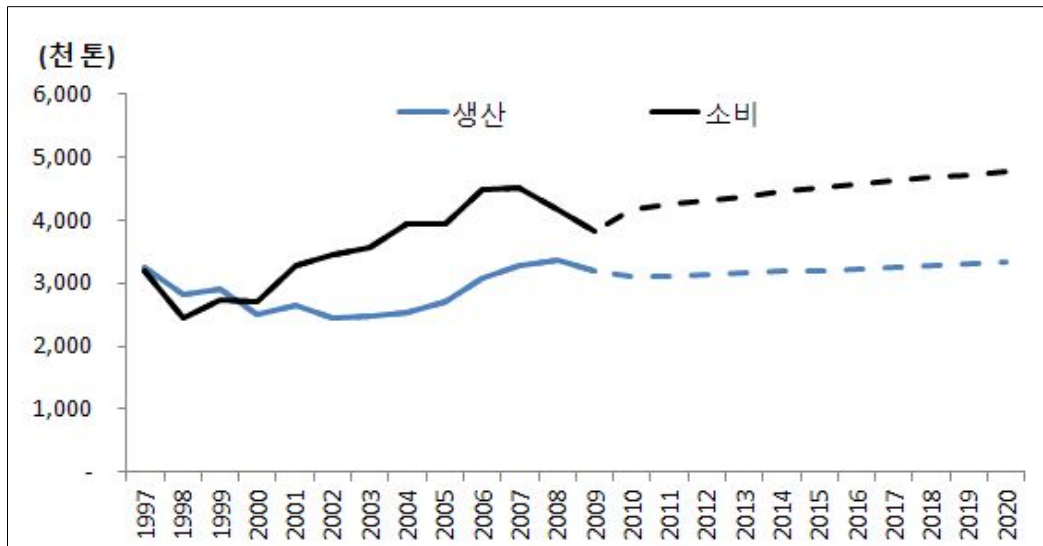
- 수산물 수급을 전망하면 생산과 소비 모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소비의 증가세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어류의 경우 생산은 감소하는 반면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패류와 해조류는 생산과 소비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두 품목 모두 소비 증가세가 생산 증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됨

<표 2-17> 수산물 류별 수급 현황 및 전망 (1)

(단위 : 천 톤, %)

구 분	2000년	2009년	2015년	2020년	연평균 증감율			
					00~09	09~15	09~20	
수산물	생산	2,503	3,184	3,204	3,327	2.7	0.1	0.4
	국내소비	2,705	3,834	4,502	4,771	4.0	2.7	2.0
어류	생산	1,269	1,426	1,328	1,376	1.3	△1.2	△0.3
	국내소비	1,729	1,924	2,348	2,484	1.2	3.4	2.3
패류	생산	846	888	971	989	0.5	1.5	1.0
	국내소비	684	1,170	1,338	1,409	6.1	2.3	1.7
해조류	생산	387	870	905	962	9.4	0.7	0.9
	국내소비	292	740	816	879	10.9	1.6	1.6

자료 : 「식품수급표」 자료에 기초



<그림 2-6> 수산물 수급 전망

- 주요 어종의 수급(2009년~ 2020년)은 생산의 경우 갈치, 명태, 조기는 증가할 것으로, 오징어, 고등어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소비의 경우 오징어를 제외한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표 2-18> 수산물 류별 수급 현황 및 전망 (2)

(단위 : 천 톤, %)

구 분		2000년	2009년	2015년	2020년	연평균 증감율		
						00~09	09~15	09~20
오징어	생산	404	274	280	267	△4.2	0.4	△0.2
	국내소비	387	263	271	260	△4.2	0.5	△0.1
고등어	생산	146	177	130	125	2.1	△5.0	△3.1
	국내소비	100	143	155	152	4.1	1.4	0.6
갈치	생산	93	88	67	66	△0.7	△4.4	△2.6
	국내소비	103	120	127	130	1.7	1.0	0.8
명태	생산	87	39	40	40	△8.5	0.4	0.2
	국내소비	298	298	323	312	△0.02	1.4	0.4
조기	생산	31	37	40	44	2.1	1.0	1.5
	국내소비	85	80	99	103	△0.6	3.6	2.3

자료 : 「식품수급표」 자료에 기초

나. 소결

-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1인당 식품 공급량과 식품 섭취량이 증가하고 수산물의 공급량이 증가 하면서 국민 1인당 연간 공급량이 육류소비량을 크게 상회 함
 - 또한, 어류의 공급과 수요에서 품목별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웰빙의 여파로 어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수산물의 수급 현황을 보면, 어류의 생산은 감소하는 반면,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류와 해조류는 생산에 비해 소비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수산물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어선의 노후화, 고임금구조, 자원상태 불안 등으로 원양어업이 비경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시장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가로 어기 단축, 출어 포기 등의 어획 기회가 감소하고 있음
 - 유가 상승으로 어업 경영수지 악화로 생산력이 악화되고, 대외적 개방으로 저가 수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
 - 또한, 공급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액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아 국내 어류생산은 감소한데 반해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내 수산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적인 대안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어업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양어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

제 3 장 원양어업의 허가제도 분석

제 1 절 원양어업 허가에 관한 이론적 기초 검토

1. 어업허가의 의의

가. 허가

- 공익상 특정한 행위를 일반적·상대적으로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공익 목적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금지대상 행위를 해제하여 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
- “상대적인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특정의 상대방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처분”(류지태·박종수, 2010)³⁾

나. 어업허가

-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어업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어업행위의 자유를 회복시켜 하는 행정행위
- 어업의 허가는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조정 등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과해진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자에게 그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행정행위
- 어로행위를 허가 받은 어선을 갖춘 사람만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어업행위를 할 수 있음
- 「수산업법」상 어업허가 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어업 이익의 조정이라는 의미도 있음
- 비교적 이동이 적은 어패류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에 관해서는 자원보호상 선

3)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4판, 박영사, 2010.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박의 척수, 어구·어법의 제한,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 등을 제한해야만 하고,
 - 자원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업종 간의 어업조정상 필요한 것으로, 주로 회유성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에 대해서는 어업조정상 규제조치를 취해야 함
 - 전술한 두 개의 항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해서 규제 조치를 강구하는 소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예를 들면 새로운 어법이 다른 지역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도 그 문제가 전파되고 있을 경우 현재 그 어업에 자원상황·어업조정상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어업허가제를 시행한다고 하는 경우

2. 어업허가의 법적 성격

가. 명령적 행위

- 명령적 행위는 국민에 대해 자연적으로 가지는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명하며, 또한 특정한 경우에 이런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행위
 - 개인에게 특정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하는 행위
 - 명령적 행위로는 하명, 허가, 면제 등을 들 수 있음
- 이와는 대조적으로 형성적 행위는 국민에게 자연적으로는 갖지 않는 특정한 권리,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률관계 등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가리킴
 - 특정 상대방에게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
 - 형성적 행위로는 특허, 대리, 인가 등을 들 수 있음
- 최근 들어 허가의 법적 성격을 놓고 명령적 행위인지, 형성적 행위인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 다수설은 허가가 새로운 권리의 형성이라기보다는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통하여 원래 누리던 자연적 자유를 확인한 데 불과한 명령적 행위라고 보고 있음

- 그러나 허가가 특정인에 대해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권리를 발생한다고 보아 형성적 성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음
- 즉 어업의 허가가 새로운 권리의 설정은 아니지만 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까닭에 사실상 일정한 독점적 이익을 받게 될 때가 많고 그 이익이 권리시 되기도 한다는 것임

허가와 특허의 융화현상

허가어업이란 본래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의미로는 다른 어업을 배타해서 독점적으로 영위하는 어업권 어업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반면에, 허가는 단순한 자연적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해제하여 적법한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주는 행위이므로 설권적 성질도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허가와 면허(특허)의 구분이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여 허가와 특허의 융화현상이라고도 한다.

또한 허가어업은 면허어업과 달리 어장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제적으로 특권화되고, 상당한 가치가 있어도 어장의 특성을 물권으로 하여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어업권 어업과 달리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리는 반드시 법률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가어업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권리는 아니지만, 어업허가의 경제적 가치나 어업이익의 독점은 이권화(利權化)되고 있다.

<표 3-1>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의 비교

구 분	명령적(命令的) 행위	형성적(形成的) 행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에 대해 자연적으로 가지는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명하며, 또한 특정한 경우에 이런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행위 - 개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에게 자연적으로는 갖지 않는 특정한 권리,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률관계 등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특정의 상대방에게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
사 례	하명·허가·면제	특허·대리·인가

<표 3-2> 허가와 특허의 비교

구 분	허 가	특 허
권리의 설정	금지해제행위	설권행위
성격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신청 여부	신청행위 없이 행해지기도 함	항상 신청을 전제로 함
기속 vs. 재량	기속행위의 성격	재량행위의 성격
소극적 vs. 적극적	소극적 목적을 위해 행해짐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해짐

허가, 인가, 면허, 승인, 등록, 신고의 비교

1.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
 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
 예)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면허 : 특수한 행위나 영업을 특정한 경우나 사람에게 허락하는 행정행위
 예) 「철도사업법」 제5조 :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승인 :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 즉,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면 됨
 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 지정권자(국토해양부장관 혹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등록 :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특정한 등록기관에 마련해둔 장부에 기재하는 일
 예)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6. 신고 :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알리는 기능이다. 승인, 허가, 인가 등의 절차가 없이 단순히 행정관서에 자신의 의무에 의해 알리면 됨
 예)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 검량사업, 검정사업, 검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나. 기속재량 행위

- 허가의 기속적 성격
 -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연적 자유
 - 그러므로 공익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의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속적 성격을 가짐
 - 만약 행정청이 신청인의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의 문제가 발생함

- 허가의 재량적 성격
 - 어업 허가의 여부에 관한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함

- 대법원의 판례는 허가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⁴⁾

-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허가는 행정행위의 본질상 금지의 해제이지만, 그 해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른 당해 행정청의 재량 행위라 판시하였음⁵⁾

4) 대판 1992. 12. 11, 92누3038; 1993. 5. 27, 93누2216

5) 대판, 1985. 2. 8, 84누36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羈束行爲, gebundener Verwaltungsakt)

-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법의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 행해지는 행위임
- 기속행위가 부당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2. 재량행위(裁量行爲, Eressensakt)

- 행정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행정행위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을 말함
- 어느 정도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고 이 재량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위임

▶ **기속재량 (법규재량)**

- 법의 취지·원리 등에 구속되는 재량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을 말함
- 법규재량에는 불문법적 제한이 따르고, 그 재량을 잘못 행사하는 것은 결국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는 것으로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 이러한 의미에서 법규재량 행위는 기속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자유재량 (편의재량, 공익재량)**

- 재량행위 중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지가 재량에 따라 행하여지는 행위

다. 반사적 이익

- 어업허가는 상대적인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반사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허가가 부여되더라도 다시 공익상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허가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이 경우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반사적 이익 vs. 독점적 이익 논란
 - 어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에 의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통설임

- 그러나 최근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사실상 독점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권리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대두
- 어업허가를 면허에 근접하는 권리라고 보는 근거
 - 첫째, 어업의 허가는 대개 어업의 종류별로 허가 가능한 한계수치(허가정수)를 정하여 정해진 수 이상의 허가를 불허함
 - 둘째, 공익상의 사유로 허가어업을 취소·제한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하도록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셋째, 근래에는 어선을 감축하면서 허가정수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실상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폭이 더 커지고 있음
 - 판례도 허가어업에 대하여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여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음
- 결국 어업허가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권리는 아니지만, 어업허가의 경제적 가치와 어업이익의 독점은 이권화(利權化)되는 측면이 있음

라. 대물적 허가

- 허가의 대상이 사람인지 물건인지에 따라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로 분류함
 - 대인적 허가는 운전면허·의사면허와 같이 주로 사람의 능력, 지식 등 주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를 의미
 - 대물적 허가는 물건의 내용, 상태 등 객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를 의미
 - 혼합적 허가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결합된 상태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를 말함
- 대인적 허가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는 데 반하여, 대물적 허가는 물건 또는 사업의 양도·상속 등에 수반하여 이전할 수 있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혼합적 허가의 경우에는 인적 요소의 변경에 관해서는 새로운 허가를 요하고, 물적 요소의 변경에 관해서는 신고를 요하는 등 제한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
- 어업허가는 어업허가를 신청할 때, 원양어업,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은 어선에 대하여, 해상종묘생산어업은 시설에 대하여, 정치성 구획어업은 어구에 대해 각각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대물적 허가)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와 함께 「원양산업발전법」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을 정하고 있음(대인적 허가)
 - 「원양산업발전법」 제8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4.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따라서 통설은 어업허가의 성질을 혼합적 허가로 보고 있음
 -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허가는 어선·어구·시설에 대하여 하지만 한편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휴업신고의무, 어업개시의무, 타인지배금지의무 등을 지켜야 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하면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대인적 성질도 함께 갖고 있음
 - 관례도 허가어선을 양수한 사람은 새로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혼합적 처분을 뒷받침하고 있음
- ※ 현재는 등록제로 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허가제로 운영한 석유판매사업에 대하여 대법원의 관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판시하여 양도가 가능

하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판결의 기준이 된 구 「석유사업법」에는 휴업금지와 사업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표 3-3>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비교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내용	- 사람의 능력, 지식 등 주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 물건의 내용, 상태 등 객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결합된 상태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특징	- 그 효과가 일신전속적 -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불가능	- 물건 또는 사업의 양도, 상속 등에 수반하여 이전가능 - 그 효과의 이전이 가능	- 인적 요소의 변경에 관해서는 새로운 허가를 요하고, 물적 요소의 변경에 관해서는 신고를 요하는 등 제한 - 원칙적으로 효과의 이전이 불가능하나,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하게 됨
사례	운전면허, 의사면허	건축허가, 음식점영업허가	-

마. 조건부 어업허가

- 부관이 많은 행정행위 : 어업허가는 반드시 피허가자의 출원에 의하여 허가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며,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공익적 견지에서 제한과 조건을 많이 부과하고 있음
- 조업구역과 시기 및 어획량의 제한 : 어업허가 시에 조업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여 주고 관리대상 어종에 대하여는 어종별로 연간 포획할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하여 줌으로써 허가 받은 어업별로 어업인 간 이익의 조정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꾀하고 있음

<표 3-4> 면허어업과 허가 어업의 비교

구분	면허어업	허가어업
어로활동의 범위	- 관리가 가능한 좁은 범위의 수면	- 넓은 바다
면허(허가)의 대상	- 수면을 관리하는 사람	- 어선
물권성	- 물권성(수면의 배타적지배 인정)	- 물권성이 없음
어업의 중심	- 장소(어장)중심적 어업	- 선박(어선)중심적 어업
수익의 예측가능	- 가능(안정성)	- 불가능(투기성)
양도성	- 양도가능	- 어선 양도 가능 - 허가 양도 가능
손실 보상	-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어업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보상을 해주는 규정이 없음
공시	- 어업권의 내용과 권리가 외부에 공시 - 어업권 원부에 면허번호, 어업권의 표시, 어업권의 존속기간, 면허받은 어장의 위치 규모,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기재 - 이전과 담보제공(저당권)이 가능	- 어선원부 또는 선박등기부가 있음

바.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의 허가제도 비교

-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의 허가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지된 행위의 해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대한 차이점이 있음
 - 따라서 허가제도의 개선방안도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이 다를 수밖에 없음
- 허가제도를 어업관리의 수단으로 시행하는 것은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이 동일함
 - 허가제도를 통해 진입과 퇴출을 정함으로써 어업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함
- 자원관리와 어장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허가제도는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이 많은 차이가 있음

- 연근해어업은 허가제도를 통해 어업관리는 물론 자원관리*, 어장관리**까지 고려하는 종합적 성격을 갖고 있음
- 반면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자원관리와 어장관리가 연안국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에 의해 이루어지며, 개별 국가는 기국 또는 회원국의 자격으로 어업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허가제도를 운용함

* 자원관리 :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원 평가와 진단을 기초로 자원의 이용·개발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자원 상태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변화시키거나 혹은 유지시키는 행위

** 어장관리 : 어장의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어장의 생산성과 양식수산물의 품질이 떨어짐에 따라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장휴식 및 어장정화, 어장정비의 실시 등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행위

- 이에 따라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은 허가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
 - 연근해어업은 공유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자원지대와 국민경제적 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그 수단으로서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반면, 원양어업은 공해어업 자원에 대한 이용·개발의 극대화를 통해 국가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구분 및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기초로 하여 원양어업의 허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수역별(공해/연안국 EEZ), 어종(업종)별로 자원관리, 조업방식, 입어형태, 쿼터배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제도를 창안해야 함
 - 결국 원양어업의 허가제도는 수역별·업종별 관리 방법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또는 차별화된 제도를 수립할 수밖에 없음⁶⁾

6) 본 연구에서는 수역별·업종별로 맞춤형 또는 차별화된 허가제도를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 원양어업이 진출한 모든 수역과 업종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허가제도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음.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으로, 추후 연구에서 개별 수역과 업종에 대한 맞춤형 허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함.

<표 3-5>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 비교표

구 분	연근해어업	원양어업
목적	공유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자원지대와 국민경제적 편익의 극대화 추구	연안국 및 공해 어업자원에 대한 이용·개발의 극대화를 통해 국가경제적 이익 추구
어업관리 기능의 주체	개별 국가	개별 국가
자원관리 기능의 주체	개별 국가	연안국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어장관리 기능의 주체	개별 국가	연안국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

3. 어업허가의 효과

가. 효과의 대상 및 이전

- 어업허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만 발생함
 - 대물적 허가에 있어서는 허가의 대상인 어선과 시설 등의 이전에 따라 그 어선이나 해상종묘생산시설을 이전받은 자에게도 허가의 효과도 이전된다고 봄
 - 또한 허가어업이란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독점적 상태가 되나, 이것은 경찰 제한의 결과로서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의 목적이 될 수 없음
 - 판례도 어업허가를 받아 어로행위를 해오던 어선 또는 어구를 인수하였다고 하여 어업허가까지 양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어선이나 어구를 인수한 사람은 새로 당사자가 되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함
 - 그 효과는 피허가자에게만 전속하게 되고 허가의 내용 또는 법률상의 효과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음
- 어업허가를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 허가어선의 양도 시에는 허가도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허가어업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허가는 어선이 존재하는 한 어선과 함께 움직이도록 하고 있음
 - 정부의 「수산업법」 제47조에서 “어업허가는 그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속하거나 해당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매입 또는 임차한 어업인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종전의 어업자에 대한 어업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여 어업허가의 양도와 임대를 인정하고 있음

- 대인적 허가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면 허가 효과가 소멸되고, 대물적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물이 없어지면 허가 효과가 소멸되는 것임
 - 허가정수가 있는 허가어업에서는 어선의 행방불명이나 침몰 등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어선과 함께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실종 시는 그 가족)이 허가의 유예신청을 할 수 있어 차후에 상속인(실종 시는 그 가족)이 다시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음
 - 일부에서는 이 점을 들어 어업허가의 대물적 성질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어업허가가 어선과 함께 움직이므로 최후의 어선 소유자에게 허가에 따른 일체의 권리가 있고 이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사라진 어선이 나타나거나 그와 동일한 어선을 만들면 그 어선에 부합되어있는 권리를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나. 양도성

- 허가 어선을 양수한 자는 당연히 동 어업을 인수한 것으로 인식하여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관행적으로 하게 되고 허가관청도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허가어선을 인수한 사람이 동 어업허가를 신청하면 기존 허가의 잔존기간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허가를 해주고 있음
 - 결국 허가의 잔존기간과 어선이 함께 양도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타 법령의 혼합적 허가는 대물적 성격과 대인적 성격의 경중에 따라 양도의 허용 여부가 나누어짐
 - 대물적 성격이 큰 경우에는 양도를 허용하고 있음
 - * 사례 : 다방영업 허가
 - 대인적 성격이 큰 경우에는 양도를 인정하지 않음
 - * 사례 : 목욕탕영업 허가

다. 장소적 및 시간적 효과

- 허가는 당해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이 원칙
 - 그러나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허가의 성질상 관할구역을 국한시키지 못하는 경우 관할구역 바깥까지 그 효과가 미침
- 「수산업법」과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어업허가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유효기간 단축을 제한하고 있음(허가 기간의 기속성)
- 이에 대해 “어업허가는 5년의 기간 경과로 종료될 수 없고 선박의 항행능력이 존속하는 한 계속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대두되어 어업허가 기간을 규정한 것을 대상으로 헌법위반 소송이 제기되었음
 -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어업허가의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현행 법에 대해 합헌으로 판시하였음
- 어업허가의 시간적 효과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어업허가 연장 불허에 따른 보상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내지 30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당사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유효기간 만료 통지 의무)
 - 허가를 받은 사람이 연장 허가를 누락하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음

라. 효과의 소멸·유예·취소

- 허가의 효과는 특정 행위에 대한 법규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므로 그 금지 이외의 법적 제한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님

제 3 장 원양어업의 허가제도 분석

- 그러므로 어업허가는 「수산업법」에 의한 일반적 금지의 단순한 해제이므로 타 법령에 의한 금지 또는 사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까지도 해제하는 것은 아님
- 어업허가의 유예란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어선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에 대하여 기존의 허가받은 어선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어선을 소유하였던 사람이 대체 선박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선박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허가를 하지 않는 제도
 - 이를 통해 허가의 권리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
 - 어업에서의 허가를 대물적이면서 대인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 허가의 취소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사유를 준용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법으로 규정하여 아래의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신고의무, 어업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타인지배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 아래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
 - ①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 ④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 허가의 취소·제한 시 보상

- 「수산업법」 제79조는 공익상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제한당하는 경우에 보상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음
- 제한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익상의 사유로 허가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로 법에서 규정한 6가지 사유 중 다음 3가지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바. 어업허가의 제한

- 허가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도 다음 같이 법으로 한정하여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어업활동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의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경우(법 36조)
 - 어업허가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 ①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또는 「어장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수산업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②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 2 절 한국의 원양어업 허가제도

1. 역사 및 내용

가. 허가

- 지금까지 원양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법」과 하위법령, 합작투자 신고에 관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규정
 - 그간 원양어업허가는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원양어업허가지도지침’(1999)에 의거하여 대체허가 형식으로만 허가 발급
 - 감척 수요 억제, 업계 간 과당경쟁 방지 및 국제수산기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 차원에서 신규 허가를 억제하여 어선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원양산업발전법」 체제 하에서의 새로운 허가 원칙의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 신규진입 확대와 기득권 보호,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국제수산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허가제도 개선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나. 원양어업 허가의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은 ‘어선마다’ 유효기간 5년의 허가를 규정
- 제6조 :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서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제7조에서는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를 할 때에는 조업구역이나 선령 등에 대해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새로운 허가”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원양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 허가하는 경우⁷⁾
 -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양도 등으로 다시 허가하는 경우
 - 원양어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허가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영업허가에는 허가신청 시의 건물과 대표자 및 상호 등이 포함되는 것과 같이 어업허가에도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성명과 어선이 포함되어야 함
-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어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이면서 대인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제8조 : 제6조의 원양어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원양산업발전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원양산업발전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원양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허가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체 허가만 가능
- ①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 사항이 있는 경우
 - ②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 ③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에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④ 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겸업허가는 봉수망과 오징어채낚기, 오징어채낚기와 외줄낚시, 저연승과 통발, 트롤과 저연승을 허용하고 있는데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가능

7) 다만, 제2항에 따른 허가어선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함

한 경우에 허가를 하고 있음

「수산업법」 제43조

- 「수산업법」 제43조는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이를 더욱 세분하여
 -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이동성 구획어업은 어선에 대하여,
 -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은 시설에 대하여,
 - 정치성구획어업은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
- 두 규정을 검토하면 허가의 대상이 어선·어구 또는 시설인 물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어업허가는 대물적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

다. 원양어업 허가의 행정청

- 원양어업에 대한 어업허가의 행정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임
- 연·근해 어업의 허가 처분청은 「수산업법」 제43조에서 근해어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연안어업은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90조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근해어업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연안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였음

라. 원양어업 허가의 절차

(1) 어업허가의 신청

-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양어업 허가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선박국적증서(또는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선박등기부 등본(또는 용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 다만,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3종류까지 신청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기 허가자에게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함
 -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의 등기 취급으로 하되, 반송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함
- 원양어업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허가를 받는 경우 새로운 허가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함

(2) 행정관청의 처리

- 법인이 원양어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 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그 원본과 대조하여야 함
 - 다만, 선박검사증서 사본에 선박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그 밖에 대조를 하지 아니 하여도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대조를 생략함

(3) 원양어업 허가의 유예

-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선이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허가의 유예를 받을 수 있음
 - 침몰되거나 멸실된 경우
 -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허가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어선이 침몰·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함
 -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저당권자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그 어선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함

(4) 원양어업 허가의 유효기간

- 원양어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함

- 다음의 경우 유효기간 단축 가능함
 - 어선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수산자원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원양어업 허가의 폐지

-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폐지신고서에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해당권의 실행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락받은 자가 그 어선에 대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어선에 대하여 종전의 원양어업에 대한 폐지 신고가 제출된 것으로 봄

(6) 원양어업 허가의 취소

- 다음의 경우에는 원양어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 허가내용을 위반한 때
 -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 휴업의 신고를 위반한 때
 - 법정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원양산업발전법」을 위반한 해기사는 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견책을 받게 됨

(7) 휴업의 신고

-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함
-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없음
-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함

마. 조업해역 및 시기

- 원양어업의 허가에 대한 조업구역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으로 구분함
 - 다만, 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의 경우에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합하여 하나의 조업구역으로 함
 - 또한 외국과의 어업협력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구역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음

- 외국과의 어업협력, 수산자원보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음

바. 원양어업 허가의 정수

-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원양어업 허가의 정수(定數)를 정할 수 있음
 - 허가의 정수는 원양어업의 종류별 또는 해역별로 정함
 - 외국과의 어업협정, 신규어장 개발 등으로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함
 - 허가 정수의 운용을 위하여 별도로 고시함

사.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 원양어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원양어업자는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활동의 금지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는 어선과의 전재(轉載)·공동조업·지원·재보급 금지
 -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하선 등 임무수행에 따른 안전 확보
 - 항만국 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안전한 승·하선 및 숙식 등 편의제공과 선박검색 및 통신 허용
 - 국제수산기구가 정하는 전재절차 규정의 준수
 - 관리어종의 어획제한
 - 통계 서류의 성실한 작성·제출
-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에 따라 어선에 표지를 설치할 것
 -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어선에 설치할 것
 - 조업상황 보고를 할 것
 -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하여 원양어업자는 다음의 경우 승선검색과 기타 필요한 조치에 응하여야 함
 - 원양어업자 또는 원양어업 종사자가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업실적 보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참고> 해외합작 원양어업

○ 해외합작원양어업의 정의

-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으로 하는 원양어업
-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신고하면 됨

○ 신고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5.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1. 합작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의 현황
2. 사업에 필요한 어선의 확보 방법 및 어선의 상세 명세
3. 원양어업 방법, 조업구역, 조업시기, 주 어장, 주 어종
4. 어획물 처리 계획
5. 해기사 및 선원의 확보와 관리 계획
6. 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확보 방법
7. 불법어업 및 해양오염 방지 방법

2. 허가권 현황

가.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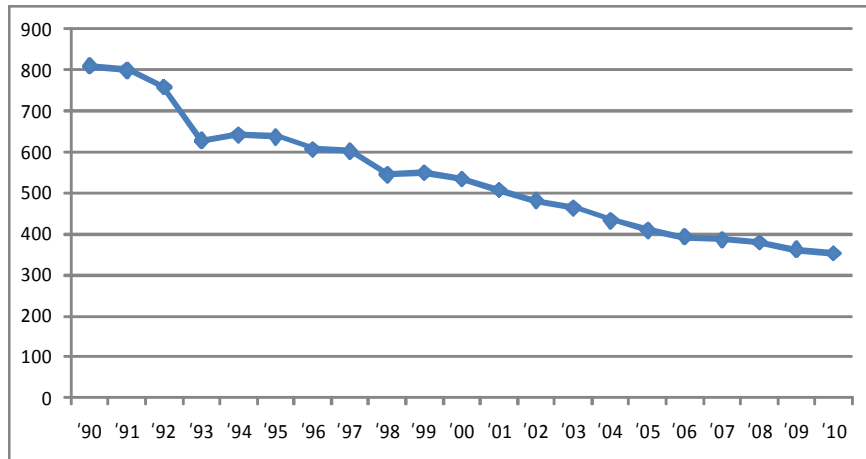
- 원양어선은 1990년 총 허가 척수가 810척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여 2010년 현재 56% 감소한 353척을 기록하고 있음
- 2004년에는 433척으로 줄어들었고, 2005년에는 1990년 대비 절반 수준인 410척으로 감소
- 원양어업의 국제적 여건과 경영수지의 악화로 인한 경쟁력 상실의 결과 산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표 3-6> 연도별 전체 어선척수 (1990~2010)

(단위 : 척)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810	800	759	628	642	637	607	602	545	550	535	507	482	464	433	410	393	387	380	362	353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그림 3-1> 연도별 전체 어선척수 (1990~2010)

나. 참치

- 참치어업은 지속되는 참치자원의 감소에 따른 악순환으로 인하여 원양업체의 경영여건이 계속 악화되면서 허가 척수가 2010년에 179척을 기록하여 1990년(315척) 대비 43.2% 감소하였음
 - 참치자원이 감소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국제수산기구의 자원관리 등에 따른 조업규제가 강화되었고, 이는 참치어업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음
- 참치연승은 1990년 276척에서 2010년 149척으로 46.0% 감소하였음
 - 한국 참치연승어선이 대폭 감소한 원인 중에는 암모니아 냉동기법을 쓰던 어선을 CFC(염화 플루오린화 탄소·프레온가스) 냉동 어선으로 전환하지 않은 점도 있음
 - 암모니아 냉동기법으로 냉동한 참치는 최대 참치 소비국인 일본에서 수입을 하지 않거나, 구입을 하더라도 가격이 크게 낮아져서 조업을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게 된 것임

- 참치선망은 1990년 39척에서 2010년 30척으로 23.1% 감소하였음
- 참치선망은 어선 척수는 줄었지만 총톤수(GT)는 증가하여 어획능력은 실질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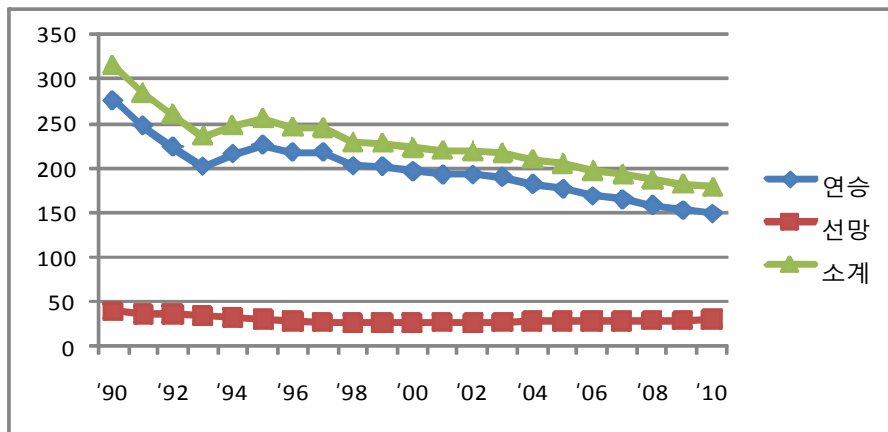
<표 3-7> 연도별 참치어업 어선척수 (1990~2010)

(단위 : 척)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승	276	248	224	202	216	226	218	218	203	202	197	193	193	190	182	177	169	165	158	153	149
선망	39	36	36	34	32	30	28	27	26	26	26	27	26	27	28	28	28	28	29	29	30
소계	315	284	260	236	248	256	246	245	229	228	223	220	219	217	210	205	197	193	187	182	179

※ 참치연승 : 가다랭이 채낚기 포함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그림 3-2> 연도별 참치어업 어선척수 (1990~2010)

다. 오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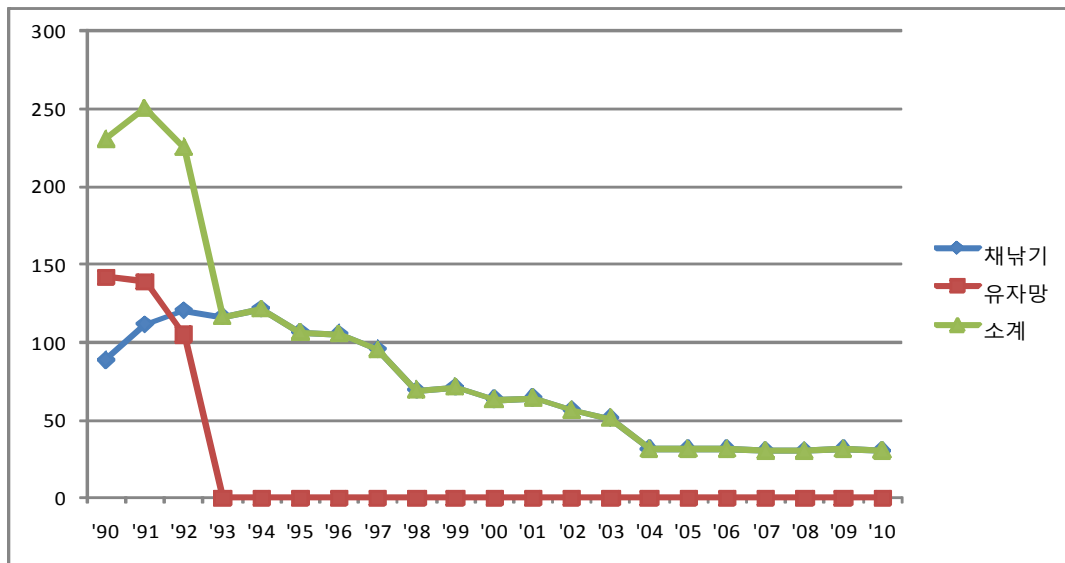
- 오징어어업은 1990년도 230척에서 2010년 30척으로 무려 86.9% 감소하였음
- 오징어 어업의 허가척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국제연합(UN)에서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어업을 중단한 데 주로 기인하였음
- 또한 한국 오징어 원양어선이 주로 조업하고 있는 포클랜드 어장의 자원 감소에 따라 한국 정부가 오징어 어선에 대한 감척 등 구조조정을 시행한 것도 주요 원인이 되었음

<표 3-8> 연도별 오징어어업 어선척수 (1990~2010)

(단위 : 척, G/T)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채낚기	88	111	120	116	121	106	105	95	69	71	63	64	56	51	31	31	31	30	30	31	30
유자망	142	139	105	-	-	-	-	-	-	-	-	-	-	-	-	-	-	-	-	-	-
소계	230	250	225	116	121	106	105	95	69	71	63	64	56	51	31	31	31	30	30	31	30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그림 3-3> 연도별 오징어어업 어선척수 (1990~2010)

라. 트롤어업

- 트롤어업은 1990년도 247척에서 2010년 102척으로 58.7% 감소하였음
- 기지트롤이 203척에서 97척으로 52.2% 줄어들었고, 북양트롤이 44척에서 5척⁸⁾으로 88.5% 줄어들었음
- 새우트롤이 40여척에서 1척으로, 인도네시아 기지트롤이 140여척에서 100여척으로 각각 감소하였음
- 트롤어업은 연안국의 대륙붕에서 조업을 하는 방식의 어업이기 때문에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선포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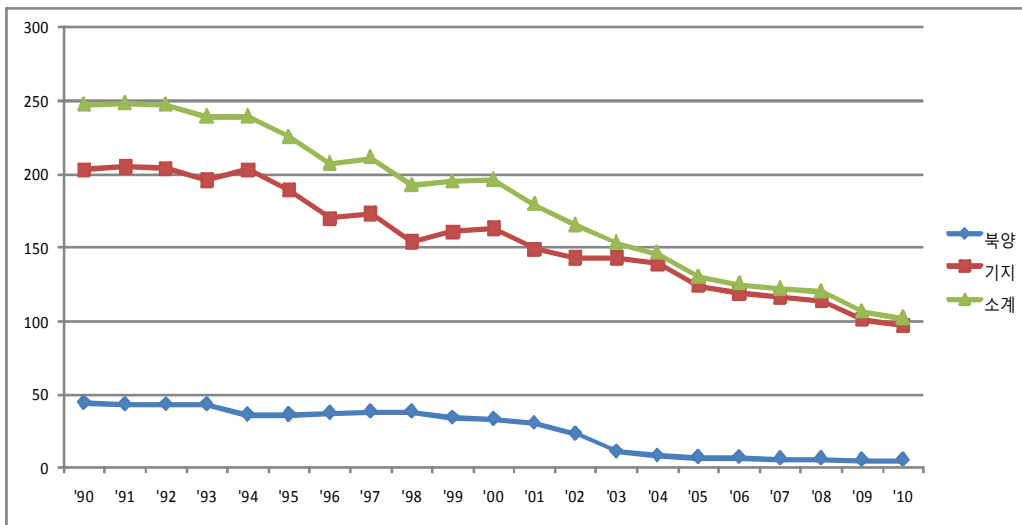
8) 2011년에는 명태 쿼터가 늘어나면서 북양트롤 허가척수가 7척으로 늘어났음.

<표 3-9> 연도별 트롤어선척수 (1990~2010)

(단위 : 척)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북양	44	43	43	43	36	36	37	38	38	34	33	30	23	11	8	7	7	6	6	5	5
기지	203	205	204	196	203	189	170	173	154	161	163	149	143	143	139	124	119	116	114	101	97
소계	247	248	247	239	239	225	207	211	192	195	196	179	165	153	146	130	125	122	120	106	102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그림 3-4> 연도별 트롤어선척수 (1990~2010)

마. 소결

- 이와 같이 원양어업의 모든 업종에 걸쳐 허가 척수가 줄어든 것은 연안국 및 국제기구의 자원규제가 강화되는 등 국제수산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다 국내 원양업체의 신조선 건조 및 시설투자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임
- 따라서 국내 원양어선의 허가 척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양어업 허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표 3-10> 원양어업 허가 척수 추이

구분	허가 척수		증감 (A-B)	증감사유 및 어업여건
	1990년(A)	2010년(B)		
계	810	353	△457	
참치 어업	315	179	△136	- 경영여건 악화 등에 따른 자원 감소 - 국제기구의 자원관리 및 조업규제
오징어 어업	230	30	△200	- 북태평양 오징어유자망 조업중단 - 특정 어장(포클랜드) 의존 및 자원감소
트롤 어업	247	102	△145	- 200해리 선포에 따라 연안국의 대륙붕 조업 규제 강화 - 중남미 새우트롤, 해외기지 트롤의 감소 - 북해도 및 베링공해 수역 조업중단 - 러시아수역의 쿼터축소 및 어장제한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3. 주요국의 원양어업 허가제도 검토 및 비교

가. 일본

- 정해진 선박의 총 톤수별 척수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대신이 선박별로 원양 어업허가(5년) 발급
-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이나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어선을 폐선하고 타 선박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을 인수한 자가 당해 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중국

- 중국의 원양어업은 허가제도로 운영되며, 중앙정부에서 원양어업 회사에 대해 허가를 발급함

- 중국 농업부령 제27호 원양어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농업부 어업국에서 원양어업 허가를 발급하며, 허가대상은 원양어업회사임
 - 현재 허가받은 원양어업회사는 약 150여개사이고, 허가는 1,460척에 대해 발급되었음
 - 원양어업회사는 국영기업과 지방성 정부소속 기업, 소규모 사영기업으로 분류됨
- 중국 농업부령 제27호 원양어업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⁹⁾
 - 원양어업은 공해 및 다른 국가 관할해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황해, 동해와 남해에서 종사하는 어업활동은 포함하지 않음
 - 농업부는 전국 원양어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성급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내 원양어업 관련 업무를 담당함
 - 농업부는 원양어업기업에 대한 자격인증 심사 및 원양어업 사업 확인제도를 매년 실시함
 - 공해에서 조업하는 경우 농업부로부터 원양어업허가 및 공해조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원양어선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을 장착해야하고, 농업부에서 읍서버를 파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영국

- 특정 선박을 명시하여 신청한 선박 소유주에게 유효기간 2년의 원양어업허가를 발급
- 영국은 원양 어업과 연근해 어업을 구분하며, 원양어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허가절차를 마련함
 - 2년의 허가기간, 인적 허가, 선박소유 필요 등의 요건은 연근해 어업과 원양어업이 동일
- 어획 쿼터는 개별 수산업 조직 등 그룹을 대상으로 분배되며, 배분한 쿼터

9) 중화인민공화국농업부령 제27호 원양어업관리규정, <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4/content_62790.htm>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는 임대 또는 판매 등의 형태로 거래가 가능함

- 쿼터 배분의 기초 요소로 FQAs(fixed quota allocation units)를 사용하는 바, 동 units는 과거 개별 선박의 입항 기록을 고려하여 작성

(1) 연근해 어업과 원양어업 구분

- 자국 및 EU 수역에서의 어업과 그 이외 수역(External Waters)에서의 어업을 구분하여 취급함
- 자국 및 EU 수역에서의 어업을 행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fishing vessel licence)와 그 이외 수역 및 특별한 접근이 요청되는 경우(External Waters, Minor Pelagic Fisheries, Blue Whiting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허가는 구분함
 - External Waters Licence는 Fishing vessel licence가 기 부여된 것을 조건으로 별도 발급

(2) 허가의 대상

- 어업 허가는 특정 선박을 명시하여 신청한 선박 소유주에게 발행되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적 허가의 성격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원 소유주는 어업 허가된 선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 선박과 동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양도할 권한을 보유
 - 원 소유주가 새로운 선박을 구입한 경우 구 선박에 부여되어있던 면허를 새로운 선박으로 이전 가능
 - 원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동 선박의 어업면허 무효화

(3) 어업허가 기간

- 어업허가 기간은 2년이며,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 갱신됨
 - 단, England, Wales, Northern Ireland에 소재한 항구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을 전제
 - Scotland 지역은 상기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갱신 신청 필요

- 어업허가 시 선박 소유 여부
 - Hubert Gieschen 뉴캐슬어업청(MFO) 담당관은 어업허가가 선박 소유자에게 발급되므로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임

라. 뉴질랜드

- 특정 선박을 명시한 선박회사에게 공해어업허가 발급
 - 뉴질랜드 수산부 Matthew Hooper 담당관 접촉 및 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악한 원양어업 관련 사항
- 원양어업 허가 관련
 - 뉴질랜드 선박은 수산부로부터 공해어획허가(high seas fishing permit)를 받아야만 원양어업이 가능함
 - 상기 허가는 특정 선박을 명시한 선박 회사에게 발행됨

마. 미국

- 특정 선박을 명시한 선박 소유주 및 선박회사에 유효기간 5년의 공해어업 허가 발급
 - 발급된 허가는 거래나 양도가 불가능함

<표 3-11> 주요국의 원양어업 허가제도 비교

국가	어업허가의 내용	허가의 성격
일본	정해진 선박의 총 톤수별 척수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 대신이 선박별로 원양어업 허가(유효기간 5년) 발급	대물허가
중국	농업부에서 원양어업회사(약 150여개)에 대해 원양어업허가 발급	대인허가
영국	특정 선박을 명시하여 신청한 선박 소유주에게 원양어업허가(유효기간 2년) 발급	혼합허가
뉴질랜드	특정 선박을 명시한 선박회사에 공해어업 허가 발급	혼합허가
미국	특정 선박을 명시한 선박 소유주 및 선박회사에 공해어업 허가(유효기간 5년) 발급	혼합허가

제 3 절 원양어업 허가제도의 문제점

1. 진입장벽의 문제

가. 허가의 독점적 권리화

-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원양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허가신청은 어선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어업의 종류별로 선박의 톤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현재의 어선별로 원양어업 허가를 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각 어선에 대해 발급한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이 어업허가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허가제도가 탄력적이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음
 - 대물허가(선박에 대한 허가)에 따른 독점적 기득권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선박에 대한 허가로 배타적·독점적인 권리 형성
 - 선박에 대한 허가로 선박 거래를 통해 허가권 영구화 가능
 - 허가정수 설정 시 기허가자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가 강화될 수 있음

나. 어장 및 어업의 종류에 따른 입어 제한

- 현재 원양어업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과 원양어업 참여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조업구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업구역에 대한 입어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어떤 종류의 어업을 할 것인지에 따라 조업구역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제 3 장 원양어업의 허가제도 분석

- 이는 어업허가를 신청할 때 현재 원양어업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과 원양어업 참여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조업구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업구역에 대한 입어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특히 국제수산물기구로부터 입어 쿼터를 할당받는 조업구역이나 어업의 경우에는 더욱 어업허가 신청 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이 많음
- 신규허가에 대한 법과 현실의 괴리
 -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어업 신규허가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음
 - 현실: 현재 원양어업에 대한 신규허가를 하지 않고 있음
 - 어업허가를 신청할 때, 현재 원양어업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과 원양어업 참여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조업구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업구역에 대한 입어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다. 선박확보 조건

- 허가신청의 조건으로 “어선 + 어업의 종류별 선박 톤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선박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함

<표 3-12> 원양어업의 허가기준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명칭	어선의 규모	
		구 톤수	톤수
원양연승어업	원양참치연승어업	150톤 이상	110톤 이상
	원양저연승어업	80톤 이상	60톤 이상
원양기선저인망어업	원양기선저인망어업	80톤 이상	60톤 이상
원양트롤어업	원양트롤어업	80톤 이상	60톤 이상
원양선망어업	원양선망어업	500톤 이상	350톤 이상
원양자망어업	원양자망어업	80톤 이상	60톤 이상
원양봉수망어업	원양봉수망어업	80톤 이상	60톤 이상
원양채낚기어업	원양채낚기어업	80톤 이상	60톤 이상
원양통발어업	원양통발어업	90톤 이상	60톤 이상

<표 3-12> 원양어업의 허가기준 (계속)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명칭	어선의 규모	
		구 톤수	톤수
원양모선식어업	모선식트롤어업	모선 : 80톤 이상 부속선 : 40톤 이상 탐재식어로선 : 10톤 이상	모선 : 60톤 이상 부속선 : 30톤 이상 탐재식어로선 : 7톤 이상
	모선식외줄낚시어업	모선 : 80톤 이상 부속선 : 톤수 제한 없음 탐재식어로선 : 톤수 제한 없음	모선 : 60톤 이상 부속선 : 톤수 제한 없음 탐재식어로선 : 2톤 이하
원양안강망어업	원양안강망어업	80톤	60톤 이상

비고 : 구 톤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을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현존선(現存船)에 관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측정된 톤수를 말함

라. 우선순위제

- 원양어업 관련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순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1)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제도

-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 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별도의 회사)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양어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원양산업발전법」 제25조 제3항)
 - 새로 개발한 해외어장일 것
 - 선령 10년 이하의 어선을 갖출 것
 -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에서 금지하는 어종이나 어업이 아닐 것
 -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등

(2) 문제점

- 우선순위 대상이 불명확함

- 신규로 하는 어업허가인지, 기존 어업자들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할 경우에 현재의 허가수보다 적은 어업허가를 할 때의 우선순위규정인지 불분명함
- 또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지, 1가지 조건 이상만 충족시키면 되는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음
- 현재 한국 원양어선의 평균 선령에 비추어 볼 때 선령 10년 이하의 어선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은 과도하게 엄격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3) 개선의 필요성

- 우선순위는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를 규정한 것이고, 우선순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처분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 어업허가가 금지의 해제이지만, 그 해제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특정 어업에 대한 허가신청의 경합은 언제든지 나타남
- 원양어업의 현실적 여건상 신규 어업허가의 발급이 억제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이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의 독선과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신규 어업의 허가는 물론 허가의 수를 줄여서 재허가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순위 규정의 신설과 우선순위의 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제화시켜 둘 필요가 있음

허가의 우선순위

- 「수산업법」 상 허가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하면 당해 관청은 허가를 하는 것이 원칙

- 어업조정 또는 자원보호상 어업정수를 정하고 있거나 어선의 척수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을 초과하는 어업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가
 - 이 때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는 동일한 수역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때 누구에게 허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원주의(先願主義)가 아니라 소정의 법적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것
 - 우선순위의 법적 성격
 - 어업면허나 어업허가에서 행정청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은 없음
 - 우선순위자로 결정된 자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하겠다는 확약이라고 할 수 있음
 - 면허어업의 우선순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면허어업에서 우선순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면허는 권리라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음
 -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는 법 규정에서 삭제
 - 1999. 10. 16 개정 전의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음
 - 1999. 10. 16 개정을 통해 우선순위 규정 조항을 삭제
 - 허가하는 관청이 어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허가의 권리성을 부정 또는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행정청에 일임하고 있는 것은 허가를 권리를 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됨
 - 허가의 권리성 부정에 대한 반론
 - 첫째, 법원이 허가의 권리성을 인정하여 판시하고 있음
 - 둘째, 정부가 어선 척수를 총량적으로 조정하여 감축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셋째, 현실의 수산업계에서는 허가어업에 대하여 허가받은 업종별로 가격이 형성되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허가도 어업권과 같은 권리성을 가짐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허가어업에서도 면허어업처럼 우선순위를 법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
- 개정 전의 구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 최우선 순위 : 해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신청수면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모든 순위에 불구

- 하고 다음 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하여야 함
-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수면에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양식어장이 있는 어민으로서 양식어장에 소요되는 종묘확보를 위하여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
 - 2순위 : 아래 4가지 사유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
 -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려고 그 어업의 폐지신고와 동시에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다만,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저당권자가 그 사실을 행정관청에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경매가 취소된 경우에 한함
 -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임차하여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다만,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경락(경락인이 직접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이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이를 임대한 자가 어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3순위 : 2순위 해당자가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 4순위 : 당해 어업을 1년 이상 5년 미만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및 당해 어업 외의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국제환경에 대한 대응 미흡

- 연안국과 국제수산기구들이 국가별 원양어업 쿼터를 할당하는 형태가 가속화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업허가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과거에는 국가로부터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고 각종 국제수산기구나 국제협정에서 요구하는 어업질서에 관한 사항만 준수하면 얼마든지 어업을 영위할 수 있었음
- 현재는 연안국과 국제수산기구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원양어업의 어획쿼터 확보 및 이용 시스템을 국제수산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
 - 원양어업 허가의 신청기간과 유효기간을 통일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 만약 갑작스럽게 감척을 해야하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선령이나 어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선박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음

가상 시나리오

- 태평양 수역에서 한국 어선 10척이 현재와 같이 어획쿼터를 받아 어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제수산기구가 수산자원의 변동을 이유로 어획쿼터를 급감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급감된 어획쿼터는 3척이 조업할 경우 어업의 경영 유지가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 7척의 어선에 대해 조업어장의 이동 또는 감척을 시행해야 함
 - 10척 중 어떤 어선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가?
- 시나리오 1 : 다른 어장으로 이동
 - 어느 어장으로 이동할 것인가?
 - 이동대상 어선이 찬성할 것인가?
 - 이동하는 어장에서 조업하고 있는 한국 원양업체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 시나리오 2 : 감척
 - 어떤 어선을 감척 대상으로 할 것인가?
 - 감척대상 어선이 찬성할 것인가?
 - 감척비용과 보상 등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국제수산환경의 변화는 한국 원양업체에 대해 계속 조업, 어장 이동, 감척 등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강요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원양어업 허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

가. 허가일자의 비일치

- 현행 각각 선박에 대한 허가신청 및 갱신으로 인한 허가의 시작 일자 및 허가 기간이 선박별로 달라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규제강화 요구가 있게 될 경우 수용이 어려움
- 선박별로 허가 유효기간이 다를 경우 어업허가 제한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수립이 어려움

- 특정 지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의 허가를 제한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특정 지역의 어선 중 일부 어선의 허가를 제한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허가 어선을 선별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 개별 허가는 허가신청 및 허가 갱신과 관련한 행정업무 및 행정비용이 크게 들어가고 허가신청 등에 따라 원양업계의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음

나. 허가정수의 미비

- 명확한 사회·경제관에 입각하지 않은 어업허가 정수의 결정은 행정부의 권리남용의 우려가 매우 높음
- 현행 법률에서 어업허가 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허가해야 할 건수보다 허가를 신청하는 수가 많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다.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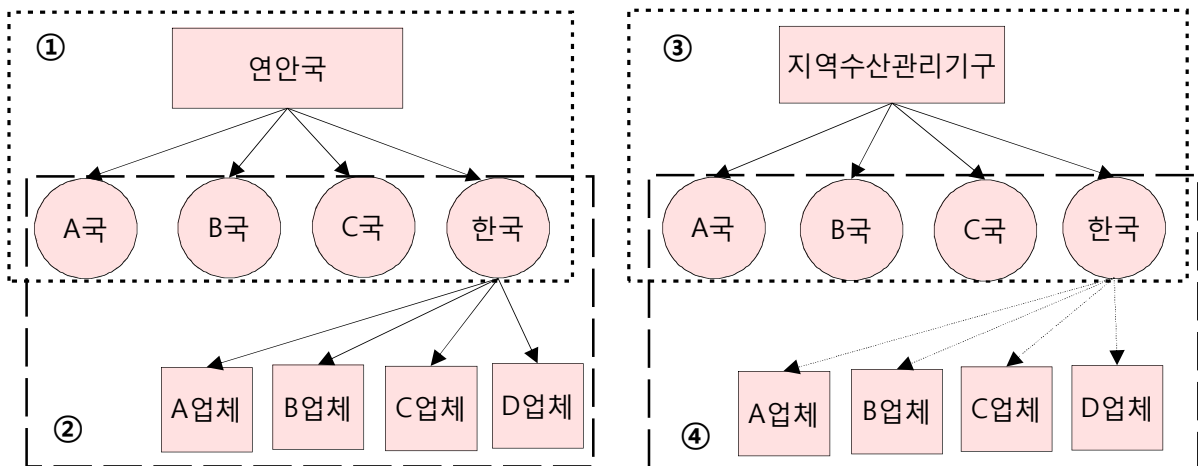
-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해외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은 해당 업체는 물론 한국의 모든 원양업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업체 스스로 불법어업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제재기능을 강화해야 함
 - 현행 법규로는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제 4 장 원양어업 쿼터 할당 및 배분방식 분석

제1절 어획쿼터 할당 및 배분의 이론적 검토

1. 쿼터 할당 및 배분의 구조

- 현행 원양어업 어획쿼터 할당 및 배분 구조는 다음의 구조도와 같이 4가지 과정으로 분류될 수 있음
 - 하나는 연안국으로부터 어획쿼터를 받는 경우가 있고
 - 또 다른 하나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로부터 쿼터를 받는 경우가 있음



<그림 4-1> 원양어업 정부쿼터 할당 구조도

- ① 연안국으로부터의 정부 쿼터 할당 (Quota Allocation)
- ② 국내 쿼터 배분 (Allocated Quota Distribution)
- ③ 지역수산물관리기구로부터의 회원국 쿼터 할당 (Quota Allocation)
- ④ 국내 쿼터 배분 (Allocated Quota Distribution)

가. 연안국의 쿼터할당 및 배분

- 연안국으로부터 정부가 쿼터를 받는 경우 양국 정부 간의 쿼터할당이 이루어

어지는 단계와 한국 정부와 국내업체 간의 쿼터 배분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

- 쿼터 할당 : 연안국으로부터 정부쿼터를 받는 경우 연안국(러시아)과 한국은 정부 협상을 통해 쿼터량과 입어료를 정하게 되며, 이를 ‘쿼터 할당(quota allocation)’이라고 함
- 쿼터 배분 : 한국 정부는 연안국(러시아)으로부터 할당받은 쿼터를 과업조업량, GT/HP 등의 기준에 따라 국내 업체에 배분하게 되는데, 이를 ‘쿼터 배분(quota distribution)’이라고 함

나.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쿼터할당 및 배분

- 지역수산물관리기구로부터 쿼터를 받는 경우 역시 지역수산물관리기구와 정부 간 쿼터 할당과 정부와 국내업체 간 쿼터 배분의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쿼터 할당(quota allocation) : 과거어획량, 과거 어획노력량, 척수 제한, GT제한 등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할당 기준에 따라 결정
- 쿼터 배분(quota distribution)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규정에 따라 올림픽 방식 또는 등록선박 척수 당 $1/n$ 방식으로 배분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쿼터의 경우, 지역수산물관리기구로부터 회원국인 한국 정부에 대해 쿼터를 할당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국내업체에 직접 배분하기 보다는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 간 배분됨

다. 쿼터할당 및 배분 방식의 재검토 사항

- 연안국의 조업국에 대한 쿼터 할당(①)은 정부 협상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당 방식에 대한 일반적 분석이 어려움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쿼터의 할당 및 배분(③, ④)은 조업척수의 제한이 있고 국제기구의 할당 기준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그러나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쿼터 할당 기준을 개발해오면서 IUU 어업 및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실적 등과 연계하고 있어, 새로운 배분기준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에서는 연안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로부터 할당받은 쿼터의 배분 방식(②, ④) 및 기준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임

2. 쿼터 할당 및 배분의 기준

가. 올림픽 조업방식

- 특정 해역의 어종에 대해 자원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간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하고, 국가별 할당 또는 선박별 배분 없이 TAC 한도 내에서 조업하는 방식으로 쿼터가 소진되면 조업을 금지함
- 이 기준을 사용하는 주요 사례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경우 올림픽 조업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참다랑어와 남방참다랑어를 제외한 전 어종에 대하여 올림픽 조업방식으로 쿼터를 소진하고 있음
- 올림픽 조업방식은 TAC 혹은 할당된 총 쿼터가 소진되기 전에 빨리 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업 경쟁의 과열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수산관리기구들은 갈수록 올림픽 조업방식 대신 자원할당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나. 과거 어획량 혹은 조업실적 (historical catch)

- 해당 수역의 해당 어종에 대한 과거 어획량이나 조업실적에 기초하여 쿼터를 할당·배분하는 방식임
 - 과거 많은 지역수산관리기구들이 이 기준을 근거로 쿼터를 할당해 왔음
- 이 기준은 과거 실적이 없는 신규 회원국 혹은 신규 업체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있음

- 현재의 원양자원 부족 및 고갈 상태는 과거 주요 조업국들의 무분별한 남획에 따른 것이므로, 과거 어획량이나 조업실적을 근거로 하여 조업국에 대해 쿼터의 대부분을 할당하는 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특히 자원관리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과학적 방식의 도입을 통해 과거 어획량 및 조업실적 외에도 기타 관련 요건들도 함께 고려하여 쿼터를 할당해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음

다. 총톤수/마력 (GT/HP)

- 설정된 연간 총허용어획량(TAC) 혹은 총 쿼터할당량을 기허가 조업어선의 총톤수(gross ton·GT)와 마력(horsepower·HP)에 기초하여 조업능력에 따라 어획쿼터를 배분하는 방식임
- 이 기준은 러시아 명태에 대한 정부쿼터(GG quota·Government to Government quota) 배분 시 사용되고 있음
 - 2010년 쿼터에 대해서는 기허가 5개 선사의 등록어선에 대해 GT/HP를 기준으로 정부쿼터를 배분해왔음
 - 2011년 쿼터에 대해서는 신규진입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기존의 20,500 톤에 대해서는 5개 선사가 GT/HP로 배분하고, 나머지 19,501톤에 대해서는 2개 신규 선사를 포함한 7개 선사가 다시 GT/HP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함

라. 조업일수할당제 (VDS)

- 일부 연안국들은 조업일수를 중심으로 어획노력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조업일수할당제(Vessel Day System·VDS) 방식이라고 함
 - 과거에는 조업가능 어선척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규제해 왔으나, 이 방식을 통해 조업일수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
- 특히 PNA¹⁰⁾는 종전의 어선척수를 기반으로 어획노력량을 제한하던 데에서 조업일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VDS를 도입함

- 2010년부터 참치 선망어선에 대해 VDS를 실시하고 있음
- VDS를 연승어선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현재 선망어선에 대해 적용 중인 VDS 거래제¹¹⁾를 적용할 계획임

3. 쿼터 거래제도

가. 쿼터 거래제의 의의

- 쿼터 거래제는 오염물질의 배출, 제한된 자원의 이용 등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행위에 대한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거래가능 허가제도’(Tradable Permit Systems)의 한 방식임
- 이러한 접근법은 자원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원의 이용 혹은 접근을 최소한 일정부분까지 민영화하는 것임
- 1999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대기오염 관리 9건, 어업관리 75건, 수자원관리 3건, 수질오염 관리 5건, 토지이용 관리 5건 등에 대해 거래제의 접근법이 적용되었음¹²⁾
- 쿼터 거래제의 핵심은 쿼터의 양도가능성(negotiability)에 있으며, 주요 장점으로는 경제적 효율성과 유연성(flexibility)을 들 수 있음¹³⁾
- 쿼터를 거래하도록 하는 것은 더 큰 경제적 편익을 생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어업자가 조업기회를 사용하도록 하게할 수 있으며,¹⁴⁾ 쿼터 제도가 이레

10) PNA(The 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는 나우루 당사국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셜군도,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군도, 투발루 8개국을 지칭하며, PNA 수역은 전세계 다량어 생산량의 25~30%가 생산되는 어장임

11) VDS 거래제는 할당 받은 조업 가능 일수를 조업 의향이 있는 다른 선사 혹은 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조업일수 자체를 판매가능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양 조업국 혹은 조업선사 간의 거래일수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인해 조업비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제기되고 있음

12) Tom Tietenberg, "Tradable Permits in Principle and Practice", *Moving to Markets in Environmental Regulation*, October 2006, p. 63

13) Robin Allen, *International Management of Tuna Fisheries: Arrangements, Challenges and a Way Forward*, FAO Fisheries and Aquaculture Technical Paper Nr. 536, Rome: FAO, 2010, p. 38

14) *Ibid.*

적 환경들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음

- 어획쿼터 거래제는 할당된 쿼터를 소진하지 못하거나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양도 또는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임
- 어업관리에 거래 가능한 사유재산권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의 규제(개입)를 줄이며 기업들이 시장 원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나. 권리기반 어업관리

- 쿼터 거래제를 지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주요 근거는 ‘권리기반 어업관리’(Right-based Fisheries Management)임
- 쿼터 거래제의 근간인 ‘소유권’은 지속가능한 어업의 필수적 요소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¹⁵⁾
- 소유권의 인정은 쿼터 소유자들에게 어업자원의 장기적 보존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소유권은 배타성(exclusivity), 지속성(duration), 안전(security), 양도가능성(transferability)이라는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해어업제도와 근본적으로는 모순을 일으키고 있음
- 소유권 제도의 배타성 또는 배제성은 공해어업의 기존 원칙인 공해의 자유와 주권평등과의 상충을 일으키게 됨

다. 쿼터 거래제 관행

(1) 지역수산물관리기구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이하 RFMO) 협약에는 쿼터거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문구는 없음

15) Andrew Serdy, “Trading of Fishery Commission Quota under International Law”(2007) 21 *Ocean Yearbook* 265, p. 265; Allen, supra note 13, p. 38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대서양참치보전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이하 ICCAT)만이 쿼터 거래를 금지한다는 국가 간 쿼터 거래에 대한 명시적 문구를 두고 있음¹⁶⁾
- 쿼터거래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여 왔으며, RFMO가 쿼터 판매기구 혹은 쿼터판매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보는 쿼터 소유자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함
- 한편, 쿼터거래는 쿼터관리에 있어서 유연성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여져 왔음
- 이러한 이중적 접근은 ICCAT의 관행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절차적 관점에서 쿼터거래는 각각의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건별로 사전에 이러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허용된 기간 내 거래의 건수, 쿼터 재거래에 관한 제한 등 조건부 허가의 성격을 갖고 있음

(가) ICCAT(대서양참치보전위원회)

- ICCAT의 할당기준에 관한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에서 쿼터 거래(quota transfer)를 논의한 바 있으며, 이 때 쿼터 거래를 할당(allocation)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management)의 문제라고 보았음¹⁷⁾
- 특별작업반이 제출한 쿼터 할당 기준 초안은 쿼터의 판매 및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의장은 위원회(Commission)에 일시적 쿼터 거래에 대해서 광범위한 인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음
- 위원회는 쿼터 할당 지침(the allocation guidelines)에서 쿼터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¹⁸⁾ 쿼터의 일시적 조정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2001-12를

16) ICCAT Resolution 01-25, para. 27, "No qualifying participant shall trade or sell its quota allocation or a part thereof."

17) ICCAT, Report of the 4th meeting of the ICCAT ad-hoc working group on allocation criteria, p. 182

18) ICCAT, Resolution 2001-25, para.27

채택한 바 있음

- 이 권고는 “어떠한 일시적 쿼터 조정도 위원회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쿼터 거래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¹⁹⁾
- 따라서 ICCAT는 일반적으로 권고 2001-12에 따라 건별로(case by case) 일시적 쿼터거래 허가를 진행해왔으며, 허가된 거래들은 쿼터 거래 당사자와 거래량을 확인하여 관련 어종의 보존관리 권고들에서 보통 반영되어왔음
- 이후 채택된 권고 2006-06은 여러 제한 하에 쿼터 할당량을 가진 회원국들을 위한 쿼터거래 허가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는 약간의 수정과 함께 권고 2008-04에 유지되고 있음²⁰⁾

(나) NAFO(북대서양수산기구)

- 북대서양수산기구(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이하 NAFO)의 쿼터 할당에 관한 작업반에서도 쿼터 거래는 논의된 바 없으며, 현재 미채택된 NAFO 쿼터 할당 지침에도 쿼터 거래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음²¹⁾
- NAFO에서 쿼터 거래 관행은 극히 제한적이며, 오징어(squid Illex)에 대해서만 연안국으로부터의 쿼터 거래로 국별 쿼터 할당량 증가를 허용하고 있음²²⁾
 - 일부 쿼터 거래는 명시적인 사전 허가 없이 이루어졌으나,²³⁾ 이는 흔한 관행은 아님²⁴⁾

19) ICCAT, Proceedings of the 17th Regular Meeting, p.54; Recommendation 12-01 on temporary adjustment of quotas, p.216, “any temporary quota adjustment shall be done only under authorization by the Commission”

20) Para 10. "Notwithstanding the Recommendation by ICCAT Regarding the Temporary Adjustment of Quotas [Rec. 01-12], in between meetings of the Commission, a CPC [Contracting Party] with a TAC allocation under paragraph 6 may make a one-time transfer within a fishing year of up to 15% of its TAC allocation to other CPCs with TAC allocations, consistent with domestic obligations and conservations considerations."

21) NAFO Guidelines

22) NAFO, Quota table 2010, Squid Subareas 3+4, note 1, NAFO, Conservation and Enforcement Measures 2010

23) Andrew Serdy, *supra* note 15 p.283

24) *Ibid.*, p.284

(다) NEAFC(북동대서양수산물위원회)

- 북동대서양수산물위원회(Northeast Atlantic Fisheries Commission·이하 NEAFC)는 쿼터 거래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으나, 특정 어종에 있어서 쿼터 거래 관행을 허용해왔음
- 협약 수역에서의 대구(blue whiting)의 보존관리에 관한 권고 I: 2010의 제 15항은 “체약국에게 거래된 다른 체약국의 수역 내에서 조업되는 쿼터는 관련 체약국 간의 협정에 따라 제3항에 규정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²⁵⁾
- NEAFC의 일부 어종에 대한 관리체제는 연안국들의 협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쿼터 거래 및 EEZ 접근에 관한 양자협정은 NEAFC의 권고들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님

(라)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이하 WCPFC)의 쿼터 할당에 관한 작업 보고서는 위원회가 적절한 할당 기준을 고안할 때 고려해야 할 측면들 중 하나로 쿼터 거래를 포함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분명히 공해어업관리를 위한 쿼터거래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체제의 초기에 쿼터 거래를 권고하는 것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²⁶⁾

(마)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25) “quotas that are transferred to a Contracting Party to be fished within national waters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may be fished in the areas defined in paragraph 3, a subject to agreemen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26) D. J. Agnew, D. Aldous, M. Lodge, P. Miyake, and G. Parkes, Discussion Paper: Allocation Issues for WCPFC Tuna Resources, prepared for the WCPFC Secretariat by MRAG Ltd., October 2006, at 15, online: WCPFC <<http://www.wcpfc.org>>

제 4 장 원양어업 쿼터 할당 및 배분방식 분석

- Bluefin Tuna·이하 CCSBT)는 2003년 쿼터 거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별도의 법률적 자문을 포함하는 추가 분석을 권고한 바 있음²⁷⁾
- 이 법률적 견해는 국별 쿼터 거래가 회원국의 일방적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고, 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음
 - 반면 회원국 EEZ 접근은 위원회의 승인은 필요치 않으나 자문 하에 양자적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호의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회원국들이 어획량 감축을 고려중인 남방참다랑어의 현재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쿼터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하였음
 - 쿼터 거래는 관리절차(Management Procedure)가 시행되었을 때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남방참다랑어는 심각한 자원상태에 있는 것으로 고려되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쿼터가 어획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쿼터 거래를 통해 재할당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사용하지 않은 자국의 쿼터를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되고, 쿼터 할당량이 영구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쿼터 거래가 바람직한 것은 아님
 - 한국과 필리핀의 쿼터 거래에 대한 주장 및 지지에도 불구하고,²⁸⁾ 이 문제는 우선과제로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 CCSBT는 2011년 8월 '남방참다랑어 보전을 위한 위원회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을 채택하였음
 - 이 전략계획에는 회원국들과 협력적 비회원국들 간 쿼터 거래 등 유연한

27) The legal advice of William Edeson was required. The report produced, is not publicly available.

28) Korea and Philippines, which as recent members to the organizations considered quota trade as a solution to match their fishing aspirations (See: CCSBT, Report of the Twelfth Annual Meeting of the Commission, supra note 1009, Agenda item 14, Opening Stat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in Attachment 4-5, and Opening Statement by the Philippines in Attachment 5).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관리방식(flexible management arrangements)의 시행을 포함하고 있음²⁹⁾
- 이와 같은 유연한 관리방식에 대한 계획은 2014년 이후 시행 예정인 장기 계획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우선순위가 낮은 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음

(바) CCAMLR(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

-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이하 CCAMLR)의 관리체제는 국별 쿼터 할당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쿼터 거래는 안건으로 제기된 바 없음

(2) 영국의 쿼터거래 관행

- 영국은 국내 업체 간, EU 국가 간 배분된 원양어업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 영국의 국내 업체 간 쿼터 거래(domestic quota swaps and transfers)는 어획쿼터를 EU로부터 부여받아 아래의 세 개의 그룹에 배분하고 있으며, 쿼터는 그룹 간에 거래(swap)할 수 있음
 - 그룹 1 : 수산업 조직(Producer Organisation·PO)
 - 그룹 2 : 수산업 조직에 속하지 않은 선박길이 10m 초과
 - 그룹 3 : 길이 10m 이하 선박
- 그룹 간 쿼터 거래 계약은 행정적 승인사항이지만, 그룹 간 쿼터 거래의 조건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으며, 정부는 부적절한 거래라고 여겨져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
 - 단지, 선박 소유주가 쿼터 배정의 기초요소인 FQAs(fixed quota allocation units) 자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영국 어업당국(Marine Fisheries Agency)에 신고해야 함

29) CCSBT, Strategic Plan for 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August 2011, p.12 available at <www.ccsbt.org>

(3) 국내의 쿼터 거래 관행

- 쿼터 거래는 러시아 명태 정부 쿼터에서도 관행상 이루어져 왔음
 - 입어료는 전액 지불하였으나 불가피하게 허가어선이 조업을 못할 경우 쿼터를 다른 업체에게 관행상 판매하였음
 - 현재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가 거의 없으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쿼터 거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음

4. 해외수역의 한국 쿼터 할당 현황³⁰⁾

가.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의 할당 쿼터량

<표 4-1>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할당 쿼터량

지역수산물 관리기구	대상어종	쿼터량 (톤)			비고
		'09	'10	'11	
합계	합 계	36,071	34,411	31,991	
	다랑어류	34,923	33,263.1	30,963.5	
	새치류	191.5	191.5	191.5	
	기타(오징어 등)	956	956	836	
CCSBT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	남방참다랑어	1,140	876	842	참치연승어선 약 10척
ICCAT (대서양 다랑어보존위원회)	소 계	2,723.5	3,472.6	3,352	
	참다랑어(지중해)	132	81.14	77.53	참치선망어선 1척
	눈다랑어	2,100	2,900	2,783	참치연승어선 16척
	날개다랑어	300	300	300	
새치류	191.5	191.5	191.5		
WCPFC (중서부태평양 수산물위원회)	눈다랑어	19,304	17,159	15,014	참치연승어선 약 90척
IATTC (전미열대 다랑어위원회)	눈다랑어	11,947	11,947	11,947	참치연승어선 약 40척

30) 해외수역(연안국 수역 및 공해 포함)에서 민간쿼터는 제외한 정부 쿼터의 경우만 포함

<표 4-1>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할당 쿼터량 (계속)

지역수산물 관리기구	대상어종	쿼터량 (톤)			비고
		'09	'10	'11	
NAFO (북서대서양 수산물기구)	소 계	956	956	836	미조업
	오징어	453	453	453	
	새 우	334	334	214	
	적 어	169	169	169	

나. 러시아 수역의 할당 쿼터량

<표 4-2> 러시아 수역의 할당 쿼터량

조업수역	대상어종	쿼터량 (톤)			조업 허용척수 (조업기간)
		'09	'10	'11	
합 계	8개 어종	55,473	67,467	73,966	
러시아	명 태	39,000 (추가쿼터 18,500포함)	46,800 (추가쿼터 6,800포함)	50,001 (추가쿼터 10,000포함)	트롤 12척(5.16~12.31) ※ 5년간 명태 쿼터 추이 (‘07) 20,500→(‘08) 28,500→(‘09) 39,000→(‘10) 46,800→(‘11) 50,001
	청 어	736	768	600	
	대 구	2,694	4,484	4,450	
	가오리	800	800	800	저연승 4척 (4.10~11.30)
	가자미	300	500	500	
	꽁 치	7,393	7,500	7,500	붕수망 19척 (7.15~10.20)
	오징어	4,500	6,500	10,000	근해채낚기 70척(5.1~10.31)
	복 어	50	115	115	

제 2 절 연안국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쿼터할당 방식

1. 주요 연안국의 쿼터 할당방식

가. 연안국의 정부 쿼터 할당

- 연안국 정부 쿼터 배분 문제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는 러시아가 유일함
 - 연안국에서 할당하는 쿼터가 주목을 받는 경우는 러시아와 뉴질랜드 쿼터가 있음
 - 포클랜드는 척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신청하면 거의 허가가 됨
 - 뉴질랜드는 신규로 들어가려면 쿼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업체의 반발이 클 것이나 현재 뉴질랜드에 굳이 들어가려는 업체의 노력도 없으며, 민간이 직접 개별적으로 쿼터 할당을 받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문제로 논란이 불거지지 않는

나. 러시아의 정부 쿼터 할당

(1) 배 경

- 1991년 9월 16일 한·러 어업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 원양어선들은 러시아 수역에서 정부 쿼터와 민간 쿼터를 확보하여 조업하여 왔음
 -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매년 3만~16만5천 톤 수준이던 민간쿼터는 2002년 이후 없어졌음
 - 정부 쿼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4년 2만 톤까지 최저점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최근 들어 4만 톤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표 4-3> 정부쿼터 확보 현황

구분		'97	'04	'05	'06	'07	'08	'09	'10	'11
쿼터	계	74,000	20,000	26,500	26,250	20,500	28,500	39,000	46,800	50,001
	기본	74,000	20,000	20,500	20,500	20,500	20,500	20,500	40,000	40,001
	추가	-	3	6,000	5,750	-	8,000	18,500	6,800	10,000
조업척수		27	5	5	5	5	5	7	6	7

자료 : 농림수산물부

(2) 쿼터 할당 방식

- 러시아의 쿼터 할당 방식은 정부협상을 통해 쿼터량과 입어료를 결정하고, 총어획쿼터를 어종별로 구분하고 다시 해역별, 지역별 쿼터로 할당함

(3) 쿼터 할당 관련 고려사항

- 최근 들어 러시아 정부는 “투자가 없으면 쿼터는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정부 쿼터 협상 시 러시아 극동지역의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 등 투자를 요구하고 있음
 - 러시아의 수산정책상 쿼터 추가 투입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 러시아는 한국이 투자하지 않으면 쿼터는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이는 러시아의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쿼터가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러시아는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 여부를 쿼터 할당에 고려하고 있음

2.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쿼터 할당 방식

가.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쿼터 할당 체제

- 인도양참치위원회(Indian Ocean Tuna Commission·이하 IOTC)는 현재 어획량 제한은 없으나, 향후 어획량 제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WCPFC, CCSBT, ICCAT, 전미열대참치위원회(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이하 IATTC)는 어획쿼터를 할당할 때 과거 어획량을 기준으로 어획량을 할당하고 있음
 - WCPFC는 2001~2004년 평균 또는 2004년 어획량이 2,000 톤(MT)을 초과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2009년도부터 어획량을 감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음
 - 과거 어획노력량은 어획쿼터를 설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WCPFC와 ICCAT에서는 선망어업을 대상으로 금어기간을 따로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표 4-4> 지역수산물관리기구별 어획쿼터 할당체제

구 분	과거 어획량	어획노력량	연안국과 원양조업국간의 이해관계 조율	신규가입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려	합의된 할당량 준수
WCPFC	- 눈다랑어의 2001- 2004년 평균 또는 2004년 어획량에 대해 2,000MT를 초과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어획량감축	- 과거 어획노력량을 기준으로 어획쿼터를 할당하지는 않음 - 눈다랑어를 모든 선망어업을 대상으로 3개월간 금어기 설정	- 과거 및 현재의 어획 경향, 연안국들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한 조율	- 경제적 이유, 식 품자금 및 생계 수단으로 어획하는 개발도상국과 같은 소규모 도서국 등을 고려	x
CCSBT	- 과거 어획량 기준으로 초기 어획쿼터 할당	x	- 과거 어획량 자료로 협상을 통한 조	- 한국 및 대만의 신규 가입시 기존 회원국처럼 어획할당량 분배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준은 없음	- 어획할당량 초과 어획시 어획쿼터를 감소시킴
ICCAT	- 과거 어획량 기준으로 초기 어획쿼터 할당	x	- 각국의 협상에 의한 조율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련사항을 조율)	- 개발도상국을 위한 어획할당량 일부를 비축함 - 영국 및 프랑스의 신규 가입시 참다랑어 어획량을 할당함	- 준수의무 위반국에 대한 통지 및 비준 처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표 4-4> 지역수산물관리기구별 어획쿼터 할당체제 (계속)

구 분	과거 어획량	어획노력량	연안국과 원양조업국간의 이해관계 조율	신규가입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려	합의된 할당량 준수여부
IATTC	- 과거 어획량 기준으로 초기 어획쿼터 할당	- 과거 어획노력량을 기준으로 어획쿼터를 할당하지 않음 - 횡다랑어를 어획하는 모든 선양어업을 대상으로 금어기 설정 및 이 기간 중 옹서비승 선시 30일간 조업가능	- 연승어업은 과거 어획자료, 선양어업은 2002년 수준의 어선세력으로 협상을 통한 조율	-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획제한 완화	- 준수여부 위반국에 대해 어선수 및 어획노력량 제한
IOTC	- 현재 어획량 제한은 없으나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의 어획할당량에 대해 2012년에 채택할 계획	×	×	×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물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 연구」, 2011.

- 다랑어류 및 새치류가 고도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연안국과 조업국 간의 이해관계도 어획쿼터를 할당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기구에서 과거 어업자료 등을 기반으로 국가 간 협상을 통해 조율하고 있음
- 각 기구마다 어획제한 완화, 어획쿼터를 일부 비축하는 등에 대한 신규가입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음
- 합의된 할당량을 준수하지 않고 초과 어획을 하였을 경우, WCPFC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기구에서는 어획량 또는 어획노력량을 제한하고 있음

<표 4-5> 지역수산물관리기구별 어획쿼터 할당기준

구 분	WCPFC	CCSBT	ICCAT	IATTC	IOTC
과거 어획량	○	○	○	○	*
현재 어획노력량	○	○	○	○	X
연안국과 원양조업국 간 이해관계조율	○	○	○	○	X
신규가입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	○	○	○	X
합의된 할당량 준수여부	X	○	○	○	X

* 현재 어획량 제한은 없음 (2012년 채택 계획)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물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 연구」, 2011.

- IOTC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RFMO는 어획쿼터 할당을 통한 어획량 제한 또는 어획노력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CCSBT는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의 수가 다른 기구에 비해 매우 적고, 남방참다랑어 단일 어종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된 모든 국가가 쿼터제도 운영대상이며, 협의를 통해 어획쿼터를 할당받을 수 있음
- ICCAT는 대상어종 및 가입 회원국의 수가 많기 때문에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조업국들이 어획쿼터를 할당받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WCPFC는 과거 어획량이 2,000 톤(MT)을 초과하는가에 따라 어획량을 제한함
- IATTC는 눈다랑어를 목표 어종으로 조업하는 연승어업 국가만을 대상으로 어획쿼터를 할당하고 있음

나. 주요 RFMO의 어획쿼터 할당 기준 및 방식

(1) WCPFC

- WCPFC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국가별 어획쿼터를 할당하고 있음
- ① 현재 어획노력량의 수준
- ② 과거 및 현재의 어획경향 및 조업참여국들의 어획관례, 자국내 소비량
- ③ 해역별 과거 어획량
- ④ 경제적 이유, 식품자급 및 생계수단으로 하는 개발도상국과 같은 소규모 도서국 요구
- ⑤ 보존해역에서의 과학조사, 정확한 자료 제공 등과 같이 자원보존 및 관리를 위한 개별 참여국들의 기여도
- ⑥ 보존 및 관리 방법의 준수 정도
- ⑦ 어획과 관련하여 주요 연안국들의 요구
- ⑧ 다른 국가의 EEZ에 둘러싸여 그들 소유의 EEZ가 제한된 환경에 있는 국가
- ⑨ 뚜렷한 경제적, 문화적 유사성이 있으나, 공해로 구분되어 있어 비연쇄그룹으로 조합된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도서국의 지리적 상황
- ⑩ 자원이 있는 해역이 관할 수역인 개발도상국인 소규모 도서국의 염원 및 어업에 대한 이해관계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눈다랑어는 자원상태에 따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눈다랑어 연승어업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제한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09년도부터는 어획량을 감소하기로 합의함
- 눈다랑어의 국별 연간 TAC 할당량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6> WCPFC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눈다랑어 연승어업의 TAC 할당량
(단위 : MT)

연도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	2,004	4,501	4,278	4,278	6,032	8,383	7,451	6,520
일본	28,028	27,717	21,075	21,075	18,335	26,323	23,398	20,474
한국	22,809	22,619	16,087	16,087	11,061	19,304	17,159	15,014
대만	10,426	14,503	12,094	12,094	11,412	18,893	16,794	14,694
미국	2,714	3,648	2,879	2,879	3,050	3,967	3526	3,086
호주	988	1,111	792	792	561	<2,000	<2,000	<2,000
벨리즈	492	972	602	602	308	<2,000	<2,000	<2,000
쿡제도	0	87	123	123	172	<2,000	<2,000	<2,000
스페인	0	0	8	8	21	<2,000	<2,000	<2,000
피지	604	801	686	686	584	<2,000	<2,000	<2,000
마크로네시아	721	689	489	489	272	<2,000	<2,000	<2,000
인도네시아	771	1,527	1,270	1,270	1,675	<2,000	<2,000	<2,000
키리바시	0.3	0.3	0.2	0.2	0.2	<2,000	<2,000	<2,000
마살공화국	0.0	0.0	0.2	0.2	0.2	<2,000	<2,000	<2,000
뉴칼레도니아	399	153	103	103	60	<2,000	<2,000	<2,000
나우루	2	6	4	4	2	<2,000	<2,000	<2,000
나우에	0	0	0	0	6	<2,000	<2,000	<2,000
뉴질랜드	441	295	199	199	128	<2,000	<2,000	<2,000
폴리네시아	577	611	438	438	358	<2,000	<2,000	<2,000
파푸아뉴기니	162	316	253	253	217	<2,000	<2,000	<2,000
필리핀	59	59	44	44	41	<2,000	<2,000	<2,000

<표 4-6> WCPFC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눈다랑어 연승어업의 TAC 할당량 (계속)

연도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팔라우	32	8	6	6	1	<2,000	<2,000	<2,000
솔로몬제도	340	324	238	238	119	<2,000	<2,000	<2,000
세네갈	0.0	0.0	0.0	0.0	0.5	<2,000	<2,000	<2,000
통가	141	167	101	101	66	<2,000	<2,000	<2,000
바누아투	6	418	584	584	1,121	<2,000	<2,000	<2,000
사모아	215	144	101	101	71	<2,000	<2,000	<2,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물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 연구」, 2011.

- 2001년~2004년 평균어획량 또는 2004년 어획량이 2,000 톤(MT)을 초과하는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중국은 2009년도부터 연간 10%씩 어획량을 감축하여 2011년까지 총 30%의 어획량을 감축한다는 데 합의하였음

(2) CCSBT

- CCSBT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국가별 어획쿼터를 할당하고 있음
 - ① 현재 추정된 과학적 결과를 기반으로 TAC 결정
 - ② 현재 국가별 어획노력량의 수준
 - ③ 합의된 어획쿼터 할당량의 준수 여부
 - ④ 조업국에 대한 연안국의 이해관계
 - ⑤ 남방참다랑어의 과학적 조사·보존 및 향상을 위한 각 회원국의 기여도
- CCSBT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 모두가 어획쿼터 할당 대상국임
- 현재 자원상태를 고려하여 TAC의 증감이 이루어지며, 회원국 간의 합의에 의해 어획쿼터 할당량이 결정됨
 - 남방참다랑어의 국별 연간 TAC 할당량은 다음과 같음

<표 4-7> CCSB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TAC 할당량

(단위 : MT)

연도 국가	1994	1996	1997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본	6,065	6,065	6,065	6,065	6,065	6,065	6,065	3,000	3,000	3,000	2,261	2,261
호주	5,265	5,265	5,265	5,265	5,265	5,265	5,265	5,265	5,265	5,265	4,270	4,270
뉴질랜드	42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754	754
한국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859	859
대만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859	859
인도네시아				800	800	800	800	750	750	750	651	651
필리핀					50	50	50	45	45	45	45	45
남아프리카 공화국					30	30	45	40	40	40	40	40
EU								10	10	10	10	10
기타				100								
합계	11,750	11,750	11,750	14,930	14,910	14,910	14,925	11,810	11,810	11,810	9,749	9,749

※ 3국간의 할당량에 대한 미합의로, 1995년 및 1998-2002년의 TAC 할당량은 없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물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 연구」, 2011.

- 2003년 이후 국별 연간 TAC 할당량이 배분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할당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어획을 하고 있음
 - 일본은 합의된 할당량을 초과하여 어획을 하여 2007년도부터 5년 동안 3,000 톤(MT)으로 TAC 할당량이 삭감되었음

(3) ICCAT

- ICCAT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국가별 어획쿼터를 할당하고 있음
 - ① 과거 어획량, 타 어종의 부수어획으로 TAC를 소진하는 어종의 경우에는 부수어획량을 고려
 - ② 연안국과 원양조업국 간의 협상에 의한 조율
 - ③ 개발도상국을 위한 어획할당량 일부를 비축하는 등과 같은 신규진입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려

제 4 장 원양어업 쿼터 할당 및 배분방식 분석

- 자원평가를 통해 자원상태가 좋지 않은 북방날개다랑어, 남방날개다랑어, 북방황새치, 남방황새치, 동방참다랑어, 서방참다랑어, 눈다랑어, 백새치, 녹새치 등의 9종에 대해 어획쿼터 할당을 실시하고 있음
- 자원상태가 좋지 않은 참다랑어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2~5년을 주기로 자원평가를 실시하여 전체 TAC를 설정하고 조업국과의 협의를 통해 어획쿼터를 할당하고 있음

(가) 북방날개다랑어

- 2009년 수행된 자원평가 결과, 최대지속생산량(MSY)은 29,000 톤, 생산량은 20,359 톤으로 자원상태는 낮고 개발상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까지 관리목적 달성을 위해 어획수준을 28,000 톤 이하로 권고하였음

<표 4-8>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북방날개다랑어의 TAC 할당량

(단위 : MT)

연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TAC		34,500	34,500	34,500	34,500	34,500	34,500	34,500	30,200	30,200	28,000
바베이도스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벨리즈					100	100	200	200	200	200	200
브라질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캐나다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중국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유럽공동체		28,712	28,712	28,712	28,712	28,712	28,712	28,712	25,462	25,462	21,551
프랑스 (St.P&M)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일본	952	761	617	756	639	615	692	709	708	*	
한국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마로코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세인트 빈센트							200	200	200	200	200
트리니 다드토바고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영국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미국		607	607	607	607	607	607	607	538	538	527
바누아트					200	200	200	200	200	200	200

<표 4-8>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북방날개다랑어의 TAC 할당량 (계속)

연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베네수엘라		200	200	270	270	270	270	270	250	250	250
대만		4,453	4,453	4,453	4,453	4,453	4,453	4,453	3,950	3,950	3,271

* 타어종에 대한 부수어획종이므로 TAC가 아직 확정되지 않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 연구」, 2011.

(나) 남방날개다랑어

- 1992~1996년의 남방날개다랑어 연평균 어획량이 1,000 톤 이상인 국가(브라질,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를 “남방날개다랑어 주요 조업국”으로 정의하고, 이들 국가는 적정 수준의 할당량을 공유하였음
- 주요 어업국에 속하지 않은 연승어업국은 눈다랑어 연승어업의 총 어획량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어획량을 제한하였음
 - 주요 조업국의 남방날개다랑어 어획량은 대부분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한국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의 어획량이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였음

<표 4-9>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남방날개다랑어의 TAC 할당량

(단위 : MT)

연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TAC	28,200	29,200	29,200	29,200	29,200	29,200	30,915	30,915	29,900	29,900	29,900
브라질											
나미비아	TAC	TAC	TAC	TAC	TAC	TAC	TAC	TAC	TAC	TAC	TAC
남아프리카 공화국	27,500 공유	27,500 공유	27,500 공유	27,500 공유	27,500 공유	27,500 공유	27,500 공유	27,500 공유	26336. 3 공유	26336. 3 공유	26336. 3 공유
대만											
벨리즈							360	360	360	360	360
중국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유럽공동체	1,915	1,915	1,915	1,915	1,915	1,915	1,915	1,915	1,915	1,915	1,915
과테말라							100	100	100	100	100
일본	392	298	337	499	244		394	402	391	?	
한국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4-9>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남방날개다랑어의 TAC 할당량 (계속)

연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파나마							120	120	120	120	120
필리핀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00	100	100	100	100
영국	4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우루과이	4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국	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바누아투							100	100	100	100	1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 연구」, 2011.

(다) 북방황새치

- 북방황새치는 자원회복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2003년 이후 10년간 TAC를 14,000 톤(MT)으로 확정하였음
 - 한국은 이중 50 톤(MT)을 할당받았음
 - 주요 조업국인 유럽연합과 미국 등은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한국은 2007년과 2008년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였음

<표 4-10>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북방황새치의 TAC 할당량

(단위 : MT)

연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TAC	10,600	10,500	10,4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바베이도스	0	0	0	25	25	25	25	45	45	45
벨리즈				쿼터할당량 없음				130	130	130
브라질	0	0	0	50	50	50	50	50	50	50
캐나다	1,018	1,018	1,018	1,338	1,348	1,348	1,348	1,348	1,348	1,348
중국	100	100	100	75	75	75	75	75	75	75
코트디부아르				쿼터할당량 없음				50	50	50
유럽공동체	5,073	5,073	5,073	6,665	6,718	6,718	6,718	6,718	6,718	6,718
프랑스(St.P&M)			24	35	35	35	35	40	40	40

<표 4-10>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북방황새치의 TAC 할당량 (계속)

연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일본	636	636	636	835	842	842	842	842	842	842
한국	14	14	14	쿼터할당량 없음				50	50	50
마로크	205.5	206	206	335	335	335	335	850	850	850
멕시코	0	0	110	110	110	110	110	200	200	200
필리핀	0	0	0	쿼터할당량 없음				25	25	25
세네갈								400	400	400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30	130	75
트리니다드토바고	64.2	64	64	125	125	125	125	125	125	125
영국	24	24	24	35	35	35	35	35	35	35
미국	2,951	2,951	2,951	3,877	3,907	3,907	3,907	3,907	3,907	3,907
바누아트				쿼터할당량 없음				25	25	25
베네수엘라	62.9	63	63	85	85	85	85	85	85	85
대만	213.3	213	213	310	310	310	310	270	270	27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 연구」, 2011.

(라) 남방황새치

- 2009년도에 실시된 자원평가 결과, 과도어획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이후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TAC가 15,000 톤(MT)으로 설정되었음
- 한국은 이중 50 톤(MT)를 할당받았음
- 주요 조업국인 유럽연합과 브라질 등은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한국은 2007년과 2008년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였음

<표 4-11>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남방황새치의 TAC 할당량

(단위 : MT)

연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TAC	14,620	14,620	14,620	15,631	15,776	15,956	16,055	17,000	17,000	17,000	15,000
앙골라				쿼터할당량 없음				100	100	100	100
벨리즈								150	150	150	125
브라질				4,086	4,193	4,296	4,365	4,720	4,720	4,720	3,666

<표 4-11>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남방황새치의 TAC 할당량 (계속)

연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TAC	14,620	14,620	14,620	15,631	15,776	15,956	16,055	17,000	17,000	17,000	15,000
중국		480	480	315	315	315	315	315	315	315	263
대만	2,875	1,170	1,170	925	825	780	720	550	550	550	459
코트디부아르	23			100	100	100	100	150	150	150	125
유럽공동체	6,233	6,233	6,233	5,950	5,850	5,850	5,780	5,780	5,780	5,780	5,282
가봉				쿼터할당량 없음							
가나	122			쿼터할당량 없음				100	100	100	100
일본	3,764.6	3,764.6	3,764.6	1,500	1,500	1,500	1,500	1,315	1,215	1,080	901
한국	86	0	0	쿼터할당량 없음				50	50	50	50
나미비아		2,000	2,000	890	1,009	1,070	1,140	1,400	1,400	1,400	1,168
필리핀				쿼터할당량 없음				50	50	50	50
상투메 프린시페								100	100	100	100
세네갈								300	400	500	389
남아프리카 공화국	3	1,500	1,500	890	1,009	1,070	1,140	1,200	1,200	1,200	932
영국		100	100	25	25	25	25	25	25	25	25
우루과이	695	800	1,000	850	850	850	850	1,500	1,500	1,500	1,165
미국	384	384	38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바누아투				쿼터할당량 없음				20	20	2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물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 연구」, 2011.

(마) 동방참다랑어

- 동방참다랑어는 2007년 이후 TAC가 점차 줄어 2010년에는 19,950 톤(MT) 이었음
 - 한국은 이중 119 톤(MT)을 할당받음
 - 주요 조업국인 유럽연합과 마이크로네시아 등은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한국은 2007년과 2008년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였음

<표 4-12>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동방참다랑어의 TAC 할당량

(단위 : MT)

연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TAC	29,500	29,500		32,000	32,000	32,000	32,000	29,500	28,500	22,000	19,950
알바니아										50	50
알제리				1,500	1,550	1,600	1,700	1,511	1,460	1,117	1,012
중국	76	76	76	74	74	74	74	66	64	61	57
크로아티아	876	876	876	900	935	945	970	862	833	641	582
이집트										50	50
유럽공동체	18,590	18,590	18,590	18,582	18,450	18,331	18,301	16,780	16,211	12,407	11,238
유럽-몰타				다른 쿼터할당량에 따른 조업				356	344		
유럽-키프로스				다른 쿼터할당량에 따른 조업				155	149		
아이슬란드				30	40	50	60	53	52	50	46
일본	2,949	2,949	2,949	2,949	2,930	2,890	2,830	2,516	2,431	1,871	1,697
한국	619	619			2,429	1,729	742	178	172	132	119
리비아	1,199	1,570		1,286	1,300	1,400	1,440	1,280	1,237	947	857
마로크	3,028	3,028	3,028	3,030	3,078	3,127	3,177	2,824	2,729	2,088	1,891
노르웨이						다른 쿼터할당에 따른 조업		53	52	50	46
시리아								53	52	50	50
튀니지	2,144	2,144	2,543	2,503	2,543	2,583	2,625	2,334	2,254	1,736	1,574
터키				다른 쿼터할당에 따른 조업				918	887	683	619
대만	658	658	658	827	382	331	480	71	69	66	6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 연구」, 2011.

(바) 서방참다랑어

- 서방참다랑어는 2007년 이후 총 TAC가 점차 줄어 2010년에는 1,800 톤 (MT)이었음
- 한국은 어획쿼터를 할당받지 못했음

제 4 장 원양어업 쿼터 할당 및 배분방식 분석

<표 4-13>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서방참다랑어의 TAC 할당량

(단위 : MT)

연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TAC	2,500	2,500	2,500	2,700	2,700	2,700	2,700	2,100	2,100	1,900	1,800
캐나다	573	573	573	620	620	620	620	546	546	505	495
프랑스 (St.P&M)	4	4	4	4	4	4	4	4	4	4	4
일본	453	453	453	478	478	478	478	380	380	330	311
멕시코			25	25	25	25	25	25	25	95	95
영국	4	4	4	4	4	4	4	4	4	4	4
미국	1,387	1,387	1,387	1,490	1,490	1,490	1,490	1,190	1,190	1,035	97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물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 연구」, 2011.

(사) 눈다랑어

- 눈다랑어는 2005~2009년까지 총 TAC가 90,000 톤(MT)이었음
 - 한국은 2010년 2,100 톤(MT)을 할당받았음
 - 주요 조업국인 유럽연합과 일본 등은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한국은 2008년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였음

<표 4-14>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눈다랑어의 TAC 할당량

(단위 : MT)

연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TAC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중국		7,300	4,000	5,000	5,000	5,400	5,700	5,900	5,900	5,900	
유럽공동체		26,672	26,672	26,672	26,672	2,5000	24,500	2,4000	2,4000	2,4000	
가나		3,478	3,478	3,478	3,478	4,000	4,500	5,000	5,000	5,000	
일본		32,539	32,539	32,539	32,539	27,000	26,000	25,000	25,000	25,000	
한국								2,100	2,100	2,100	2,100
파나마						3,500	3,500	3,500	3,500	3,500	
대만	16,500	16,500	16,500	16,500	16,500	16,500	4,600	16,500	16,500	16,5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물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 연구」, 2011.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아) 백새치

- 백새치는 2009년과 2010년 총 TAC가 418.31 톤(MT) 이었음
- 한국은 2010년에 19.5 톤(MT)을 할당받았음
- 주요 조업국인 브라질은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였으며, 한국도 2007년과 2008년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였음

<표 4-15>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백새치의 TAC 할당량

(단위 : MT)

연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TAC				411.9	411.9	418.36	418.35	418.35	418.35	418.31	418.31
브라질	56.3	51.8	51.8	52	52	51.81	51.81	51.81	51.81	51.81	51.81
캐나다	6	1.7	2.6	2.6	2.6	2.6	2.6	2.6	2.6	2.6	2.6
중국	6.8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코트디부아르	0.8					2.31	2.31	2.31	2.31	2.31	2.31
유럽공동체	85.5	46.5	46.5	46.5	46.5	46.5	46.5	46.5	46.5	46.5	46.5
일본	84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한국	44.3	0	19.5	19.5	19.5	19.47	19.5	19.5	19.5	19.5	19.5
멕시코	0	3.6	3.6	3.6	3.6	3.63	3.63	3.63	3.63	3.63	3.63
필리핀	0	4	4	4	4	4	3.96	3.96	3.96	3.96	3.96
트리니다드 토바고	0	0	0	0	0	4.3	4.3	4.3	4.3	4.3	4.3
베네수엘라	122.7	14.2	50	50	50	50.04	50.04	50.04	50.04	50	50
대만	424.5	153.5	186.8	186.8	186.8	186.8	186.8	186.8	186.8	186.8	186.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물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 연구」, 2011.

(자) 녹새치

- 녹새치는 2005년 이후 총 TAC가 1,802.2 톤(MT)이었음
- 한국은 2010년 72 톤(MT)을 할당받았음
- 주요 조업국인 일본은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한국은 어획할당량보다 매우 적게 어획하였음

<표 4-16> ICCAT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녹새치의 TAC 할당량

(단위 : MT)

연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TAC	2,024.1	1,695.1	1,801.8	1,802.7	1,802.7	1,802.2	1,802.2	1,802.2	1,802.2	1,802.2	1,802.2
바베이도스	18.8	9.3	9.3	9.5	9.5	9.5	9.5	9.5	9.5	9.5	9.5
브라질	248.3	253.8	253.8	254.5	254.5	254.4	254.4	254.4	254.4	254.4	254.4
중국	46.5	100.5	100.5	100.5	100.5	100.5	100.5	100.5	100.5	100.5	100.5
유럽공동체	159.8	100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일본	1259.3	839.5	839.5	839.5	839.5	839.5	839.5	839.5	839.5	839.5	839.5
한국	108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마로크				0	0	0	0	0	0	0	0
멕시코	9.8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필리핀		35.5	35.5	35.5	35.5	35.5	35.5	35.5	35.5	35.5	35.5
남아프리카 공화국		0	0	0	0	0	0	0	0	0	0
트리니 다드토바고	26	9	10.3	10.3	10.3	9.9	9.9	9.9	9.9	9.9	9.9
베네수엘라	102.6	15	30.4	30.4	30.4	30.37	30.4	30.4	30.4	30.4	30.4
대만	45	243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물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 연구」, 2011.

(4) IATTC

- IATTC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국가별 어획쿼터를 할당하고 있음
 - ① 과거의 어획량 및 어선세력 : 연승어업은 과거 어획자료, 선망어업은 2002년 수준의 어선세력
 - ②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획제한 완화
 - ③ 어선등록 및 감척, 국가별 어획능력
- 눈다랑어를 목표 어종으로 하는 연승어업국을 대상으로 국가 간 합의를 통해 쿼터를 할당하고 있음
- 눈다랑어의 2009년 TAC는 54,954 톤(MT)이었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은 이중 12,073 톤(MT)을 할당받았으나, 자원량의 감소로 2010년 5% 축소하여 11,947 톤(MT)을 할당받았음
- 한국, 일본, 중국 및 대만의 연간 어획량은 모두 어획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았음

<표 4-17> IATTC 협약 수역내의 국별 연간 눈다랑어의 TAC 할당량 (단위 : MT)

연도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TAC	57,244	57,244	57,244	57,244	57,244	54,954	54,381
한국	12,576	12,576	12,576	12,576	12,576	12,073	11,947
일본	34,076	34,076	34,076	34,076	34,076	32,713	32,372
중국	2,639	2,639	2,639	2,639	2,639	2,533	2,507
대만	7,953	7,953	7,953	7,953	7,953	7,635	7,55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물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 연구」, 2011.

(5) IOTC

- IOTC는 1996년 설립 이후 2010년 현재까지 국가별 TAC를 할당하지 않고 있으며, TAC 관리 어종도 따로 설정해 두지 않고 있음
- 2012년 연례회의에서 황다랑어와 눈다랑어의 어획쿼터 할당제를 채택할 계획

제 3 절 국내 원양어업 쿼터 배분방식의 분석

1. 러시아 정부 쿼터 배분방식

가. 논의 배경

- 2010년까지 쿼터 배정에 대한 업계 이해상충을 자율 조정하도록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배정권한을 위임하여 왔음
- 제20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명태 쿼터 40,001 톤을 확보하면서, 기존 5개 선사에만 쿼터를 배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특히 쿼터가 4만 톤으로 증대된 상황에서 쿼터 배정 개방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명태 쿼터에 대한 업계 수요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한 결과 8척이 68,653 톤을 신청하였음

<표 4-18> 명태 쿼터에 대한 업계 수요조사 결과

계	극동수산	남북수산	사조산업	사조오양	한성기업	인성실업	동원산업	동원수산
8척	오리엔탈엔젤	남북	오룡503	오양96	준성	광자	동산	동원701
68,653톤	11,070	10,793	6,860	7,930	10,000	7,000	10,000	5,000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나. 쿼터 배정 원칙 검토

(1) 기존업체에 배정 : 기득권 유지의 측면

- 기존업체는 1992년부터 어장 개척을 포함하여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여 왔으며, 러시아 어장과 조업규칙 등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정부 쿼터 유지를 위해 정부 쿼터 급감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업을 계속 하여 4만 톤까지 확대된 계기를 마련한 기존 선사의 공헌을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기존 업체에만 쿼터를 배정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러시아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기존 5개 선사가 명태공급을 과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통구조 및 명태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음

(2) 희망업체 전체에 배정 : 형평성 도모의 측면

- 러시아 수역에 대한 명태조업을 희망하는 업체의 진입장벽이 해소되어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고, 어선 신조·수리 등 성능강화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음
- 기존 5개사 이외에도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러시아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명태 공급사 간 경쟁을 통해 명태 시장가격 안정에 유리하여 소비자 이익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쿼터량의 안정적 배정이 예측 가능하지 않을 경우 조업계획 수립 및 어선수리 등이 어려워 지속적이고 경제적인 조업이 곤란하게 됨
 - 러시아 어장에서 조업이 가능한 어선 규모가 1,500~5,500 톤급으로 커서 타 수역 이동조업 및 대체어장 확보가 어려움
- 또한 조업곤란으로 장기 체항할 경우 감척요구 등 대대적 민원제기가 우려되며, 북양트롤어업 허가 개방에 따라 타 업종(참치, 메로조업 등)에도 동등한 기준으로 허용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신규진입 업체의 경우 정부 쿼터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기여함이 없이 과실만 챙기는 체리피커(cherry picker)로 기능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음

(3) 기본 방향

- 명태 소비자의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적극적인 러시아 수산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명태 쿼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희망업체에 배정 개방하되,
- 그간의 공헌도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감안하여 기존 5개 선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다. 2011년 쿼터 배정기준

- 방안 1 : 업체별 배정 희망물량 기준으로 배정하는 방안
- 방안 2 : 어획능력(톤수+마력) 기준과 기존 5개 선사에 조업실적 가중치(50%)를 부여하여 배정하는 방안
- 방안 3 : 2005~2009년 간 기본 쿼터로 확보되어온 20,500 톤에 대해서는 기존 5개 선사에 어획능력(톤수+마력) 기준으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19,500 톤은 전체 희망업체에 배정하는 방안
- 2011년 쿼터에 대한 배분은 검토한 3가지 방안 중 기존업체에게 비교적 유리한 제3안을 채택하였음
 - 쿼터 일부에 대해서만 신규업체의 진입을 허용하여 어획능력에 기초하여 배분하였음
 - 2011년 쿼터 배분에 대한 임시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향후 적용될 명확한 쿼터 배분기준 마련이 요구됨

<표 4-19> 명태쿼터 배정 대안별 물량

(단위 : 톤)

업체명	조업어선			배정 희망	‘11년 배정(안)			‘10 배정
	선명	톤수	마력		제1안	제2안	제3안	
계	8척			68,653	40,001	40,001	40,001	46,800 (40,000)
극동수산	오리엔단 엔젤	5,210	5,700 (6,000)	11,070	6,448	7,253	8,130	9,748 (9,748)
남북수산	남북	5,549	5,700	10,793	6,288	8,047	9,020	10,792 (10,782)
사조산업	오룡503	1,555	3,300	6,860	3,996	3,282	3,679	5,928 (4,428)
사조오양	오양96	393 (3,527)	2,900 (4,500)	7,930	4,620	5,644	6,327	6,684 (7,584)
한성기업	준성	2,866	2,400 (1,800)	10,000	5,828	5,538	6,208	8,648 (7,448)
인성실업	광자	3,012	4,900	7,000	4,080	3,638	2,359	5,000
동원산업	동산	4,462	5,000	10,000	5,828	4,481	2,905	-
동원수산	동원701	1,501	3,200	5,000	2,912	2,118	1,373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쿼터 배분방식

- 업체 간 쿼터가 배분되고 있는 국제수산물관리기구(RFMO)는 현재 CCSBT 1개 기구에 불과하며, CCSBT와 ICCAT의 다랑어를 제외한 다른 RFMO는 올림픽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CCSBT는 3개사 16척 기준으로 쿼터가 배분되며, 척당 균등 분배(선박 척수당 1/n)가 원칙임
 - 동원산업 5척, 동원수산 5척, 사조산업 6척을 기준으로 쿼터가 배분되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쿼터가 배분되면 각 업체당 실제 조업 척수는 자율적으로 결정함
- ICCAT의 다랑어는 금년 전업선 16척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며, 척당 균등 배분방식으로 조업하고 있음
- WCPFC 또한 올림픽 방식으로 조업하며, 쿼터 할당량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원양산업협회를 통한 업체별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결론적으로 대서양 어장은 다랑어 자원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 및 협회의 정기적 관리를 통해 쿼터 할당량에 맞추어 쿼터를 소진하고 있는 반면 태평양 지역은 쿼터 소진이 전량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음

3. 주요 연안국의 할당 쿼터 국내 배분방식 비교

가. 영국

(1) 쿼터 배분방식

- 영국은 어획쿼터를 EU로부터 부여받아 영국 내 아래 그룹에 배분함
 - ① 개별 수산업 조직(Producer Organisation·PO : the sector),
 - ② 개별 수산업 조직이 아닌 그룹으로서 선박 길이 10m 초과,
 - ③ 선박 길이 10m 이하 선단

- 쿼터는 개별 선박의 FQAs(fixed quota allocation units)에 기초하여 이들 3그룹에 배분되는데, FQAs는 1994~1996년 동안의 개별선박 입항기록(Vessel's historic landings)을 참고하여 결정함

(2) 배분한 쿼터의 거래

- 쿼터는 그룹 간에 거래(swap)가 가능하며, 임대 혹은 판매의 형태를 띠게 됨
 - 단, 선박 소유주가 쿼터 배정의 기초요소인 FQAs 자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어업당국(Marine Fisheries Agency)에 연락이 필요함

나.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CCAMLR 및 WCPFC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기구로부터 할당받은 쿼터를 조업가능 어선척수(vessel limit), 특정어종 어획량(catch limit), 조업일수 등을 기준으로 허가 선박에 배분하고 있음
 - 할당받은 쿼터를 배분할 때 배분량은 선박들의 그간 어획기록(catch history) 실적을 고려함

- 쿼터가 배분된 어선척수, 특정어종 어획량 등은 거래가 불가능하며, 원양어업에 대하여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쿼터는 없음

다. 일본

- 일본 수산청은 RFMO의 쿼터에 대해서는 대부분 올림픽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음
 - 다만, 대서양참다랑어와 남방참다랑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자별로 태그를 부착해서 선박 당 할당하는 어선별 개별할당을 실시하고 있음
- 동일 어업자가 복수의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 어업자가 소유한 어선 간에는 조업상황에 따라 어획쿼터의 양도가 가능하나, 개별할당 쿼터는 거래가 불가능함
 - 어선별 어획쿼터의 배분은 어획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 할당하고 있음
- RFMO 쿼터 할당에 따른 국내 배분은 가쓰오 마구로 어업협동조합(日本かつお・まぐろ漁業協同組合)에서 수행함
 - 조합에서 쿼터배분의 기준이 정해지면 농림수산성에 보고하고, 농림수산성은 이를 인정하는 형식을 취하게 됨
- 조합에서 정하고 있는 남방참다랑어 쿼터 배분의 일반 원칙은 과거 조업실적이 있는 기존 기업에 쿼터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하고, 다른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이 해역으로 신규로 진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업체보다는 적은 쿼터를 배분함
 - ※ 이 기준은 조합 전체 어종에 대한 쿼터 배분 기준이 아니라 남방참다랑어의 쿼터 배분 기준임
 - 신규진입은 현재 거의 없으며, 일본이 CCSBT에서 페널티를 받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페널티로 인한 할당 쿼터량이 작기 때문에 모든 조업 업체에 일률적으로 1/n방식으로 배분하고 있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금년 CCSBT 남방참다랑어 쿼터 할당량은 총 2,400 톤으로, 올해 쿼터 할당량이 다소 줄었음
 - 남방참다랑어 조업에 100척 정도의 선박이 나가는데, 한 척당 24톤의 쿼터가 배분됨
 - 선박을 1척 이상 가지고 있는 업자는 선박 당 배분된 쿼터를 합하여 한 선박으로 조업할 것인지는 조합이 조정하게 됨

라. 중국

- 정부 간 협력 또는 RFMO 등을 통해 획득한 어획쿼터는 각 원양어업회사별 전통적인 어획생산량을 기준으로 할당하고 있으며, 할당받은 쿼터량은 상호 교역이 불가능함

제 4 절 현행 쿼터 배분 방식의 문제점

1. 일관성 있고 명확한 기준의 부재

- 원양업체 간 쿼터 배분을 둘러싼 갈등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은 어장, 업종별 여건 및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쿼터 배분 기준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수역(공해/EEZ), 쿼터 할당 주체(국제기구/연안국), 쿼터 할당에 대한 기여도(민간 주도 쿼터 확보/정부 주도 쿼터 확보) 등에 따른 어종별, 해역별, 업종별 여건에 따른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음
 - 이에 따라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대부분은 업계 자율에 맡겨져 한국원양산업협회 주도의 쿼터 배분이 이루어져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제20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정부가 명태 쿼터 40,001톤을 확보한 후, 쿼터가 4만 톤으로 증대된 상황에서 쿼터배분 개방요구가 제기되면서, 기존 5개 선사에만 쿼터를 배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라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대해 기존 5개 선사들은 정부 주도의 쿼터 배분 개방 움직임에 대해 기득권 보호 및 기여도 인정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 정부가 제시한 “러시아수역 조업 쿼터 배정원칙”에 따르면 확보된 명태 쿼터는 조업 희망업체의 어획능력, 러시아 수산투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개방 배정하고, 건전한 경쟁 및 신규진입 장벽을 해소한다는 중장기 원칙은 설정되었음
 - 그러나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명확한 기준 제시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

2. 국제환경 변화 반영 미흡

- 과거 한국 어선의 IUU 어업 사례가 간헐적이었으나 최근 집중·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IUU 어업 사례의 빈도수 증가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 실추에 따른 조업쿼터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안정적인 조업입지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 현행 IUU 어업에 대한 국내적 제재는 불법어업 제재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30일의 허가정지로 되어 있음
 - 이러한 수준의 페널티로는 불법어업의 효과적 근절에 한계가 있음
 - IUU 위반사항에 대한 국내 제재조치가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 RFMO 등으로부터 이행의지를 의심받고 있음
 - 최악의 경우 한국의 제재 수준에 동의하지 않고 불인정시 IUU 어업 리스트에 등재될 우려도 존재함
 - 또한 연안국이 조업국 정부와 업체에 대해 수산투자 등 입어료 이외의 원조 및 투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제수산환경의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연안국 어장에서 조업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고 있고, 한국 정부도 적극 나서지 못하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일어나고 있음
 - 결론적으로 국제수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어업자원 확보를 위한 원조 및 투자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는 어떤 집단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함. 이는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스스로 시간·노력·비용 등을 투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부 구성원들의 무임승차(free rider) 성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음

3. 기득권 인정과 형평성 도모 간의 부조화

- 정부 쿼터의 경우 정부 주도로 쿼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나, 배분대상이 특정 원양선사에 집중되고 있어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현재 러시아 명태 쿼터의 경우 정부 주도의 쿼터 확보에도 불구하고 쿼터 배분을 업계 자율에 맡겨놓음으로써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 갈등이 발생하였음

제 4 장 원양어업 쿼터 할당 및 배분방식 분석

- 정부쿼터 배분의 기본 틀은 원칙적으로 희망업체에 배정 개방하되, 그간의 공헌도 및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감안하여 기존 선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지만,
- 신규 희망업체의 진입장벽 완화 요구와 기존업체의 공헌도 및 기득권 인정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가치의 조화 및 적절한 기득권 인정 범위의 설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쿼터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거세지고 있음

4. 분쟁조정 기능의 약화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상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두고 있고, 원양어업 신규허가 및 쿼터배분 등 법상의 관련 심의 쟁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구성·운영된 적이 없으며, 모든 관련 문제를 업계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임
- 정부 쿼터에 대해서도 민간 자율에 맡기다 보니 기존업체와 신규진입 희망업체 간의 쿼터 배분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분쟁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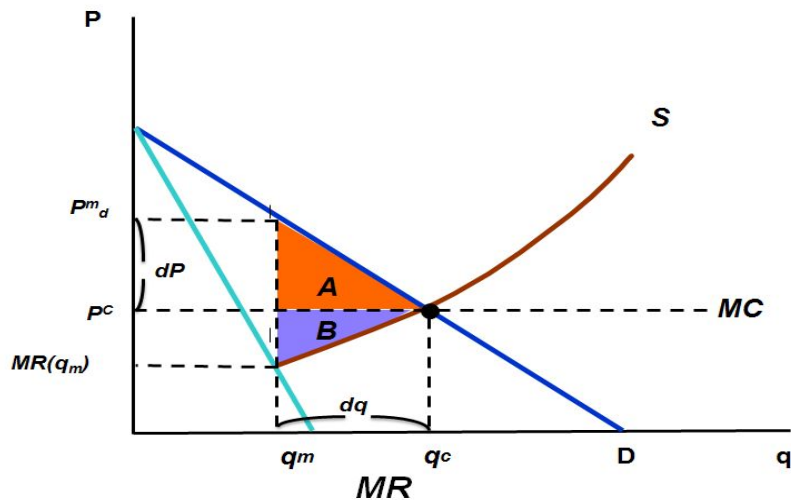
제 5 장 허가제도 및 쿼터 배분방식 개선방안

제1절 제도개선의 이론적 검토

1. 입어 및 쿼터 관련 후생손실과 시장실패

가. 독점시장의 사회적 후생손실

- 독점시장과 완전경쟁시장의 가격을 각각 P_m 과 P_c 로 정의하고, 또한 이에 대응되는 산출량을 각각 q_m 과 q_c 로 정의하였음
- Harberger는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아래의 <그림 5-1>에서 빗금 친 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후생손실의 삼각형으로 제시함
- 즉 소비자잉여 손실분인 면적 A와 생산자잉여에 대한 손실분인 면적 B가 독점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생손실로 정리될 수 있음
- 먼저, 독점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에 대한 사회후생의 손실분인 영역 A는 독점가격과 완전경쟁 가격 간의 차이인 $P_m - P_c$ 와 완전경쟁시장 가격 하의 산출량(q_c)과 독점가격 하의 산출량(q_m) 차이인 $q_c - q_m$ 의 곱한 값을 1/2한 값으로 어렵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그림 5-1> 독점시장의 사회적 후생손실

○ $DWL = \frac{1}{2} (p^m - p^c)(q^c - q^m) = \frac{1}{2} (dp \times dq) = \frac{1}{2} \frac{dp}{p^m} \times \frac{dq}{q^m} \times p^m q^m$ (1)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인 $E_d = - \frac{(q^c - q^m)}{q^m} / \frac{(p^c - p^m)}{p^m} = \frac{dq}{q^m} / \frac{dp}{p^m}$ 의

공식을 활용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frac{(q^c - q^m)}{q^m} = E_d \times \frac{(p^m - p^c)}{p^m} = E_d \times \frac{dp}{p^m}$ (2)

와 같이 전개될 수 있음

- 식(2)를 식(1)에 대입하면 $DWL = 1/2 E_d \left(\frac{dp}{p^m}\right)^2 \times p^m q^m$ (3) 가 만약

$t = dp/p^m = (p^m - p^c)/p^m$ 로 정의한다면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잉여의 손실분은 $DWL = 1/2 (t^2 \times E_d \times TR_m)$ (4) 가 됨

- 여기에서 $TR_m = p^m q^m$ 은 개별산업이 독점인 경우 개별산업의 총 수익을 의미함

○ 또한 t 는 독점가격이 경쟁가격에서 벗어나 있는 가격 왜곡도를 의미함

- Harberger(1954)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개별산업들이 CRTS의 생산기술을 소유하였다고 가정하면서 $P^c = MC = AC$ 로 가정하여 t 를 계산하였고, 이들은 또한 독점기업의 사회후생 손실을 계산하면서 사회후생 손실 중 소비자잉여 손실분인 면적 A만을 계산하여 추정하였음

○ 식(4)는 시장이 독점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회후생 손실로서 개별산업의 생산기술이 수확불변이라는 가정 하에서 소비자잉여의 손실만을 한정하여 계산한 결과임

- 그런데 개별산업이 수확불변에 근거하여 생산하지 않을 경우 독점시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후생의 손실 부분은 소비자잉여의 손실 부분인 면적 A뿐만 아니라 독점시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자잉여의 손실분인 면적 B도 함께 발생하게 됨

○ 그러나 개별산업에 대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독점기업의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이 수평선으로 같아지므로 소비자잉여의 손실 부분인 면적 A만으로 독점으로 인한 사회후생 손실을 추정하는 것은 가능함

나. 입어 및 쿼터 관련 시장실패

-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후생경제학적 입장에서 볼 때 시장기구가 자원의 최적배분에 실패하게 되는 현상을 말함
 - 원양어업에서도 쿼터배분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자연스럽게 못할 경우에도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³¹⁾

- 이는 원양어업의 특성상 파레토 효율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일반경쟁 균형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양어업의 입어 및 쿼터확보의 특성 때문에 파레토 효율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 때문에 파레토 효율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전자의 원인으로서는 기술적 외부효과와 공공재를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고
 - 후자의 원인으로서는 불완전경쟁, 비대칭적인 정보, 규모에 대한 보수 체증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원양어업에서의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적절한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하며, 별도의 사회적 결정기구에 의해 자원배분을 결정해야 할 필요도 있음

<표 5-1> 원양어업에서의 시장실패 원인

구분	원인	세부내용	원양어업 적용
파레토 효율의 미달성	재화의 특성	기술적 외부효과	×
		공유재	○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	불완전경쟁	○
		정보의 비대칭	○
		규모의 보수 체증	○

- 생산물 시장이 불완전경쟁인 시장실패를 원양어업의 입어와 쿼터배분이 독점인 경우를 가정하고 보기로 함

31) 홍종인, 「경제학원론」, 법문사, 2004, pp. 130~132.

제 4 장 원양어업 쿼터 할당 및 배분방식 분석

- 생산가능곡선상의 Q점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선이 NN'라면 AM의 생산가능곡선과 교차하고 있음

- Q점에서의 접선은 mm'라면 $\tan\alpha = \frac{MC_X}{MC_Y}$ 가 되어 가격선 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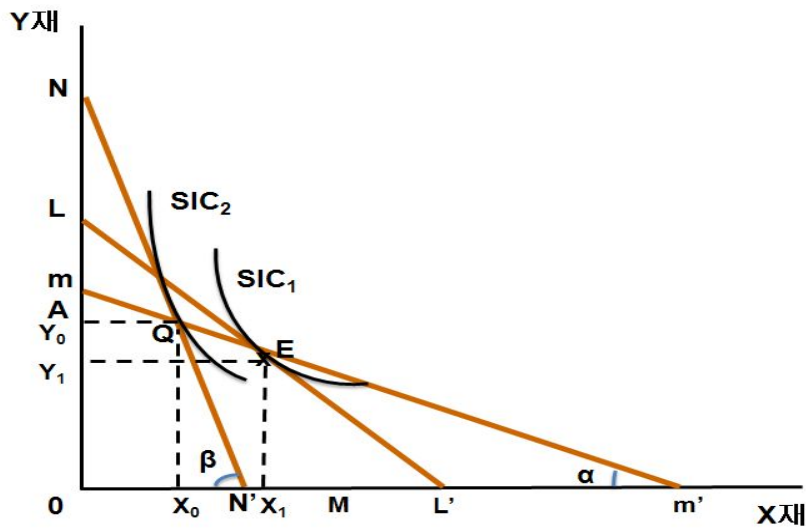
$$\tan\beta = \frac{Q_Y}{Q_X} = \frac{P_X}{P_Y} \text{ 보다 } \tan\alpha \text{의 값이 더 적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Q점에서는 $MC_X < P_X$ 임을 알 수 있음

- 이는 X재가 불완전경쟁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P_X = MC_X$ 인 완전경쟁 상태가 E점이고 E점에서 SIC_1 이 접한다면 X재는 과소 생산되어 생산량 X_0 를 기록하고, Y재는 과대 생산되고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원양어업의 입어와 쿼터배분에 대해 관여를 하여 조정을 한다면 시장실패를 바로 잡을 수 있음



<그림 5-2> 원양어업 입어 및 쿼터 독점(X재)과 자원배분

2. 허가 및 쿼터의 정부개입 문제

가. 원양어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

- 원양어업의 특성은 정부가 허가 및 쿼터배분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원양어업에서 시장실패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원인과 그에 따른 정부개입의 이유를 원양어업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시장구조 측면에서 원양어업에서는 경쟁체제, 진입장벽 등의 여러 부문에서 시장실패 현상이 발생하여 불완전경쟁 체제가 일반화 됨
 - 특히 특정 국가 및 어종 부문의 경우 수요자인 원양업체와 연안국 간의 쌍방 독점관계가 성립되어 신규업체의 진출입 장벽이 구축되므로 실제적 또는 잠재적 경쟁이 발생하지 않게 됨
 - 이처럼 원양어업은 일반적인 시장경쟁 원리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는 시장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개입이 요구되는 것임
- 둘째, 원양어획물의 부가가치는 시장기능에 의해 창출되기보다는 주로 정부 개입에 의해 창출되는 경우가 많음
 - 물론 과거에는 원양 민간업계 차원에서 쿼터를 확보하여 원양 어획물을 국내로 반입 및 수출하여 이익을 창출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연안국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입어 및 쿼터 제한 등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진다고 할 수 있음
 - 원양어획물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어종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고급 어종인 참치는 소득탄력성이 매우 높은 반면 대중어종인 명태와 오징어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수요의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demand)

- 한 재화나 서비스에 있어서 소비자의 소득이 변화했을 때 그것이 그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량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를 보여 주는 비율
 - 소득이 1% 변화할 때에 수요량이 몇 % 변화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의 변화율의 비율로써 나타냄
 - 예를 들면 가게의 지출을 생각할 때 식비나 의복비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소득의 증가만큼 증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소득탄력성이 1 이하
 - 교육비나 내구소비재에 대한 지출은 소득의 상승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소득탄력성이 1 이상
 -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대하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도 있음
 - 수산물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셋째, 비교우위 관점에서 원양어업에 요구되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는 정부 개입의 원인이 됨
 - 한 산업에 대한 규모의 경제 크기는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간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고정비용의 비중이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는 커짐
 - 원양어업은 대규모 투자비용이 요구되므로 높은 고정비용으로 인한 큰 수준의 규모의 경제는 불가피함
 - 한편 규모의 경제는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의 측면을 보유하고 있음
 - 즉 입어 및 쿼터확보에 성공한 원양 기업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비용이 체감하게 될 뿐 아니라 축적된 어로기술은 새로운 어로기술 개발의 한계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대규모의 초기 어로시설 투자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소수의 기업만이 쿼터확보로 인한 어획이 가능해지므로 원양어업의 시장구조는 규모의 경제,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 등의 요인에 의해 자연히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은 제한되며, 소수 기업에 의한 독과점 체제가 형성됨
 - 따라서 규모의 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대규모 투자에서 기인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개입은 필수적인 것임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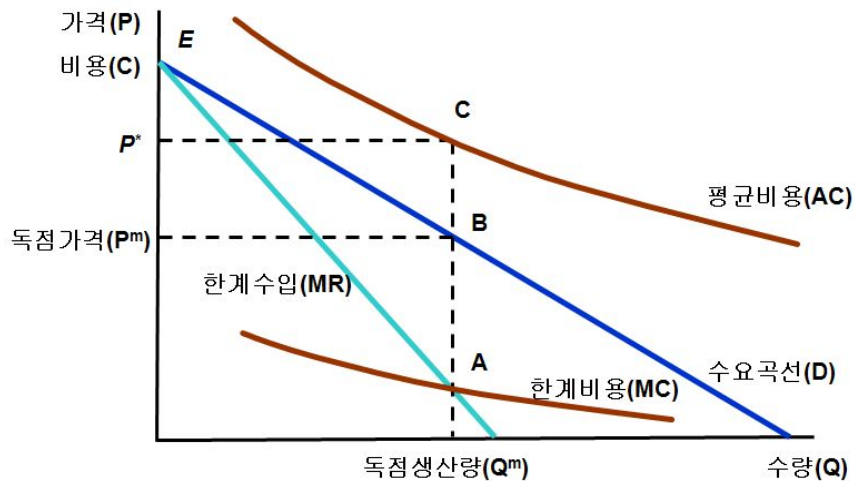
- 넷째, 원양어업의 경우는 연안국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관할하는 어장과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특수성과 함께 입어 및 쿼터 확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정부개입이 요구됨
 - 원양어업은 제품의 성능이나 수요물량이 시장에서의 소요 예측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반 산업과는 달리 정부개입에 의해 원양어업 진입의 요구조건이 우선되며, 생산물량이나 생산기간도 연안국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등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므로 국내 원양 선사들의 시장경쟁을 통한 신축적 가격경쟁보다는 원양어업 기업과 연안국 간 쌍방독점 관계에 의해 또는 거래 당사자 간 경직적인 기능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게 됨
 - 원양어업에서는 해당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보다는 입어 및 쿼터확보 유지가 강조되면서 입어확보로 인한 비용 수반과 어로시설 투자가 유발될 수 있는 것임
 - 또한 원양어업은 일반 산업에 비해 막대한 원양어로 설비투자를 수반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입어 및 쿼터확보 성공의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등 위험부담이 매우 높음
 - 이러한 원양어업의 특성, 연안국 입장의 불확실성 등은 정부개입의 또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음
- 다섯째, 원양어업의 발전단계 측면에서 후발 원양선사의 ‘시장 불완전성’이 정부개입의 또 다른 이유가 됨
 - 후발 원양선사들일수록 산업으로의 성공적 진입 시도에 비해 입어 및 쿼터 확보가 제약조건이 되어 비효율적 원양기업의 시장진입 또는 과소투자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됨
 - 후발 원양선사는 기본적으로 입어 및 쿼터 확보에 미숙하여 연안국에 의한 어획량의 적정 달성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정부가 시장기능을 대체하는 정부개입 방식이 요구되는 것임
-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원양어업은 시장실패, 입어 및 쿼터확보의 연안국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의존, 규모의 경제, 불확실성의 감수 등으로 인해 민간기업 또는 시장원리에 의해 발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 영리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에 대해 공공성 및 전략성을 강하게 보유한 산

업으로 대규모 투자비용과 함께 수익성 확보의 불확실성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임

- 따라서 경쟁력 있는 원양산업 육성이 목적이라면 적극적 정부개입은 필수적임
 - 특히 후발 원양선사들의 경우 입어 및 쿼터 확보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때까지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이외에도 정부의 지원 하에 원양산업과 같은 국가 전략적 산업의 육성을 위한 이론적 근거는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과 게임이론(game theory) 등에서도 찾을 수 있음

나. 원양어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기대효과

- 원양어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긍정적 시각에서 보는 견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일부 원양선사들의 독과점 체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여 인위적 진입장벽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개편으로 사회후생이 증대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원양선사는 비용 및 수익성 확보의 부담이 경감되어 기존 운영 형태일 때보다도 투자의 적극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신규 진입 원양선사들은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해지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국내외 수산물시장 점유율과 원양어업 경쟁력의 제고가 가능해질 것임
- 특히 해외어장에서 기존 원양조업국의 어장 점유율이 절대적이며 주요 조업국 간의 경쟁이 치열한 원양어업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그림 5-3> 원양어업에서의 고정비용과 정부지원

- 간단히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어도 고정비용이 크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산업에서 고정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해당 기업은 당연히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후생이 증대되는 역설적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
-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다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인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독점기업의 가격(P_m)이 설정됨
- 일반적으로 후발 원양선사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입어 및 쿼터 부족으로 인해 이미 설정된 적정가격(P_m)에서조차 고정비용이 반영된 평균비용(AC)을 감내할 수 없게 되어 원양선사 제품 단위당 B-C 면적만큼의 손실을 입게 됨
- 따라서 그 손실분(P^*CBP_m)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윤추구가 목표인 민간기업의 진입은 억제됨³²⁾
- 반면에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원양선사의 진입과 생산이 유도될 뿐만 아니라 생산량 수준이 Q_m 이상으로 증대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량 증대에 따른 고용유발과 생산유발을 기대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비자후생의 크기는 EBP_m 이 됨

32) 이무영,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항공기산업으로의 정부개입에 대한 개념 고찰”, 「항공산업연구」, 2009, pp. 57~67.

- 대규모의 고정비용이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원양어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당위성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 할당·배분의 구조

가. 외생변수

- 원양어업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해외어장이 있어야 하고, 이로부터 실제 어획할 수 있는 쿼터가 있어야 함
 - 해외어장은 연안국의 EEZ와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공해수역으로 나눌 수 있음
 - 연안국의 어획쿼터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협상, 민간협상, 투자 및 지원 등이 있어야 함
 - 국제수산기구의 어획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구가입 및 규범준수, 공헌 등이 있어야 함
- 원양어업이 해외수산자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안국과 국제수산기구와 관련된 변수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이는 해외어장에서 조업해야 하는 원양어업의 근본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임

나. 내생변수

- 국내적으로는 연안국 또는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장에 누가 진입할 수 있느냐, 또한 한국에 할당된 쿼터를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존재함
 - 이는 더 많은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 전략, 전술 등의 문제는 아니지만, 원양어업 시장에 대한 진입과 쿼터 배분에 관한 제도적 차원의 문제임
- 원양어업 시장의 진입을 다루는 허가제도와 할당된 쿼터를 국내 업체끼리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다루는 쿼터 배분제도는 기존업체와 신규업체의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갈등, 기존업체 간 갈등, 정부와 업체 간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는 것이 거래비용과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우 필요함
- 또한 제도적 기초를 튼튼히 함으로써 선진 원양어업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다. 본 연구의 초점

- 본 연구는 <그림 5-4> 중 ‘한국’으로 적힌 네모 안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정부, 기업, 허가제도, 쿼터 할당(배분) 등에 대한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원양어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임
- 정부는 ‘허가제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기업의 원양어업 진출과 퇴출을 통제함
 - 이는 어업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입력통제(input control)에 해당함
- 정부는 ‘쿼터 배분’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정부가 연안국 또는 국제수산기구로부터 할당받은 쿼터를 배분하는 기능을 함
 - 이는 어업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출력통제(output control)에 해당함
 - * <그림 5-4>에서 ‘쿼터 할당’은 ‘쿼터 배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함
- 따라서 연안국과 국제수산기구와 관련된 내용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 문제는 해외 수산자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정부, 기업 차원의 전략적 방법론의 문제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학계 등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그림 5-4>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 할당·배분의 구조

제 2 절 허가제도 개선방안

1.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

가. 현황

(1) 네거티브 방식의 개념

- 규제는 패러다임의 차이에 따라, 피수명자의 활동 및 행위를 제한함에 있어 특정 행위만을 허용하는지 또는 금지하는지에 따라 네거티브(negative) 규제와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 나누어지고 있음
 - 네거티브 규제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금지시키는 것임
 - 반면에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되, 예외적으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방식임
- 따라서 2개의 방식 중 네거티브 방식이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권적 권리를 보다 확장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가 오늘날 각광을 받고 있음
 - 특히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음

(2) 정부차원의 인·허가 제도 선진화 내용

-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사회 및 시장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2010. 10. 26)
- 근대 규제 법제가 도입된 이래 “원칙상 금지·예외 허용”이라는 인·허가 제도의 틀이 계속 유지

제 4 장 원양어업 쿼터 할당 및 배분방식 분석

- 전 산업의 50.2%가 진입규제 대상이며 인·허가 제도의 99%는 “원칙금지·예외허용” 체계로 규정
- 경직된 규제 중심의 인·허가체계는 기회의 불균등과 민간 활력 저하를 초래하여 시장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과도한 진입규제 또는 행위제한은 중소기업·청년층 등의 활동 기회를 제한하고, 일자리 창출도 제약
 - 시장경제의 활력 저하와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해 글로벌 경쟁시대의 투자처로서 매력을 감소
 -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성과 지수는 141개국 중 130위 (UN 세계투자보고서)
 - 경직된 인허가 규정은 IT 분야 등과 같이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 신기술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공정한 룰을 통한 공정사회 기반 강화 및 민간 창의성 제고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인·허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 추진
 - 기존의 ‘원칙 금지’ 방식을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여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룰을 확립
 - 출발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공정한 사회의 토대 마련
 - IT·유통·토지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창의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인·기업의 활동 범위를 확대
 - 경제활력의 제고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
 - “원칙허용·예외금지”는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 등 주요 국제규범 규율방식에 부합하는 투명한 제도
 - 인·허가 시스템 전환을 G20 정상회의를 통해 홍보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한국의 국격을 제고함

(3) 네거티브·포지티브 방식 사례

- 무역에도 네거티브(negative) 방식과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 있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네거티브 방식이란 정부가 지정 고시하는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자유로운 수출입이 허가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보다 높은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선진국을 비롯한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음
- 반면 포지티브 방식이란 자유로운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만을 공고 시에 열거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말하며, 후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보호주의 방식임

헌법재판소 결정 (2001. 6. 28. 2001헌마132)

서틀버스의 운행은 사회적 유해성이 없는 행위로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 유형이나 범위를 선별하여 그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입법방식을 취하는 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제한 입법의 체계와 방식에 부합한다(4인 의견).

- 빠른 기술·사회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가능함
 - IT분야 등과 같이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입법 수요가 빈번히 발생
 - 네거티브 규제체계에서는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되므로 사회변화와 기술발전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신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인 성장 가능

한미 FTA 협상의 양허 방식도 네거티브 방식

- 시장개방 대상에서 배제되는 분야, 시장 개방이 부분 제한되는 분야와 해당 조치를 기재하고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전면 개방하는 방식
- 한·미 양국이 시장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기술 발전에 따라 시시각각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시장 전체의 범위를 분명하고도 한정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

- 행정청의 재량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음
 - 법률에서 인·허가의 금지·불허가 사유를 구체화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하더

제 4 장 원양어업 쿼터 할당 및 배분방식 분석

- 라도 허용요건을 규정하고 허용요건 충족 시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적 허가제로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재량권 행사 방지
- 기본권의 최대 보장 및 국민 자율·창의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필요

<표 5-2>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의 비교

포지티브 규제체계	네거티브 규제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거된 것만 제한적 허용 • 국가의 감독·규제 위주 법체계 • 기본권의 최소 보장 • 융합 등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 곤란 • 유해행위·영업의 사전규제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한 것 외에 모두 허용 • 민간의 자율·창의 중심 법체계 • 기본권의 최대 보장 • 융합 등 기술변화에 기민한 대응 가능 • 유해행위·영업 방지 등은 사후관리감독으로 해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규제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규제

(4) 네거티브 규제의 유형

- 네거티브 규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
 - 유형1 : 법률이나 대통령령, 시행규칙에서 직접 금지·불허가 사유를 규정
 - 유형2 : 금지·불허가 기준·요건을 구체화하기 곤란한 경우 허용 기준을 유지한 채 규제체계만 네거티브로 규정

<표 5-3> 규제체계 유형별 특성 비교

	현행(포지티브)	네거티브
규제 체계	법령에서 허가요건 규정	(유형1) 법령에서 금지요건 규정 (유형2) 법령의 본문은 네거티브로 규정하고 허가요건 규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 여부 불분명 → 허가요건을 충족하여도 시장 수급 상황, 공익 등을 이유로 불허가 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요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 (유형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속행위 명확화 → 허가요건 충족 시 의무적 허가 • 허가의 규제체계 동일 • 장기적으로는 유형2를 유형1로 집진적 전환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 사례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먹는물 관리법」이 있음

<표 5-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네거티브 방식 개선안

현행 법령(포지티브)	개선안(네거티브)
<p>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0제8호 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p>가. ~ 아.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리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정치·종교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p>※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처에서 정함</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표 5-5> 「먹는물 관리법」 네거티브 방식 개선안

현행 법령(포지티브)	개선안(네거티브)
<p>제21조(영업의 허가 등)</p> <p>①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신설></p>	<p>제21조(영업의 허가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시설이 제20조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신고와 허가 (포지티브, 네거티브) 비교

- 헌법 체제상 기본권은 우선 보장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제한 가능하므로 포지티브 인·허가 체제보다 헌법 합치적임
 - 포지티브 인·허가는 개념적으로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자유를 풀어준다는 구조
 - 네거티브 인·허가 방식은 기본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이 범문화
 - 헌법의 기본권 보장 체계에 네거티브가 부합

-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본질적으로는 신고제
 - 신고 요건은 객관화된 사실 등 신청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한정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일정 행위를 허용하는 요건에는 행정청 판단이 개입되어야 할 사항이 존재하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판단을 맡길 수는 없음
 - * 요건 중 ‘상위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등은 행정청이 판단할 사항

- 따라서 규제 완화를 이유로 요건에 대한 분석 없이 무제한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전환할 수 없음 (입법적 한계)
 - 설사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전환하더라도 신고 요건 자체를 포지티브로 규정하면 포지티브 허가제와 다를 바 없어 규제 완화의 효과 반감 (집행의 한계)

<표 5-6> 신고와 허가(포지티브, 네거티브) 비교표

유 형	공익성의 강도	정부개입	기속성	허가범위
행정절차법의 신고	공익성 약함	약한 사전개입	기속, 기속	
신고를 요하는 수리	공익성 중간	약한 사전개입	기속, 재량(선택)	
포지티브 규제방식	공익성 강함	강한 사전개입	- 행위 기속, 재량 - 요건 기속, 재량	매우 좁음
네거티브 규제방식	공익성 강함	강한 사전개입	- 행위 기속 100% - 요건 기속, 재량	매우 넓음

나. 문제점

- 원양어업의 신규 허가에 대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함
 - 「원양산업발전법」 규정에는 원양어업 신규 허가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나, 실제로 현재 원양어업에 대한 신규허가를 거의 하지 않고 있음
- 포지티브 방식에 따른 규제 중심의 허가제도의 경직성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회의 불균등과 민간 활력 저하를 초래하여 시장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존 ‘원칙 금지’ 방식은 기존 어업자에 대한 허가 독점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신규어업자가 신규 진입의 기회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음
 - 정부로부터 신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원양산업협회의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관행상 요건까지 추가되어, 신규 허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기존 허가방식은 허가 시 행정청의 재량판단 여지가 많아 허가에 대한 공정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표 5-7> 원양어업 허가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신규 허가*		양도에 따른 허가**	재허가***	계	변경*
	신조선	중고선				
2005		3	37	51	91	16
2006	1	2	13	48	64	31
2007		7	20	57	74	25
2008	2	3	10	43	58	25
2009		2	16	48	66	38
2010	1	3	19	61	84	22
2011 (6월말)		3	11	23	37	5

* 신규 허가 : 원양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한 허가

** 양도에 따른 허가 :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해 어선의 양도 등으로 다시 허가

*** 재허가 : 원양어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허가

* 변경 : 허가 어선의 변경

※ 이 자료는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허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공식 허가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 개선방안

(1) 「원양산업발전법」 상 허가조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제화

- 허가의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불허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 필요함
- 허가 시 네거티브 리스트를 예시한다면 다음과 같음
 - ① 원양어업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허가를 신청한 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원양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수산자원의 상태 및 원양어선의 수 등에 비추어 원양어업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할 현저하고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만, 제5항에 따라 허가의 정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표 5-8> 네거티브 방식의 허가조항 법률 개정(안)

현 행	1차 개정안	최종 개정안
제6조 (어업허가 및 신고) ① (생략) <신설> ② ~ ⑤ (생략)	제6조(어업허가 및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허가정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자원 보존 조치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2.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3. 연안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수산자원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6조(어업허가 및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허가의 정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양어업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허가를 신청한 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원양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수산자원의 상태 및 원양어선의 수 등에 비추어 원양어업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할 현저하고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2) 신규허가 활성화 추진

- 참치어선의 경우 신조 또는 저선령 어선은 지역수산관리기구 등록 척수 범위 내에서 신규허가가 가능하도록 허용
- 다른 업종의 경우 어장별 적정 허가 척수를 설정하고 신조 어선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함

제 4 장 원양어업 쿼터 할당 및 배분방식 분석

- 해외트롤, 새우트롤, 저연승, 통발어업은 업종 간 전업을 허용하고, 어업조정 상 문제가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조업구역 및 겸업을 허용하도록 함

<표 5-9> 어장성격에 따른 어업허가제도 운영방안

구 분	허 가	내 용
공해어장	개방을 원칙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EEZ 어장 (정부협상)	기준 설정에 따른 개방	- 기득권 인정, 신규업체 진입 - 신조선, 저선령 어선 ex) 러시아
EEZ 어장 (민간협상)	기준 설정에 따른 개방	ex) 뉴질랜드
신어장	독점적 허가 (일정 기간)	- 신어장 개척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라. 기대효과

- 「원양산업발전법」 상 허가 조항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허가의 제한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규허가 활성화 및 진입장벽 해소
- 허가제한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원칙 허용’ 방식의 도입을 통해 기존 허가의 독점권 약화를 통해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룰(fair rule)의 확립
 - 출발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공정한 허가 기준의 토대 마련
- 법률에서 인·허가의 금지·불허가 사유를 구체화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허용 요건을 규정하고 허용 요건 충족 시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적 허가제로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재량권 행사 방지 가능

2. 사전승인제의 도입

가. 현황

- 현행 허가제도는 어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박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박 도입 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업체는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함

(1) 일본의 사례

- 일본의 경우 「어업법」에서 어업허가 전 어선 건조 또는 구입을 앞두고 사전 허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업의 인가(起業의 認可)

제54조

1. 지정어업(모선식어업 제외)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현재 선박을 사용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선박의 건조에 착수하기 전 또는 선박을 물려받거나, 빌리거나, 반환받거나, 기타 선박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선박별로 미리 起業에 대해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2. 모선식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현재 모선 또는 독항선 등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모선 혹은 독항선 등의 건조에 착수하기 전 또는 모선 혹은 독항선 등을 물려받거나, 빌리거나, 그 반환을 받아 기타 모선 혹은 독항선 등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모선 및 독항선 별로 각각 미리 起業에 대해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모선식어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현재 모선 또는 독항선 등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모선과 동일한 선단에 속하는 독항선 등의 전부에 대해 모선식어업의 기업 인가가 신청되고, 또는 해당 독항선 등과 동일한 선단에 속하는 모선에 대해 모선식어업의 起業인가가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모선 또는 독항선 등에 대해 미리 기업에 대해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4. 제52조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인가를 준용한다.

제55조

1. 起業인가를 받은 자가 그 기업인가에 근거하여 지정어업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 신청내용이 인가를 받은 내용과 동일하고, 해당인가와 관련되는 지정어업 허가의 유효기간중에 있을 때는 다음 제5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를 해야 한다.
2. 기업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를 받은 날짜부터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한 기간 내로 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기업인가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원양과 담당자 인터뷰 내용

일본의 원양어업 사전 인가 관련

-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선박이 없거나 선박을 건조 중일 경우에는 「어업법」 제54조에 따라 인가를 해줌
 - 인가를 받고 나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철회하게 됨(제55조 : 기업의 인가의 무용화)
 - 현재 10개월이 지나도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무효화시키고 있음

(2) 국내법 사례

- 국내법에서 사전승인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건축허가와 원자력법으로, 이는 단계적 행정결정 중 부분허가로 볼 수 있음
 - 부분허가란 단계화된 행정절차에서 일부에 대해 사전에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함
 - 원자력 발전소의 설립·운영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일부 공사에 관련된 행위 등을 미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적 결정을 유보하면서 부분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으로 그 유용성이 인정됨
 - 현행법상 「원자력법」 제11조 3~4항, 「주택법」 제29조 1항 단서, 4항이 부분허가에 해당됨

(가) 건축허가(建築許可) 상 사전승인제

-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층수가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장, 창고), 다중이용 건축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 함
- 또한 21층 이상의 건축물,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 음식점만 해당),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건축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해주며,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함

(나) 「원자력법」의 사전승인제

- 「원자력법」 제11조 3항의 부지 사전승인 제도는 장기간의 준비·공사가 필요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에 추후 부지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한 건설허가 신청 불허 시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사전승인제를 두고 있음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는 장기간의 준비·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건설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부지의 부적합성을 이

- 유료 불허가될 경우 그 불이익이 매우 크고
- 또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의 이와 같은 특성상 미리 사전공사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
 - 건설허가 전에 미리 그 부지의 적법성 및 사전공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고 유효·적절한 건설공사를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대판 1998. 9. 4. 97누19588)

「원자력법」의 사전승인제

제11조(건설허가)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허가 신청 전에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허가기준) 제11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나. 문제점

- 현행 허가제도는 “선박”에 대한 물적 허가로 선박이 있어야 원양어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현행 제도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선박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원양어업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선박을 도입하였다가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업체는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음
-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업체들이 선박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 업체의 원양어업 진입에도 장벽으로서 작용하고 있음

다. 개선방안

(1) 「원양산업발전법」 사전승인제 도입

- 선박 건조 및 구입 시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업체들의 선박 도입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유발하고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선박 도입의 경우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함
- 「원양산업발전법」에 부분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선박의 건조 및 구입을 포함한 선박 신규 도입의 경우 일정 기간의 유효기간을 둔 사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 선박 이외의 관련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사전허가를 주고,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선박을 마련한 경우 정식허가를 주도록 개정

<표 5-10> 원양어선 사전승인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 분석

허가의 내용	장 점	단 점
물적 허가(현행) : 선박에 대해 허가	-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선박을 확보하면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쿼터배분이 용이	- 선박이 있어야 허가 신청 - 허가가 쉽지 않음 - 조업구역 입어 사전협의 필요 - 배타적, 독점적 권리 형성 - 용선 등이 쉽지 않음
물적 허가(현행)+사전허가제 : 선박에 대해 허가 (단 선박이 없어도 사전 허가 가능)	- 선박이 없어도 사전허가 가능 - 허가가 비교적 쉬움 - 용선이 비교적 용이 - 선박 도입에 따른 허가여부의 위험 부담이 없음 - 쿼터배분이 용이	- 조업구역 입어 사전 협의필요 - 배타적, 독점적 권리 형성

<표 5-10> 원양어선 사전승인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 분석 (계속)

허가의 내용	장 점	단 점
인적 허가(전면 수정) : 개인, 법인에 대해 허가 (선박이 있어야 하지만 가 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음)	- 선박이 없어도 사전허가 가능 - 허가가 비교적 쉬움 - 용선이 비교적 용이 - 선박도입에 따른 허가여부의 위험 부담이 없음	- 선박 도입 시 허가를 받는 다면 이중허가가 될 수 있음 - 쿼터배분이 어려움

라. 기대효과

-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선박 신규 도입에 대한 위험부담 감소
 - 현행 “선박”에 대한 허가인 물적 허가는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선박이 없는 경우 허가신청이 불가능하고
 -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다시 선박 신규 도입에 소극성을 보이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3. 일제갱신제의 도입

가. 현황

-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해 원양어업을 위해서는 어선별로 유효기간 5년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허가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체 허가만 가능(동법 제7조)
 - ① 국제수산기구에서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 사항이 있는 경우
 - ②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아닐 경우
 - ③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에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④ 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원양업체의 어획수요에 비해 국제수산기구에서 우리나라에 할당한 쿼터가 부족한 어종 및 수역은 ICCAT의 눈다랑어 및 CCSBT 남방참다랑어임
 - 우리나라 쿼터에 대해 해당 수역 입어 어선별로 균등하게 배분
- 최근 들어 원양 수산자원의 감소와 환경보호 노력에 따라 원양어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어획쿼터의 할당도 계속 축소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특정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조업 자체를 금지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지역수산관리기구가 특정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수를 줄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감축함
 - 그러나 원양어업의 허가가 어선마다 달리 되어 있고, 5년의 유효기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원양어업의 허가 일제갱신제를 도입하여 경쟁력이 낮은 어선, 원양어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국익을 저해하는 어선 등은 퇴출시키고 새로운 어업자 또는 어선이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 제기

(1) 국내 사례

-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2001년 「어장관리법」을 제정
 - 최근 어장의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어장의 생산성과 양식 수산물의 품질이 저하됨
 - 어장휴식 및 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등 어장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어장관리법 제정

- 「어장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동시갱신 등 어장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해역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 장관은 어장관리해역 중 특히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어장휴식의 실시나 신규 어업면허의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는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제5조 및 제7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어장에 대하여 종전의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는 내용의 면허 등 동시갱신제도를 실시하여 어장관리해역별로 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을 일치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도모(제8조)

(2) 일본의 사례

-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하여 일제강신제를 최초로 실시한 국가는 일본임
 - 1940년대 일본 원양어선은 전 세계 해역에 진출하고 있었는데, 연안국의 자원국가주의와 더불어 유엔해양법 회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 원양어선의 조업어장이 상실 또는 조업척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 일본은 「어업법」에 이들 어선의 허가와 관련하여 일제강신제 규정을 신설하였음

- 일본 「어업법」공시에 기초한 허가방식과 병행하여 자원사정의 변화나 어업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조정상의 조건변화 등에 따라 허가 범위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제갱신제를 채택하고 있음

- 일제갱신제는 각 허가마다 다양하게 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지정어업의 종류별로 통일하고, 허가의 존속기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지정어업과 관련한 허가는 일제히 동일 시점에 만료됨(일본 「어업법」 제60조 2항)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원양과 담당자 인터뷰 내용

일본의 일제갱신제 시행 관련

- 전체적으로는 5년 단위의 허가이나 포경선과 연어 등에 대해서는 1년 단위 허가를 부여하고 있음
- 「어업법」 상에는 그 규정이 없으나 일본은 처음부터 일제갱신제 방식을 취해왔음

일본 가쓰오 마구로 어업협동조합 담당자 인터뷰 내용

일본의 일제갱신제 시행 관련

- 일본은 일제갱신제를 1946년부터 시행해 왔기 때문에 모든 허가가 다 똑같은 날짜임 (2012년 8월이 다음 갱신일)
- 업자 개개인이 갱신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 정리하여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허가의 수가 100여척이라 별 문제 없지만 과거에 1,000척이 넘었을 때는 업무의 부담이 매우 컸음
- 현재 신규허가 신청은 거의 없고 (인·허가를 포함하여) 갱신 탈락의 경우는 많음 (20년 동안 80척 정도가 갱신 탈락)

나. 문제점

- 현행 각각 선박에 대한 허가신청 및 갱신으로 인한 허가의 시작 일자 및 허가 기간이 선박별로 달라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규제강화 요구가 있게 될 경우 수용이 어려움
- 지역수산관리기구가 특정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수를 줄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감축하고 있으나, 원양어업의 허가가 어

선마다 달리 되어 있고 5년의 유효기간을 보장하고 있어 어업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선박별로 허가 유효기간이 다를 경우 어업허가 제한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수립이 어려움
 - 특정 지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의 허가를 제한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특정 지역의 어선 중 일부 어선의 허가를 제한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허가 어선을 선별할 것인가가 문제가 발생함
 - 유효기간이 서로 다른 어선을 그대로 두고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요구하고 있는 기간을 맞추기 위해 어업허가를 제한할 경우에는 선령이나 선박의 감항능력이 양호한 선박이 허가를 받지 못하고 감항능력이 없는 선박이 어업허가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개별 허가는 허가신청 및 허가 갱신과 관련한 행정업무 및 행정비용이 크게 들어가고 허가신청 등에 따라 원양업체의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음

다. 개선방안

- 원양어선의 척수 규제로 인하여 더 이상 조업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업업종별 또는 조업해역별로 허가의 신청기간과 유효기간을 통일시키는 일제갱신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허가의 우선순위 규정 마련

(1) 제1안 : 국내 원양어업 전체 일제갱신제 시행

- 국내 원양어업 전체에 대해 시행하는 방안은 가장 포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

(2) 제2안 : 조업해역별로 일제갱신제 시행

- 조업해역별로 시행하는 방안은 지역수산관리기구가 해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조업규제는 특정 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음

(3) 제3안 : 조업업종별로 일제갱신제 시행

- 조업업종별로 시행하는 방안은 조업규제가 특정 자원을 대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수산관리기구가 해역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음
- 위의 3가지 방안 중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원양어업의 허가를 통일하는 방안 수립 필요

라. 기대효과

- 허가의 시작일자 및 허가기간의 통일은 연안국과 지역수산관리기구가 급격하게 입어쿼터를 삭감하는 경우 정부의 분배 및 조절기능의 원활한 작동이 가능하도록 함
- 일제갱신제를 통해 허가신청 및 허가 갱신과 관련한 행정비용의 절약 및 행정업무의 간소화 효과가 기대됨
- 원양어업의 허가신청과 허가증 발급이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허가신청 지연에 따른 업계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됨
- 허가기간 통일 시 어업허가 제한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수립이 용이하며, 원양어업자 간 허가관련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4. 우선순위의 명확화

가. 현황

- 「원양산업발전법」 제25조 3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가 선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새로 개발한 해외어장일 것
 - 선령 10년 이하의 어선을 갖출 것
 - 연안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금지하는 어종이나 어업이 아닐 것
 -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등
- 어업허가의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면 행정관청이 어업의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허가의 신청이 경합할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허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됨

(1) 어업허가 우선순위의 일반원칙

- 우선순위는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를 규정한 것임
 - 우선순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여 허가를 처분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함(대법원 판례 1996. 6. 11 선고95누10358)
 - 일반적으로 허가는 먼저 신청한 것부터 심사하여 신청 요건을 갖춘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는 선원주의(先願主義)가 원칙임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어업허가는 조업구역이 공유수면일 뿐만 아니라 수면을 종합적 고도이용을 기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 등에 의거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능력을 구비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어업조정 또는 자원보호상 어업허가 정수를 정하고 있거나 조업 척수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어업허가 신청이 그 제한하는 수를 초과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허가할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는 어업허가의 신청자가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허가의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면 행정관청은 어업허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어업허가의 신청이 허가 건수를 초과하여 경합할 경우를 대비하여 허가받을 자의 순서를 정한 것이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규정임
 - 어업허가가 단순한 금지의 해제이지만 그 해제의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특정 어업에 대한 허가 신청의 경합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음

(2) 어업허가 우선순위에 관한 법적 쟁점

(가) 기속재량행위의 문제

- 행정행위는 법규 하에서 법의 구체화 혹은 집행상 행해지는 행위이지만 근대 행정의 광범위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엄격한 법의 기속이 요청되는 행정 분야와 적극적으로 공익목적 달성이 필요한 행정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 행정행위에는 비교적 법의 기속을 많이 받는 경우와 비교적 행정청의 재량이 많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 법의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 어느 정도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고 이 재량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위를 ‘재량행위’라 함

- 우선순위에 의한 어업허가가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에 다름이 있으며, 대법원은 기속재량행위로 보고 있음

「수산업법」 우선순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 대법원은 “「수산업법」 제27조의 우선순위는 도지사가 어장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 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법 제8조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도지사가 어장의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기만 하면 의무적으로 그 어장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최우선 순위자에게 어업의 면허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고 판시함

- 기속재량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재량권의 행사가 아니라 법 개념의 충족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기속재량은 기속행위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속재량이란 법문상으로는 행정청의 자유로운 재량을 허용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처분의 요건과 여부에 대하여 법의 취지가 이미 일의적(一義的)으로 확정되어 있는 까닭에 행정청의 재량은 단지 구체적인 경우에 그 취지나 법칙이 무엇인가를 해석·판단하여 행위 함을 내용으로 할 뿐인 재량을 뜻함
 - 따라서 기속재량을 위반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문제

- 우리나라 「헌법」 제75조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제대상의 정도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예측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수산업법」의 규정은 동법 제41조 제4항 후단에 “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한다”고 되어 있음
- 이는 법률로부터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 즉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며,
- 또한 관련 법조항 전체를 보고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허가의 우선순위는 제41조 4항 이외의 다른 법조항이 없음
- 더구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허가의 우선순위를 허가관청에 위임하였으나, 허가관청에는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다)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문제

- 오늘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997년 이후 귀어인구가 증가하면서 어업에의 진입을 희망하는 자의 수도 증가하였으나, 현행 어업허가 또는 면허의 우선순위 규정이 새로이 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
-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선택, 직업종사, 직업결정, 직업변경 및 직장선택의 자유, 경쟁의 자유, 겸직의 자유, 경영의 자유를 말함
- 오늘날 우리나라는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장 축소 등 수산업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으나, 어업허가가 갖는 수익적 효과 때문에 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들의 경합현상은 불가피함
-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는 단순히 어업허가를 받을 자의 순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나, 이것이 어업에의 진입을 희망하는 자의 신규 진입을 제한할 수도 있음
- 한편으로는 어업경영의 영속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의 우선순위는 재허가의 법적 근거가 됨으로써 특정 개인에게 어업허가를 영구적으로 귀속시키는 장치가 될 수도 있음

나. 문제점

- 어업허가의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면 행정관청이 어업의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가신청이 경합할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허가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음
- 현행 우선순위 규정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해석상의 다툼의 가능성이 존재
 - 현행 우선순위 규정이 어느 경우의 허가에 대해 적용하는 사항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어선이 허가를 받는 경우로는 (i)신규 허가(원양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한 허가), (ii)양도에 따른 허가(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해 어선의 양도 등으로 다시 허가), (iii)재허가(원양어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허가), (iv)변경허가(허가 어선의 변경) 등이 있음
- 「원양산업발전법」 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여러 조건 중 선령을 제외한 다른 조건은 충족시켰으나, 선령 10년 이하의 어선을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선령 11년의 선박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어업 현실상 신규 어업허가의 발급이 규제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허가관청이 관련 법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체계상의 미비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음

<표 5-11> 원양어업 허가우선순위 법제화 및 장단점 분석

조건	문제점	필요성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양어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원양산업발전법」 제25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대상의 불명확성 - 신규로 하는 어업허가인지, 기존 어업자들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할 경우에 현재의 허가수보다 적은 어업허가를 할 때에의 우선순위규정인지 불분명함 - 또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지, 1가지 조건 이상만 충족시키면 되는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어업에 대한 허가 신청의 경합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 - 행정행위의 독선과 남용을 불러올 수 있음 - 허가의 수를 줄여서 재허가해야 할 경우에 대비할 필요

다. 개선방안

- 허가신청 경합의 경우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허가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우선순위 조건인 새로 개발한 해외어장일 것, 선령 10년 이하의 어선을 갖출 것, 연안국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금지하는 어종이나 어업이 아닐 것,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등에 대한 충족 필요요건의 명확화
 - 신규로 하는 어업허가인지, 기존 어업자들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할 경우에 현재의 허가수보다 적은 어업허가를 할 때에의 우선순위규정인지에 대한 명확화
- 어업의 특성상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는 최초로 어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유효기간(5년)이 만료하여 재허가를 받을 경우 그 재허가는 3번(또는 4번)까지 기존의 우선순위 규정을 그대로 인정하여 어업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되,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고 어업허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모든 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자원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가하고 있고,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자원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어획쿼터의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규정에 불법어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된 자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명확한 우선순위 배제 요건도 마련해야 함

「수산업법」 제13조 제7항의 우선순위 규정 배제 조항

「수산업법」 제13조 제7항의 우선순위 규정 배제 조항은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및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분할 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로 하고 있음

라. 기대효과

- 어업허가 우선순위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신조선 건조, 신어장 개발 등 원양어업의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허가신청 경합의 경우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허가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 제거를 통한 「원양산업발전법」 해석 및 적용의 용이성 확보

5. 쿼터연계형 허가정수제의 도입

가. 현황

- 「수산업법」의 어업허가의 정수·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황, 현재 당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자 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야 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원양산업발전법」에도 신설
- 우리나라 어선어업에 대한 어업허가의 정수는 1929년 조선어업령에서 해역을 제1구에서 제6구로 나눈 기선저인망어선과 해역을 제1구에서 제4구로 구분한 잠수기어선에 대한 조업구역과 허가 정수를 정한 것을 시초로 하고 있으나, 원양어업에 대해서는 조선어업령을 위시한 「수산업법」에서도 허가 정수를 정하지 않고 있음
- 「원양산업발전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정할 수 있다(제6조제4항)고 규정하고, 동법 제6조 제5항에서는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원양어업 허가의 정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는 영 제8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별 또는 해역별로 정하며(제1항),
 - 외국과의 어업협정, 신규어장 개발 등으로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며(제2항),
 -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농림수산식품부 고시·훈령·예규에는 원양어업 허가의 정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음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어

획노력을 일정 한도로 규제하기 위해 특정 어업의 허가 건수를 제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어업허가 정수는 톤수의 상한선을 정한 어업과 하한선을 정한 어업으로 구분됨
 - 톤수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은 총톤수 제한을 염두에 둔 것이며, 하한선만을 정한 것은 어업의 발달 및 대형화 촉진을 위하여 상한선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 상한선을 두지 않을 경우 어획노력량이 정해지지 않음으로써 그 정수를 자연적 조건보다 사회적 조건에 비중을 둔 고려라 볼 수 있음

일본의 허가정수 결정방식

일본 「어업법」 제58조 1항은 선박 총톤수별 척수, 총톤수별 조업 구역별 척수, 총톤수별 허가 기간별 척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정수 결정 방식을 여러 가지로 운용하고 있음

나. 문제점

- 명확한 사회·경제관에 입각하지 않은 어업허가 정수의 결정은 행정부의 권리남용의 우려가 매우 높음
- 현행 법률에서 어업허가 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허가해야 할 건수보다 허가를 신청하는 수가 많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뉴질랜드 조업업체의 사례

- 뉴질랜드 입어와 같이 쿼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허가를 주면 다른 업체에 피해를 주게 됨
 - 사조오양과 동남에 대한 허가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 업체들은 시장에서 쿼터를 구입하면서 두 업체 간 다툼이 생기고 있음
 - 사조오양은 모든 쿼터를 시장에서 구입하며, 동남은 30~40% 정도는 쿼터홀더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방사에서 받고 70% 정도는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음

다. 개선방안

- 어업허가의 정수는 허가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리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함
 -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도입되어 허가가 완화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해야 함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의 종류별 또는 해역별로 허가의 정수를 미리 정하고, 원양어업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또는 민관 합동 위원회가 조정하도록 법제 정비
- 뉴질랜드 입어와 같이 쿼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허가를 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쿼터량을 고려한 쿼터연계형 허가정수제 도입이 필요

<표 5-12> 쿼터연계형 허가정수제 도입방안

현 행 법	시 행 규 칙	실 제	개 선 방 안
-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정할 수 있다(제6조④) - 수산자원의 상태 - 원양어선의 수 -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는 영 제8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별 또는 해역별로 정한다. - 외국과의 어업협정, 신규 어장 개발 등으로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원양어업 허가의 정수가 정해지지 않았음	- 원양어업 종류별 또는 해역별로 허가의 정수를 설정 - 쿼터연계허가정수 설정 - 원양어업상황변화에 따라 정부 또는 민관 합동 위원회가 조정

라. 기대효과

- 허가규정의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에 따른 “원칙적 허가” 시 어종별 또는 해역별 허가정수 설정에 따른 업체 간 갈등 방지

제 4 장 원양어업 쿼터 할당 및 배분방식 분석

- 쿼터가 확보되지 않거나 현행 쿼터가 감소되는 경우 허가 개방은 분쟁발생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쿼터연계형 허가정수제를 통해 업체 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허가정수의 명확화는 행정재량 남용 및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고 원양어업의 상황 변화에 따라 민관 합동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가능

6. 정부의 조정 및 제재 기능 강화

가. 현황

- 원양산업과 관련한 종합계획, 허가정수 결정, 구조개선, 원양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원양산업발전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음
-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가 구성 및 운영된 적이 없음

「원양산업발전법」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의 설치·운영)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의 설치·운영)

- ①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2.29>
 1.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양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원양어업 허가정수 결정에 관한 사항
 4. 원양어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원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2.2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원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 ④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개정 2008.2.29>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⑦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의 남설과 형식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원양산업발전심의회는 폐지대상 위원회에 포함되었음
- * 2008년에도 정비대상 위원회로 포함되었으나 국회계류 등으로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 위원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양산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원양산업발전법」에 불법어업에 대한 법적 강조가 미약하고, 처벌 규정도 매우 경미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원양업체가 스스로 불법어업을 하지 않겠다는 인센티브가 강하지 않고, 어업 현장에서 직접 조업하는 선장은 항상 불법어업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음

나. 문제점

- 신규허가, 허가정수 및 쿼터 배분 등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관련 심의 쟁점이 많이 있으나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가동되지 않고 있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원양산업발전심의회는 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구성·운영된 적이 없는 것은 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모든 관련 문제를 업계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됨
-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해외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은 해당 업체는 물론 한국의 모든 원양업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업체 스스로 불법어업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제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다. 개선방안

- 원양어업과 관련한 신규허가, 허가정수, 쿼터 배분, 쿼터 거래 등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롤 모델로 삼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화 필요
- 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현행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방안,
 - 둘째, 현행 심의회를 폐지하고 원양산업의 현실적인 주요 쟁점을 조정하는 원양산업조정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방안은 현행 제도를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심의하는 내용이 원양산업발전계획, 균형발전, 허가정수, 구조개선, 경쟁력 강화, 원양산업 지원 사항 등으로 업계의 현안이 되는 사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둘째 방안은 신규 위원회를 새로 설립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원양어업 분쟁조정, 허가정수 결정, 허가 우선순위 심의, 쿼터 배분

제 4 장 원양어업 쿼터 할당 및 배분방식 분석

심의 등 업계의 현실적 주요 현안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정부의 제재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신설해야 함
 - 연안국 또는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수역에서 조업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
 - 또한 IUU 어업과 관련하여 어획·소유·운반·보관·판매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

-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과 IUU 어업은 해당 업체는 물론 원양업계 전반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함
 - 불법어업자에 대해 강력한 불이익을 주고, 최악의 경우 어업허가를 취소함으로써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함
 - 반면 준법 원양업체에 대해서는 쿼터 배분을 포함하여 메리트(merit)를 부여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함

- 불법어업 등을 단속하기 위한 감독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추진
 - 원양어업 감독 공무원이 원양어업의 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수산물의 유통질서 등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함
 - 필요에 따라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고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농산물원산지, 수산물원산지, 양곡관리, 가축전염병예방 등 전체 40개 업무에 사법경찰관 지정

* 「수산업법」 제73조(사법경찰권)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국제수산기구 등의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라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IUU 어업 선박에 대한 국제수산기구 또는 제3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국으로부터 항만국(port state) 검색 요청 시 검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함

- 항만국 검색 대상선박이 입항할 경우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미 신고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 마련
- 원양어업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국 검색 등 「원양산업발전법」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을 원양어업감독관에 지명

○ 항만국으로서 검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 항만에 입항하고자 하는 경우
- 국제수산기구와 제3국 정부로부터 IUU 어업 선박 또는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검색을 요청한 경우

<표 5-13> 항만국 검색과 관련한 국제기구의 계획 및 결의

연도	국제기구	주요 내용
2001년	제24차 FAO 수산위원회	IUU 어업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수립
2008년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IUU 어업방지를 위한 수정결의
2009년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IUU어업 추정 어선목록 작성에 대한 결의
2010년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관할 수역 내 연어 불법조업 및 운반 선박에 대해 한국 정부의 항만국 검색 요청

<표 5-14> 어업허가와 관련한 심층인터뷰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허가와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상」의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중소기업의 신규어장 개발 및 신규시장 개척에 들어가는 엄청난 노력에 대한 이해 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음 	업체
B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는 정부의 행정행위,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위해서는 동종 업체들로 구성된 원양협회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협회가 중심이 되어 허가를 판단하는 민간위원회를 두는 방안과 관련하여, 협회는 회원사 중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원양산업발전법」에 위원회 규정은 있지만, 이러한 성격은 아님 	단체

라. 기대효과

- 원양어업과 관련한 신규허가, 허가정수, 쿼터 배분, 쿼터 거래 등의 문제를 정부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업체 간 형평성 도모 및 분쟁 조정 역할 가능
-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원양업체가 연안국과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장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7. 허가제도 개선방안 요약

<표 5-15> 원양어업 허가제도 개선(안) 정리표

개선방안(안)	주요내용	기대효과
허가제도의 네거티브 방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시 네거티브 리스트(안) 제시의 법제화 추진 - 참치어선의 신규허가 및 타 업종 어장별 적정 허가척수 설정, 신조 어선 우선허가, 해외트롤, 새우트롤, 저연승, 통발어업은 업종간 전업 허용, 어업조정 상 문제가 없는 업종은 조업구역 및 겸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허가 활성화 및 진입장벽 해소 - 공정한 룰 확립 및 공정한 허가 기준 토대 마련 - 부당한 재량권 행사 방지 가능
사전승인제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신규도입시 유효기간두어 사전허가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도입시 허가의 불확실성 해소
일제갱신제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원양어업 전체 일제갱신제 시행 - 조업해역별로 일제갱신제 시행 - 조업업종별로 일제갱신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어쿼터 삭감 경우 정부의 분배 및 조절 기능, 행정비용 및 사회적 비용 감소, 합리적인 기준 수립 용이, 허가 관련 갈등 최소화
우선순위의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어업 허가신청 경합의 경우 명확한 기준 및 법제도(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불명확성 제거 및 적용 용이성 확보
쿼터연계형 허가정수제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어업 종류별/해역별 허가 정수를 미리 정하고, 원양어업의 상황변화(쿼터확보 고려) 정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간 갈등 방지, 행정제량 남용 및 행정비용 감소
정부의 조정 및 제재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위원회를 통한 신규허가, 허가정수, 쿼터배분, 쿼터거래 등의 문제 심의 및 쿼터 배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간 형평성 도모 및 분쟁 조정 역할 가능

제 3 절 쿼터 배분방식 개선방안

1. 어장별 맞춤형 쿼터배분

가. 현황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쿼터의 경우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개발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국별로 쿼터 할당을 하고 있고, 할당된 쿼터에 대해 한 국원양산업협회가 자율적으로 국내 업체에 배분하고 있음
- 연안국 쿼터의 경우 정부가 직접 쿼터협상을 하거나 민간이 입어협상을 하여 쿼터를 확보하고 있음
 - 정부가 확보한 쿼터의 경우에는 정부 기준에 따라 국내업체에 배분하고
 - 민간이 직접 확보한 쿼터의 경우는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음

나. 문제점

- 원양업체 간 쿼터 배분을 둘러싼 갈등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은 어장, 업종별 여건 및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쿼터 배분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움
- 어종별, 해역별, 업종별로 쿼터 배분과 관련한 많은 변수가 있음
 - 수역(공해/EEZ), 쿼터 할당 주체(국제기구/연안국), 쿼터 할당에 대한 기여도(민간 주도 쿼터확보/정부 주도 쿼터확보) 등의 변수가 명확한 쿼터 배분기준의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여건에서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대부분은 업계 자율 즉, 한국원양산업협회 주도의 쿼터 배분이 이루어져왔음
 - 이에 따라 기존업체와 신규진입 희망업체 간의 쿼터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다. 개선방안

- 원양어업은 어장, 업종별 여건 및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 어종별, 해역별, 업종별로 적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표 5-16> 쿼터 배분방식과 관련된 심층인터뷰 내용

구분	주요 의견수렴 내용	비고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 조업여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원양어업을 한 방식으로 정리하기는 매우 어려움 • 조업수역 및 어종별로 지침을 만들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실제로도 이 방식을 이미 취하고 있음 	정부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제도 및 쿼터 할당 방식은 어장마다 지역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함 • 국제기구 쿼터와 연안국 쿼터(북양, 뉴질랜드)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함 	업체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마다 상황이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입어방식 : 적당 얼마, 배 크기에 따라 얼마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규진입을 막으려는 것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뿐이므로 명분이 약함 - 쿼터 배분 : 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규진입이 어려움 	업체

(1) 지역수산관리기구 쿼터 배분기준

- 지역수산관리기구 내에서 개발한 쿼터 할당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쿼터 할당을 받기 때문에,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쿼터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구별로 제시되고 있는 쿼터 할당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
- 지역수산관리기구 할당 쿼터의 국내 쿼터 배분 시에도 기구의 할당기준과 연계하여 쿼터 배분 희망업체의 할당기준과의 적합성 및 기준 준수 등을 평가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
 - 특히 IUU 어업의 경우에는 쿼터 조정 등으로 인한 안정적 조업입지를 악화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쿼터 배분 시 IUU 어업 등 국제규범 이행실적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연안국 할당 정부쿼터 배분기준

- 연안국 할당 정부 쿼터(GG quota)는 공공재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배분방식의 공평성을 고려해야 함
 -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는 러시아의 경우로서 쿼터 배분에 대한 논란이 최근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업체의 기득권과 신규 진입업체의 형평성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3) 연안국 할당 민간쿼터 배분기준

- 연안국 할당 민간쿼터는 사유재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배분방식이 시장기능에 의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는 뉴질랜드의 경우로서 쿼터 배분에 대한 논란은 제기되지 않고 있음
 - 쿼터 자체가 정부 소유가 아닌 민간(기업)의 소유이고 뉴질랜드 민간업체로부터 국내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쿼터를 매입하는 방식
 - 따라서 정부로부터의 쿼터 배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연안국 할당 민간쿼터의 경우 정부 주도의 쿼터 배분기준이 불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뉴질랜드에서의 어획쿼터 확보의 문제는 신규 허가와 관련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라. 기대효과

-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던 쿼터 배분기준에 대해 정부 주도의 분쟁조정 기능을 발휘하여 각 어종별, 해역별, 업종별로 적합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기준의 명확성 및 투명성 제공은 물론 업체 간 쿼터 배분 갈등 완화

2. 국제기준 연계형 쿼터배분

가. 현황

- 지역수산관리기구는 연안국과의 입어협상 혹은 쿼터협상에 따라 쿼터를 할당받는 연안국 쿼터와 달리 기구 내에서 개발한 쿼터 할당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쿼터를 할당하고 있음
-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주요 쿼터 할당기준으로는 ① 과거 어획량, ② 현재 어획노력량, ③ 자원보존관리조치 및 어업관리규제의 준수, ④ 합의된 쿼터할당량 준수 여부, ⑤ 과학적 조사 및 보존을 위한 기여도, ⑥ 어선등록 및 감척, 국가별 어획능력 등임
- 최대한의 지역수산관리기구 어획쿼터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구별로 제시되고 있는 쿼터 할당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

나. 문제점

- 과거에는 우리나라 어선의 IUU 어업 사례가 간헐적으로 일어났으나 최근 IUU 어업이 집중·확산되는 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대외적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조업쿼터 확보와 안정적인 조업입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불법어업 제재 시 과태료부과(500만원 이하) 및 허가정지(30일)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어업의 효과적 근절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IUU 어업에 대해 국내 제재조치가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 지역수산관리기구 등으로부터 IUU 어업에 대한 규제 및 철폐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
 - 지역수산관리기구는 한국의 제재 수준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불인정 시 IUU 어업 리스트에 등재될 우려도 있음

다. 개선방안

-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쿼터 할당기준과 연계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쿼터 배분기준을 지침 형태로 마련
-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주요 쿼터 할당기준을 중심으로 기준을 수립하고, 각 지역기구별 특이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타 항목을 마련
 - 다음과 같이 각 요소 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각종 논의 동향에 맞추어 가중치를 조절하여 융통성 있게 평가

<표 5-17>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쿼터 할당기준과 연계한 쿼터 배분기준 예시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주요 쿼터 할당기준	국내 쿼터 배분방식	쿼터 배분기준의 신설 방안 예시
① 과거 어획량	업체자율에 기초한 한국원양산업협회 주도 쿼터 배분	① 과거 어획량(30%)
② 현재 어획노력량		② 현재 어획노력량(20%)
③ 자원보존관리조치 및 어업관리 규제의 준수		③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실적 (30%)
④ 합의된 쿼터할당량 준수여부		④ 어업자료 제출 등 기구 결정 사항 준수 여부(10%)
⑤ 과학적 조사 및 보존을 위한 기여도		⑤ RFMO별 기타 특별 고려사항(10%)
⑥ 어선등록 및 감척, 국가별 어획능력		

라. 기대효과

- 국내 쿼터 배분기준을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쿼터 할당기준과 연계함으로써 국제규범의 적극적 이행 의지 표현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인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쿼터 할당기준 충족을 통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내 쿼터확보 용이성 제고 및 안정적 조업입지 확보

3. 절충형 쿼터배분제의 도입

가. 현황

- 1991년 9월 16일 한·러 어업협정 체결 이후 한국 원양어선들은 정부쿼터와 민간쿼터(2002년까지)를 확보하여 조업하여 왔음

<표 5-18> 정부쿼터 확보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쿼터 (톤)	계	26,500	26,250	20,500	28,500	39,000	46,800	50,001
	기본	20,500	20,500	20,500	20,500	20,500	40,000	40,001
	추가	6,000	5,750	-	8,000	18,500	6,800	10,000
조업척수		5	5	5	5	7	6	7

- 러시아의 쿼터 할당방식은 정부 협상을 통해 쿼터량과 입어료를 결정하며, 총어획쿼터를 어종별로 구분하고 다시 해역별, 지역별 쿼터로 할당함
- 최근 러시아 정부는 쿼터 할당과 관련하여 한·러 IUU 어업 방지협정 이행 여부와 러시아 수산투자 실적을 고려하고 있음
 - 최근 들어 “투자가 없으면 쿼터는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정부쿼터 협상 시 러시아 극동지역의 냉동 창고 및 가공공장 등에 대한 투자를 요구
- 정부는 2011년 쿼터에 대한 합리적 배분을 위해 가능한 3가지 방식을 검토하였음
 - 제1안 : 업체별 배정 희망물량 기준으로 배정하는 방안으로, 어획실적 및 러시아 투자이행(송금실적 등) 등은 추가쿼터 배정 및 내년도 쿼터 배정 시 반영
 - 제2안 : 어획능력(톤수+마력) 기준 +기존 5개 선사에 조업실적 가중치(50%) 부여 배정 방안으로, 러시아 투자이행(송금실적 등) 등은 추가쿼터 배정 및 내년도 쿼터 배정 시 반영
 - 제3안 : 2005~2009년 동안 기본 쿼터로 확보되어온 20,500톤에 대해서는 기존 5개 선사에 어획능력 기준으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19,501톤은 전체

희망업체에 배정하는 방안으로, 러시아 투자이행(송금실적 등) 등은 추가쿼터 배정 및 내년도 쿼터 배정 시 반영

<표 5-19> 3가지 배분방안에 따른 업체별 쿼터량

	극동	남북	사조 산업	사조 오양	한성	인성	동원 산업	동원 수산	계
제1안	6,448	6,288	3,996	4,620	5,828	4,080	5,828	2,912	40,001
제2안	7,253	8,047	3,282	5,644	5,538	3,638	4,481	2,118	40,001
제3안	8,130	9,020	3,679	6,327	6,208	2,359	2,118	1,373	40,001

- 2011년은 3가지 배분 방안 중 기존업체에게 비교적 유리한 제3안을 채택하여 쿼터 일부에 대해 신규업체의 진입을 허용하여 어획능력에만 기초하여 배분하였음

나. 문제점

- 제20차 한·러어업위원회에서 명태 쿼터 40,001 톤을 확보한 후 쿼터가 4만 톤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쿼터 배정 개방요구가 제기되면서, 기존 5개 선사에만 쿼터를 배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됨
 - 반면 기존 5개 원양업체들은 정부 주도의 쿼터 배정 개방에 대해 기득권 보호 및 기여도 인정을 근거로 하여 반발하고 있음
- 정부가 제시한 “러시아수역 조업쿼터 배정원칙”에 따르면 확보된 명태쿼터는 조업 희망업체의 어획능력, 러시아 수산 투자실적 등을 감안하여 개방 배정하겠다는 중장기 원칙을 설정
 - 이는 건전한 경쟁을 제고하고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명확한 기준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

다. 개선방안

(1) 개방배정 원칙과 기득권의 조화

-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명태 쿼터 배분기준은 확보된 명태 쿼터는 조업 희망 업체의 어획능력, 러시아 수산 투자실적 등을 감안하여 개방 배정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제고하고 신규 진입장벽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원칙

(2) 절충형 쿼터 배분제

- 쿼터가 조업기간 대비 적정 물량 미만으로 감축될 경우까지도 대비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
 - 러시아 수산 투자실적, 과거 조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척수로 한정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러시아 쿼터협상에서 러시아 측이 러시아 수산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러시아 투자이행 등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 러시아 투자의 규모 및 이행 빈도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배점함으로써 투자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쿼터를 배분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함
- 신규업체의 진입은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톤수(GT)+마력(HP) 및 투자 이행 실적 이외에, 기존업체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어획노력량 및 과거 어획실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절충형 쿼터 배분제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으로는 다음의 4가지 사항임
 - ① 허가 선박의 어획능력 (GT/HP)
 - ② 러시아 투자이행실적 : 러시아에 대한 투자규모 및 이행 빈도수 등
 - ③ 어획노력량 및 과거 어획실적
 - ④ 국제규범 준수실적 : IUU 어업 적발,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 여부 등

라. 기대효과

- 러시아 명태 쿼터 배분 시 신규업체의 진입은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쿼터 배분기준에는 기존 배분기준인 어획능력(GT/HP)과 러시아가 요구하는 투자이행실적 외에, 어획노력량 및 과거 어획실적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기존업체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동시에 완화시킬 수 있음

4. 종합입찰제의 도입

가. 현황

- 러시아 수역의 명태 쿼터의 경우 2002년 이후 민간쿼터*가 없어지고 정부 쿼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4년 2만 톤을 저점으로 최근 4만 톤 수준으로 늘어났음
- ※ 민간쿼터 배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상충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배정권한을 위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정부는 쿼터 배분방식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가능한 3가지 배분방식을 검토한 후
 - 2011년 쿼터의 배분과 관련하여 2005~2009년 간 기본쿼터로 확보되어온 20,500 톤에 대해서는 기존 5개 선사에 어획능력 기준으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19,501 톤은 전체 희망업체에 배분하였음

나. 문제점

- 기존 5개 선사에만 쿼터를 배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시장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됨
- 명태 쿼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쿼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을 지불할 용의(willingness to pay)가 있는 업체에게 배분하는 것이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것임
- 현행 배분제도는 명태 쿼터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기존업체의 기득권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함으로써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다. 개선방안

-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와 기득권의 고려를 위한 방안으로 절충형 쿼터 배분제 외에도 종합입찰제를 고려할 수 있음

제 4 장 원양어업 쿼터 할당 및 배분방식 분석

- 종합입찰제(최고가치낙찰제)는 쿼터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 매입 희망가격 외에 다양한 비가격적 요소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해 최적의 낙찰자들을 선정하는 방식임
- 종합입찰제 시행 시 다음과 같이 가격적 요소 및 비가격적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 심사가 요구됨
 - ① 가격적 요소 : 매입희망가격
 - ② 비가격적 요소 : 어획능력(GT/HP), 조업실적, 국제규범 준수(IUU 어업 적발 등) 실적 등
- 종합입찰제를 통해 러시아 명태 쿼터를 배정할 경우의 장점
 -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협상을 통해 획득한 명태 쿼터를 가격에 기초한 시장기능에 입각하여 쿼터를 배정함으로써 어획쿼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함
 - 러시아 정부에 지불하는 입어료를 초과한 금액은 원양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쿼터의 추가 획득을 위한 연안국 수산투자기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
- 반면 종합입찰제를 통해 러시아 명태 쿼터를 배정할 경우의 단점
 - 입찰에 실제 응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 해소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수 있음
 - 기존 업체들이 그간 기여도와 기득권을 평가 절하하였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음

라. 기대효과

- 종합입찰제는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에게 유리할 수 있는 가격적 요소 외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일정부분 기득권 고려에도 기여

- 종합입찰제는 경쟁입찰제와 같이 자유시장 경쟁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진입 장벽의 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비가격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가격 경쟁에 따른 무리한 경쟁유발 및 입찰담합을 방지할 수 있음

경쟁입찰제와 종합입찰제의 구분

◦ 최고가낙찰제

- 경쟁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낸 사업자가 낙찰 받는 방식의 입찰을 가리킴
- 정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이 상업용지, 주택용지 등을 공급할 때 용지공급방식으로 최고가낙찰제를 주로 이용함
- 이 방식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의 용지 매각수입을 높여준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입찰경쟁이 치열할 경우 낙찰가가 치솟음으로써 주택, 상가 등의 고분양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됨
- 원양어업에 경쟁입찰제(최고가낙찰제)를 적용하면 정부가 연안국으로부터 쿼터물량을 따오면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매입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쿼터를 배정하는 방식이 될 것임

◦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방식

- 공사 입찰 시 가격뿐만 아니라 디자인적 측면, 에너지 절감 능력, 친환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가리킴
-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Life Cycle Cost의 최소화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얻기 위해 입찰가격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발주자에게 최고가치를 줄 수 있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 기술력을 평가하는 요소에 품질, 안전, 유지관리비, 편의성, 제안가격 등이 포함됨
- 종합입찰제(최고가치낙찰제)를 원양어업에 적용하면 정부가 연안국으로부터 쿼터물량을 따오면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가 제시한 매입 희망가격에 외에 어획능력(GT/HP), 조업실적, 국제규범 준수(IUU 어업 등) 실적 등을 심사하여 최적의 낙찰자 업체들을 선정하는 방식이 될 것임

5. 쿼터이용료의 도입

가. 현황

- 연안국 정부쿼터의 경우 쿼터협상 시 입어료 외에도 수산투자 등을 갈수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안정적 쿼터확보를 위해서는 투자기금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나. 문제점

- 연안국(주로 러시아)과 쿼터협상 시 연안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수산투자 등 입어료 이외의 원조 및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정부쿼터의 경우 정부 주도로 쿼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나, 배분대상이 특정 원양선사에 집중되고 있어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음

다. 개선방안

- 정부가 협상 등 노력을 통해 획득하는 연안국 혹은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쿼터를 배분하는 경우 쿼터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연안국으로부터 안정적 쿼터확보를 위해서는 투자기금 조성이 필요함
 - 앞서 제안한 ‘종합입찰제’ 도입 시 입어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쿼터이용료 항목으로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라. 기대효과

- 쿼터이용료를 연안국 쿼터확보를 위한 수산투자기금 등으로 활용하여 안정적 쿼터확보에 기여함으로써 그 이익이 원양선사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음

6. 쿼터 거래제도의 활성화

가. 현황

(1)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쿼터 거래 관행

-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쿼터 거래는 일반적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2000년대 초부터 일부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관행상 어획쿼터 거래가 사례별 위원회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 왔음

(2) 영국의 쿼터 거래 관행

- 영국은 국내 업체간, EU 국가 간 배분된 원양어업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 영국의 국내 업체간 쿼터 거래(domestic quota swaps and transfers)는 어획쿼터를 EU로부터 부여받아 세 개의 그룹에 배분하고 있으며, 쿼터는 그룹 간에 거래(swap)할 수 있음
- 그룹 간 쿼터 거래 계약은 행정적 승인사항이지만 그룹 간 쿼터 거래의 조건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으며, 정부는 부적절한 거래라고 여겨져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
- 단 선박 소유주가 쿼터 배정의 기초요소인 FQAs(fixed quota allocation units) 자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영국 어업당국(Marine Fisheries Agency)에 신고해야 함

<표 5-20> 각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의 어획쿼터 거래현황 및 특징

기구명	거래실태	어획쿼터 거래 특징
ICCAT	○	회원국의 어획쿼터 거래는 금지되나, 위원회의 승인 하에 가능
CCSBT	×	원칙적으로 어획쿼터 거래에 반대하나, 거래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
NAFO	○	사무국에 거래 사항을 알리기만 한다면 경제적 어획쿼터 거래도 가능
NEAFC	○	수컷 연어에 대한 어획쿼터 거래 허용, 단, 사무국에 보고해야함
IBSFC	○	어획쿼터 거래 허용하며, 비회원국과의 거래도 허용
WCPFC	○	할당기준 설정 위해 어획쿼터 거래는 고려해 볼만 하다고 언급

자료 : 농림수산물부, 「국제수산물관리기구 어획쿼터관리체제 연구」, 2011.

<표 5-21> ICCAT 어획쿼터 거래현황

연도	국가	어획쿼터 거래 내용
2001	미국→일본	북대서양 황새치 어획쿼터 400톤 거래
2001	EC↔일본	북대서양 황새치와 남대서양 황새치 쿼터 거래
2002	미국→일본	남대서양 황새치 215톤 쿼터 거래
2003	일본→중국	눈다랑어 어획쿼터 1000톤 거래
2003	일본→중국, 대만	눈다랑어 1250톤의 어획쿼터를 어획쿼터 양도
2003~2006	EC→아이슬란드	EC는 30, 40, 50, 60 톤의 북대서양 참다랑어 양도
	미국↔브라질	남반구 최북단 10도에서 남쪽 황새치 200톤 교환

자료 : 농림수산물부, 「국제수산물관리기구 어획쿼터관리체제 연구」, 2011.

(3) 국내의 쿼터 양도 관행

- 쿼터 양도는 러시아 명태 정부쿼터에서도 관행상 이루어져왔음
 - 입어료는 다 지불했으나 불가피하게 허가 어선이 조업을 못할 경우 쿼터를 다른 업체에게 관행상 양도
 - 현재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도가 거의 없는 편이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쿼터 양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음

나. 문제점

- 쿼터를 확보한 후 입어료는 다 지불했으나 불가피하게 하게 허가어선이 조업을 못할 경우 관행적으로만 쿼터를 거래해왔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며, 업계 관행에 맡겨져 있음

다. 개선방안

- 쿼터 거래제 도입을 통해 쿼터를 거래 혹은 양도 가능한 권리로 설정
- 쿼터 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효율적인 쿼터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기반 쿼터관리(right based quota management)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쿼터거래를 민간 자율에 맡길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쿼터 거래 시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쿼터 거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라. 기대효과

- 쿼터 거래제도가 확립될 경우, 관행상의 쿼터를 배정받았으나 어선의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업을 못할 경우 외에도 쿼터가 필요한 업체에 추가적 쿼터확보 기회를 줌으로써 쿼터확보의 용이성을 제공함
- 또한 쿼터 배정기준에 따라 배분된 쿼터에 대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재분배할 수 있고, 쿼터 거래를 통해 어업경영 규모의 최적화가 가능함

7. 쿼터 배분방식 개선방안 요약

<표 5-22> 원양어업의 쿼터 배분 방식 개선(안) 요약

개선방안(안)	주요내용	기대효과
이종별·해역별·업종별 여건 고려 쿼터 배분기준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쿼터 배분기준 - 연안국할당 정부 쿼터 배분기준	- 정부주도 분쟁조정기능 발휘, 기준의 명확성 및 투명성 제공, 갈등 완화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쿼터 할당기준 연계 쿼터 배분기준	-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쿼터 할당기준과 연계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쿼터 배분기준 지침 마련 - 각 요소 별 가중치 설정 및 조정 과 평가제 도입	- 국제규범 이행 의지 표현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절충형 쿼터 배분제	- 러시아 투자이행 등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의 도입 - 신규업체 진입 원칙적 개방, 어획능력 및 투자이행실적, 기존업체 기여도 반영 평가제 도입하여 쿼터 배분 실시	- 기존업체 기여도 인정, 신규업체 진입장벽 완화
종합입찰제 도입	- 쿼터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 매입희망가격외에 다양한 비가격적 요소 적격심사 통해 낙찰자 선정 방식 도입	- 가격 경쟁에 따른 무리한 경쟁유발 및 입찰담합 방지 가능
쿼터이용료 도입	- 정부의 기여에 의해, 즉 정부가 협상을 통해 획득하는 연안국 혹은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쿼터 배분 시, 쿼터이용료 부과 방안(장기 검토 과제)	- 쿼터확보를 위한 수산투자기금 조성, 안정적 쿼터 확보 기여함
쿼터거래제 도입	- 쿼터를 거래 혹은 양도 가능한 권리 설정.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승인을 통해 쿼터 거래 추진	- 쿼터확보 용이성 제공. 어업경영규모 최적화 가능

제 6 장 실천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

제1절 세부 실천계획 수립

1. 허가제도 개선

가. 추진목표 및 체계

- 원양어업 허가제도 개선을 위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 및 시기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단기·중기별 「원양산업발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제·개정 및 지침 마련 추진
- 먼저 단기적(2012년)으로 허가 조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전승인제와 일제갱신제 도입 및 정부의 조정과 제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허가제도는 선박에 대한 대물허가로서 일정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기허가 선박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이 형성되고 있음
 - 또한 원양어업 허가에 따른 행정비용이 매우 크고, 업계 자율에 대부분 맡기고 있어 원양업체 간 분쟁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음
 - 현행 제도는 원양업체의 분쟁과 갈등에 대한 정부의 조정 역할이 미흡하고 불법어업 등에 대한 제재 기능이 미약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상 허가 조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하고, 사전승인제 및 일제갱신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부의 조정 및 제재기능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됨
- 다음으로 중기적(2013~2014년)으로 현행 원양어업허가 우선순위 규정의 개정을 통해 법 해석 및 적용을 명확히 하고, 쿼터와 연계한 허가정수제의 수립 필요
 - 단기적 조치에 따른 진입장벽 완화 및 신규어업 허가의 활성화의 경우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원양어업 허가 우선순위 규정의 불명확성 및 쿼터 배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원양어업허가 우선순위 규정의 개정을 통해 법 해석 및 적용을 명확히 하고, 쿼터와 연계한 허가정수제의 수립 필요

<표 6-1> 허가제도 개선의 시기별 목표 및 시행 조치

단계별	목 표	시 행 조 치
단기 (2012년)	- 진입장벽완화 - 대물허가의 한계 보완 - 정부의 행정비용 감소 - 업체 간 사회적 비용 감소	- 네거티브 방식의 허가조항의 개정 - 사전승인제 도입 및 법 개정 - 일제갱신제 도입 및 법 개정 - 조정 및 제재기능 강화 및 법 개정
중기 (2013년 이후)	- 진입장벽완화에 따른 허가남발 방지 - 업체간 분쟁가능성 해소	- 원양어업허가 우선순위 규정 개정 - 쿼터연계형 허가정수제 도입

나. 시기별 세부추진 내용

(1) 단기 추진 과제 (2012년)

- 단기적 추진 과제는 현행 원양어업 허가제도의 실제적 진입장벽의 완화, 대물허가의 한계 보완, 행정비용의 감소, 관련법의 미비 및 불명확성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하여 다음의 4가지 조치 추진 필요

(가) 네거티브 방식의 허가조항 개정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2010년 10월부터 모든 인·허가제도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도입 요구에 맞추어 허가조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
 - 네거티브 방식의 근간은 “원칙적 허가”이기 때문에 진입장벽 완화 및 신규 어업허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나) 사전승인제 신설

- 선박 신규 도입 시 허가여부의 불확실성은 대물허가방식의 한계로 신규진입 방해효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불확실성 제거 및 선박 신규도입에 대한 위험부담 제거를 위해 선박 신규도입 시 사전승인제를 「원양산업발전법」에 신설

(다) 일제갱신제 신설

- 각각 선박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갱신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고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규제강화에 적시 대응을 위하여 허가시작 일자 및 허가기간을 통일시키는 일제갱신제를 「원양산업발전법」에 신설
- 4~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허가일자를 통일시키는 조치 시행

(라) 정부의 조정 및 제재기능 강화

- 원양어업과 관련한 신규허가, 허가정수, 쿼터배분, 쿼터거래 등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원양산업발전법」에 반영
- 현행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실제로 구성 및 운영하는 방안과 원양산업의 현실적인 주요 쟁점을 조정하는 원양산업조정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정부의 제재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원양산업발전법」에 신설

(2) 중기 추진 과제 (2013~14년)

- 중기적 추진 과제는 단기적 허가제도 개선조치로 인한 신규 어업허가 신청 활성화의 경우 행정재량 여지를 감소시키고 업체 간 분쟁발생 가능성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2가지 조치를 추진 필요

(가) 원양어업허가 우선순위 규정의 명확화

- 허가조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함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경우, 어업허가 남발 및 쿼터를 둘러싼 업체간 분쟁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경우를 대비하여 현행 원양어업허가 우선순위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의 개정 필요
- 명확한 허가 우선순위 대상 및 허가신청 경합 시에 적용할 허가우선순위 기준 마련 필요
- 우선순위 적용의 유효기간 설정을 통해 어업허가 신청자 간 형평성 고려

(나) 쿼터연계형 허가정수제 수립

- 실제 조업쿼터를 고려할 때 허가 가능한 어선보다 허가를 신청하는 수가 많을 경우,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해역별·어종별로 쿼터에 따른 허가정수를 정하여 허가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허가정수제는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조항의 개정을 통해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 허가정수제에 대한 재검토 및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는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통해 조정되도록 동 위원회에 위임

다. 세부추진 로드맵(안)

- 앞에서 살펴본 시기별 법 제·개정 및 시행조치 추진의 내용과 함께 각 추진과제의 적용가능 업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쿼터연계형 허가정수제 도입은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규정과 쿼터와 관련된 현실 등을 감안하여 도입을 검토할 수 있고,
 - 나머지 5개의 추진과제는 원양어업 전 업종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음

<표 6-2> 원양어업 허가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일정 및 적용대상 검토

구 분		단기	중기		적용가능 업종
		2012	2013	2014	
법령 제·개정	허가조항의 네거티브 방식	■			전 업종
	사전승인제 도입	■			전 업종
	일제갱신제 도입	■			전 업종
	우선순위 규정의 명확화		■	■	전 업종
	정부의 조정 및 제재기능 강화	■			전 업종
지침 마련	쿼터연계형 허가정수제 도입		■	■	쿼터제약이 있는 업종

2. 쿼터 배분방식 개선

가. 시기별 추진목표 및 체계

- 원양어업 쿼터배분방식 개선을 위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 및 시기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단기·중기·장기별 관련법 제·개정 및 지침 마련 추진
- 먼저 단기적(2012년)으로, 현재 러시아 명태 쿼터의 국내배분을 둘러싼 업체 간 갈등이 존재하여 왔고 쿼터배분 기준의 안정성을 위해 일관적이고 명확한 쿼터배분 기준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 진입장벽 완화와 기득권의 보호라는 상반된 이해관계의 조화를 절충형 쿼터배분제로 달성할 필요가 있음
- 중기적(2013~2014년)으로 쿼터배분 기준의 명확화 범위를 확대하여, 진입장벽 완화를 목표로 한 허가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 어장별 맞춤형 쿼터배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 장기적으로 안정적 쿼터확보를 위해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쿼터할당 기준과 연계한 쿼터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업체의 국제규범 준수를 유도함
 - 이와 더불어 관행상 존재하는 쿼터 거래제도의 법제화 및 러시아 명태쿼터에 대한 종합입찰제 도입을 검토
- 장기적(2015년 이후)으로 지속가능한 조업을 위한 원양어업 쿼터 축소 추세에 따라 정부로부터 쿼터를 배분받는 업체에 대해 쿼터 추가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거나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쿼터이용료 부과 검토 가능

<표 6-3> 쿼터 배분방식 개선의 시기별 목표 및 시행조치

단계별	목 표	시 행 조 치
단기 (2012년)	- 기득권과 진입장벽 완화간의 조화 -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기준 마련	- 절충형 쿼터배분제 도입
중기 (2013~14년)	- 모든 쿼터배분기준의 명확화 -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의 안정적 쿼터 확보 및 이미지 제고 - 기득권과 신규진입자간의 효율적인 쿼터배분	- 어장별 맞춤형 쿼터배분 기준의 명확화 - 국제기준 연계형 쿼터배분 기준 수립 - 종합입찰제 도입 - 쿼터거래제도 법제화
장기 (2015년~)	- 수산투자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쿼터 확보	- 쿼터이용료 부과

나. 시기별 세부추진 내용

(1) 단기 추진 과제 (2012년)

- 단기적 추진 과제는 최근 가장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 명태쿼터 배분에 관한 분쟁 해소를 위하여 다음의 2가지 조치를 추진 필요

(가) 절충형 쿼터배분제 수립

- 정부쿼터의 개방배정 원칙에 기득권의 고려를 포함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은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기존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들을 추가하여 배분
 - 주요 배분기준인 어획능력(GT/HP)과 투자 이행실적 외에도 기존업체에게 유리한 어획노력량 및 과거 어획실적 등을 부가적으로 고려하고, 안정적 조업입지 확보를 위해 IUU 어업 및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 여부 등까지도 감안하여 배분

(2) 중기 추진 과제 (2013~14년)

- 중기적 추진 과제는 쿼터배분 기준의 명확화 추진 범위를 확대하여 허가제도의 개선안과 연계한 쿼터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 쿼터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4가지 조치를 추진 필요

(가) 어장별 맞춤형 쿼터배분 기준의 명확화

- 진입장벽 완화를 목표로 하는 원양어업 허가제도 개선안에 맞추어 전 원양어업 조업해역에 대한 관련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기존업체와 신규 진입자 간의 이해관계 조율을 통한 쿼터배분 기준의 명확한 설정
- 어종별·해역별·업종별로 쿼터배분기준 수립을 위해 충분한 업계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율 과정이 요청됨

(나) 국제기준 연계형 쿼터배분 기준의 수립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관할 해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해조업을 위해서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쿼터할당기준을 최대한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바,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쿼터할당 기준과 연계한 국내 쿼터배분 기준의 수립이 필요함
- 이 경우 업체들의 적극적인 규범이행을 유도할 수 있으며, 규범의 불이행은 바로 쿼터배분량과 직결되어 패널티로서의 기능도 수행 가능

(다) 종합입찰제 도입

- 러시아 명태쿼터 배분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진입장벽 완화와 기득권의 조화를 동시에 고려하고 시장기능을 추가하여 쿼터의 효율적 배분을 용이케 하기 위한 종합입찰제 도입 검토 필요
- 종합입찰제 시행 시 가격적 요소 외에 기득권 보호와 적격성 확인을 위한 비가격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에게 쿼터배분 기회를 쉽게 제공하는 한편 경쟁입찰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라) 쿼터거래제도의 법제화

- 쿼터를 거래 가능한 권리로 설정하여 권리기반 쿼터관리로서의 효율적 쿼터배분을 꾀하고,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쿼터거래를 명확히 법제화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및 효과적 관리·감독 가능
- 정부 위원회의 사전 승인 하에 쿼터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3) 장기 추진 과제 (2015년 이후)

- 현재까지는 추가적 논의 및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검토 가능한 조치로는 다음의 쿼터이용료 부과방안이 있음

(가) 쿼터이용료 부과

- 입어권 확보 및 쿼터협상 시 연안국들은 수산투자 등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쿼터의 경우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업체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쿼터이용료를 부과하여 지속가능한 쿼터확보를 위해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다. 세부추진 로드맵(안)

- 앞에서 살펴본 시기별 법 제·개정 및 시행조치 추진의 내용과 함께 각 추진 과제의 적용가능 업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쿼터거래제도 도입과 어장별 맞춤형 쿼터 배분기준의 명확화는 전 업종에 적용할 수 있음
 - 쿼터이용료 신설은 쿼터 제약이 있는 업종에 적용 가능함
 - 절충형 쿼터배분제의 도입, 종합입찰제 시행은 러시아 명태 조업 업종에 적용할 수 있음
 - 국제기준 연계형 쿼터 배분기준의 마련은 RFMO가 관리하는 어장에 진출한 업종에 적용 가능함

<표 6-4> 쿼터 배분방식 개선을 위한 추진일정 및 적용대상 검토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적용가능 업종
		2012	2013	2014	2015~	
법령 제·개정	쿼터거래제도 도입		■	■		전 업종
	쿼터이용료 신설				■	쿼터제약이 있는 업종
지침 마련	어장별 맞춤형 쿼터 배분기준의 명확화		■	■		전 업종
	절충형 쿼터배분제 도입	■				러시아 명태조업
	국제기준 연계형 쿼터 배분기준의 마련		■	■		RFMO 조업
	종합입찰제 시행		■	■		러시아 명태조업

제 2 절 효과분석

1.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제도개선은 관련인의 인식 및 관련시장 구조, 관련 산업의 여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 중 긍정적인 부분이 제도개선의 효과라 할 수 있음
- 앞에서 허가제도와 쿼터배분 방식의 개선안으로 각각 6가지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개선안들은 크게 규제완화적 성격과 시장구조 개선적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부 개선안은 두 가지 성격을 모두 포함하기도 함

가. 규제완화적 제도개선³³⁾

- 정부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규제라 할 수 있음
 - 정부는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 향상 등 각종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도를 설정하거나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 이러한 포괄적 정부활동은 결국 개인 및 기업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강화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적절한 규제는 기존 기업의 자원낭비를 해소하고 자본집약도를 제고하며 혁신활동을 자극하게 됨
 - 이에 따라 효율성이 높은 기업의 진입과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을 의미하는 기업 다이내믹스를 촉진함으로써 산업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문제는 규제가 변질되어 특정 기업을 보호하거나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규제의 비용이 편익보다 큰 ‘정부실패’(government

33) 박정수·최성호, “한국 산업정책의 생산성효과 : 연구개발 및 진입규제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韓國經濟의 分析』, 제17권 제2호, 2011. 8, pp. 13~16; 박민정, “규제완화의 한계 고찰을 통한 규제개혁의 방안 모색 - Wilson과 Tullock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4.의 논문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failure)가 발생하여 산업생산성의 상승을 제약하게 된다는 점임³⁴⁾

- 본 연구에서 제도개선의 대상이 되는 원양산업은 수산업의 한 부분으로 생산물 시장에 포함되며, 한국의 생산물시장에 대한 규제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매우 강력한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인하여 크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³⁵⁾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의 어업허가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적 편의에 의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가 나타나고 있음
- 규제완화 필요성 논리를 검토해보면 크게 다음의 4가지 이유로 구분됨
- 첫째, 규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초래함에 따라 규제의 비용이 효과를 초과하고 있다면 이런 규제들은 개선되어야 함
 - 정부규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임³⁶⁾
 - 이런 비용은 개별규제의 비용-편익분석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정부규제에서 발생하는 1차적인 경제적 비용은 경쟁을 제한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임
 - 특히 경제규제는 경제자원 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자원(entrepreneurial resources)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함³⁷⁾
- 둘째,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의 고려로 Winston(1993)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규제완화의 대상이 되었던 주요산업에 대하여 규제완화의 결과로 미국의 소비자는 약 326억 달러에서 43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적 이윤을 얻어

34) Arnold, Jens, Giuseppe Nicoletti and Stefano Scarpetta, "Regulation, Allocativ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 OECD Countries: Industry and Firm-Level Evidence",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616, OECD Publishing, 2008, pp. 8~13

35) Conway, Véronique Janod and Giuseppe Nicoletti, "Product Market Regulation in OECD Countries, 1998 to 2003",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419*, OECD(Paris), 2005

36) Acs Zohan and David Audretsch, *Innovation and Small Firms*, Cambridge, MA: MIT Press, 1990; Geroski, Paul A., "Entry and the Rate of Innovation",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y 1*, 1991, pp. 203~214

37) Strutzenegger, Federico & Mariano Tommasi,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the Cost of Rent-Seeking, and Economic Growth", *Economic Inquiry*, Vol 32, 1994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미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약 358억 달러에서 462억 달러의 추가적 경제잉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³⁸⁾
- 미국은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매년 약 7~9%의 실질적 경제성장을 초과적으로 이룬 셈
 - 이는 산업적으로 수산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규제완화가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경우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크다면 불필요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있음
- 셋째, 시장기능의 회복 요청으로 정부는 시장의 기본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거시 경제적 차원의 배분만이 아니라 세세한 기업활동과 국민 일반의 경제활동에까지 깊이 관여하게 되었음
- 그러나 정부의 기능조정이 요구됨에 따라 그 핵심을 차지하는 규제기능의 축소가 필요함
 - 경제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뿐만 아니라, 가부장적인 입장에서³⁹⁾ 규제를 통해서 각종 이익집단들에게 시혜를 주는 의도로 포획되어서도 안 될 것임
 - 따라서 정부와 시장 간의 근본적인 역할의 재설정이 필요함
- 넷째,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 측면으로 정부규제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과 기업의 기본적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볼 수 있음
- 규제완화의 핵심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축소함으로써 개인 간의 자율적이며 공정한 거래에 의하여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개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임
- 일반적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부분은 진

38) Winston은 규제완화의 효과를 이로 인하여 초래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이윤)의 변화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Clifford Winston, *Economic deregulation: Days of reckoning for microeconomists* 31, 1993, pp. 1263~1289

39) 사공영호, “가부장적 행정문화와 규제관료의 포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입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의 경쟁 촉진은 산업경쟁력 강화임
- 개선안 중 허가제도의 네거티브 방식 도입 및 사전승인제, 절충형 쿼터배분제 등은 현행 법·제도적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규제가 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도 국가, 산업, 기업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졌음
 - Crafts(2006)는 규제가 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전통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규제준수 비용은 지엽적인 것이며,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왜곡함으로써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라는 점을 규명하였음⁴⁰⁾
 - 국가 수준의 연구의 예를 들면 Loayza 외(2004)는 Doing Business(The World Bank Group), Index of Economic Freedom(The Heritage Foundation),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The Fraser Institute) 등 지수를 활용하여 진입, 노동, 금융, 무역 등 전반적인 규제지수를 산출⁴¹⁾
 - 규제지수가 중위수에서 표준편차만큼 올라가면 1인당 GDP성장률이 0.4%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였음
 -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 경쟁제한적인 규제는 기업생산성 상승을 제약하고 있으며, 제약은 기술적 변경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시장의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⁴²⁾
 - 또한 신규기업의 진입이 기존 기업을 포함한 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생산성 상승을 촉진하는 효과가 규명되었음⁴³⁾

40)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국가, 산업 수준의 데이터 분석을 인용하여 생산물시장에 대한 진입을 제약하는 강력한 규제들이 산업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결과를 제시, Crafts, Nocholas, "Regulation and Productivity Performanc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2, No.2, 2006, pp. 186~202.

41) Loayza, Norman V., Ana Maria Oviedo & Luis Servén, "Regul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3469, September 2004

42) Acs Zohan and David Audretsch, *Innovation and Small Firms*, Cambridge, MA: MIT Press, 1990; Geroski, Paul A., "Entry and the Rate of Innovation",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y* 1, 1991, pp. 203-214

나. 시장구조 변화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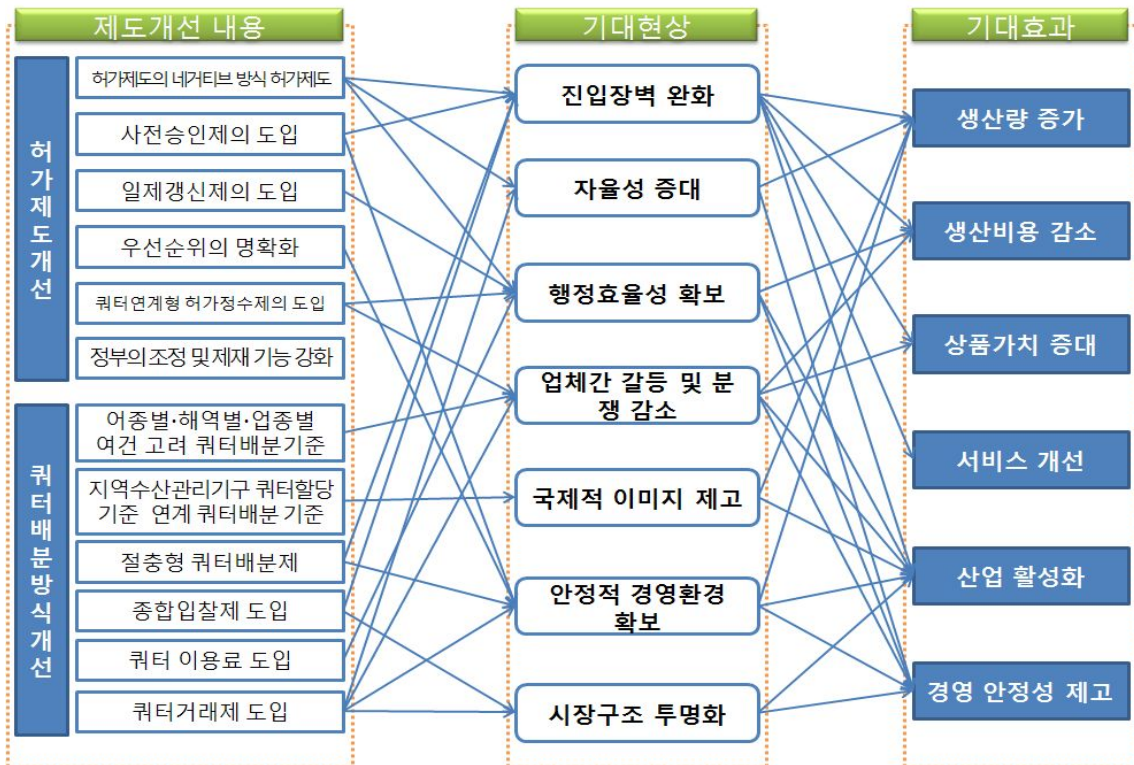
- 시장구조 변화 제도개선이란 현행 시장의 체계를 변환시키는 것으로, 종합 입찰제, 쿼터거래제, 쿼터이용료 등이 원양산업의 시장구조 변경 제도개선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음

- 쿼터거래제의 경우 배타적 권리인 쿼터를 거래 혹은 양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쿼터 거래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운영되며, 이는 생산물 시장과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게 됨
 - 경제효율성, 사회적 목적, 형평성 등을 고려 가능

43) Geroski, Paul A., "Entry, Innov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71, 1989, pp. 527~578; Baldwin John Russei, Gorecki Paul K., "Firm Entry and Exit in Canadian Manufacturing Sector, 1970-1982",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24, 1991, pp. 200~323; Aghion, Philippe, Richard Blundell, Rachel Griiffith, Peter Howitt, and Susanne Prantl, "The Effects of Entry on Incumbent Innovation and Productiv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 2009, pp. 20~32.

2.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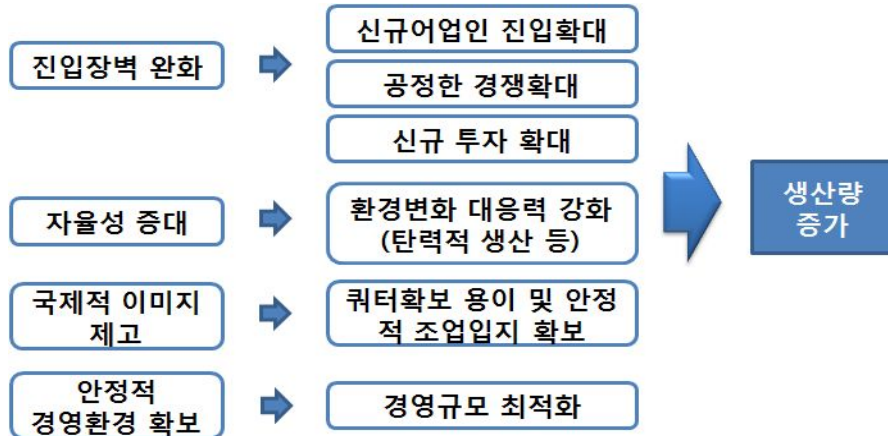
-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관련인의 인식 및 관련시장 구조, 관련산업의 여건 등이 개선되는 현상을 기대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대현상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효과임
- 제시된 제도개선안의 도입에 따른 주요 기대현상을 정리해보면 진입장벽 완화, 자율성 증대, 행정효율성 확보, 업체 간 갈등 및 분쟁 감소, 국제적 이미지 제고, 안정적 경영환경 확보, 시장구조 투명화 등이 포함됨
- 위와 같은 기대현상은 결국 생산량 증가, 생산비용 감소, 상품가치 증대, 서비스 개선, 산업활성화, 경영 안정성 제고 등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판단됨
- 원양어업의 허가제도와 쿼터배분 방식의 개선에 대해 제도개선→기대현상→기대효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면 다음 표와 그림과 같음



<그림 6-1> 원양어업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현상 및 기대효과

가. 생산량 증가 효과

- 생산량 증가 효과는 진입장벽 완화, 원양업체 자율성 증대, 국제적 이미지 제고, 안정적 경영환경 확보 등의 기대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림 6-2> 생산량 증가 효과

- 첫째, 진입장벽이 완화될 경우 신규어업인 및 업체의 산업 내 진출, 신규 투자 증대 등으로 절대적 생산량 증가 효과가 나타나게 됨
 - 네거티브 방식 허가제도 및 신규허가 활성화, 사전승인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은 수산자원의 상태 및 쿼터량에 따라 그 효과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진입, 경쟁, 선박 및 장비 투자 증대는 생산량 증가에 기여
- 앞서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규제완화 정책의 중심은 독점 또는 과점시장에 있어서 제도적 또는 경제적 진입규제 수준을 낮추는 데 있음
 - 진입장벽 완화에 대한 효과로 타 분야의 사례를 보면,
 - OECD(1997)의 연구결과 새로운 기업의 창업이나 시장진입이 혁신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⁴⁴⁾
 - 국내의 경우 하병기 외(1999)는 경제모형인 INTERLINK를 사용하여 전력,

44) OECD, "The Economics Benefits of Regulatory Reform", *OECD Economic Studies* No.28, 1997/ I, 1997

- 건설, 유통, 도로운송, 통신 등 5개 주요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이후 생산성, 고용, 가격, 산출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요소생산성이 4.65%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였음⁴⁵⁾
- 이병희 외(2008)는 한국의 55개 산업별 규제지수를 이용하여 규제완화가 총 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10% 완화되면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약 0.3%p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⁴⁶⁾
 - 유진근(2010)의 연구에서는 진입규제가 완화된 10개 업종 사례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업체와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여 경쟁을 촉진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⁴⁷⁾
 - 원양어업의 경우 타 생산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들과의 산업적 특성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의 생산성 증가율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규제완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량의 대략적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추정 결과 약 2만7,500 톤의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됨

<표 6-5> 진입규제가 완화에 따른 생산량 증가 추정

원양어선 수 (2010년 기준)	원양어업 생산량	규제완화에 따른 생산량 증가 전망	원양 생산량 변화
353척	592,166 톤	27,500 톤	619,666 톤

주 : 생산성 증가율은 하병기 외(1999)의 규제완화에 따른 산업전체 생산성 증가율 4.65% 적용

- 둘째, 자율성 증대는 수산자원의 변화 및 신규기술의 개발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대효과로 생산량 증대를 가지고 올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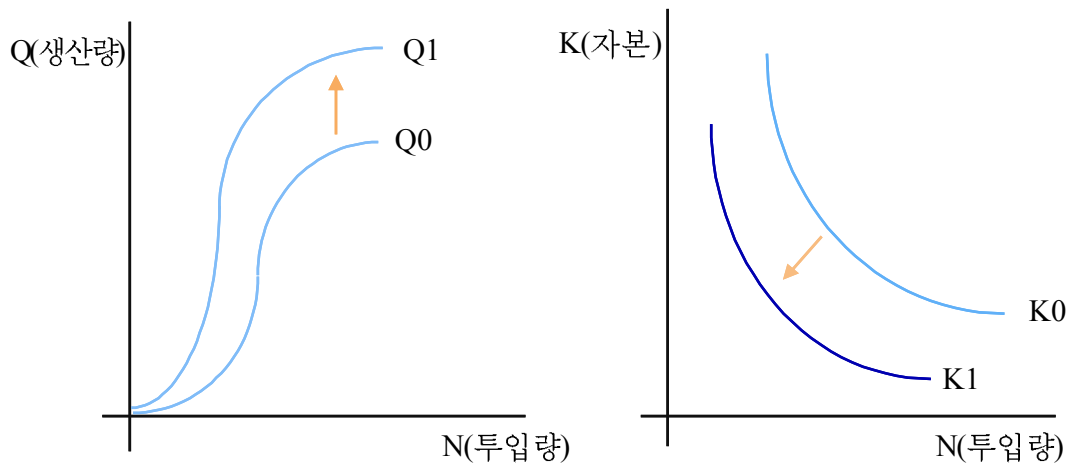
45) 하병기 외, “규제개혁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세미나발표자료, 1999.9.13

46) 이병희·조병익·김영민,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총요소생산성 증대 효과를 중심으로”, 『조사통계월보』, 9월호, 한국은행, 2008

47) 유진근, “진입규제 완화 업종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KIET산업경제』, 2010년 2월, 산업연구원, 2010, pp. 15~25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특히 업종 간 전업이 허가될 경우 조업기간의 한계로 인해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줄어들어 연간 조업기간이 증가하게 되어 생산량이 증대됨
- 수산업에 있어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양식어업에서 자율성 확보로 양식물 및 양식구분에 대한 규제완화 시에는 약 14.3%~24.5%의 생산량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⁴⁸⁾
- 신규 기술의 개발은 투입물은 동일하게 투입되는데 생산량이 증대되는 현상을 일으킴
- 원양어업의 경우 기술의 개발은 자본의 생산성이 노동의 생산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는 자본집약적 기술진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6-3> 신규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량 증대 효과

- 셋째, 국제적 이미지 제고는 국내 쿼터배분 기준의 지역수산물리기구 쿼터할당기준과의 연계 등으로 이전의 IUU 어업 등으로 인하여 대외적 국가 이미지 실추에 따른 조업쿼터 확보 문제 및 안정적 조업입지 약화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음
-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향후 쿼터량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현재의 쿼터량에 대한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8) 수산정책연구소, “양식어업의 규제개선 방안 연구”, 2011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하여 볼 수 있음

· 제도개선 시행 전 쿼터량 : 100,000 톤
· 제도개선 시행 후 쿼터량 : 100,000 톤(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통해 쿼터량 감소가 일어나지 않아 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가정)
· 제도개선 미시행 쿼터량 : 80,000 톤

- 전후의 쿼터량으로 보았을 때는 100,000 톤으로 동일하여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유무검증적 접근방법으로 보았을 때는 국제 이미지 실추로 인한 20,000 톤의 쿼터 감소분을 보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생산량 증가효과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경제학적으로 효과를 판단할 때는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with project)와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without project)의 차이에 의거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는 유무검정적 접근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항상 기회비용의 개념을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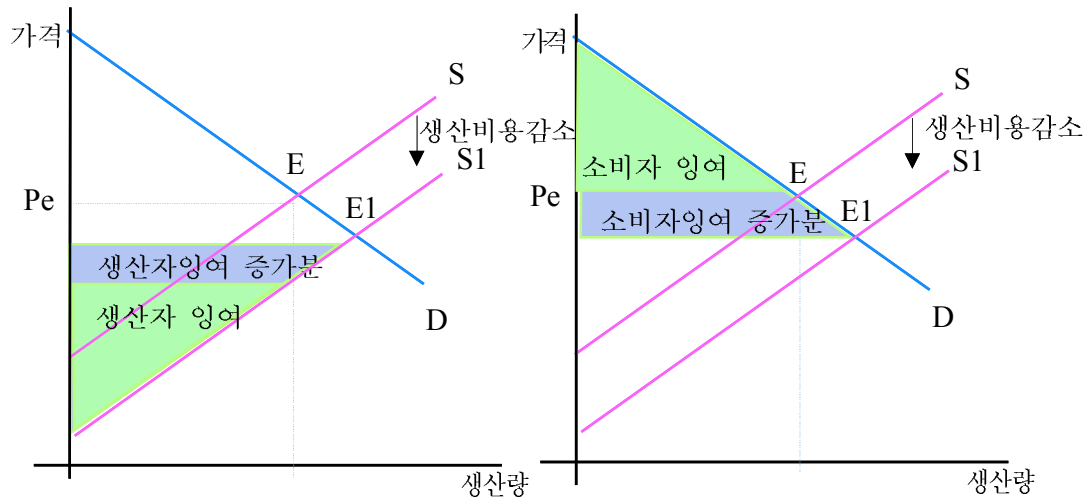
<표 6-6> 국제적 이미지제고에 따른 생산량 증가 효과 예시

구분		쿼터량	효과	비고
개선 시행 전 (before project)		100,000 톤	-	-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without project)		80,000 톤	-	국제 이미지 실추로 인해 쿼터 감소
개선 수행 했을 경우 (with project)	1	100,000 톤	20,000 톤 증가	시행 전후 쿼터 동일
	2	120,000 톤	40,000 톤 증가	시행 후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통해 쿼터 증가

- 넷째, 안정적 경영환경 확보는 어업에서 정주성의 확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영에 있어서 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입증대 및 경영규모 최적화를 가지고 오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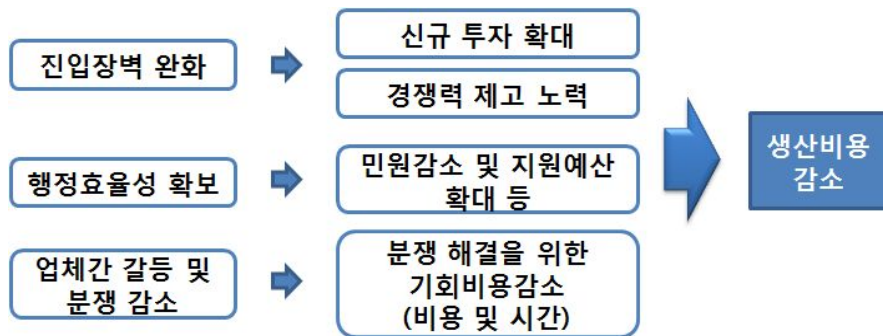
나. 생산비용 감소(가격인하) 효과

- 생산비용 감소효과는 결국 생산비용이 감소되어 생산자잉여 및 소비자잉여를 증가시켜 사회적으로 총 잉여를 증가시킴



<그림 6-4> 생산비용 감소에 따른 생산자 및 소비자 잉여 증가

- 생산비용 감소효과는 진입장벽 완화, 행정효율성 확보, 업체 간 갈등 및 분쟁 감소 등의 원양업체 기대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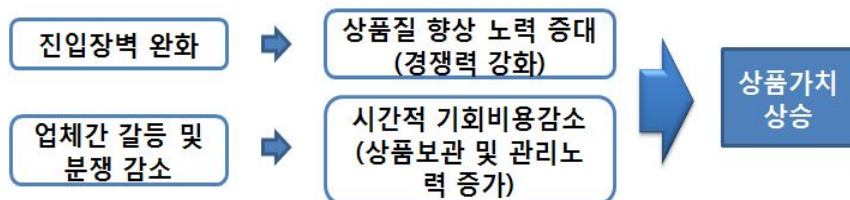
<그림 6-5> 생산비용 감소 효과

- 첫째, 진입장벽 완화는 독과점적 원양어업의 생산시장 구조를 완전경쟁시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투자의 확대, 어선 수리 및 성능강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증대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고정비용이 상승되나 중·장기적으로 생산비용이 감소하게 됨

- 둘째, 행정효율성 확보는 행정투입에 따른 노력량을 감소시키고(처리에 따른 공무원 시간, 인력 등) 미래 정책사업의 추진기반을 개선시켜 원양산업 전체에 대한 효율적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후 지원사업의 추진 등은 생산비용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업체 간 갈등 및 분쟁의 감소는 행정처리 및 민원의 감소에 따른 어업인(업체)의 기회비용 절감과 분쟁 해결을 위한 기회비용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비용절감효과를 가지고 오게 됨

다. 상품가치 상승효과

- 상품가치 상승효과는 생산되는 어획물의 관리 및 보관·가공 등에 대한 노력 또는 자본의 투입을 통하여 상품의 질을 상승시키는 효과이며, 이는 어획물의 가격상승으로 이익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진입장벽 완화로 인한 완전경쟁시장의 체계로의 접근은 결국 가격적 경쟁뿐만 아니라 비가격적 측면인 상품질의 향상을 가지고 오게 됨
 - 이는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업체 간 경쟁의 결과라 할 수 있음
- 둘째, 업체 간 갈등 및 분쟁 감소는 시간적 기회비용의 감소로 인하여 상품 보관 및 관리노력을 증가할 수 있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보장되어 이를 통한 상품가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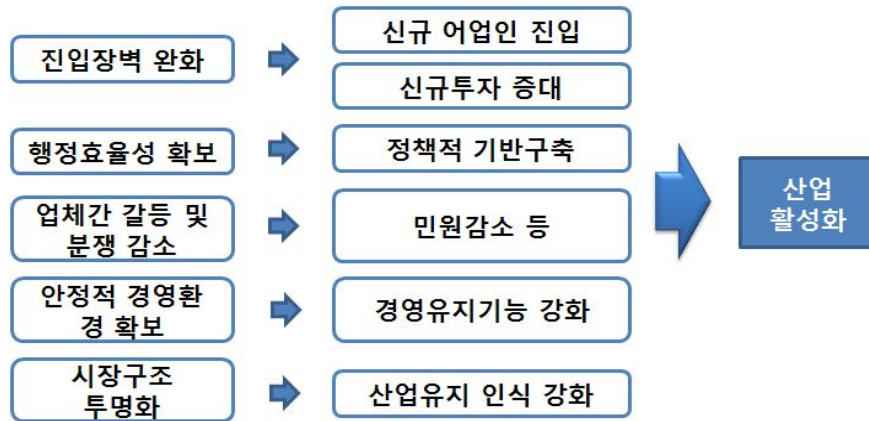
<그림 6-6> 상품가치 상승효과

라. 서비스 개선

- 허가제도의 규제완화로 인해 진입장벽이 완화될 경우 신규업체가 기존의 업체와 경쟁을 위하여 비가격경쟁 측면에서 서비스 등을 개선하게 됨
 - 앞서 상품의 품질 경쟁 역시 비가격경쟁의 하나로 상품의 차별화 전략에 포함되며, 서비스 개선의 경우 판매조건의 경쟁에 포함됨

마. 산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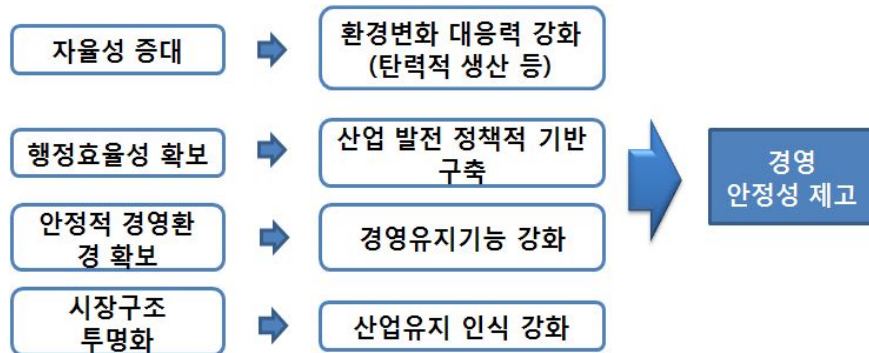
- 제도개선으로 인한 산업의 활성화 효과는 복합적 효과라 할 수 있음
 - 진입장벽 완화, 행정효율성 확보, 업체 간 갈등 및 분쟁 감소, 안정적 경영 환경 확보, 시장구조 투명화 등과 같은 기대현상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하였던 생산량 증가, 생산비용 감소, 상품가치 상승, 서비스 개선 등의 기대효과도 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가짐
- 첫째, 진입장벽 완화로 인해 신규 어업인 진입, 신규투자 증대는 산업의 외형적 확대를 가지고 오게 됨
- 둘째, 행정효율성 확보는 미래의 정책개발 및 추진의 기반을 구축함
- 셋째, 업체 간 갈등 및 분쟁 감소는 민원감소 및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게 됨
- 넷째, 안정적 경영환경 확보 및 시장구조 투명화는 어업인(업체)의 경영유지 기능 및 산업유지 인식을 강화하게 되며, 이러한 요인들은 원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됨



<그림 6-7> 산업 활성화 효과

바. 경영 안정성 제고

- 경영 안정성 제고효과는 결국 산업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자율성 증대로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력이 강화되고,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 구축, 경영유지 기능 강화는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여 어업인(업체)이 경영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그림 6-8> 경영 안정성 제고 효과

사. 소결

- 지금까지 검토한 원양어업에 대한 허가제도 개선과 쿼터배분방식 개선과 관련된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원양어업에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를 증가시켜 결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국에는 원양어획물의 가격인하 효과를 일으키고,
- 어획물의 관리 및 보관과 가공 등에 대한 자본의 투입 증가로 원양산 어획물의 상품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고,
- 신규업체와 기존업체 간의 경쟁유도를 통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 허가 및 쿼터제도 개선의 종합적인 시너지효과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원양업계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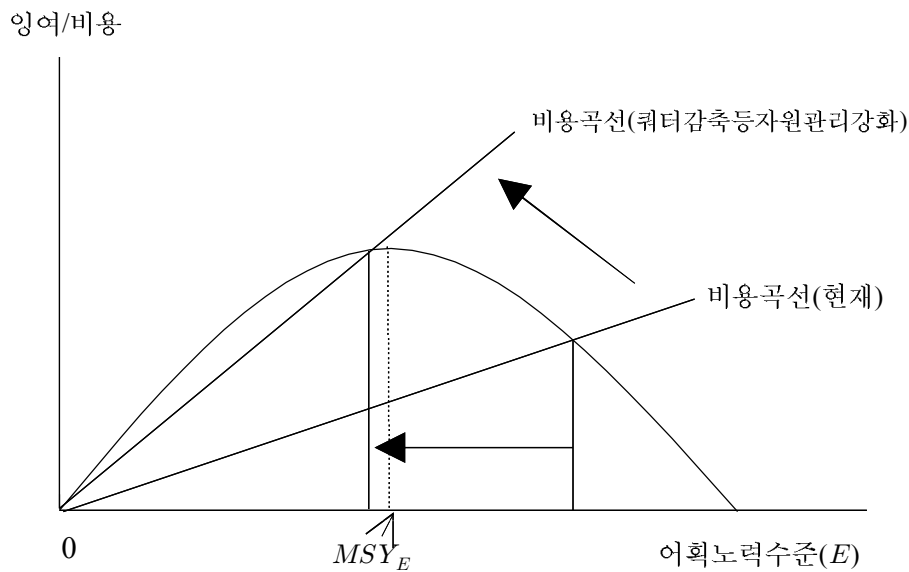
<표 6-7> 원양어업 제도개선 효과분석 요약

구 분	내 용
생산량 증가효과	진입장벽 완화(신규어업인 진입확대, 공정한 경쟁확대, 신규 투자확대), 자율성 증대 (환경변화 대응력강화), 국제적 이미지 제고(쿼터확보 용이 및 안정적 조업입지 확보), 안정적 경영환경 확보(경영규모 최적화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원양어업의 생산량 증가가 기대됨
생산비용 감소(가격인하) 효과	진입장벽 완화(신규투자확대, 경쟁력 제고 노력), 행정효율성 확보(민원감소 및 지원예산 확대 등), 업체간 갈등 및 분쟁감소(분쟁해결을 위한 기회비용 감소) 등으로 원양선사들의 생산 및 운영비 등의 잉여가 발생됨, 또한 원양어업의 생산비용 감소는 결국 원양어획물의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들이 기존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잉여가 발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상품가치 상승효과	진입장벽 완화(상품질 향상 노력 증대), 업체간 갈등 및 분쟁감소(시간적 기회비용감소)등으로 인한 원양생산품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됨
서비스 개선	원양신규 업체가 기존 업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비가격경쟁(서비스)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기대됨
산업 활성화	진입장벽 완화(신규어업인 진입, 신규투자 증대), 행정효율성 확보(정책적 기반구축), 업체간 갈등 및 분쟁감소(민원감소), 안정적 경영환경 확보(경영유지기능 강화), 시장구조 투명화(산업유지 인식 강화) 등으로 인하여 원양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경영 안정성 제고	자율성 증대(환경변화 대응력 강화), 행정효율성 확보(산업 발전 정책적 기반 구축), 안정적 경영환경 확보(경영유지기능 강화), 시장구조 투명화(산업유지 인식 강화)등으로 인하여 원양산업의 경영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제도개선 방안이 수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가. 수산물 수급에 대한 허가제도 개선안의 효과분석

- 원양어업 허가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는 (i)허가제도의 네거티브 방식도입, (ii)사전승인제도의 도입, (iii)허가의 일체갱신, (iv)원양어선 어업허가 우선 순위의 명확화, (v)쿼터(quotas)연계형 허가정수제도의 도입 (vi)정부의 조정 및 제재기능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제도들은 직·간접으로 원양어업 생산의 한계비용(marginal costs)에 영향을 끼치고, 따라서 수산물의 공급과 가격,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또한 원양 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은 외생변수(즉 연안국·지역수산관리기구의 수산관련 규범과 자원관리정책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개별 연안국의 어업자원 관리와 공해상 어업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양어업의 생산과 공급이 현재보다 향후에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6-9> 자원관리 강화와 비용곡선의 관계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그림 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연안국가나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의해 어획 노력 수준이나 쿼터의 감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업비용의 증가를 수반하게 됨
 - 이런 조업비용의 증가는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곧 생산 및 공급 감소로 이어짐으로써 경영 채산성을 악화시키게 됨
- 연안국가의 EEZ 내 또는 공해 어족자원이 뚜렷하고 지속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지 않는 한, 어획노력 및 쿼터의 감축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외생변수의 제약조건을 고려하면, 원양어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대외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국내 원양어업 관련제도를 고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 이것이 바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제도개선이라고 할 수 있음
- 앞에서 제시한 제도변화는 원양업체의 지대(rents)⁴⁹⁾ 또는 경제적 이윤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예컨대, 우선순위가 높거나 쿼터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어업지대를 향유하게 됨
- 개선안은 한편으로 원양어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세력, 그 밖의 자

49) 농업용·주택용·상공업용 토지는 물론이고 널리 어장·광구 등의 사용료도 포함됨. 근대경제학에서 지대가 명확하게 분석된 것은 D. 리카도의 차액지대설(差額地代說)에서이다. 리카도에 따르면 “토지에는 비옥도와 위치에 따라 지력(地力)에 차이가 있으며, 가장 척박한 땅에 비하여 비옥한 토지에서는 그 비옥도에 따라 생산비가 적게 드는 데서 오는 차액으로 지대가 발생한다”고 하였음. 이러한 차액지대설은 지대가 토지의 한계생산력(限界生産力)에 따라 결정된다는 한계생산력설(限界生産力說)의 맹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절대지대론(絶對地代論)을 주장하였음. 마르크스는 “토지의 사유가 법률상 인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차액지대가 나오지 않는 가장 척박한 토지에서도 이를 이용하는 데 일정한 지대를 요구한다”고 하였음. 그러므로 지대는 토지의 우열이라든가 위치와는 아무 관계없이 토지 사유에 근거하여 발생한다고 하였음. 농업에서는 토지가 사유인 한 농산물의 부족으로 여분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산업처럼 자본이 자유롭게 유입하여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항상 노동력의 가치 이상이 됨. 즉 농업노동자는 잉여이익을 지대로 지주에게 바친다고 하였음.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지대는 임금·이윤·이자 등과 같은 수입의 일종이며, 지대의 결정은 일반가격론과 같이 토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공급의 균형점에서 찾고 있음. 지대의 형태는 지불품목에 따라 노동지대·생산물지대·화폐지대 등이 있으며, 지대율(地代率)을 결정하는 데는 정액제와 정률제 등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타조법(打租法)과 도조법(賭租法)이 있었음.

연·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한 성격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외생변수의 영향이 매우 크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따라서 본 연구의 경제 분석은 정성적 접근방법(qualitative approach)을 채택하여 이루어졌음

(1) 허가제도의 네거티브 방식

- 허가제도의 네거티브 방식은 기본적으로 원양어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발생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⁵⁰⁾ 및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s)을 감축하는 데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음
- 또한 원양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경영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 어업 자원 보호 등 개별 국가와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설정한 규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네거티브 방식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으로써 원양업체의 한계생산을 높일 수 있고, 생산과 공급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2) 사전승인제도 도입

- 제도 개선은 필연적으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게 됨
- 문제는 어떻게 편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임

50) 거래비용이란 거래시 협상 및 계약의 모니터링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모든 상품 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이 거래비용은 시장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거래비용의 개념은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사용됨. 상품 거래에서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고급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규제는 특히 소비자들이 상품거래 정보를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함. 예컨대, 정부의 도량형 규제는 가솔린 구매자들이 거래시마다 가솔린 양 및 옥탄가 측정 도구를 일일이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해 줌.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아직 예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를 논의의 시점에서 크게 부각시키는 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제도 개선은 긴 기간 미루어지거나 아예 사장되어 버림으로써, 사적·공적 부문에서 큰 비용을 초래하게 됨
- 예컨대 현실이 매우 어렵게 되자, 최근에야 「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고, 그 동안 발전 지원법 부재 및 전략적 대응능력 미흡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에 비해 편익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적었는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음
- 사전허가제도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 재량 하에서 미래의 여건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평가하며, 수익 극대화화 비용 및 위험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임

(3) 일제갱신제도 도입

- 「원양산업발전법」은 어선별로 유효기간 5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와 같은 법·제도 하에서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어선이나 국제규범(예: IUU규범·협약, 항만국통제 규범·협약 등)을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위반한 어선을 퇴출시킬 수 없고, 신규 어업자 또는 어선의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절차적 비용과 대 연안국 진출 및 협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음
- 일제갱신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볼 때 (i)국내 원양어업 전체 일제갱신, (ii)조업해역별 일제갱신, (iii)업종별 일제갱신 들 수 있지만, 행정비용과 조정비용, 사회적 갈등비용을 고려하면, 국내 원양어업 전체 일제갱신이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 및 공급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4) 허가 우선순위의 명확화

- 규모가 큰 원양어업회사는 글로벌 정보력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가 우선순위의 명확화는 원양 대기업 쪽으로 지대 쏠림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을 수반하지만, 원양어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별 회사 차원에서 허가의 불확실을 완화해줌으로써 미래 위험비용을 줄일 수 있음
- 그러나 원양어업회사의 90% 이상이 단 한 척의 어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고,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 부채의 증가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 경영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임
 - 이는 결국 어선의 시장가치를 저하시키게 될 것임

(5) 쿼터(Quota) 연계형 허가정수제의 도입

- 쿼터연계형 허가정수제도는 쿼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허가하게 되면 업체 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쿼터량을 고려한 허가정수를 설정하는 것을 말함
 - 제도경제학의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흔히 절차와 경직성 및 불확실에 따른 한계비용의 증가를 수반할 수 있음
- 또한 행정당국과 원양산업발전심의회가 대외 여건 변화와 업계 상황을 적시에 인식하지 못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 그에 따른 한계비용 증가는 클 수 있음
- 특히 개별 회사의 노력에 의해 쿼터가 확보되거나 확보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업체 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별 업체가 쿼터 확보 과정에서 지불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임

(6) 정부의 조정 및 제재기능 강화

- 현행 원양산업발전심의회 또는 원양산업조정위원회의 신설 등을 통해 허가
와 쿼터배분과 관련한 현안 및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특히 심의회 또는 조정위원회가 권위를 가지고 승복의 질서를 창출할 수
있다면, 원양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고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원양 수산물 생산과 개별 업체의 경영 채산성을 제고하는 데 유의미한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연안국 또
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안정적 쿼터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격 제고에
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민관위원회는 종종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계와 현실에
어두운 학계,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권고
내지 의견 수렴이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의사결정 및 조정 역량이 취약하여 오히려 갈등을 표출하는 장으로
변질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는 자칫 잘못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
내 원양업체의 침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단계
적이고 현실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나. 수산물 수급에 대한 쿼터 배분방식 개선안의 효과분석

- 현행 쿼터배분방식은 정부가 확보한 쿼터에 대해서는 정부 기준에 따라 배
분하고, 민간이 직접 확보한 쿼터는 민간의 자율 배분에 맡기고 있음
- 그러나 수역, 할당주체, 쿼터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른 어종별, 해역별, 업
종별 여건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없이 기
존 업계가 관행 및 자체 협의에 의해 쿼터배분이 이루어져왔음

- 특히 민간이 직접 쿼터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득권에 따른 차액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막대한 갈등 비용이 초래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한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쿼터배분방식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i)지역수산물관리기구 쿼터 배분기준, (ii)연안국할당 정부쿼터 배분기준, (iii)연안국 활동 민간쿼터 배분기준 등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상기 세 가지 쿼터배분 기준들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연안국 또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쿼터량을 개별 원양업체에 배분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쿼터량의 증대보다는 거래비용과 갈등비용을 내부화할 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원양어업의 총생산량 및 공급량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단지, 이들 개선안이 쿼터배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원양업체 간 쿼터배분을 둘러싸고 초래되는 거래비용과 갈등비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어장별 맞춤형 및 국제기준 연계형 쿼터배분

-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주요 쿼터할당기준에는 (i)과거 어획량, (ii)현재 어획능력량, (iii)자원보존관리조치 및 어업관리규제 준수, (iv)합의된 쿼터할당량 준수 여부, (v)과학적 조사 및 보존을 위한 기여도, (iv)어선등록 및 감척, 국가별 어획능력 등이 있음
- 상기 국제수산물관리기구의 쿼터할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높은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이 수반될 것으로 추정되고, 업체와 정부가 추가적 준수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경우 국제수산물관리기구의 쿼터 확보량과 원양어업의 생산량 및 공급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임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그러나 주의할 점은 타 원양 조업국들이 무임승차를 할 경우 국제수산물관리기구의 총쿼터가 감소할 수 있고, 이는 한국과 국내 원양업체의 쿼터 배분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임

(2) 절충형 쿼터배분제도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절충형 쿼터배분기준 사항은 4가지로 요약됨
 - (i) 허가 선박의 어획능력(GT/HP),
 - (ii) 러시아 투자이행실적,
 - (iii) 어획노력량 및 과거 어획실적,
 - (vi) 국제규범 준수실적(IUU어업 적발,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여부 등)
- 절충형은 앞에서 제시된 국제수산물관리기구의 할당기준과 연계한 쿼터배분방식과 유사하고, “주는 것만큼 받는다”는 국제협력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임
- 향후 대 러시아 쿼터 확보 수준은 원양업체와 정부가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 명태의 경우 러시아 어장이 유일하고 업체와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대 러시아 쿼터는 다소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공급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3) 종합입찰제도

- 종합입찰제도는 경쟁입찰제도와 달리 정부가 연안국으로부터 쿼터를 확보하면,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가 제시한 매입희망가격 외에 어획능력, 조업실적, 국제규범준수 실적 등을 심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임
- 이 제도는 연안국(러시아)이 가장 중시하는 조건(러시아에 대한 수산투자 등)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어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대 연안국 쿼터 증대와 국내 공급량 확대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4) 쿼터이용료 부과제도

- 정부가 확보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또는 연안국 쿼터를 배분할 경우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어업자원세, 환경부담금 등과 유사한 쿼터이용료 부과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
- 쿼터이용료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대 연안국 또는 국제수산물관리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 해외수산물 확보와 원양 수산물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원양 어획물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반입으로 간주하여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쿼터이용료 부과는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봄

(5) 쿼터 거래제도(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System)

- 쿼터 거래제도는 쿼터에 대한 권리를 거래하는 것으로 시장기능에 근거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원관리에 있어서 국가나 국제수산물관리기구의 간섭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음
- 쿼터 거래제도가 도입되면 시장기능을 통해 규모화가 자연스럽게 촉진될 수 있고, 감척 등에 활용되는 정부예산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음
 - 또한 연안국과 국제수산물기구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쿼터량 증대와 원양수산물 공급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중요한 사건에 보듯이, 법과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고 공정한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취약할 경우 시장질서는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
 - 쿼터거래제도에 있어서도 모니터링(monitoring), 통제(control), 집행(surveillance) 등 소위 MCS가 취약할 경우 쿼터거래 질서가 쉽게 붕괴될 수 있는 단점을 안고 있음

제 7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1. 허가제도 개선방안

가. 원양어업 허가의 네거티브 방식 도입

- 「원양산업발전법」 상 허가조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제화 필요
- 허가 시 네거티브 리스트(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원양어업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원양어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할 현저하고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사전승인제 도입

- 「원양산업발전법」에 부분 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선박의 건조 및 구입 등 선박 신규도입의 경우 일정 기간의 유효기간을 둔 사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선박 이외의 관련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사전허가를 주고,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선박을 마련한 경우 정식허가를 주도록 개정

다. 원양어업 허가 일제갱신제 도입

- 원양어선의 척수 규제에 의하여 더 이상 조업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업 업종별 또는 해역별로 허가의 신청기간과 유효기간을 통일시키는 일

제갱신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허가의 우선순위 규정 마련

- 제1안 : 국내 원양어업 전체 일제갱신제 시행
 - 가장 포괄적으로 시행의 장점과 더불어 실제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
- 제2안 : 조업해역별로 일제갱신제 시행
 -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해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조업규제는 특정 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제3안 : 조업업종별로 일제갱신제 시행
 - 조업규제가 특정자원을 대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해역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는 단점 존재

라. 원양어선 어업허가 우선순위의 법제화

- 허가신청 경합의 경우 명확한 기준 및 지침 마련
 -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우선순위 조건인 새로 개발한 해외어장일 것, 선령 10년 이하의 어선을 갖출 것, 연안국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금지하는 어종이나 어업이 아닐 것,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등에 대한 충족 필요요건 명확화
-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규정에 불법어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된 자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명확한 우선순위 배제관련 요건을 마련
 - 이를 통해 허가신청 경합의 경우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허가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 제거를 통한 관련법 해석 및 적용 용이성 확보

마. 쿼터연계형 허가정수제

- 어업허가의 정수는 허가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을 감안하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여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의 종류별 또는 해역별로 허가의 정수를 미리 정하고, 원양어업의 상황변화(쿼터확보 고려)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바. 정부의 조정 및 제재 기능 강화

- 정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조정위원회) 신규허가, 허가정수, 쿼터배분, 쿼터거래 등의 문제를 조정하는 방안 추진
 -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톨 모델로 삼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화 필요
-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불법어업자에 대해 강력한 불이익을 주고, 최악의 경우 어업허가를 취소함으로써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함
 - 반면 준법 원양업체에 대해서는 쿼터배분을 포함하여 메리트(merit)를 부여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함
 - 불법어업 등을 단속하기 위한 감독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의 기능을 부여
 - IUU 어업 선박에 대한 국제수산기구 또는 제3국으로부터 항만국(port state) 검색 요청 시 검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2. 쿼터배분 방식 개선방안

가. 어장별 맞춤형 쿼터배분

- 지역수산관리기구 할당쿼터의 국내 쿼터배분 시에도 기구의 할당기준과 연계하여 쿼터배분 희망업체의 할당기준과의 적합성 및 기준 준수 등을 평가하는 방식 도입 필요

- 연안국할당 정부(GG)쿼터의 대표적 사례는 러시아의 경우이며, 이 경우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배분방식의 공평성을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함
 - 기존업체의 기득권과 신규진입업체의 형평성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민간자율에 맡겨져 있던 쿼터배분기준에 대해 정부 주도의 분쟁조정기능을 발휘하여 각 어종별·해역별·업종별로 적합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기준의 명확성 및 투명성 제공은 물론 업체 간 쿼터배분 갈등 완화

나. 국제기준 연계형 쿼터배분

-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쿼터할당기준과 연계한 지역수산관리기구 쿼터 배분 기준을 지침형태로 마련
 - 주요 쿼터할당기준을 중심으로 기준을 수립하고, 각 지역기구별 특이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타 항목을 마련
 - 각 요소 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지역수산관리기구 논의 동향에 맞추어 가중치를 조정 및 평가

- 국내 쿼터배분기준을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쿼터할당기준과 연계함으로써 국제규범의 적극적 이행 의지 표현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다. 절충형 쿼터 배분제

- 러시아 쿼터협상에서 러시아 측이 러시아 수산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러시아 투자이행 등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의 도입 필요
 - 러시아 투자의 규모 및 이행 빈도수 등에 가중치 부여 혹은 배점하여 투자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쿼터를 배분하는 방식 도입 필요

- 신규업체의 진입은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어획능력(GT/HP) 및 투자이행 실적 외에, 기존업체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어획노력량 및 과거 어획실적을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절충형 쿼터 배분제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4가지 기준
 - ① 허가 선박의 어획능력 (GT/HP)
 - ② 러시아 투자이행실적 : 러시아에 대한 투자규모 및 이행 빈도수 등
 - ③ 어획노력량 및 과거 어획실적
 - ④ 국제규범 준수실적 : IUU 어업 적발,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여부 등

라. 종합입찰제 도입

- 종합입찰제는 쿼터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 매입희망가격 외에 다양한 비가격적 요소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해 최적의 낙찰자들을 선정하는 방식
 - 종합입찰제 시행 시 다음과 같이 가격적 요소 및 비가격적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 심사가 요구됨
 - ① 가격적 요소 : 매입희망가격
 - ② 비가격적 요소 : 어획능력(GT/HP), 조업실적, 국제규범 준수(IUU 어업 적발 등) 실적 등

마. 쿼터이용료

- 정부의 기여에 의해, 즉 정부가 협상을 통해 획득하는 연안국 혹은 지역수산관리기구 쿼터 배분 시 쿼터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
- 쿼터이용료를 연안국 쿼터확보를 위한 수산투자기금 등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쿼터확보에 기여함으로써 그 이익이 원양선사에 다시 돌아가는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게 됨

바. 쿼터 거래제도

- 쿼터를 거래 혹은 양도 가능한 권리로 설정
 - 쿼터거래를 민간 자율에 맡길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쿼터거래 시 정부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통하여 쿼터거래 추진

- 쿼터 거래제도가 확립될 경우 관행상의 쿼터를 배정받았으나 어선의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업을 못하게 되면 쿼터가 필요한 업체에게 추가적 쿼터 확보 기회를 제공함

제 2 절 정책제언

1. 법·제도 개정 방향

가. 수산자원 확보에 1차적 목표 설정

- 「원양산업발전법」이 해외에서 수산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
 - 수산자원 확보를 「원양산업발전법」의 1차적 목표(objective)에 두고, 이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means)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함
- 해외에서 수산자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SMART' 원칙을 적용함
 - S : Specific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 M : Measurable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 A : Achievable (달성 가능하면서도 도전적이어야 하고)
 - R : Results-oriented (결과 지향적이고)
 - T : Time-bound (시간제약적이어야 함)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measures)은 '상황적응이론' (contingency theory)*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함
 -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의 제한이 필요한 상황(어장)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를 중심으로 허가를 발급하고, 쿼터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면 신규 업체가 새로 진입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신규 업체에 대해 허가를 부여하고, 쿼터를 배분하도록 해야 함
 - 기존 업체 중심의 폐쇄적 접근과 신규 업체 중심의 개방적 접근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채택되어야 하는 정책수단은 어느 것이 목표 달성에 유용한가 하는 상황적응적 접근법에 따라야 함

- 예를 들어 러시아 어장과 대서양 참치어장에 대한 허가과 쿼터배분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 각각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적용해야 함
- * 상황적응이론(contingency theory)은 조직의 구조와 관리가 조직이 직면한 상황적 변수(환경, 기술, 조직의 크기 등)에 의존한다는 관점으로 상황이 다르면 조직구조와 관리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함

나. 갈등 및 분쟁의 예방과 억제

-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이 정부-업체 간, 업체-업체 간의 갈등과 분쟁에 대해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거래비용과 갈등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이는 법규가 명확성과 실효성이 미흡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명확한 제도적 장치와 실효성이 있는 조치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1977년부터 주요 연안국들의 200해리 EEZ 또는 EFZ 선포 등 국제적 어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주요 원양어장의 상실과 과도한 입어료 요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양어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갈등과 분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참치 독항선 등 일부 원양선사들은 정부의 원양어업 구조조정사업을 통한 적절한 보상을 조건으로 폐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반면 일부에서는 원양어업에 대한 신규 진입을 희망하면서 허가 개방 및 쿼터 요구를 하고 있어 대조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 따라서 「원양산업발전법」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fair rule of game)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 이를 통해 보다 원양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전략 역량을 제고해야 함
 - 원양업체의 경영 채산성을 높이고, 원양 수산물의 생산능력을 증강하도록 해야 함
 - 쿼터배분도 정부쿼터 또는 민간쿼터를 막론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방식을 모색해야 함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허가제도와 쿼터배분 방식의 개선을 통해 (i)원양어업의 전략적 글로벌 운영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ii)원양어업 활동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과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iii)업체간, 업체와 정부 간 갈등과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적 환경 변수에 적합한 대응

- 본 연구에서는 허가제도 및 쿼터배분 제도 등 원양어업의 내생변수에 초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같은 방안은 원양어업의 수산물 생산 및 공급능력을 크게 증강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 현실적으로 원양어업은 외생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원양어업의 외생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국제수산물관리기구의 의사결정과 규범, 개별 연안국의 수산정책 등이 될 수 있음
 - 또한 원양어업은 불확실성이 높고, 조업국들에 대한 연안국 및 국제수산물관리기구의 쿼터 할당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따라서 한국 원양어업이 해외 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환경변수에 적합하게 대응해야 함
 - 국제수산물기구가 IUU 어업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맞춰 국내적으로도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함
 - 연안국 및 국제수산물기구가 규범준수, 투자, 유무상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 비용지불에는 ODA 자금을 통한 연안국 지원, 기금조성을 통한 연안국의 수산 및 경제개발 지원 등이 있음

2. 조직 및 인력 정비방안

가. 원양어업에 대한 거버넌스 확립

- 원양어업에 대한 정부의 거버넌스 체계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입어권(쿼터) 확보
 - ② 국내 배분체계의 구축 및 관리
 - ③ IUU 예방 등의 사후관리
- 이러한 관리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함

- 따라서 IUU어업, 보존관리조치 이행, 관련 연안국과의 협력활동 등에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중심으로 원양어업에 대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확립해야 함
- 어업허가, 입어권, 쿼터 배분 등에서 이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나.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원양산업발전법」 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 원양어업에 관한 조정,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원양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장기계획의 수립, 허가정수의 결정, 허가 우선순위 심의, 쿼터 할당 및 배분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

- 조정위원회는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의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내용을 준용함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이,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선임

다. 원양산업협회의 기능 강화

- 원양어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원양산업협회의 기능에 전문가 양성, 연구 기능, 국제기구 대응 기능, 국제읍서버 양성 등의 사업을 포함하도록 함
 -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협회 내에 두고, 사업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양어업을 통한 수산자원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연안국 또는 국제수산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정보, 연구, 자문 등의 시스템이 필요함

- 원양산업협회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다음 2가지 모델을 검토할 수 있음
 - 제1안은 「수협법」에 따른 수협중앙회 모델
 - 제2안은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협회를 참고하는 모델

- 제1안인 수협중앙회 모델을 따를 경우 한국원양산업협회가 현재 기능 이외에도 연구사업, 인력양성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음

- 제2안인 해외자원개발협회 모델을 따를 경우 현행 기능에 인력양성, 기술정보, 연구사업 등을 추가할 수 있음

사단법인 해외자원개발협회의 주요 사업

- 협회명
 - 해외자원개발협회(Energy &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ssociation of Korea: EMRD)
- 설립목적
 - 해외자원 개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원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함
- 사업 분야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호협력 및 공동참여 방안 협의
 - 석유, 가스, 광물자원 및 자원개발 사업에 관한 지식의 발전과 보급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교환, 분석, 평가, 발간 등 조사연구사업
 - 국내외 자원개발과 관련된 각종 통계의 작성 및 배포
 - 해외자원개발 조사활동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 대정부 건의 및 자문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홍보활동

라. 범정부적 기구의 구성 및 참여

- 범정부 차원에서 광물, 에너지 등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해외 수산자원에 대한 관심은 낮은 상황임
 - 「해외자원개발법」의 ‘자원’의 범위에 수산물은 제외되어 있음
 - 농업·수산·산림 등에 대한 해외자원 개발사업 예산이 에너지·광물에 비해 매우 미흡함에 따라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김영선 의원의 국무총리실 종합감사 발언, 2010.10.21)
-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수산자원이 외교, 안보, 연구, 기술, 무역, 개발, 산업, 환경 등을 통괄하는 종합적 영역임을 인식하고 범부처 간 공조강화에 주력해야 함
 - 수산분야 단독으로는 해외투자 등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가 제기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다른 분야와 협력관계를 통해 실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현실적임

해외자원의 범위

1. 광물 : 금광·은광·동광·연광·아연광·창연광·주석광·안티몬광·수은광·철광·크롬광·티타늄광·망간광·니켈광·텅스텐광·인광·알루미늄광·흑연·석탄·석유·운모·석면·유황·형석·석회석(대리석을 포함한다)·규사·규석·우라늄광·지르코늄광·염·카리광·백금광·코발트광·몰리브덴광·마그네슘광·금강석·고령토·사금·사석·사철·활석·희토류광·천연석고·사문석·루비·사파이어·바륨광·규조토·리튬·인듐,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광물
2. 농산물 및 축산물 : 밀·옥수수·콩·면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산물 및 축산물
3. 임산물 : 원목·제재목·합판·단판·우드·파티클보드·목재펠릿·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팜유나무·자트로파·석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1.7.14>

3. 재원조달 방안

가. 해외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자금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예산, 정책금융, 세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지원
 -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사업추진 시 관계부처와 협의 후 확정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선별적 지원 추진
 - 해외자원개발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투자보증, 수출보험 등의 형태로 자금 지원
 - 해외 수산자원 확보에 기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
- 「원양산업발전법」에 정부의 예산지원 근거를 확대하여 반영하는 한편 부처의 중장기 예산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

나. 기금신설 등 신규 투자재원 발굴

- 원양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기금의 설치 방안 검토 추진
 - 원양업체가 납부하는 쿼터이용료의 신설 등을 통해 기금 적립

다. 민간자본의 원양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 불황기에도 지속적으로 선대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선박금융 기반을 강화 하되, 수출기반보험을 통한 공적보증기능 강화 등의 방법으로 민간선박 펀드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중자금의 원양산업 투자 유도
- 원양어업 진출, 해외가공공장 설립, 유통 및 창고 설립, 해외 어항개발 등 신시장 개척에 정부 역할을 강화하여 민간자본의 진출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개도국에 지원 가능한 타당성 조사 지원이나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국내 기업에게 투자 진출 기회를 확보해 줄 수 있음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 단행본

- 국제수산개발연구원, 「원양수역총람」, (1981. 12)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어업 50년 발전사」(2008)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실 업무편람」(2010)
이상고, 「어업관리정책론」, 세종출판사(2008)
_____, 「원양산업발전론」, 디자인세상(2009)
_____.장창익, 「어업관리학」, 디자인세상(2002)
최병선,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영-」, 법문사(1992)
최종화·차철표, 「한국의 수산법제」, 도서출판 두남(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전받고 있는 한국원양어업」(1996. 1)
한국원양어업협회, 「원양어업통계연보」(2003)
한규설, 「한국어업제도 변화의 100년」, 선학사(2001)
홍종인, 「경제학원론」, 법문사(2004)

□ 논문

- 고준기·이병운, “개정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년 10월 9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비교노동법논총」, 제18호(2010)
김기수·장영수·김창완, “수산분야 조기자유화로 인한 우리나라 원양어업 파급효과 분석: 관세철폐효과를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제31권 제1호(2000)
김도훈, “지역수산기구의 어업관리 강화와 우리나라 대응방향”, 「KMI 해양수산 현안분석」, 2004-5(2004)
김동욱, “방송통신사업 규제개편의 방향”, 「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2008)
김민중, “한국의 원양어업 관련 국제어업분쟁에 관한 연구”, 부경대 박사학위논문(2003)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_____, “한국원양어업관련 국제분쟁 사례연구“, 「수산경영론집」, 제34권 제1호 (2003)
- 김상현·김대현, “안경업 진입규제 완화의 문제점들”, 「한국안광학회지」, 제15권 제1호(2010)
- 김선표·홍성결, “새로운 공해어업질서와 우리 원양어업의 대응”, 「해양정책연구」, 15-2(2000)
- 김용복·정해중,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실태 기초 조사 연구-원양어업 분야 중심으로”, 「수산연구」, 제24호(2006)
- 김은경, 이선화,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 제24권(2009. 3)
- 김재훈, “국고보조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비교정책적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제8권 1호(2003)
- 김재희, “혼합정수계획 모형을 활용한 원양산업의 최적 감척 일정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경영과학」, 제27권 제2호(2010)
- _____, “교차효율분석을 활용한 원양어업의 업종별 경쟁력 추정,” 「해양정책연구」 제24권 1호(2009)
- _____. 최강득·김수관, “원양어업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자료포락 분석 모형”, 「수산경영론집」, 제39권 제3호(2008)
- 김형훈, “바지사장 명의의 영업허가 효력”, 「행정법연구」, 통권19호(2007)
- 남종오, “적분 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수입수산물의 수요함수 추정 : 관세감축영향분석”,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2 No.1(2010)
- _____. 이창수·김수현, “노르웨이의 개별어선할당량(IVQ)제도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제23권 1호(2009)
- 박민규·임성범, “한국 원양산업에 관한 인식 및 포지셔닝 전략분석”, 「해양정책연구」, 제22권 2호(2007)
- 박민정, “규제완화의 한계 고찰을 통한 규제개혁의 방안 모색 - Wilson과 Tullock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4)
- 박정수·최성호, “한국 산업정책의 생산성효과 : 연구개발 및 진입규제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韓國經濟의 分析」, 제17권 제2호(2011. 8)
- 박현진, “공해 어업·기국관할권의 제한과 전통 국제법에 대한 도전”, 「서울국제법연구」, 제14권 2호(2007)

- 배병호, “수산분야 해외진출사업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관한 연구-해외수산 펀드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20권 제3호(2008)
- 사공영호, “가부장적 행정문화와 규제관료의 포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98)
- 선정원, “선진국으로의 발전과 진입규제의 개혁”, 「강원법학」, 제31권(2010)
- 신용민, “Fisheries Management by Regional Cooperation”, 「해양비즈니스」, 제6호(2005)
- _____, “Types of Regional Fisheries Cooperation and RFMO”, 「해양비즈니스」, 제12호(2008)
- _____, “수산예산의 배분변화에 관한 분석-지대추구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7권 제2호(2005)
- 유진근, “진입규제 완화 업종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KIET산업경제」, 2010년 2월(2010)
- 윤정현, “사전승인과 환경영향평가”, 「고시계」, 통권607호(2007)
- 이경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와 행정절차-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인가?”, 「행정법연구」, 통권15호(2006)
- 이무영,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항공기산업으로의 정부개입에 대한 개념 고찰-”, 「항공산업연구」, 제74집(2006)
- 이병희·조병익·김영민,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총요소생산성 증대 효과를 중심으로”, 「조사통계월보」, 9월호(2008)
- 이상고, “OECD 회원어업국의 ITQ 어업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7권 제1호(1995)
- _____. 강연실, “개방화시대 자유시장원리적 어업관리제도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 ITQ 어업관리체제를 중심으로”, 「수산경제연구」, 제1권 제1호(1994)
- _____,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부응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학술발표자료(2005)
- _____, “원양어업의 경영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발전모델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8권 제2호(2006)
- 이상규·이종철, “대량화물 운송시장 진입규제의 경제적 효과”, 「한국해운물류학회지」, 제25권 제3호(2009)
-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저스티스」, 통권106호(2008)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인권, “진입규제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3권(2004. 12)
- _____. 홍재범, “한국기업의 시장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조직연구」 Vol. 12(2004)
- 이형근, “어업허가의 재산권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 전영서, “농산물시장 개방화와 사회후생의 변화 -쌀시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 제13권(2004. 12)
- _____, “우리나라 독과점 시장구조에 대한 후생효과 분석”, 「산업조직연구」 제10집 제1호(2002)
- 전정환, “방송사업의 허가제도에 대한 위헌성 여부의 고찰“, 「공법연구」, 제24권 제4호(1996)
- 정광호·김원수,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1호(2005)
- 지응상, “원양어업에 있어서의 입어계약에 관한 소고”, 「해양산업연구소논문집」 17권(2004)
- 최승필,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인·허가 및 신고,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2011)
- 최영규, “영업허가의 개념과 범위-이른바 공기업특허와의 구별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1집(1993)
- 차철표,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해사문제연구」, 제10집(2004)
- _____,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제도의 개선에 관한 고찰”, 「해사법연구」, 10-1, (1998)
- 최종화·차철표, “우리나라 어업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13권 1호(2001)
- 하병기 외, “규제개혁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세미나발표자료」(1999. 9)
- 황 근, “방송 콘텐츠 시장의 진입규제와 쟁점”, 「한국방송학회」(2008)

□ 보고서

- 국립수산과학원, 「2007년도 원양어업 종합분석보고서」(2008)
- 국립수산진흥원, 「원양어업자료 종합분석 보고서」(2005. 5)

- 국회법제실, 「원양어업 회생을 위한 제도적 육성방안」, 제2007-9호(2007)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관리기구 어획쿼터관리체제 연구」(2011)
- _____, 「수산물자급률 지표 도입 타당성 및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2011)
- _____, 「해외어항 개발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2009)
- _____, 「원양어업 경영구조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07)
- 수산정책연구소, 「양식어업의 규제개선 방안 연구」(2011)
- 수산청 국립수산진흥청, 「남빙양 새우어장 시험 조사보고서」(1982)
- 수산청, 「원양어업의 세계화 전략」(1995)
- 에너지경제연구원, 「신고유가 대응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08-11(2008. 12)
- 한국경제연구원,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2002)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요 어류의 소비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2004)
- 해양수산부,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부응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2005)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단계적 설립 추진계획」(2003. 10)
- 해양수산부, 「신해양질서에 대응한 원양어업개편방안에 관한 연구」(2003. 9)
- _____, 「남서태평양 해양자원 개발조사」(1999. 2)
- _____, 「동남아·인도양 연안국의 입어제도」(2007. 7)
- _____,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단계적 설립 추진계획」(2003. 10)
- _____, 「신국제어업질서 구축에 따른 국제어업 협력방안」(2000)
- _____, 「원양어업 구조조정 방안」(2002. 12)
- _____, 「인도양 서남부해역 신어장개발 자원조사」(2002)
- _____, 「주요 EEZ 연안국의 외국인어업규제에 관한 법제연구」(2003. 7)
- _____, 「칠레 및 칠레 주변어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2003. 10)
- _____, 「해외어장진출가이드」(2002. 8)
- _____, 「한국원양어업삼십년사」(1990. 12)
- _____, 「한국원양어업오십년사」(2007. 12)

□ 기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업무보고(내부자료)」(2003. 11)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국립수산진흥원, 「원양어업 자원조사 과학읍서버 지침서」(1997. 3)

_____, 「주요국가 수산편람」(1996)

_____, 「제5차 WTO각료회의 출장자료」(2003. 9)

II. 국외문헌

□ 단행본

Acs Zohan and David Audretsch, *Innovation and Small Firms*, Cambridge, MA: MIT Press(1990)

□ 논문

Aghion, Philippe, Richard Blundell, Rachel Griiffith, Peter Howitt, and Susanne Prantl, "The Effects of Entry on Incumbent Innovation and Productiv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2009)

Andrew Serdy, "Trading of Fishery Commission Quota under International Law", 21 *Ocean Yearbook* 265(2007)

Baldwin John Russei, Gorecki Paul K., "Firm Entry and Exit in Canadian Manufacturing Sector, 1970-1982",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24(1991)

Clifford Winston, "Economic deregulation: Days of reckoning for microeconomist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1(1993)

Geroski, Paul A., "Entry and the Rate of Innovation",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y* 1(1991)

Crafts, Nocholas, "Regulation and Productivity Performanc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2, No.2(2006)

Crothers, G.T. and L. Nelson, "High Seas Fisheries Governance: A Framework for the Future?", paper presented to *the Sharing the Fish Conference*, (2006)

Geroski, Paul A., "Entry, Innov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Review of Economics*

- and Statistics* Vol.71(1989)
- Geroski, Paul A., "Entry and the Rate of Innovation",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y* 1(1991)
- Grafton, R.Q., R. Hannesson, B. Shallard, D. Sykes and J. Terry, "The Economics of Allocation in Tuna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Economics and Environment Network Working Paper* EEN0612,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2006)
- Scott, A., "Evolution of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as a Distinct Class of Property Right, in The Economics of Fishery Management in the Pacific Islands Region", edited by Campbell, Menz and Waugh, *ACIAR Bulletin* No 26,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Research(1989)
- Struzenegger, Federico & Mariano Tommasi,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the Cost of Rent-Seeking, and Economic Growth", *Economic Inquiry*, Vol 32(1994)
- Tom Tietenberg, "Tradable Permits in Principle and Practice", *Moving to Markets in Environmental Regulation*(2006)
- Yoshihiro Kuronuma, "Is National Transferable Quota an Economic Policy O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 23, No. 4/5/6 (1996)

□ 보고서

- Arnold, Jens, Giuseppe Nicoletti and Stefano Scarpetta, "Regulation, Allocativ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 OECD Countries: Industry and Firm-Level Evidence",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616, OECD Publishing(2008)
- Conway, Véronique Janod and Giuseppe Nicoletti, "Product Market Regulation in OECD Countries, 1998 to 2003",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419, OECD(Paris)(2005)
- D. J. Agnew, D. Aldous, M. Lodge, P. Miyake, and G. Parkes, *Discussion Paper: Allocation Issues for WCFPC Tuna Resources*, prepared for the WCFPC Secretariat by MRAG Ltd.(2006)
- Loayza, Norman V., Ana Maria Oviedo & Luis Servén, "Regul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No.3469(2004)

MRAG(Marine Resources Assessment Group Ltd), “Allocation Issues for WCPFC Tuna Resources”, *Report for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2006)

OECD, "The Economics Benefits of Regulatory Reform", *OECD Economic Studies* No.28, 1997/ I (1997)

Robin Allen, “International Management of Tuna Fisheries: Arrangements, Challenges and a Way Forward”, *FAO Fisheries and Aquaculture Technical Paper* Nr. 536, Rome: FAO(2010)

□ 국제기구 자료

CCSBT, Report of the Twelfth Annual Meeting of the Commission

CCSBT, Report of the Twelfth Annual Meeting of the Commission

CCSBT, Strategic Plan for 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August 2011

ICCAT Resolution 01-25

ICCAT, Report of the 4th meeting of the ICCAT ad-hoc working group on allocation criteria

ICCAT, Proceedings of the 17th Regular Meeting

ICCAT, Recommendation 12-01 on temporary adjustment of quotas

NAFO, Quota table 2010

NAFO, Conservation and Enforcement Measures 2010

부 록

1. 일본 원양어업 허가증

許可番號	T 第 521 號	遠洋かつお・まぐろ 漁業許可証		
住 所	富山縣下新川郡入善町崎370番地			
氏 名 又は 名 称	池田水産株式會社			
船 舶	船 名	第五十八豊進丸	總 ト ン 數	379 トン
	漁船登録番號	TY1-86	使用權の種類 及び 期 限	自己所有船
操業區域	全 海 域			
操業期間	周 年			
漁業の方法	うきはえなわ			
漁業根據地	(餘 白)			
漁獲物等 陸揚港	(餘 白)			
有效期間	平成 12年 7月 11日から 平成 14年 7月 31日まで			
制 限 又は 條 件	<p>1 外國の漁業に関する管轄權が及ぶ水域内で操業する場合には、當該國の入漁許可を受けるとともに、當該國の發給する許可證に記載されている制限又は條件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2 漁場の秩序の維持及び國際取決めに遵守するために當該漁業の操業について、漁業監督官が必要と認めて指示した場合には、これ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p> <p>3 みなみまぐろの採捕を目的として操業する場合には、海鳥を捕獲するおそれがないと農林水産大臣が認める場合を除き、海鳥の捕獲を回避するための吹き流し装置を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p>			
平成 12年 7月 11日				
農林水産大臣				

附 記 この船舶の総トン数のうちトン数補充の対象となるトン数は 300トンである。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허가번호	T 제 521호	원양 가다랑어·참치 어업허가증		
주소	도아마현 시모신가와군 370번지			
성명 또는 명칭	이케다 수산 주식회사			
선박	선명	제58	총톤수	379톤
	어선등록번호	TY1-86	사용권의 종류 및 기한	자기소유선
조업구역	전해역			
조업기간	주년			
어업방법	부표주낙어업			
어업근거지	(여백)			
어획물 등 육양항	(여백)			
유효기간	2000년 7월 11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제한 또는 조건	<p>1 외국의 어업에 관한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입어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해당국이 발급하는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제한 또는 조건을 준수해야한다.</p> <p>2 어장의 질서 유지 및 국제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어업의 조업에 대해서, 어업감독관이 필요와 판단에 따라 지시한 경우에는, 이것에 따라야한다.</p> <p>3 남방 참다랑어의 채포를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해조를 포획할 염려가 없다고 농림수산대신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조의 포획을 회피하기 위한 표시 장치를 사용해야한다.</p>			
<p>2000년 7월 11일</p> <p>농림수산대신</p>				

부 기 이 선박의 총 톤수 중 톤수 보충의 대상이 되는 톤수는 300톤이다.

許可番号	T 第 1005 号	遠洋かつお・まぐろ 漁業許可証				
住所	北海道市入舟五丁目5番20号					
氏名 又は 名称	浜木漁業株式會社					
船名	船名	第三十五八幡丸	總トン數	420 トン	階層名	(五)
	漁船登録番号	HK1-1324		使用權の種類 及び期限	自己所有船	
操業区域	裏面記載のとおり					
操業期間	周 年					
漁業の方法	浮きはえ縄					
漁業根據地	(餘 白)					
漁獲物等 陸揚港	(餘 白)					
有効期間	平成 19年 8月 1日 から 平成 24年 7月 31日 まで					
制 限 又 は 條 件	<p>1 外國の漁業に関する管轄權が及ぶ水域内で操業する場合には、當該國の入漁許可を受けるとともに、當該國の發給する許可證に記載されている制限又は條件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2 漁場の秩序の維持及び國際取決めに遵守するため、當該漁業の操業について、漁業監督官がその職務を行う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て指示した場合には、これ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p> <p>3 みなみまぐろの採捕を目的として操業する場合には、海鳥を捕獲するおそれがないと農林水産大臣が認める場合を除き、海鳥の捕獲を回避するための吹き流し装置を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4 大西洋のまぐろ類の保存のための條約、全米熱帯まぐろ類委員會の設置に関するアメリカ合衆國とコスタ・リカ共和國との間の條約、みなみまぐろの保存のための條約、インド洋まぐろ類委員會の設置に関する協定及び西部及び中部太平洋における高度回遊性魚類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條約（以下「中西部太平洋條約」という。）に基づき定められた保存管理措置の遵守を確保するため、これらの條約の締約國であり、かつ、國連公海漁業協定の締約國により正當に權限を与えられた検査官が、公海水域において乗船及び検査の受入れを要請した場合であつて、我が國の漁業監督官が、當該検査官が行う乗船を受け入れるよう指示したときは、これ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p> <p>5 4により乗船した検査官が行う検査（漁船、漁具、裝置、設備、漁獲物及びその製品の検査、漁業の許可證その他の關係書類の閲覽並びに必要な限度における物件の集取を含む。）を拒み、妨げ、又は忌避してはならない。</p> <p>6 4により漁業監督官の指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當該漁業監督官がその指示する港への移動を命じたときは、これ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p> <p>7 中西部太平洋條約第三條1に規定する海域のうち我が國の排他的經濟水域を除く海域及びその海域に沿う港内において、中西部太平洋條約第一條（c）に規定する委員會に登録された船舶以外の船舶から燃料、漁具その他の漁業用資材の補給を受けてはならない。</p>					
	<p>平成 19年 7月 25日</p> <p>農林水産大臣</p>					

附 記 この船舶の總トン數のうちトン數補充の對象となるトン數は 300トンである。
平成22年9月14日 書換交付 「制限又は條件」 の追加及び變更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허가번호	T 제 1005호		원양 가다랑어·참치 어업허가증			
주소	훗카이도					
성명 또는 명칭	하마기 어업 주식회사					
선박	선명	제35	총톤수	420톤	계층명	(5)
	어선등록번호	HK1-1324	사용권의 종류 및 기한		자기소유선	
조업구역	이면기재					
조업기간	주 년					
어업방법	부표주낙어업					
어업근거지	(여 백)					
어획물 등 육양항	(여 백)					
유효기간	2007년 8월 1일 부터			2012년 7월 31일 까지		
제한 또는 조건	<p>1 외국의 어업에 관한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입어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해당국이 발급하는 허가증에 기재되어있는 제한 또는 조건을 준수해야한다.</p> <p>2 어장의 질서 유지 및 국제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어업의 조업에 대해서, 어업감독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경우에는, 이것에 따라야한다.</p> <p>3 남방 참다랑어의 채포를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해조를 포획할 염려가 없다고 농림수산대신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조의 포획을 회피하기 위한 표시 장치를 사용해야한다.</p> <p>4 대서양의 참치류의 보존을 위한 조약, 전미열대 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아메리카 합중국과 코스타리카 공화국과의 사이의 조약, 남방 참다랑어의 보존을 위한 조약, 인도양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 및 서부 및 중서부태평양에 있어서의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약 (이하 「중서부태평양조약」 이라 한다.) 에 근거하여 결정된 보존관리조치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것들의 조약의 체결국이고, 한편, 유엔공해어업협정의 체결국에 의한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관이, 공해수역에 있어서 승선 및 검사의 승낙을 요청한 경우로서, 우리나라의 어업감독관이 해당검사관이 행하는 승선을 승낙하도록 지시한 때는, 이것에 따라야한다.</p> <p>5 4에 의해 승선한 검사관이 행하는 검사 (어선, 어구, 장치, 설비, 어획물 및 제품의 검사, 어업의 허가증 그 밖의 관계서류의 열람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의 물건의 모음 포함)를 거부하고, 방해하고,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된다.</p> <p>6 4에 의해 어업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어업감독관이 그 지시하는 항으로의 이동을 명령한 때는, 이것에 따라야한다.</p> <p>7 중서부태평양협약 제3조 1에 규정하는 해역 중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 한 해역 및 그 해역에 따른 항내에 있어서, 중서부태평양조약 제1조 (c)에 규정하는 위원회에 등록된 선박이외의 선박으로부터 연료, 어구 그 밖의 어업용자재의 보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p>					
2007년 7월 25일						
농림수산대신						

부 기 이 선박의 총 톤수 중 톤수 보충의 대상이 되는 톤수는 300톤이다.

2010年 9月 14日 서환교부 「제한 또는 조건」의 추가 및 변경

操業區域 (遠洋かつお・まぐろ漁業)

1. 第一海區 オーストラリアの南海岸線と東經百四十一度の線との交點から南緯五十五度東經百四十一度の点に至る直線、南緯五十五度東經百四十一度の点から南緯五十五度東經百五十度の点に至る直線、南緯五十五度東經百五十度の点から南緯六十度東經百五十度の点に至る直線、南緯六十度東經百五十度の点から南緯六十度西經百三十度の点に至る直線、南緯六十度西經百三十度の点から南緯四度西經百三十度の点に至る直線、南緯四度西經百三十度の点から南緯四度西經百五十度の点に至る直線、南緯四度以北の西經百五十度の線から成る線以西の太平洋の海域
2. 第二海區 オーストラリアの南海岸線と東經百四十一度の線との交點から南緯五十五度東經百四十一度の点に至る直線、南緯五十五度東經百四十一度の点から南緯五十五度東經八十度に至る直線、南緯五十五度東經八十度の点から南緯四十五度東經八十度に至る直線、南緯四十五度東經八十度の点から南緯四十五度東經三十度の点に至る直線、南緯四十五度東經三十度の点から東經三十度の線とアフリカ大陸南海岸線との交點に至る直線から成る線以北のインド洋の海域
3. 第三海區 北緯三十度の線以北、西經四十五度の線以東の大西洋の海域 (地中海を含む。)
4. 第四海區 アフリカ大陸の西海岸線と北緯三十度の線との交點から北緯三十度西經四十五度の点に至る直線、北緯三十度西經四十五度の点から北緯十度西經四十五度の点に至る直線、北緯十度西經四十五度の点から北緯十度西經三十五度に至る直線、北緯十度西經三十五度の点から北緯五度西經三十五度の点に至る直線、北緯五度西經三十五度の点から北緯五度西經三十度の点に至る直線、北緯五度西經三十度の点から赤道と西經三十度との交點に至る直線、赤道と西經三十度との交點から赤道と西經二十五度との交點に至る直線、赤道と西經二十五度との交點から南緯五十度西經二十五度の点に至る直線、南緯五十度西經二十五度の点から南緯五十度東經三十度の点に至る直線、南緯五十度東經三十度の点からアフリカ大陸の南海岸線と東經三十度の線との交點に至る直線から成る線以東の大西洋の海域
5. 第五海區 北緯三十五度以北の西經四十五度の線、北緯三十五度西經四十五度の点から北緯三十五度西經六十五度の点に至る直線、北緯三十五度西經六十五度の点から北緯二十度西經六十五度の点に至る直線、北緯二十度西經六十五度の点以西の北緯二十度の線から成る線以西の大西洋の海域
6. 第六海區 西經六十五度以西の北緯二十度の線、北緯二十度西經六十五度の点か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ら北緯三十五度西經六十五度の点に至る直線、北緯三十五度西經六十五度の点から北緯三十五度西經四十五度の点に至る直線、北緯三十五度西經四十五度の点から北緯十度西經四十五度の点に至る直線、北緯十度西經四十五度の点から北緯十度西經三十五度の点に至る直線、北緯十度西經三十五度の点から北緯五度西經三十五度の点に至る直線、北緯五度西經三十五度の点から北緯五度西經三十度の点に至る直線、北緯五度西經三十度の点から赤道と西經三十度の線との交点に至る直線、赤道と西經三十度の線との交点から赤道と西經二十五度の線との交点に至る直線、赤道と西經二十五度の線との交点から南緯五十度西經二十五度の点に至る直線、南緯五十度西經二十五度の点から南緯五十度西經五十度の点に至る直線、南緯五十度西經五十度の点から南緯六十度西經五十度の点に至る直線、南緯六十度西經五十度の点から南緯六十度西經六十七度十六分の点に至る直線、南緯六十度西經六十七度十六分の点から南アメリカ大陸の南海岸線と西經六十七度十六分の線との交点に至る直線から成る線以西の大西洋の海域

7. 第七海區 南アメリカ大陸の南海岸線と西經六十七度十六分の交点から南緯六十度西經六十七度十六分の点に至る直線、南緯六十度西經六十七度十六分の点から南緯六十度西經百三十度の点に至る直線、南緯六十度西經百三十度の点から南緯四度西經百三十度の点に至る直線、南緯四度西經百三十度の点から南緯四度西經百五十度の点に至る直線、南緯四度以北の西經百五十度の線から成る線以東の太平洋の海域
8. 第八海區 第一海區から第七海區までを除く全海域

조업구역 (원양 가다랑어·참치 어업)

1. 제1해구 호주의 남해안선과 동경 백사십일도의 선과의 교점에서 남위 오십오도 동경 백사십일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남위 오십오도 동경 백사십일도의 점에서 남위 오십오도 동경 백오십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남위 오십오도 동경 백오십도의 점에서 남위 육십도 동경 백오십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남위 육십도 동경 백오십도의 점에서 남위 육십도 서경 백삼십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남위 육십도 서경 백삼십도의 점에서 남위사도 서경 백삼십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남위사도 서경 백삼십도의 점에서 남위사도 서경 백오십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남위사도 이북의 서경 백오십도의 선으로 이루어진 선 이서의 태평양의 해역
2. 제2해구 호주의 남해안선과 동경백사십일도의 선과의 교점에서 남위 오십오도 동경 백사십일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남위 오십오도 동경백사십일도의 점에서 남위 오십오도 동경 팔십도에 이르는 직선, 남위 오십오도 동경 팔십도의 점에서 남위 사십오도 동경 팔십도에 이르는 직선, 남위 사십오도 동경 팔십도의 점에서 남위 사십오도 동경 삼십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남위 사십오도 동경 삼십도의 점에서 동경 삼십도의 선과 아프리카 대륙 남해안선과의 교점에 이르는 직선으로 이루어진 선 이북의 인도양의 해역
3. 제3해구 북위 삼십도의 선 이북, 서경 사십오도의 선 이동의 대서양의 해역 (지중해를 포함)
4. 제4해구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선과 북위 삼십도의 선과의 교점에서 북위 삼십도 서경 사십오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북위 삼십도 서경 사십오도의 점에서 북위 십도 서경 사십오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북위 십도 서경 사십오도의 점에서 북위 십도 서경 삼십오도에 이르는 직선, 북위 십도 서경 삼십오도의 점에서 북위 오도 서경 삼십오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북위 오도 서경 삼십오도의 점에서 북위 오도 서경 삼십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북위 오도 서경 삼십도의 점에서 적도와 서경 삼십도와의 교점에 이르는 직선, 적도와 서경 삼십도와의 교점에서 적도와 서경 이십오도와의 교점에 이르는 직선, 적도와 서경 이십오도와의 교점에서 남위 오십도 서경 이십오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남위 오십도 서경 이십오도의 점에서 남위 오십도 동경 삼십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남위 오십도 동경 삼십도의 점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남해안선과 동경 삼십도의 선과의 교점에 이르는 직선으로 이루어진 선 이동의 대서양의 해역
5. 제5해구 북위 삼십오도 이북의 서경 사십오도의 선, 북위 삼십오도 서경 사십오도의 점에서 북위 삼십오도 서경 육십오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북위 삼십오도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서경 육십오도의 점에서 북위 이십도 서경 육십오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북위 이십도 서경 육십오도의 점 이서의 북위 이십도의 선으로 이루어진 선 이서의 대서양의 해역

6. 제6해구 서경 육십오도 이서의 북위 이십도의 선, 북위 이십도 서경 육십오도의 점에서 북위 삼십오도 서경 육십오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북위 삼십오도 서경 육십오도의 점에서 북위 삼십오도 서경 사십오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북위 삼십오도 서경 사십오도의 점에서 북위 십도 서경 사십오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북위 십도 서경 사십오도의 점에서 북위 십도 서경 삼십오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북위 십도 서경 삼십오도의 점에서 북위 오도 서경 삼십오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북위 오도 서경 삼십오도의 점에서 북위 오도 서경 삼십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북위 오도 서경 삼십도의 점에서 적도와 서경 삼십도의 선과의 교점에 이르는 직선, 적도와 서경 삼십도의 선과의 교점에서 적도와 서경 이십오도와 교점에 이르는 직선, 적도와 서경 이십오도와 교점에서 남위 오십도 서경 이십오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남위 오십도 서경 이십오도의 점에서 남위 오십도 서경 오십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남위 오십도 서경 오십도의 점에서 남위 육십도 서경 오십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남위 육십도 서경 오십도의 점에서 남위 육십도 서경 육십칠도 십육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남위 육십도 서경 육십칠도 십육분의 점에서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해안선과 서경 육십칠도 십육분의 선과의 교점에 이르는 직선으로 이루어진 선 이서의 대서양의 해역
7. 제7해구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해안선과 서경 육십칠도 십육분의 교점에서 남위 육십도 서경 육십칠도 십육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남위 육십도 서경 육십칠도 십육분의 점에서 남위 육십도 서경 백삼십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남위 육십도 서경 백삼십도의 점에서 남위 사도 서경 백삼십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남위 사도 서경 백삼십도의 점에서 남위 사도 서경 백오십도의 점에 이르는 직선, 남위 사도 이북의 서경 백오십도의 선으로 이루어진 선 이동의 태평양의 해역
8. 제8해구 제1해구에서 제7해구까지를 제외한 전 해역

2. 일본의 참치어선 감척 관련 자료

プレスリリース

平成 21 年 3 月 19 日
水 産 庁

国際漁業再編対策に基づくまぐろはえ縄漁業の再編整備に関する実施計画の認定について

国際漁業再編対策に基づく遠洋まぐろはえ縄漁業及び近海まぐろはえ縄漁業の再編整備に関する実施計画を、3月19日付けで認定しましたのでお知らせします。

1. 経緯

- 1月 30日 農林水産大臣が、遠洋まぐろはえ縄漁業及び近海まぐろはえ縄漁業の再編整備に関する基本方針を策定。
- 2月 25日 基本方針に基づき、3団体（日本かつお・まぐろ漁業協同組合、全国漁業協同組合連合会、(社)全国近海かつお・まぐろ漁業協会）が、まぐろはえ縄漁業について再編整備に関する実施計画を作成。
- 3月 6日 関係知事を経由した認定申請を受理。
- 3月 19日 農林水産大臣が、各団体の作成した再編整備に関する実施計画を、申請のとおり認定。

2. 実施計画の概要

- (1) 減船隻数 合計 87隻
 - (ア) 遠洋まぐろはえ縄漁業 64隻
 - 日本かつお・まぐろ漁業協同組合 49隻
 - 全国漁業協同組合連合会 11隻
 - (社) 全国近海かつお・まぐろ漁業協会 4隻
 - (イ) 近海まぐろはえ縄漁業 23隻
 - (社) 全国近海かつお・まぐろ漁業協会 23隻
- (2) 実施時期 平成 20 年度

3. 今後のスケジュール

- 3月末 廃業届けの提出
- 4月以降 救済費交付金、処理費交付金の申請・交付

遠洋まぐろはえ縄漁業及び近海まぐろはえ縄漁業の 再編整備に関する基本方針の概要

【遠洋まぐろはえ縄漁業及び近海まぐろはえ縄漁業のそれぞれについて、基本方針を策定】

1 再編整備の指針

(1) 再編整備の基本的考え方

(遠洋) 大西洋のクロマグロ、中西部太平洋のメバチ漁獲量の削減
(近海) 中西部太平洋のメバチ漁獲量の削減
などにより、相当規模の減船が必要。

(2) 再編整備の対象

平成20年12月末日時点において許可を受けていた者。

(3) 再編整備の実施期間

平成20年度とし、平成21年度以降については対象としない。

(注)実施計画の認定、廃業の届出を平成21年3月までに終了。

2 再編整備のために講ずる措置の基本的内容

(1) 措置の対象漁業者

ア 減船漁業者救済費交付金

(ア)平成20年12月末日直前3年間に2年以上当該漁業を営んだ者。

(イ)以下の団体が作成した実施計画に基づき、廃業した者。

(遠洋) 日本かつお・まぐろ漁業協同組合、全国漁業協同組合連合会、
(社)全国近海かつお・まぐろ漁業協会

(近海) 全国漁業協同組合連合会、(社)全国近海かつお・まぐろ漁業協会

(ウ)従業員数300人以下、使用漁船の合計総トン数3,000トン以下であるもの。

イ 不要漁船処理費交付金

スクラップ処分した漁船の所有者。

(2) 措置の内容

(社)大日本水産会は、(1)の者に対して、救済費交付金及び処理費交付金を交付。

(3) 救済費交付金及び処理費交付金の基準

以下の算定方式により算定された額。

1 減船漁業者救済費交付金の算定方式

(1) 経費補てん金

ア 材料費相当額：不要漁具の処分損の額

イ 労務費相当額：以下の(ア)~(ウ)の合計額

(ア) 固定給相当額：減船に伴う帰港から解雇までの固定給の総額に0.9を乗じた額
(2か月分が上限)

(イ) 船員保険料相当額：(ア)に係る船員保険料の船主負担額の総額

(ウ) 退職金相当額：退職金の総額(基準月額6か月分が上限)

ウ 固定経費(修繕費)相当額：減船に伴い無駄となった船体修繕経費

エ 一般管理費相当額：ア~ウの合計の8%

(2) 特別交付金

(遠洋) 1,915万円

(近海) 280万円(総トン数 10~20トン)、870万円(総トン数 20~120トン)

2 不要漁船処理費交付金の算定方式

船齢等に応じた単価に当該漁船の総トン数を乗じた額の3分の2に相当する額

발표문

2009년 3월 19일
수 산 청

**국제 어업 재편 대책에 근거한 참치 주낙어업의 재편정비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정에 대해서**

국제 어업 재편 대책에 근거한 원양 참치 주낙어업 및 근해 참치 주낙어업의 재편정비에 관한 실시계획을, 3월 19일자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1. 경위

- 1월 30일 농림수산대신이, 원양 참치 주낙어업 및 근해 참치 주낙어업의 재편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
- 2월 25일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3단체 (일본 가다랑어·참치 어업협동조합,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사) 전국 근해 가다랑어·참치 어업협회) 가, 참치 주낙어업에 대해서 재편정비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
- 3월 6일 관계지사를 경유한 인정신청을 수리.
- 3월 19일 농림수산대신이, 각 단체가 작성한 재편정비에 관한 실시계획을, 신청한대로 인정.

2. 실시계획의 개요

- (1) 감선척수 합계 87척
 - (가) 원양참치주낙어업 64척
 - 일본 가다랑어·참치 어업협동조합 49척
 -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11척
 - (사) 전국 근해 가다랑어·참치 어업협회 4척
 - (나) 근해 참치 주낙 어업 23척
 - (사) 전국 근해 가다랑어·참치 어업협회 23척
- (2) 실시시기 2008년도

3. 향후 일정

- 3월말 폐업신고서 제출
- 4월 이후 구제비교부금, 처리비교부금 신청·교부

원양 참치 주낙어업 및 근해 참치 주낙어업의 재편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의 개요

【원양 참치 주낙어업 및 근해 참치 주낙어업의 각각에 대해서, 기본방침을 책정】

1 재편정비의 지침

(1) 재편정비의 기본적 사고방식

(원양) 대서양의 참다랑어, 중서부태평양의 눈다랭이 어획량의 삭감
(근해) 중서부태평양의 눈다랭이 어획량의 삭감 등에 의한,
상당규모의 감선이 필요.

(2) 재편정비의 대상

2008년 12월 말일 시점에 허가를 받고 있는 자.

(3) 재편정비의 실시기간

2008년도, 2009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주) 실시계획의 인정, 폐업의 신고를 2009년 3월까지 종료.

2 재편정비를 위해 강구할 조치의 기본적 내용

(1) 조치의 대상어업자

가. 감선어업자 구제비 교부금

(가) 2008년 12월 말일 전 3년간 2년 이상 해당어업을 행한 자.

(나) 아래의 단체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근거하여 폐업한 자.

(원양) 일본 가다랑어·참치 어업협동조합,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 근해 가다랑어·참치 어업협회

(근해)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 근해 가다랑어·참치 어업협회

(다)종업원수 300인 이하, 사용어선의 합계 총 톤 수 3000톤 이하인 것.

나. 불필요어선 처리비 교부금

스크랩 처분한 어선의 소유자.

(2) 조치의 내용

(사)대일본수산회는, (1)에 대하여, 구제비 교부금 및 처리비 교부금을 교부.

(3) 구제비 교부금 및 처리비 교부금의 기준

아래의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

1 감선 어업자 구제비 교부금의 산정방식

(1) 경비보전금

가 재료비상당액 : 불필요 어구의 처분 손해 금액

나 노무비상당액 : 아래의 (가)~(다)의 합계액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가) 고정급상당액 : 감선에 따른 귀항에서 해고까지의 고정급의 총액에 0.9를 곱한 금액

(2개월분이 상한)

(나) 선원보험료상당액 : (가)에 관계되는 선원보험료의 선주부담액의 총액

(다) 퇴직금상당액 : 퇴직금의 총액 (기준월액의 6개월분이 상한)

다 고정경비 (수선비) 상당액 : 감선에 따라 쓸모 없어진 선체 수선 경비

라 일반관리비상당액 : 가~다의 합계의 8%

(2) 특별교부금

(원양) 1,915만엔

(근해) 280만엔(총 톤수 10~20톤), 870만엔(총 톤수 20~120톤)

2 불필요 어선 처리비 교부금의 산정방식

선령 등에 따른 단가에 해당어선의 총 톤수를 곱한 금액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3. 중국 원양어업관리규정 (농업부령 제27호)⁵¹⁾ 주요내용

- 제9조 : 원양어업활동 신청 후 15일내에 허가가 결정되며, 특수상황으로 기한의 연장필요시 적시에 기한연장 사유를 제출. 농업부는 원양어업항목의 비준과 동시에 공해어업어획허가증을 발부함

第九條 農業部收到符合本規定第七條要求的遠洋漁業項目申請后，在15个工作日内做出是否批准的決定。特殊情况需要延長決定期限的，應當及時告知申請企業延長決定期限的理由。

經審查批准遠洋漁業項目申請的，農業部書面通知申請項目企業及其所在地省級人民政府漁業行政主管部門，并抄送國務院其他有關部門。

從事公海捕撈作業的，農業部批准遠洋漁業項目的同時，發給《公海漁業捕撈許可證》。

經審查不予批准遠洋漁業項目申請的，農業部將決定及理由書面通知申請項目企業。

- 제10조 : 농업부의 원양어획허가를 획득한 이후에는 공해나 타국관할해역 지역에서 종사하는 비전문화된 원양어업선은 해양어업획득허가증의 원본을 해당기관에 제출

第十條 取得農業部遠洋漁業項目批准后，企業持批准文件和其他有關材料，辦理遠洋漁業船舶和船員證書等有關手續。

到公海或他國管轄海域從事捕撈作業的非專業遠洋漁船，出境前應當將《海洋漁業捕撈許可證》交回原發證機關暫存。

- 제11조 : 타국관할어획지역에서 어업 활동전에 영사관에 등록을 하여 영사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함

第十一條 到他國管轄海域從事捕撈作業的遠洋漁業項目開始執行后，企業項目負責人應當持農業部遠洋漁業項目批准文件到我駐外使(領)館登記，接受使(領)館的監督和指導。

- 제12조 : 기업은 소재지의 성급 인민정부어업행정주관부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해야 함
 - 제1항 : 원양어선이 타국의 관할지역에 진입 후엔 5일 이내에 ‘국제항행선

51) 중화인민공화국농업부령 제27호, <원양어업관리규정>,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4/content_62790.htm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박허가증' 혹은 '선박수속통지서'를 해당 해사 기관에 제출
- 제2항 : 어획량 주요품종 및 생산 상황에 대해 보고함. 매년 1월10일과 7월 10일전에 '원양어업항목생산상황표'를 보고 해야 함
 - 제3항 : 어업작업을 한 수산품이 국내로 유입 시 세관청과 농업부의 「원양 어업기업의 수산품에 대해 세금 불징수 관리방법」 지침에 따라 보고함
 - 제4항 : 농업부와 국제어업관리기구이 다른 상황에 대한 보고 요청 시

第十二條 企業在項目執行期間，應當及時、準確地向所在地省級人民政府漁業行政主管部門報告下列情況，由省級人民政府漁業行政主管部門匯總后報農業部。

(一)漁船出(入)境情況。漁船出入境之日起5个工作日内提供海事部門出具的《國際航行船舶出口岸許可證》或《船舶進口岸手續辦妥通知單》

(二)投產各漁船漁獲量、主要品種、產值等生產情況。除另有規定外，應當于每年1月10日、7月10日前分別報告前6個月情況，填報《遠洋漁業項目生產情況表》

(三)自捕水產品運回情況。按照海關總署和農業部《遠洋漁業企業運回自捕水產品不徵稅的暫行管理辦法》的要求報告

(四)農業部或國際漁業管理組織要求報告的其他情況

- 제13조 : 원양어업시 작업국가의 해역, 작업유형, 입어방식과 어선 수량 등을 신고 해야하며 관련된 자료를 농업부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작업국가의 지역이나 해역을 변경할 시에는 해당 영사관에 변경의견을 제출

第十三條 遠洋漁業項目執行過程中需要改變作業國家(地區)或海域、作業類型、入漁方式或漁船數量(包括更換漁船)的，應當提供本規定第七條規定的與變更內容有關的材料，按照本規定第六條規定的程序事先報農業部批准。其中改變作業國家(地區)或海域的，除提供第七條第(四)款規定的材料外，還應當提供我駐原項目所在國使(領)館的意見

- 제14조 : 어업 작업의 중단이나 완료 후에는 해당 성급 인민정부어업행정주관부문과 농업부에 보고 해야 하며 이는 30일 이내에 완료해야함

第十四條 項目中止或執行完畢后，遠洋漁業企業應當及時向省級人民政府漁業行政主管部門和農業部報告，并于30日內提交項目執行情況總結。

- 제18조 : 원양어업의 제조, 개혁개조, 구매, 선박수입 등은 <어업어획허가관

리규정>에 따라 사전에 농업부의 심의를 받아야 함

第十八條 制造、更新改造、購置、進口遠洋捕撈漁船，應當根据《漁業捕撈許可管理規定》事先報農業部審批。

遠洋漁船所有權變更為他國公民或企業所有的，應當按《中華人民共和國漁業船舶登記辦法》的有關規定，事先辦理漁船所有權注銷登記。遠洋漁業企業應當將漁船所有權注銷登記證書复印件報農業部備案。

- 제19조 : 원양어선의 공해작업에서 중화인민공화국국적의 여권 및 국기를 비치해야하며 농업부에서 허가받은 ‘공해어업어획허가증’에 따라 작업장소와 작업시간 및 어류 등 제한이 있으며 국제조약 및 국제협정의 내용을 준수함

第十九條 遠洋漁船應當隨船携帶有關證書，按規定懸挂旗幟。

到公海作業的遠洋漁船，應當具有中華人民共和國國籍，懸挂中華人民共和國國旗，按照農業部遠洋漁業項目批准文件和《公海漁業捕撈許可證》限定的作業場所、類型和時限作業，遵守我國締結或者參加的國際條約、協定。

在他國管轄海域作業的遠洋漁船，應當遵守我國與該國簽訂的漁業協議及該國的法律法規。

專業遠洋漁船不得在我國管轄海域從事漁業生產。

- 제20조 : 원양어업선은 ‘중화인민공화국어획일지’를 작성 및 어업행정주관 부문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함

第二十條 遠洋漁船應當填寫《中華人民共和國漁撈日志》，并接受漁業行政主管部門的監督檢查。

- 제24조 : 원양어업기업은 원양어업선원들이 미리 타국행정 및 법률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원양어획을 하는 소재국가의 법률과 규범 및 국제조약과 국제협정의 규정을 준수

第二十四條 遠洋漁業企業應當在遠洋漁業船員出境前對其進行外事紀律和法律知識教育。

遠洋漁業船員在境外應當遵守所在國法律、法規和有關國際條約、協定的規定，尊重當地的風俗習慣。

- 제26조 : 농업부는 국제조직의 요구와 관리방식에 근거하여 원양어선에 정부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원양어업기업과 원양어선은 감독관의 지시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기관 직원 업무의 편의를 위한 협조가 필요함

第二十六條 農業部根据管理需要對遠洋漁船進行船位和漁獲情況監測。遠洋漁船应当根据農業部制定的監測計劃安裝漁船監測系統(VMS), 并配備持有技術培訓合格证的船員, 保障系統正常工作, 及時、準確提供真實信息。

農業部可根据有關國際組織的要求或管理需要向遠洋漁船派遣政府觀察員。遠洋漁業企業和漁船有義務接納觀察員, 承擔有關費用, 為觀察員的工作、生活提供協助和方便。

- 제28조 : 원양어업기업과 어선 및 선원은 국외에서 사고발생시 농업부에 상황을 알리고 기업소재지의 성급 인민정부어업행정부문과 관련된 영사공관에 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기관들은 사고처리 및 구조를 위하여 해당국과와 외교 교섭을 진행 및 영사관과 신속히 사건발생의 해결을 위하여 협력함

第二十八條 遠洋漁業企業、漁船和船員在國外發生涉外事件時, 應當立即如實向農業部、企業所在地省級人民政府漁業行政主管部門和有關駐外使(領)館報告, 省級人民政府漁業行政主管部門接到報告后, 應當立即核實情況, 并提出處理意見報農業部和本省級人民政府, 由農業部協調提出正式處理意見通知駐外使領館。對海難和重大涉外事件需要國家緊急救助和對外交涉的, 由農業部協調提出正式處理意見, 商外交部通知駐外使領館進行外交交涉。

遠洋漁業企業和所在地各級人民政府漁業行政主管部門應當認真負責, 迅速、妥善處理涉外事件。

- 제29조 : 원양어업기업, 어선 및 선원은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시 인민정부어업행정주관부문 혹은 소속된 어정어강감독관리기구에 근거한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에 따라 처벌되고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어업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됨
 - 제1항 : 농업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원양어업생산을 하거나 '공해어업어획허가증'을 받지 않고 공해에서 어획활동을 했을 시
 - 제2항 : 원양어업허가 신청서에 거짓으로 기입한 내용이 있을 시
 - 제3항 : 농업부가 비준하거나 '공해어업어획허가증'에 규정하지 않은 작업어획류와 장소, 생산기간, 금지된 어구와 「어업법」에 반하는 어획을 하거나 불법으로 야생보호동물을 잡을 시
 - 제4항 : 원양어선이 유효한 검역과 등기 및 기타 어선증명서를 받지 않거나

- 원양어업어선에 관련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 발견 시
- 제5항 : 본 규정에 따르지 않은 선원채용이나 선원의 강제 파견 시
 - 제6항 : 어업행정주관부문의 감독 관리업무에 대해 방해를 하거나 업무협력의 거절시
 - 제9항 : '어획일지'를 기입하지 않을 시
 - 제10항 : 규정을 어긴 이유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문제
 - 제11항 : 기타 처벌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처벌됨

第二十九條 遠洋漁業企業、漁船或船員有下列違法行爲的，由省級以上人民政府漁業行政主管部門或其所屬的漁政漁港監督管理机构根据《中華人民共和國漁業法》和有關法律、法規予以處罰。對已經取得農業部遠洋漁業企業資格的企業，農業部視情節輕重和影響大小，暫停或取消其遠洋漁業企業資格。

(一)未經農業部批准擅自從事遠洋漁業生產，或未取得《公海漁業捕撈許可證》從事公海捕撈生產的

(二)申報或實施遠洋漁業項目時隱瞞真相、弄虛作假的

(三)不按農業部批准的或《公海漁業捕撈許可證》規定的作業類型、場所、時限生產，或使用禁用的漁具、漁法進行捕撈，或非法捕撈珍稀水生野生動物的；

(四)遠洋漁船未取得有效的檢驗、登記和其他船舶證書，或不符合遠洋漁船的有關規定的；

(五)違反本規定招聘或派出遠洋漁業船員的；

(六)妨礙或拒絕漁業行政主管部門監督管理的；

(九)不按規定填報《漁撈日志》的

(十)發生涉外違規事件，造成嚴重不良影響的

(十一)依法應予處罰的其他行爲

- 제30조 : 농업부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업은 성급인민정부어업행정주관부와 농업부의 재심사 합격을 통과한 후 정지된 날로부터 1년 후에 원양어업기업자격을 회복 할 수 있음 재심사를 위한 정리개혁 이후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시에는 원양어업기업의 자격을 취소

第三十條 被暫停農業部遠洋漁業企業資格的企業，整改后經省級人民政府漁業行政主管部門和農業部審查合格的，可自暫停之日起一年后恢復其遠洋漁業企業資格。整改期過後經審查仍不合格的，取消其農業部遠洋漁業企業資格。

- 제31조 : 어업행정부의 처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행정복의법」과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관련된 규정으로 행

정심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第三十一條 當事人對漁業行政處罰有異議的，可按《中華人民共和國行政復議法》和《中華人民共和國行政訴訟法》的有關規定申請行政復議或提起行政訴訟。

- 제32조 : 각 어업행정주관부문급 공무원은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책을 소홀히 하고 개인간 부정을 저지를 시 소속기관 혹은 상급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음

第三十二條 各級漁業行政主管部門工作人員有不履行法定義務、玩忽職守、徇私舞弊等行爲，尚不構成犯罪的，由所在單位或上級主管機關予以行政處分。

- 제33조 :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원양어선은 중화인민공화국국민, 법인, 기타조직의 모든 원양어업활동의 원양어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며 성급 인민정부어업행정주관부문은 계획단위의 시인민정부의 어업행정주관부문을 포함

第三十三條 本規定所稱遠洋漁船是指中華人民共和國公民、法人或其他組織所有并從事遠洋漁業活動的漁業船舶；遠洋漁業船員是指在遠洋漁船上工作的所有船員，包括職務船員。

本規定所稱省級人民政府漁業行政主管部門包括計劃單列市人民政府漁業行政主管部門

申請遠洋漁業項目基本情况表

企業名稱				農業部企業資格證書編號			
地址				法定代表人			
郵政編碼		電話		傳真			
項目名稱				項目起止時間			
項目所在國家 (地區、海域)				外方合作單位名稱			
入漁方式				作業類型			
船員人數				主要捕撈品種			
計劃派出漁船數				漁獲物銷售方向			
計劃派出漁船船名	所有人	國籍	船舶類型	建造完工日期	船長 (m)	功率 (kw)	總噸位
經營管理人員姓名	職務	學歷	年齡	從事遠洋漁業經營管理經歷			
本人保證上述情況真實有效，並代表本企業保證遵守《遠洋漁業管理規定》。 企業負責人簽字： _____ 年 月 日 (蓋章)							

注：漁船和人員情況表格不夠用時可另加副頁。

원양어업항목기본상황 신청표

기업이름				농업부기업자격 증명서 번호			
주소				법정대표인			
우편번호		전화		Fax			
항목명칭				항목시간(시작-종료)			
항목소재국가 (지역, 해역)				외국협력기업명칭			
입어방식				작업유형			
선원 총 수				주요어획품종			
파견계획의 어선수				어획물판매경로			
파견계획의 어선명칭	소유인	국적	어선 유형	어선건조 완성시기	선박 길이(m)	출력 (kw)	총톤수
경영관리 인원성명	직급	학력	연령	원양어업경영관리종사경력			
본인은 상기 진술이 진실임과 본 기업의 대표로서 <원양어업관리규정>준수를 보장합니다.							
기업대표인 서명 :				연 월 일 (도장)			

주: 어선과 선원 칸이 부족시에 추가로 첨부가능

申請書受理編號：

公海漁業捕撈許可證申請書

申請人姓名或 申請單位名稱		申請人簽字： (公章)	
地 址		年 月 日	
船 名		郵政編碼	電 話
漁 船 類 別	捕撈船 / 漁業輔助船	原捕撈許可證號	
主機總功率	千瓦	漁 船 編 碼	
船長	米	子船數量及功率	艘, 千瓦
船籍港		總噸位	
魚艙數量和容積	个, 立方米	船舶呼號	
漁業船網工具指 標批准書編號		漁具規格及數量	
漁船檢驗證書編號		漁船登記號	
申請作業類型		漁船建造完工日期	年 月 日
申請作業時間		申請作業場所	
		主要捕撈品 種及捕撈限額	
省級漁業行政主管 部門意見：	審批意見 (由批准機關填寫)：		
簽發人：	同意發給漁業捕撈許可證：	不同意發給漁業捕撈許可證。	
(單位公章)	1、作業類型：	原因：	
年 月 日	2、作業場所：		
	3、作業時限：		
	4、主要捕撈品種及限額：		
	5、捕撈許可證類別：		
	6、捕撈許可證號：		
	簽發人：	簽發人：	
	(單位公章)	(單位公章)	
	年 月 日	年 月 日	

說明：申請書每船填寫一份。申請書受理編號由受理申請的省級漁業行政主管部門填寫。


農業部遠洋漁業企業資格和項目年審登記表

企業名稱			農業部企業資格證書號		
項目名稱			農業部項目批件文號		
批准項目截止時間	年 月 日		是否申請延期		
項目所在國家 (地區、海域)			外方合作單位名稱		
入漁方式			作業類型		
項目批准時間			項目執行(派船)時間		
上年度捕撈產量(噸)			其中運回國內量(噸)		
上年度產值(萬元)			上年度利潤(萬元)		
批准派出船員數			已派出船員數		
批准派出漁船數			已派出漁船數		
派出漁船 船 名	所有人	國籍	船舶類型(生產船/輔助船)	證書是否齊全有效	現在是否正常生產
項目負責人簽字：			企業負責人簽字：		
年 月 日			年 月 日		
省級漁業行政主管部門審核意見：			農業部漁業局意見：		
年 月 日 (蓋章)					

농업부원양어업기업자격과항목 연 심사회계등기표

기업명칭			농업부기업 자격증서번호		
항목명칭			농업부항목 비준번호		
비준항목유효기간	연 월 일		연기신청여부		
항목소재국가 (지역, 해역)			외국협력기업명칭		
어업방식			작업유형		
항목비준시간			항목집행 (파견어선) 시간		
전년도어획량 (톤)			어획량 중 국내유입량 (톤)		
전년도생산액 (만위안)			전년도이윤 (만 위안)		
비준파견선원수			기 파견된 선원수		
비준파견선 수			기 파견된 어선수		
파견어선 선 명	소유인	국적	선박유형 (생산선/조력선)	증명서여부 및 유효기간	현재 정상 생산 여부
항목책임자서명 :			기업책임자서명 :		
년 월 일			년 월 일		
성급어업행정주관부문심사의견 :			농업부어업국의견 :		
년 월 일 (공장)					

4. 미국 원양어업 허가신청서

	U.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OMB No. 0648-0304 Expires: 01/31/2012	
	HIGH SEAS FISHING PERMIT APPLICATION Please print legibly or type. Payment of \$129 and copy of the vessel's U.S. Coast Guard documentation or state registration must be submitted with this application.			
SECTION 1. VESSEL INFORMATION				
USCG Doc. or State Registration No.		Vessel Name		Radio Call Sign
Crew Size (including officers)	Shaft Horsepower	Refrigeration Type (Check only one or write in)		
		<input type="checkbox"/> ICE <input type="checkbox"/> BRINE <input type="checkbox"/> BLAST <input type="checkbox"/> PLATE <input type="checkbox"/> TUNNEL <input type="checkbox"/> RSW OTHER: _____		
SECTION 2. VESSEL OWNERSHIP INFORMATION				
Managing Owner as shown on U.S. Coast Guard Form 1270 or State Registration				
Owner's Name, Last	First	Middle	Suffix	Taxpayer Identification No.
Company Name, if vessel is owned by a business entity		State and Date of Formation (mm/dd/yyyy)		Date of Birth (mm/dd/yyyy)
Business Address		Phone No.		Fax No.
City and State		Zip code	Email Address (optional)	
SECTION 3. VESSEL OPERATOR INFORMATION				
Operator's Name, Last	First	Middle	Suffix	Taxpayer Identification No.
Company Name, if vessel is operated by a business entity		State and Date of Formation (mm/dd/yyyy)		Date of Birth (mm/dd/yyyy)
Business Address		Phone No.		Fax No.
City and State		Zip code	Email Address (optional)	
SECTION 4. VESSEL STATUS				
Has the vessel identified above flown the flag of another nation within the last three year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each period during which the vessel operated under other than the U.S flag: period beginning and end dates (mm-dd-yyyy); vessel name, flag,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and homeport; owner name, date of birth, address, phone, and fax; and operator name, date of birth, address, phone, and fax. Provide the information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Has the vessel identified above, under its current name/flag or any previous names/flags, had any permit or license suspended or revoked within the past three year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list and attach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each such instance and provide an explan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suspension or revocation including whether there has been a change in ownership of the vessel.				
FOR OFFICIAL USE ONLY				
Date Received:	Check/Money Order Number:		Reviewer:	

SECTION 5. VESSEL TYPE		
Check the box for the vessel type that best describes your vessel. Check only one.		
<p>TRAWLERS</p> <p><input type="checkbox"/> 0110 – Stern trawler</p> <p><input type="checkbox"/> 0122 – Stern trawlers wet-fish</p> <p><input type="checkbox"/> 0121 – Stern trawlers freezer</p> <p><input type="checkbox"/> 0120 – Stern trawlers factory</p> <p><input type="checkbox"/> 0199 – Trawler, other</p> <p>PURSE SEINERS</p> <p><input type="checkbox"/> 0228 – Tuna purse seiner</p> <p><input type="checkbox"/> 0229 – Purse Seiner, other</p>	<p>GILL NETTERS</p> <p><input type="checkbox"/> 0410 – Drift netter</p> <p><input type="checkbox"/> 0490 – Gill netter, other</p> <p>LONGLINERS</p> <p><input type="checkbox"/> 623 – Freezer Longliner</p> <p><input type="checkbox"/> 0624 – Factory Longliner</p> <p><input type="checkbox"/> 0626 – Tuna Longliner</p> <p><input type="checkbox"/> 0627 – Longliner, Other</p>	<p>OTHER LINERS</p> <p><input type="checkbox"/> 0705 – Squid Jigging Line Vessel</p> <p><input type="checkbox"/> 0710 – Handliner</p> <p><input type="checkbox"/> 0720 – Pole and Line Vessel</p> <p><input type="checkbox"/> 0730 – Troller</p> <p>OTHER VESSELS</p> <p><input type="checkbox"/> Bunker</p> <p><input type="checkbox"/> Fish Carrier</p> <p><input type="checkbox"/> Support Vessel, Other*</p> <p>*If a support vessel, write in type below: _____</p>
SECTION 6. AUTHORIZED HIGH SEAS FISHING ACTIVITIES		
Using as a reference the list of Authorized High Seas Fishing Activities in the instructions, check those under which you intend to fish on the high seas. You must select at least one; however, check only those under which you will actually fish. You are responsible for meeting the reporting requirements for all you select.		
<p><input type="checkbox"/> Pacific Highly Migratory Species Fisheries – 50 CFR 660, Subpart K</p> <p><input type="checkbox"/> Eastern Pacific Tuna Fisheries – 50 CFR 300, Subpart C</p> <p><input type="checkbox"/> South Pacific Albacore Troll Fishing</p> <p><input type="checkbox"/> Western Pacific Pelagic Fisheries – 50 CFR 665, Subpart C</p> <p><input type="checkbox"/> South Pacific Tuna Fisheries – 50 CFR 300, Subpart D</p> <p><input type="checkbox"/> Atlantic Highly Migratory Species – 50 CFR 635</p> <p><input type="checkbox"/>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 50 CFR 300, Subpart G</p> <p><input type="checkbox"/> Northwest Atlantic Trawl Fishery</p>		
SECTION 7. SIGNATURE		
All applications must be signed and dated.		
A non-refundable application fee of \$129.00 in the form of a check or money order made payable to “U.S. Department of Commerce – NOAA” must accompany each application. Mail the application, payment, and copy of the vessel’s U.S. Coast Guard documentation or state registration to the Regional Administrator with whom you normally interact on fisheries matters. Addresses are provided in the application instructions.		
By signing this application, the undersigned owner or operator of the vessel identified above states,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all information set forth within this application is true and correct.		
Signature	Name (print legibly or type)	Date
Submission of application information is mandatory in order to be considered for a permit and is used to determine if a permit should be issued. The public reporting burden for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estimated to average 30 minutes per response, including time for reviewing instructions, searching existing data sources, gathering and maintaining data needed, and completing and reviewing the information. Send comments regarding this burden estimate or suggestions for reducing this burden to: NMF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1315 East West Highway, Silver Spring, MD 20910.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no person is required to respond to,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to a penalty for failure to comply with, a collection of information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the Paperwork Reduction Act, unless that collection of information displays a currently valid OMB Control Number.		
Disclosure of you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Social Security Number (SSN) or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is mandatory. Statutory provisions enacted by the Debt Collection Improvement Act of 1996 (Public Law 104-134) require that persons doing business with the Federal Government, including those applying for licenses or permits, must present thei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SSNs will remain confidential and will be protected from disclosur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U.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OMB No. 0648-0595
 Expires: 11/30/2012

**INFORMATION REQUIRED FOR
 U.S. VESSELS USED FOR COMMERCIAL FISHING FOR HIGHLY MIGRATORY SPECIE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NVENTION AREA IN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ANY NATI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Please print legibly or type)

SECTION 1. VESSEL INFORMATION		
USCG DOC. OR STATE REG. NO	VESSEL NAME	RADIO CALL SIGN (Indicate whether an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has been assigned to the vessel, and if yes, specify the call sign.)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_____
SECTION 2. HIGH SEAS FISHING PERMITS (Indicate whether a high seas fishing permit and/or a WCPFC Area Endorsement for the subject vessel has been received or applied for.)		
Has a high seas fishing permit been issued or applied for?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you may skip Sections 3-6, provided that the information in your high seas fishing permit application is true, accurate, and complete.		
Has a WCPFC Area Endorsement been issued or applied for?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you may skip Sections 3-11, provided that the information in your WCPFC Area Endorsement application is true, accurate, and complete.		
SECTION 3.		
CREW SIZE (Including officers)		SHAFT HORSEPOWER
SECTION 4. FISHING VESSEL TYPE (Check the box for the vessel type that best describes your vessel. Check only one.)		
PURSE SEINERS <input type="checkbox"/> 0228 – Tuna Purse Seiner <input type="checkbox"/> 0229 – Purse Seiner Other GILL NETTERS <input type="checkbox"/> 0410 – Drift Netter <input type="checkbox"/> 0490 – Gill Netter Other	LOGLINERS <input type="checkbox"/> 0623 – Freezer Longliner <input type="checkbox"/> 0624 – Factory Longliner <input type="checkbox"/> 0626 – Tuna Longliner <input type="checkbox"/> 0627 – Longliner Other SUPPORT VESSELS <input type="checkbox"/> Fish Carrier <input type="checkbox"/> Bunker <input type="checkbox"/> Supply Other	OTHER LINERS <input type="checkbox"/> 0705 – Jigging Line Vessel (squid only) <input type="checkbox"/> 0710 – Handliner <input type="checkbox"/> 0720 – Pole and Line Vessel <input type="checkbox"/> 0730 – Troller OTHER TYPES OF VESSELS <input type="checkbox"/> Specify: _____



U.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OMB No. 0648-0595
 Expires: 11/30/2012

SECTION 5. VESSEL OWNERSHIP INFORMATION (Managing Owner as shown on USCG Form 1270 or State Registration. If more than one owner, provide name, address, and telephone information on separate sheets of paper.)					
Company Name (If vessel owner is incorporated)			Date of incorporation (mm/dd/yyyy): _____		
			Phone number: _____		
			Fax number: _____		
Owner Name Last	First name	Middle name	Suffix	Phone #	
Mailing Address	City	State	Zip code	Fax #	
SECTION 6. PREVIOUS VESSEL FLAGS AND NAMES					
Has the vessel identified above flown the flag of another nation within the last three year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each period during which the vessel operated under other than the U.S flag (If necessary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Beginning of period of validity (mm/dd/yyyy)	End of period of validity (mm/dd/yyyy)	Vessel name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Homeport	Flag
1.					
2.					
3.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U.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OMB No. 0648-0595
 Expires: 11/30/2012

SECTION 7. FISH HOLD AND FREEZER INFORMATION		
TOTAL FISH HOLD CAPACITY _____ cubic meters or _____ short tons		
REFRIGERATION/FREEZER TYPE AND CAPACITY (Check and provide numbers for all types that apply. See instructions for details.)		
<input type="checkbox"/> ICE	No. ice-making units: _____ Ice-making capacity: _____ tons/24hr	
<input type="checkbox"/> BRINE	No. chiller units: _____ Nominal size of each unit: _____ tons	
<input type="checkbox"/> RSW	No. chiller units: _____ Nominal size of each unit: _____ tons	
<input type="checkbox"/> BLAST	No. freezer units: _____ Nominal size of each unit: _____ tons	
<input type="checkbox"/> PLATE	No. freezer units: _____ Fish-freezing capacity: _____ tons/24hr	
<input type="checkbox"/> TUNNEL	No. freezer units: _____ Fish-freezing capacity: _____ tons/24hr	
<input type="checkbox"/> OTHER _____	No. units: _____ Fish-freezing capacity: _____ tons/24hr	
SECTION 8. FISHING METHODS (Check each fishing gear type used or intended to be used on the vessel. Check as many boxes as apply. Check at least one box unless the vessel is a carrier, bunker, or other support vessel and is not used to harvest fish.)		
<input type="checkbox"/> Purse Seines	<input type="checkbox"/> Vertical Lines – Hand-operated (non-squid)	<input type="checkbox"/> Trolling lines
<input type="checkbox"/> Driftnets	<input type="checkbox"/> Vertical Lines – Mechanized (non-squid)	<input type="checkbox"/> Poles and lines
<input type="checkbox"/> Drifting Longlines	<input type="checkbox"/> Vertical Lines – Squid Jigs	<input type="checkbox"/> Harpoons
<input type="checkbox"/> Other type(s) of gears (specify): _____		
SECTION 9. VESSEL COMMUNICATION TYPES AND NUMBERS (For each communication type listed, check the "yes" or "no" box to indicate whether the communication type is available on the vessel. If yes, provide the number/address, and check or write in the Inmarsat service.)		
Yes	N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Voice Inmarsat mobile number: _____
		Inmarsat service: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C <input type="checkbox"/> M <input type="checkbox"/> Mini-M <input type="checkbox"/> F Other: _____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Fax Inmarsat mobile number: _____
		Inmarsat service: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C <input type="checkbox"/> M <input type="checkbox"/> Mini-M <input type="checkbox"/> F Other: _____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Email Inmarsat address: _____
		Inmarsat service: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C <input type="checkbox"/> M <input type="checkbox"/> Mini-M <input type="checkbox"/> F Other: _____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elex Inmarsat mobile number: _____
		Inmarsat service: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C <input type="checkbox"/> M <input type="checkbox"/> Mini-M <input type="checkbox"/> F Other: _____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Satellite telephone number (other than Inmarsat): _____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Single sideband radio



U.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OMB No. 0648-0595
Expires: 11/30/2012

SECTION 10. VESSEL OPERATOR INFORMATION				
Provide the name(s) and citizenship of vessel operator(s) (i.e., the master on board the vessel).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Suffix	Country of citizenship
1.				
2.				
3.				
4.				

SECTION 11. COLOR PHOTOGRAPH OF VESSEL (Provide a photograph of the vessel in its current form and appearance. Indicate whether an electronic or paper photograph is being provided or indicate that a photograph has already been provided. If an electronic or paper photograph is being provided, enter the date the photograph was taken. If the vessel's form or appearance materially chan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vessel is painted another color, the vessel is renamed, or the vessel undergoes a structural modification) or if the photograph becomes more than five years old, you must submit to NMFS a new photograph of the vessel within 15 days of the change or of the photograph becoming five years old).	
<input type="checkbox"/> Electronic photograph <input type="checkbox"/> Paper photograph Date photograph taken: _____ (mm/dd/yyyy)	<input type="checkbox"/> Photograph already provided with application for high seas fishing permit or WCPFC Area Endorsement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U.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OMB No. 0648-0595
 Expires: 11/30/2012

<p>SECTION 12. AUTHORIZATIONS TO FISH (Identify each foreign nation or foreign political entity that has permitted, licensed, or otherwise authorized, or is expected to permit, license, or authorize, the vessel to be used for fishing for highly migratory species within waters under its jurisdiction. Indicate the terms of each such authorization in the space indicated below, and submit a copy of each permit, license, or authorization with this application. Do not report in this section any permits, licenses, or endorsements issued by the United States or any federal or state agency or sub-division thereof. If necessary, provide the specified information on additional sheets of paper.)</p>		
Name of nation or political entity issuing authorization	Name of issuing authority and name or brief description of authorization type	
Period of validity of authorization (mm/dd/yyyy – mm/dd/yyyy)	Specific activities authorized	
Specific species for which fishing is authorized	Specific areas in which fishing is authorized	
Any numerical or other unique identifier assigned to the authorization		
<p>SECTION 13. SIGNATURE (All forms must be signed and dated) By signing this form, the undersigned owner or operator of the vessel identified above declares under penalty of law that all information in this form is true, accurate, and complete.</p>		
Signature	Name (Print legibly or type)	Date (mm/dd/yyyy)
<p>Submission of the information specified on this form is mandatory. The information will be used for recordkeeping and reporting under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 The public reporting burden for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estimated to average 90 minutes per response, including time for reviewing instructions, searching existing data sources, gathering and maintaining data needed, and completing and reviewing the information. Send comments regarding this burden estimate or suggestions for reducing this burden to: Regional Administrator, NMFS Pacific Islands Regional Office, 1601 Kapiolani Blvd., Suite 1110, Honolulu, HI 96814.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no person is required to respond to,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to a penalty for failure to comply with, a collection of information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the Paperwork Reduction Act, unless that collection of information displays a currently valid OMB Control Number.</p>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3>

(앞 쪽)

원양어업허가증 (LICENSE FOR DISTANT SEA FISHING)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사용어선 (VESSEL SPECIFICATION)	선명, 톤수 (NAME OF VESSEL, TONNAGE)			
	어선번호 (REGISTRATION NUMBER)			
	기관종류 및 마력 (TYPE OF ENGINE & HORSE POWER)			
	선질 및 주요치수 (MATERIAL & MAIN DIMENSIONS OF VESSEL)	길이(LENGTH)	m	
		너비(WIDTH)	m	
깊이(DEPTH)		m		
주요기기 및 시설 (MAIN EQUIPMENT)				
허가번호(LICENSE NO.)				
어업종류(TYPE OF FISHERY)				
어업의 명칭 (APPELLATION OF FISHERY)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 (FISHING METHOD, GEAR TYPE)				
조업구역(FISHING AREA)				
포획·채취물의종류(TARGET SPECIES)				
어업의 시기(FISHING PERIOD)				
허가기간(TERM OF VALIDITY)				
제한 또는 조건 (LIMITATION OR CONDITION)	뒤쪽 참조			
<p>「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원양어업을 허가합니다. THIS LICENSE IS ISSUED IN CONFORMITY WITH CLAUSE 1, ARTICLE 6 OF THE DISTANT SEA FISHERIES ACT.</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YEAR MONTH DAY </p> <p style="text-align: right;">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p> <p style="text-align: right;">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p>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